

최 종  
연구보고서

C2003-21

#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for Promo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립 부

#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 강 창 용

연 구 원 : 오 세 익

연 구 원 : 성 시 현

위탁연구기관명 : 전북대학교

위탁연구책임자 : 박 정 근

연 구 원 : 강 창 식

# 요 약 문

## I. 제 목

-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II. 연구개발의 목적과 중요성

-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과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한 방법으로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최대한 높여야한다. 그런데 개별 농가의 경영농지규모가 농기계의 성능에 비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과 같이 농기계를 사용해야만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 소유 농기계를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하는 데에도 소유 농기계를 가지고 남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방법, 소유 농기계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방법, 농기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난 30여년 정책이 집중된 방법이다. 반면, 두 번째 농기계의 임대차방법은 그동안 중시되지 못하였다.
- 한편 1990년대 후반,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감축 속에서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뒤늦게 농림부에서는 2003년부터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다양한 농기계임대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주체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경영전략이 없으며, 나아가 어떻게 하면 연속적인 운영체로 존속할 수 있을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여기에 관련된 주의 깊은 연구 역시 거의 없다. 유일한 농기계 이용정책이라 표현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은 농민과 정부 모두에 중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발전적 모델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의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주요 연구내용
  - 농기계임대차의 의의
  -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과 임대사업, 시사점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일본과 독일의 농기계임대 및 기계은행사업
  -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 연구 범위
  - 연구대상 농기계임대사업 : 지역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지방정부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실질 운영 지역 농협)의 농기계임대 시범사업, 일본과 독일의 농기계임대사업
  - 농기계임대수요: 농민대상조사

####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1.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시사점

- 농기계의 개별소유, 공동이용은 가능하지만 공동소유와 공동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동소유의 경우 농기계 소유의식의 결핍, 농기계의 무리한 사용과 관리소홀 등에 따른 농기계 이용비용의 증가, 농기계이용에 따른 경영수지를 악화 등으로 인해 결국 농기계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정부의 하위조직,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을 운영주체로 하는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여 단기에 종료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지 않아 바람직한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은 정부의 자금지원과 함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최초의 사업지원 후 사후봉사 강화, 지속적인 경영지도 등이 필요하다. 2003년부터 시행하는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가의 농기계 이용 측면에서의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비용 절감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대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는 데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소극적인 목표는 향후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과 배치된다.

## 2.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문제와 개선방안

### <문 제>

- 농협중앙회의 발표와 달리 농기계은행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적자와 운영요원 확보의 곤란이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이사회 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지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 농기계은행사업의 내용은 “자체 내 인력 이용 농작업 직영⇒ 외부인력 이 용 직영⇒ 농기계임대⇒단순 작업기의 무상 임대와 농작업 알선” 의 순으 로 변해가고 있었다. 즉 해당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의 경영적자를 해소 하는 방향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혜택이 없는 사업으로 전환되 고 있다.
- 현행 농기계은행사업에서는 농기계임대를 그리 중요시하지 않으며, 하나 의 과도기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많은 농민 조합원에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어서 자칫 일부 농민에 대 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농기계 임대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수요는 결코 작지만 은 않다. 농기계은행사업 이용자들의 71%는 만족과 함께 지속적인 이용 을 희망하고(85%) 있었고, 농기계은행사업을 모르는 농민들의 35% 정도 역시 추후 기회가 되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 <개선방안>

- 농기계은행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업수혜 대상 혹은 사업 분야를 한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농작업 수행이 어려운 노령, 여 성경영자에 우선하고, 작업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포장을 우선한다는 식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업내용이 명확해진다.

-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작업 대행에 주력하고, 운영은 조합내 직원에 의해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농기계수리센터와의 인적, 물적 통합이 필수이다. 외부 농기계운전자 고용시 보유농기계를 거점식으로 관내에 배치하고, 농기계 운전자를 그 지역에서 확보,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작업 수탁의 활성화라는 연장선에서 일관작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육묘작업을 대행 할 경우, 이앙기를 확보·임대해준다든가, 보리과종기와 복토기를 확보·임대해 주고 보리 수확작업을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기계은행사업에 관련된 사업과 통합, 추진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농기계수리 센터, RPC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즉 RPC 중심의 벼생산의 계열화와 농기계의 공동활용으로 벼 생산비 감소, 나아가 다른 품목 농작업의 노동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문 제>

-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목적이 비교적 소극적인, 예컨대 평균적인 지원을 통해 농기계이용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경쟁적인 임차인 선발제도의 미흡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와 관련자들이 선발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의 소지가 있다.
-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책정, 지원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임시자금을 이용하는 곳도 있으며, 사업의 지속을 위한 기금 조성도 일부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공급자 중심의 렌탈방식에 의해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어 임대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행정부서 관리 농기계 임대기간은 중·장기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농기계 사후 관리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다수의 농민을 대상으로 단기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초단기 임대시 과도한 행정 및 관리수요 발생, 여유분 농기계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
- 농기계사고에 대비한 농기계운전자와 농기계에 대한 상해공제가입이 미진하다.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다른 사업과의 연계시행을 통해 사업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데, 이부분이 미흡하며,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상적인 농작업을 대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개선방안>

- 운영 주체의 통합: 농기계임대사업을 관리하는 분리된 주체인 행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관리는 통합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 운용리스(operating lease)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관련시설과 수리, 관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운영 주체별 업무의 분업적 협동: 두 주체의 통합 후, 행정부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된 사업기획과 예산통제,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의 임대, 관리, 수리지원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정적 예산과 기금확보 및 장기임대, 관리강화: 농기계임대사업비는 경상 예산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이 확보된다. 선택과 집중, 관리 수요의 축소와 농기계 및 운전자 공제가입, 임차인 책임 관리 등의 면에서도 장기임대가 유용하다.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도 필요하다.
- 수요자 중심 기중선정과 타 사업 연계: 임대용 농기계는 임차 예정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리스형의 방법 속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다른 정책들과 연계시행이 중요하다.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어려움은 상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안

##### <문 제>

- 가장 중요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인 농업기계화의 목표인 경영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있기 보다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농민들의 지원에 있다. 특히 사업시행 지역농협의 경우 가능하면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규범적인 인식에 젖어 있다.
- 사업주관 지역농협마다 임대농기계의 내용년수와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료 회수 방법이 모두 다르다. 동일기종, 동일규격의 연차별 농기계임대료가 지역농협마다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입의 기금화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과 배치되는 농작업의 수위탁까지도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기존 농기계은행사업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것은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 <개선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농업경영구조의 개선,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의 증진에 뒤편한다. 즉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은 장차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지도자급에 있는 전업적인 농업인에 뒤편한다. 농기계은행과는 다르다.
- 농기계임대시범사업용 농기계의 선택은 지역실정이 철저히 반영되는 방향에서,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1년 이상의 중·장기가 바람직하다. 경영구조 개선, 한 Operator에 의한 조작, 관리의 효율성, 행정관리의 용이성, 농기계공제·보험의 문제, 면세유 수급의 문제 등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산정방법과 회수목표, 관리운영비 처리 등이 적어도 동일사업의 주체인 지역농협간에는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후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내부 회계처리의 일관성 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대용 농기계와 농작업인의 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 농기계임대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마련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예컨대 임대료의 기금화가 필요하다. 농기계임대사업을 농가의 종합적인 경영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농협의 입장에서 운용리스, 중고농기계의 활용, 경영관리 등의 효율화에 노력해야한다.

## 5. 일본 농기계임대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은 농업기계비용의 절감, 새로운 농업기계의 개발, 농작업의 안전의 세 가지 과제와 각 과제별 대응방안, 각 대응방안별 다양한 시책이라는 체계를 이루고 있어 우리의 농업기계화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시책의 체계보다는 훨씬 구체적이다.
- 일본의 농기계 이용효율화 정책은 매우 다양한데, 생산조직에 의한 공동이용, 수위탁의 활성화, 리스·렌탈방식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유형은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세분된다.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농기계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의 리스·렌탈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바, 주된 이유는 농기계리스료가 회계규정상 비용으로 처리되며, 농기계 구입 시 일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반해 리스료는 연지불이 가능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와 유사한 변화, 문제를 갖고 있는 일본의 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 농기계임대사업 정책은 기간 농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부정책에 의한 리스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인정농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기계은행과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임대와는 대조적이다.
- 일본 농협의 경우 농기계 지원사업(리스포함)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농기계회사에서 전략적인 리스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우리가 곧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의 대상이다.

## 6. 독일 MR과 WBL의 시사

- 농민들의 농기계이용비용 절감이라는 사업목적 아래 우리나라는 농기계가격에 직접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독일은 일정한 사업(농기계임대, 알선 이외의 공공사업도 포함)을 민간에 위임하고 그들에게 농기계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 당초 농협의 조직을 민간조직으로 분리해서 MR을 운영하고 있고, WBL 역시 사업영역은 공공적인 것이 많지만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을 피하는 좋은 발상이라 생각한다.
- MR의 경우 순수 농작업의 알선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다른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연히 순수한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의 사업은 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농협의 MR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 WBL에서의 농기계 공동구입, 임대사업은 성공적이다. MR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비록 농기계는 WBL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매년 비용은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소유의식이 있고, 자신의 농기계이다 보니 이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우리에게서는 생소한 조직과 활용이지만 적어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농업에서도 WBL조직과 같은 조직은 검토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 7.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모델(대안적 접근)

- 각 단위사업의 검토를 통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모델을 구상하였다. 제시된 5가지의 모델을 주요기준별, 성격으로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 5가지 효율화 모델별 특징비교 >

구 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주 체	지자체	지역농협	제3주체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목 적	적극적: 농기계이용비용 절감과 경영구조개선 유인			소극적: 단순 기계비용 절감	
대 상	공동조직내 기간농 지원			무차별 농민 지원	
대상 농기계	중·대형	지역특화 (중·대형)	지역특화+ 중·대형	소형기종,작업 기(지역특화)	소형기종,작업 기
기종확보	리스형식	렌탈형식	리스형식	리스+렌탈형 식	렌탈형식
리스형태	운영리스	운영리스	초기:순리스 장기:운영리스	순수+유지관 리리스	순수리스
리스기간	장기(1년)			단기	
기 금	적립가능	적립불능	적립가능	적립불능	적립가능

- 현재로는 모델 I 과 모델 IV를 권유하고 싶지만, 농업의 발전방향과 농업기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모델 I 에서 모델 III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투자재원이 충분할 경우에는 동시에 혹은 순차로 모델 IV와 모델 V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델 III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물론 모델Ⅲ의 모습을 독일의 WBL과 같이 정립할 수도 있다. 즉 제3의 주체는 일정한 운영비를 정부와 농협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조직을 운영하며 농기계임차료에는 순전히 농기계구입과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지 제3의 주체는 농가로부터 위임받아 농기계를 구입하고, 소유하며 농기계를 일차로 구입하는 데 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 SUMMARY

## **I . Title**

A Study for Promo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nd to develop management tools more improved by operating units, to suggest effective lease models of agricultural machinery for promoting lease in Korea.

## **III. Range and Scope**

It includes a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efficient using policies and implications of agricultural machinery from 1970 among this study.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agricultural machinery policies are suggested by operation units in the study. Finally this study has a conclusive 5 efficient models that is made from deep investigation about the policie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n Korea, Japan and German.

## **IV. Resul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Problem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by Operation Unit
  - o MR(Maschinen-Ringe) by Agricultural Co-op
    - to have a distaste for adop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n MR business, basically.
    - to treat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s a transitional business even thought more farmer's demand.
    - the scale of farmer's demand for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will not be small

- o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by Provincial Government
  - to have an inappropriate targe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that is concentrated in small and old farmers conflicting with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development.
  - to have an unstable budget for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in some provincial governments.
  - the period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s too short to realize meri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n farmer's level.
  - not to have legally any kinds of strategy for insurance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operators has a possibility to bring legal conflicts when accidents happened.
  
- o An Exhibition Policy of Agricultural Machinery by Co-op since 2003
  - to have an inappropriate targe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nd also are different by business units.
  - to have different lease contractual condition including period of lease, lease commission, depreciation period and rate and so on.
  - not to have any kind of plan to make this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s a continuing business in view of fund accumulation and rule.
  
- (2) An Effective Management Tools
  - o MR(Maschinen-Ringe) by Agricultural Co-op
    - to have a concreateed target, especially in a point of MR business range.
    - to treat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s a major business in MR business will be received as a business to meet farmer's demand.
    - the period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will be settled by cases.
  
  - o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by Provincial Government
    - to have an appropriate targe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that is concentrated in leading old farmers harmonized with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development.

- to have an stable budget for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 to have a long period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 to have strategy for insurance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operators, necessarily
- o An Exhibition Policy of Agricultural Machinery by Co-op since 2003
- to have an unified targe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ppropriate with need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 to have an unified lease contractual condition including period of lease, lease commission, depreciation period and rate and so on.
  - to have a plan to make a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as a continuing business and for insurance of agricultural machine and operators

(3) The Conclusive 5 Efficient Models

- a conclusive 5 efficient models made from deep investigation about the policie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in Korea, Japan and German, are as this table.

Classify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Op. Unit	Prov. Gov.	Reg. Co-op	3Sector	Reg. Co-op	Agri. Tech. Center
Target	Positive: Improvement of Agri. Management Structure			Negative: Reduce cost of Agri. Mach.'s Using	
Subject	Leading Farmers			All Farmers	
Obj. Machinery	Large	Reg. Special	Reg. Special+ Large	Small, Attachment	
Buying Method	Lease	Rental	Lease	Lease+Rental	Rental
Lease Style	Operating	Operating	Net & Operating	Net & Maintenance	Net
Period	Long((1 year)			Short	
Fund	Accumulation	Impossible	Accumulation	Impossible	Accumulation



# CONTENTS

I . Introduction .....	1
II . The Concepts of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	8
III . A Policy of Agricultural Machinery Using and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	24
IV . MR(Maschinen-Ringe) by Agricultural Co-op .....	62
V . Agricultural Machinery Lease Policy by Provincial Government .....	110
VI . An Exhibition Policy of Agricultural Machinery by Co-op since 2003 .....	177
VII . MR(Maschinen-Ringe) in Japan .....	209
VIII . Conclusion - An Effective Management Tools & the Conclusive 5 Efficient Models .....	275
Appendix 1 MR & WBL in German .....	305
Appendix 2 Rules of Lease in Japan .....	321
Appendix 3 Illustration of Yang-pyung, Yeo-joo county .....	345
Reference .....	350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1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4
3. 연구개발 범위와 방법 .....	5
가. 연구범위 .....	5
나. 연구방법 .....	6
4. 연구개발 추진 체계 .....	7
5. 기대효과 .....	7

## 제 2 장 농기계임대차의 개념과 성격

1. 대차의 의미와 분류 .....	8
2. 임대차와 리스, 렌탈 .....	10
가. 임대차의 의의 .....	10
나. 리스와 렌탈 .....	11
다. 리스의 성립조건 .....	13
3. 농기계임대차의 의의 .....	17
가.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 위탁 .....	17
나. 농기계임대차와 농기계은행 .....	20
다. 농기계이용에서 농기계임대차 위상 .....	22

## 제 3 장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과 임대사업의 의의

1.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변화 .....	24
가. 기계계(契) .....	28
나. 영농기계은행 .....	30
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 .....	32
라. 영농기계화센터 .....	35

마.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	38
바. 기계화영농단 .....	41
사. 위탁영농회사 .....	46
아.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1995년 이후) .....	49
자. 기계화 전업농과 쌀전업농 .....	52
2. 농기계임대사업정책 .....	55
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의 골격 .....	55
나. 농기계임대사업(2003) .....	56
3. 농기계이용 효율화정책의 시사와 임대사업의 의의 .....	58

#### **제 4 장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1. 농기계은행사업의 의의 .....	62
가. 사업추진 경위 .....	62
나. 추진사업의 내용 .....	63
다. 사업지원 내용 .....	64
2.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과 문제 .....	65
가. 사업의 추진체계 .....	65
나. 사업운영 방법 .....	66
다. 사업추진 실적 .....	68
3.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현지실태조사 분석 .....	71
가. 현지조사의 개요 .....	71
나. 지역농협의 농기계운영 실태와 문제 .....	72
다. 농기계운영 유형과 특징 .....	91
4.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농민 반응조사 .....	96
가. 조사개요 .....	96
나. 주요 조사결과의 분석 .....	97
5. 문제와 개선방안 .....	103
가. 문제 .....	103
나. 개선방안 .....	105

부 표 .....	109
-----------	-----

## 제 5 장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1. 조사개요 .....	110
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개요 .....	111
가. 임대사업 주체수 .....	111
나. 임대사업 추진 배경 .....	112
다. 사업의 재원 .....	113
라. 보유 임대 농기계와 시설 .....	114
마. 임대사업 운영체계 .....	116
3. 경기도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117
가. 사업의 목적과 조성규모 .....	117
나. 임차주체와 기종 .....	120
다. 임대기간 .....	123
라. 임대료 .....	126
마. 운영실적과 임작업료 수준 .....	130
바. 사전·후 관리 .....	133
사. 기금의 확보와 사업의 지속 .....	135
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8
4. 충청도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144
가. 사업추진 경과와 목적 .....	144
나. 사업비와 보유 장비 .....	146
다. 임차주체와 농기계 선정 .....	148
라. 임대기간 .....	149
마. 임대료 결정 .....	150
바. 운영협의회 .....	155
사. 사업실적 .....	156
아. 농기계보험 .....	157
자. 사업의 지속성 .....	159

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0
5.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발전 방향 .....	166
가. 문제점 .....	166
나. 발전방향 .....	170
부    표 .....	173

## 제 6 장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안

1. 농협중앙회의 운영요령 .....	177
가. 운영 지침 .....	177
나. 세부추진 내용 .....	178
다. 계통조직별 주요업무 .....	181
2. 시범사업 지역농협의 운영 실태 .....	182
가. 사업추진의 목적 .....	182
나. 임차주체와 기종 .....	185
다. 임대기간 .....	189
라. 임대료의 결정방법과 수준 .....	193
마. 사전·후 관리 .....	195
바. 사업지속과 경영수지 .....	199
사. 기타 .....	200
3. 시범사업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	201
가. 문제점 .....	201
나. 개선방안 .....	203
부    표 .....	206

## 제 7 장 일본의 농기계임대사업 실태와 시사점

1.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 .....	209
가. 기본정책의 개요 .....	209
나. 농기계 관련 정부 및 제도금융 지원 실태 .....	218
2. 농기계임대 및 이용효율화 정책의 개요 .....	232

가.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	232
나. 농업기계은행 .....	239
다. 청부경작(contractor) .....	247
라. 기타 농기계임대사업 .....	254
3. 일본의 농기계 임대사업 사례분석 .....	257
가.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 .....	257
나. 농기계은행 및 청부경작 사례 .....	262
다. 리스회사 운영사례 .....	266
4. 요약 및 시사점 .....	268
가. 요약 .....	268
나. 시사점 .....	272

## 제 8 장 결론 -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	275
가.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 .....	275
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	278
다.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 .....	281
라.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운영 .....	286
마. 일본 농기계임대사업의 시사점 .....	290
바. 독일 MR과 WBL의 시사점 .....	292
2.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모델(대안적 접근) .....	293
가. 기본적인 시각의 정립 .....	293
나. 활성화 모델(대안) .....	294
다. 모델별 특징비교 .....	302
부 록 제 1 장 독일 MR과 WBL의 시사점 .....	305
부 록 제 2 장 일본 농기계 리스 관련규정 .....	321
부 록 제 3 장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군 사례 .....	345
참고문헌 .....	350

# 표 목 차

## 제 2 장

<표2- 1> 리스와 렌탈의 비교 .....	12
<표2- 2> 농기계 임대차와 농작업 수위탁과의 차이 .....	17
<표2- 3> 농기계 임대차와 농작업 수위탁의 차이 .....	18

## 제 3 장

<표3- 1>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형태별 정책내용(1970~'80년대) .....	26
<표3- 2> 기계계 설치현황(1972년말) .....	28
<표3- 3> 기계계의 농기계보유현황(1972년말) .....	28
<표3- 4> 영농기계은행의 농기계보유현황 .....	31
<표3- 5>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계획 .....	33
<표3- 6>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 추진 실적 .....	34
<표3- 7> 영농기계화센터 육성 현황 .....	36
<표3- 8> 영농기계화센터 보유농기계현황 .....	37
<표3- 9> 영농기계화센터 용자지원실적(정산실적 기준) .....	37
<표3-10>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조성현황 .....	39
<표3-11>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자금지원실적 .....	40
<표3-12>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 .....	42
<표3-13> 기계화영농단 자금지원현황 .....	43
<표3-14> 기계화영농단의 주요 농기계공급대수(1981년~'94년말) .....	44
<표3-15> 위탁영농회사 육성 계획 .....	47
<표3-16> 위탁영농회사 자금지원현황 .....	48
<표3-17>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자격요건(기계화영농단과 비교) .....	50
<표3-18>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의 실적 .....	51
<표3-19>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자금지원 실적 .....	51
<표3-20> 기계화 전업농 지원대상 영농규모 자격요건 .....	53
<표3-21> 기계화 전업농 육성 계획과 실적 .....	53

<표3-22> 기계화전업농 자금지원 실적 .....	53
<표3-23> 쌀전업농 육성 계획과 실적 .....	54
<표3-24>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내 기본방향과 정책 .....	55
<표3-25> 농기계임대시범사업 육성 계획 .....	57

## 제 4 장

<표4- 1> 정부의 지원(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	64
<표4- 2>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1단계의 내용 .....	67
<표4- 3>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2단계의 내용 .....	67
<표4- 4>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3단계의 내용 .....	68
<표4- 5> 농기계은행의 연도별 사업실적 .....	68
<표4- 6> 2001~'02년도 농기계은행 농기계보유현황 .....	69
<표4- 7> 2001~'02년도 농기계은행 사업실적 .....	69
<표4- 8> 농기계은행 경영수지(2002년도) .....	70
<표4- 9> 농작업 수수료 수준(황룡농협) .....	74
<표4-10> 농작업 수수료 수준(백수농협) .....	77
<표4-11> 농기계은행 농기계 보유현황(2002년3월, 부적농협) .....	82
<표4-12> 연도별 농작업 수위탁 중개사업 실적(부적농협) .....	83
<표4-13> 연도별 보리수확작업 대행실적(부적농협) .....	83
<표4-14> 농기계은행 농작업료(부적농협) .....	84
<표4-15> 2002년도 농기계은행 손익내역(부적농협) .....	85
<표4-16> 농작업 수수료 수준(세도농협) .....	87
<표4-17> 조사대상자들의 도별 분포 .....	97
<표4-18> 조사대상 영농회장의 연령별 분포 .....	97
<표4-19> 농기계사업 인지여부 .....	98
<표4-20> 농기계사업 경험 여부 .....	98
<표4-21>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이유 .....	99
<표4-22> 경험한 농기계임대사업 형태 및 만족도 .....	99
<표4-23> 농기계임대사업 유형별 만족 이유 .....	100



<표4-24>	농기계임대사업 유형별 불만족 이유 .....	100
<표4-25>	농기계임대사업 경험자중 계속 이용하려는 이유 .....	101
<표4-26>	농기계 은행사업을 모르는 경우 이용할 의사 유무 .....	101
<표4-27>	농기계 은행사업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	102
<표4-28>	농기계은행 사업중 이용 희망사업 .....	102
<부표4-1>	2003년 7월 농기계은행(MR) 사업 현지확인 대상 .....	109

## 제 5 장

<표5- 1>	농기계 임대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이 .....	111
<표5- 2>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시년도 및 추진배경 .....	112
<표5- 3>	지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기본 특징 .....	114
<표5- 4>	지역별 임대 농기계 보유대수 .....	115
<표5- 5>	지역 내 주요 임대 농기계의 비중 .....	115
<표5- 6>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 비교(경기도) .....	118
<표5- 7>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사업량 및 계획(경기도) .....	119
<표5- 8>	1999년 ~ 2002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경기도) .....	120
<표5- 9>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대상의 비교(경기도, 조사시점기준) .....	121
<표5-10>	임대용 농기계의 선택(경기도) .....	122
<표5-11>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 결정방법(경기도) .....	124
<표5-12>	농기계의 임대기간별 특징 .....	125
<표5-13>	농기계 임대료의 결정방법(경기도) .....	127
<표5-14>	시·군별, 농기계별 임대료 산정방법(경기도) .....	129
<표5-15>	농기계 임대대상자 유형별 현황(2003말 기준) .....	130
<표5-16>	임대기종별 작업일수 및 작업면적(경기도) .....	131
<표5-17>	임대 농기계의 농가부담 임작업료 현황(경기도) .....	132
<표5-18>	임대농기계 종합공제 가입과 비용부담(경기도) .....	133
<표5-19>	보험 가입, 면세유 지원 현황(경기도) .....	134
<표5-20>	농기계임대사업의 기금조성 방법(경기도) .....	136
<표5-21>	임차농기계 이용주체별 농기계 사용량 비교(경기도) .....	139

<표5-22>	농기계 임대대상자별 장·단점 .....	140
<표5-23>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 비교(충청도) .....	146
<표5-24>	임대용 농기계의 보유현황(충북) .....	147
<표5-25>	임대용 농기계의 보유현황(아산시) .....	147
<표5-26>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원대상(충청도) .....	148
<표5-27>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 결정방법(충청도) .....	150
<표5-28>	농기계 임대료의 결정방법(충청도) .....	151
<표5-29>	농기계 작업별 사용료(청주시, 음성군) .....	152
<표5-30>	기종별 농기계 임대료(영동군, 음성군) .....	152
<표5-31>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사용료 기준 .....	153
<표5-32>	농기계 임대 사용료 반환 조건의 차이(충청도) .....	154
<표5-33>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협의회 구성 .....	155
<표5-34>	청주시와 영동군, 아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실적(2002) .....	157
<표5-35>	음성군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실적(2002) .....	157
<표5-36>	충청북도 임대농기계 종합공제 가입과 비용부담 .....	158
<표5-37>	지방정부 사업 주체별 농기계임대사업의 특징과 문제 .....	167
<부표5-1>	임대용 농기계의 기종별 보유현황(충북 3개소) .....	173
<부표5-2>	임대용 농기계의 기종별 보유현황(충남) .....	174
<부표5-3>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원/ 1일기준, 충북 3개소) .....	175

## 제 6 장

<표6- 1>	2003년 농기계 임대사업 규모 .....	178
<표6- 2>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주체별 주요 업무 .....	182
<표6- 3>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비교 .....	184
<표6- 4>	농기계 임차의 주체(사업시행 지원대상)의 비교 .....	187
<표6- 5>	임대시범 사업용 농기계 .....	188
<표6- 6>	임대농기계 확보대수 및 정부보조금의 기종별 배분 .....	189
<표6- 7>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 결정방법 .....	192

<표6- 8> 농기계 임대료의 결정방법 .....	194
<표6- 9> 임대농기계 종합공제 가입과 비용부담 .....	197
<부표6-1> 전남 남평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 .....	206
<부표6-2> 충북 오창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 .....	206
<부표6-3> 전북 공덕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 .....	207
<부표6-4> 충북 청남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1) .....	208
<부표6-5> 충북 청남조합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2) .....	208
<부표6-6> 경북 흥해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 .....	208

## 제 7 장

<표7- 1> 농기구비용의 추이(전국판매농가 1호당) .....	212
<표7- 2> 일본 쌀 생산비중 농기구와 노동비(전국판매농가 10a당) .....	212
<표7- 3> HELP농기계 출하실적(2000. 1~12) .....	213
<표7- 4> 농기계 연구기관의 연구내용 .....	215
<표7- 5> 농작업 사망사고와 전체 산업재해사망 비교 .....	217
<표7- 6>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1) .....	219
<표7- 7> 농업기계·시설에 관한 제도자금의 지원내용(1) .....	222
<표7- 8> 농업기계화 행정의 확충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1) .....	224
<표7- 9> 신기술개발·실용화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 .....	225
<표7-10> 일본의 농기계관련 보조사업 현황(1) (2002년 현재) .....	226
<표7-11> 일본의 농기계관련 예산 및 사업량(1) .....	230
<표7-12> 법정 내용년수와 리스기간 .....	233
<표7-13> 농작업 알선방식 개시의 계기와 특징 .....	241
<표7-14> 국가 농업기계은행 사업의 추이 .....	242
<표7-15> 농업기계은행 및 농업생산지원체제 관련연표 .....	243
<표7-16> 농업기계은행의 사업실적 추이 .....	244
<표7-17> 운영축소를 검토하고 농업기계은행의 이유 .....	245
<표7-18> 농업기계은행의 중지이유 .....	246
<표7-19> 농업기계은행 방식과 청부경작 방식의 차이 .....	248

<표7-20>	청부경작 조직수 추이 .....	248
<표7-21>	수탁호수 및 수탁면적의 추이 .....	249
<표7-22>	경영형태별 계약자 조직의 개요 .....	249
<표7-23>	지역별 계약자 조직의 상황 .....	250
<표7-24>	작업 수탁면적의 내용 .....	251
<표7-25>	계약자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	251
<표7-26>	사료작물 계약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 .....	252
<표7-27>	사료생산에 관계되는 노동시간 .....	253
<표7-28>	자급사료의 비용가와 계약자 작업요금의 비교 .....	254
<표7-29>	버진하트 농연의 리스기계 및 시설 .....	259
<표7-30>	버진하트농연의 리스료 지불명세(트랙터) .....	259
<표7-31>	町村농장의 리스기계 및 시설 .....	260
<표7-32>	마찌무라농장의 리스료 지불명세(인정 농업자 리스) .....	261
<표7-33>	마찌무라농장의 리스료 지불명세(축산협회 리스) .....	261
<표7-34>	에니와농협 농기계 합리화 이용조합의 사업구분 .....	263
<표7-35>	주요 농업기계·작업기 임대 협정요금표(세금제외) .....	264
<표7-36>	주요작업 시행료 협정요금표 (세금제외) .....	265
<표7-37>	농업기계 합리화이용조합 수지현황 .....	266
<표7-38>	호쿠도 안마사의 농가판매 및 리스시대(2002년) .....	268

## 제 8 장

<표8- 1>	주요 기준별 선택조건 .....	295
<표8- 2>	주요 기준에 따른 임대모델 분류 .....	296
<표8- 3>	효율화 모델별 특징비교 .....	303

## 부 록

<부록 표3-1>	연도별 농기계 임대사업 내역 .....	346
<부록 표3-2>	1999~'02 임대 농기계 읍·면별 임대 현황 .....	347
<부록 표3-3>	연도별 농기계 임대사업 내역 .....	348

<부록 표3-4> 2000~'02 임대 농기계 읍·면별 임대 현황 ..... 349

# 그림 목 차

## 제 2 장

<그림2- 1> 농기계이용관련 용어의 분류 .....	21
-------------------------------	----

## 제 3 장

<그림3- 1> 농기계이용 체계도 .....	25
<그림3- 2> 1990년대 정부지원 농기계이용조직 변화도 .....	26
<그림3- 3> 농기계임대시범사업추진체계 .....	57
<그림3- 4>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변화 .....	59

## 제 4 장

<그림4- 1>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체계도 .....	65
<그림4- 2> 농작업 중개업무 체계(부적농협) .....	82
<그림4- 3> 농작업 수탁업무 체계(부적농협) .....	83
<그림4- 4> 농작업 대행의 유형 .....	93
<그림4- 5> 농기계 임대 유형 .....	94
<그림4- 6> 농기계 은행 운영 형태의 변화 .....	96

## 제 5 장

<그림5- 1>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체계 .....	117
-------------------------------	-----

## 제 7 장

<그림7- 1> 일본 농기계 정책의 기본개요 .....	210
<그림7- 2> 농업기계 긴급개발·실용화 촉진사업 흐름도 .....	216
<그림7- 3>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 구조 .....	234
<그림7- 4>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의 구조 .....	238
<그림7- 5> 농업기계은행의 기본형 .....	240

<그림7- 6> 농업기계은행 설치 수 누계 .....	241
<그림7- 7> 청부경작의 조직 및 운영 흐름도 .....	247
<그림7- 8> 월별 노동시간 .....	253
<그림7- 9> 북해도 축산협회의 리스업무 체계 .....	255
<그림7-10> 농기계회사의 리스사업체계 (호쿠도 안마사의 예) .....	255
<그림7-11> 버진하트농연의 농장 현황 .....	258
<그림7-12> 에니와(惠庭)지소의 조직 .....	262
<그림7-13> 리스기간 만료 후 농기계의 처리 방법 및 내용 .....	267

## 부 록

<부록 그림1-1> 독일 농기계은행 운영체계 .....	311
--------------------------------	-----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흐름은 WTO체제의 구축에 이어 DDA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 시장개방의 파고 속에서 외국 농산물의 수입확대는 예견되는 일이며 자칫 이러한 추이를 수수방관할 경우 우리 농업은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농업의 자립도 감소,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와 농업과 농촌의 피해, 식량문제의 심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의 농산물과 맞서 우리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들이 구사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의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농업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물론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를 통한 차별화 역시 경쟁력 강화의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몇 가지의 수단과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은 농업경영규모의 확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생산비 절감 방법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농기계생산 단계에서 저가의 농기계를 생산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농민이 자기실정에 부합된 농기계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용단계에서 농기계가 가지는 성능과 소유 농민의 처한 상황 아래에서 최대한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낮은 고장빈도와 신속한 수리 서비스 등도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가 단위에서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자기의 영농조건에 알맞은 농기계를 선택하고, 선택한 농기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농가의 경영규모에 비해 농기계의 성능상 혹은 수지균형상 부담면적보다 훨씬 크다. 환언하면 개별 농가의 경영농지규모가 농기계의 성능에 비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과 같이 농기계를 사용해야만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자신의 농작업 이외의 작업에 소유한 농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농기계 구입비용의 변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유 농기계를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하는 데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소유 농기계를 가지고 남의 농작업을 직접 대행해주는 임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소유 농기계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농기계의 임대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농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로 농기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위 3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의 농기계활용은 우리농촌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 온 농기계이용 모습으로 정책 대상으로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농업기계화정책의 대상이었고, 구체적으로 농업기계 이용효율 증대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취급되었다. 과거 30여년에 걸친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은 세 번째에 집중되어 왔었으며, 두 번째의 방법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의 공동소유와 이용은 형식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1990년대에 일부 농가 개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은 바로 농기계의 공동소유와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철폐와 지원의 축소 속에서도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뒤늦게 농림부에서는 2003년부터 전격적으로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전개에 따라 전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주체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경영전략이 없

으며, 나아가 어떻게 하면 연속적인 운영체로 존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조직주체와 지원내용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중앙정부까지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칫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적절한 방향설정이 없이 여러 문제 속에서 진행되다가는 일회성의 사업으로 종료될지도 모를 일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농기계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될 수도 있는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으로써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농업기계화 정책,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에 거는 기대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여러 조직에 의해 여러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사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시행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특성별 운영모델의 설정, 운영전략 등에 대한 검토와 방안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농업기계화기본계획(2002~'06)내에도 농기계 이용의 증대를 위해 임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있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연구의 최종목표는 현재 우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농기계임대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운영모델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있다.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그동안 추진해 온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 선상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위상과 의미를 파악하고, 둘째 지난 15년여 동안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농기계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셋째 지방정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넷째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협력의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 일본과 독일의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문제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의 발전적 모델을 강구한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을 아래와 같다.

- 농기계임대차의 의의
  - 임대차의 의미와 분류
  - 농기계임대차의 의의
  - 농기계이용에 있어서 농기계임대차
  
-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과 임대사업
  -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의 변화
  - 농기계임대사업 정책
  - 과거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시사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농기계은행사업의 의의와 실적

- 지역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운영과 문제
  - 농민들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의식분석
  - 농기계은행사업의 개선방안
-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개요
    -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과 문제
    -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선방안
-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시범사업의 운영요령
    - 시범사업의 운영실태
    - 시범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일본과 독일의 농기계임대 및 기계은행사업
    - 일본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 내용과 문제 및 시사점
    - 독일 기계은행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 3. 연구개발 범위와 방법

#### 가. 연구범위

국내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이 된 농기계임대사업은 지역농협 중심의 농기계은행사업, 지방정부,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내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사업과 2003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 지원의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이다. 일본의 사례는 북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독일의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지역 기계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농기계임대사업에 관련된 사람과 조직, 즉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농협과 관내 농민, 시·군 농기계임대 담당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중앙회와 농림부 등은 이 연구조사의 대상들이다. 당초 농기계임대대상 농기계를 일정기종에 한정하려 하였으나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종한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 나.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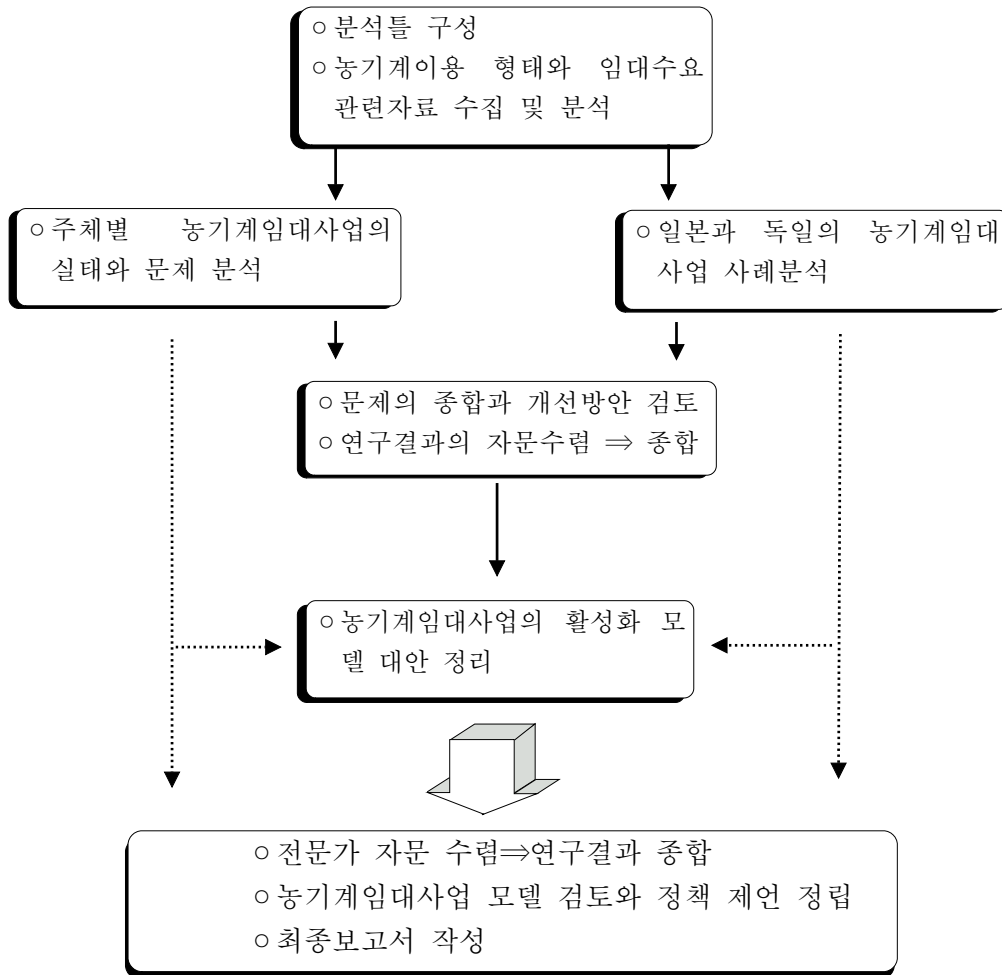
이 연구의 주제가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의 강구에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대상과 조사물량은 아래와 같다.

- 농민: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관내 627명
-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지역농협: 8개소(전화 및 일반조사 40개소)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행정기관: 3개도, 12개 시·군
- 농기계임대시범사업 추진 농협: 농협중앙회 및 7지역농협

외국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북해도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조사하였으며, 독일의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중심의 기계은행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질의 제고를 위해 자문회의를 구성, 활용하였다. 일상적인 자문 외에도 연구의 설계, 중간 및 최종보고와 검토시 자문을 얻어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 4. 연구개발 추진 체계



#### 5.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농기계임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정책적인 개선방안의 강구에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농기계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것이다. 나아가 농기계임대사업의 정책개발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증대와 농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물론 개별 농기계임대사업자(조직)들의 연속적, 안정적 경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사업이 건전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제 2 장

### 농기계임대차의 개념과 성격

일반적으로 농기계는 개인이 구입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농기계의 가격이 농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농기계를 빌려 쓰는 것을 생각해 보기 마련이다. 농기계를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농기계 임대차라 말하는 데, 나름대로의 특징과 의미가 있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차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지 못할 경우 현실과 유리된 주장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논할 경우, 그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와 조건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장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들이다. 특히 본 장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농작업의 수위탁과 농기계임대차와의 차이점 등을 함께 비교, 설명하여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차가 왜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중요한지, 어떤 요인에 의해 규제되는지를 정리하였다.

#### 1. 대차의 의미와 분류

법에서는 “대차”란 빌리는 사람(차주: 借主)이 빌려준 사람(대주: 貸主)의 것을 이용한 후 반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대차에는 소비대차(消費貸借: 민법 제 598~608조), 사용대차(使用貸借: 동법 제 609~617조), 임대차(賃貸借: 동법 제 618~654조)의 3종류가 있다.

먼저 “소비대차”란 관련된 당사자 한쪽이 금전 등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다른 한쪽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전받은 상대방은 그 대체물과 같은 종류, 같은 질과 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소비대차에서 대주(빌려주는 사람)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빌리는 사람)에

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차주는 차용물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物件)을 대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598조). 이때 목적물인 물건은 소비·처분의 목적대상이 된다. 이러한 소비대체의 목적물은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이며(동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주종은 우리가 자주 현실에서 경험하는 금전소비대차이다. 소비대차에서는 이자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데, 이자가 있는 경우를 쌍무(雙務)·유상(有償) 계약이라고 한다.

“사용대차”란 관련된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使用)·수익(收益)하게 할 목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받은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것을 반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일컫는다. 사용대차는 목적물인 물건의 소비·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무상이며, 당사자 일방에 의해 이뤄진다는 편무계약(片務契約)<sup>1)</sup>이라는 면에서 임대차와는 다르다(민법 제 609조).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지만 계약에 의거하여 일정한 부담을 질 수는 있다. 아울러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면 차용물 자체를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hire of things)”란 관련된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使用)·수익(收益)하게 할 목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는 대차의 목적물 자체를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면 반환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사용대차와 같으나, 유상(有償)이면서 편무가 아닌 쌍무의낙성계약(諾成契約)<sup>2)</sup>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일상에서 남의 물건을 빌어 쓸 경우 무상인 사용대차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계약이며, 대개는 유상대차인 임대차가 주류를 이룬다.

---

1) 편무(片務)와 쌍무(雙務)계약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계약 당사자간 혹은 일방에서 대가적 채무를 지느냐(쌍무), 아니면 비록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인 관계에 있지 않느냐(편무)에 따라 구분됨. 편무계약에는 증여, 현상광고 등이 해당됨. 소비대차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편무계약이 됨.

2) 낙성계약(諾成契約)이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임대차와 리스, 렌탈

### 가. 임대차의 의의

유상, 쌍무, 낙성계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한 임차물 자체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sup>3)</sup>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게 사용대차(使用貸借)와 같으며, 차임(借賃)을 지급해야 한다는, 유상이라는 면에서는 무상인 사용대차(使用貸借)와 다르다.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지만 임대차는 쌍무의 낙성계약이다.

임대차의 대상은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각종 산업에서 사용되는 설비, 장비 등의 시설과 부동산의 임대차가 가장 많다.

임대차는 일정한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이행기간이 설정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즉 계약에 의한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이 기간을 초과한 기간을 약정한다해도 그 효력은 20년으로 단축된다(민법 제651조 1항).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의 최단 임대계약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일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와 같은 기본규범 아래에서, 임대차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한편, 개념상으로 볼 때, 임대차내에 리스와 렌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리스와 렌탈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은 임대차의 속성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와 렌탈을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3) “임대차”라 하면,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계약이라는 행위가 포함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라는 용어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만든 상호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함.

## 나. 리스와 렌탈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소유 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주는 것을 속성으로 하는 리스<sup>4)</sup>와 렌탈<sup>5)</sup>은 계약의 내용면에서 차별적으로 분리워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임대를 리스(lease)로 단기임대를 렌탈(rental system)로 보는 데, 그 외에도 몇 가지 측면에서 둘 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표2-1>. 가장 먼저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면, 리스에서는 임대차물건을 최종 이용자, 즉 차입하려는 자가 임의로 선정한다. 반면 렌탈에서는 렌탈회사가 임대차 물건을 임의로 구입, 보유하고 있고, 임차 희망자는 렌탈회사에서 보유한 물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한다. 리스의 경우 이용자는 특정회사나 사람이 되고, 렌탈에서는 불특정회사나 사람이 된다. 자연 리스회사에는 재고가 없지만 렌탈회사에는 재고가 기본이 된다.

두 번째로 리스의 경우 계약기간이 장기(3년~5년)인 것이 특징인 반면, 렌탈에서의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의 월, 일, 시간단위로 이뤄진다. 아울러 리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렌탈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동일기간의 리스료는 렌탈료에 비해 저렴하다.

세 번째로 리스에서 리스회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물건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지만 렌탈회사에서는 수시로 임차인의 변경과 재임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

4) lease : a legal agreement which allows you to use a car, building etc for a period of time, in return for rent, Longman Dictionaries,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third edition, 1995

임대(lease) : 임대차에 의해서, 임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도록 빌려주는 일, 민중서관, 「새로나온 국어사전」, 2000

5) rental : the money that you pay to use a car, television, tools etc over a period of time, Longman Dictionaries,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third edition, 1995,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렌탈이란 엄밀히 보면 렌탈 시스템(rental system)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전적 의미의 렌탈과는 차이가 있음. 렌탈시스템이란 내구재(耐久財)의 단기임대 방식으로 3~5년간의 장기임대인 리스(lease)와 구별됨.

<표 2-1> 리스와 렌탈의 비교

구분	리 스	렌 탈
이용목적	기업의 기계설비조달	개인(혹은 기업)의 일시적 사용
대상물건	이용자가 선택하는 모든 동산	특정의 범용 물건 (예:자동차, 소형 컴퓨터)
이용자	특정한 회사	불특정 다수인
계약기간	장기(3~10년)	단기(1년 미만:시간, 일, 월 단위)
기종선정	이용자가 자유로이 선정	렌탈회사 재고 중에서 선택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불인정	제한 없음
요금	비교적으로 저렴	비교적 높음
유지관리	원칙적으로 이용자	렌탈회사
법적성격	무명계약 등	전형적 임대차계약
재고	없음	일정한 재고가 있음

자료: 이선 외, 「리스산업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9. 7

위와 같은 계약상 속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스와 렌탈의 이행과정은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리스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리스도 하나의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 그 절차를 보면, 먼저 일정한 물건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로 하는 설비나 제품과 그것의 특징 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설비와 제품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조건, 인도와 설치,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요구내용을 구체화한 다음 임대인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두 번째,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협상이 진행되며, 그 결과 리스계약내용이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면 임차자와 임차자간에 리스계약이 체결된다. 이 때 해당 리스계약서에는 리스기간, 리스료 및 기타 조건 등이 명기된다. 세 번째,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임차자는 리스물건의 주문서를 발급하고, 임대자는 임차자가 정한 조건에 의거해서 리스시설 혹은 제품을 구입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구입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공급하면서 동시에 물건인수증명서 혹은 차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 시점부터 리스계약의 법률적인 효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리스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속성상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순리스(net lease)라는 것은 리스 대상물의 이용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예컨대 재산세,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을 임차인이 부

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순리스에서 말하는 리스료는 순전히 임대하는 비용만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리스를 임대차 대상물인 시설이나 제품에 대한 관련 금융, 유지서비스 등을 리스회사에서 제공하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분되기도 한다. 금융리스, 유지관리리스, 운용리스가 그것이다.

금융리스(financial lease)란 유지, 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리스료의 계약금액이 리스대상 물건의 실제가격과 동일하도록 전액 회수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금융리스에서는 리스기간 중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와 달리 유지관리리스(maintenance lease)란 금융리스에 리스대상물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형태의 리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대상물건과 동일한 금액이 리스료로 회수되며, 이 리스에서도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운용리스(operating lease)란 임대자에 의해 유지,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비용은 리스료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집행된다는 면에서는 유지관리 리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체로 리스계약의 해지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운용리스 아래에서는 대부분 리스기간 중 투자자금의 완전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당초 계약기간내 해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스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특징을 갖는다.

## 다. 리스의 성립조건

### 1) 리스료

리스의 기본적인 성립조건은 공급측면에서 볼 때, 임대희망자가 있어야 하고, 임대희망자는 리스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현실에 나타난다. 즉 리스거래에 있어서 임대자는 부채 및(혹은) 자기자본으로 조달된 자금을 리스채권에 운용하게 된다. 이때 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임대자 측면에서의 소득은 적어도 임대자의 자본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스거래는 존립할 수 없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리스거래에서 임대자가 당면하는 자본비용은 리스채권에 대해 부과되는 수익률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리스회사 측면에서 일정 리스채권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리스료를 확보해야하는 데, 여기에 부합되는 리스료는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의 기법을 가지고 산정할 수가 있다.

리스회사에서 초기 리스대상 자산을 구입하는데 일정한 규모의 자금 ( $-I_0$ )을 투입하게 되며, 이 투입에 대한 수입은 매년 수령하는 리스료와 감가상각의 변화로 인한 세금감면액<sup>6)</sup>이다. 그런데 리스료는 감가상각 종료시점까지 매년회수되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며, 환산을 위해서는 적정 할인율( $K_L$ )이 필요하다. 이때  $K_L$ 가 리스회사의 할인율이라고 하면, 이것은 리스회사가 전액 자기자본만으로 자금조달할 경우의 자본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리스회사에 의한 리스투자안의 순현재가치( $NPV$ )는 다음의 식(1-1)과 같이 표시된다.

$$\text{식 (1-1)} \quad NPV = -I_0 + \sum_{t=1}^n \frac{L_t + Dep_t}{(1 + K_L)^t}$$

단,  $-I_0$  : 자산 구입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L_t$  : 매기말 정지적으로 지급되는 리스료

$Dep_t$  : 정액법을 사용한 경우 t기의 감가상각비용

$n$  : 감가상각수명(자산의 경제적 수명)

식(1-1)에서 리스회사에 의해 요구되는 최저한의 리스료 수준은 리스 투자안의 순현재가치( $NPV$ )를 0으로 만드는  $L_t$ 의 값이 된다.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적어도 지급해야하는 총리스료(리스료+감가상각비)보다도 많은 리스로부터의 순수익( $R_t$ )이 보장되어야 리스를 할 것이다. 즉 식 (1-2)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로 인한 순수익이 적어도 지불해야 하는 총리스료를 보상할 정도가 되어야만 리스에 응하게 된다.

6) 그러나 현재 농기계의 경우 세금과는 무관하게 행정기관, 농협 등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리스료의 수입만이 고려됨. 사실 일반 리스회사의 경우 세금감면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용자 역시 리스료가 손비처리되어 그 만큼 이익이라고 함. 독일과 일본 농장의 경우 이 부분은 유효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되지 않음.

$$\text{식(1-2)} \quad L_t + Dep_t \leq R_t$$

그런데 리스로 인한 이용자 측면의 순수익이란 리스한 재화를 이용하여 얻은 조수입( $TR_t$ )에 총비용( $TC_t$ )을 뺀 나머지며 아래의 식(1-3)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조수입은 단위 면적당 농기계 이용수입( $P_t$ )에 리스한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면적( $X_t$ )을 곱하여 산출하며, 총비용은 단위 면적당 농기계 이용비용( $C_t$ )에 역시 리스한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식(1-3)} \quad R_t = TR_t - TC_t = P_t \cdot X_t - C_t \cdot X_t = X_t (P_t - C_t)$$

단,  $R_t =$  t기 농기계 이용 순수익  
 $TR_t =$  t기 농기계 이용 조수입  
 $TC_t =$  t기 농기계 이용 총비용  
 $P_t =$  t기 단위 면적당 농기계 이용수입  
 $C_t =$  t기 단위 면적당 농기계 이용비용  
 (인건비, 연료비, 수리비, 관리비 등이 포함)  
 $X_t =$  t기 농기계 이용 면적

## 2) 리스료 이외의 조건

사실 가장 중요한 리스의 성립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총리스료의 수준과 총리스료를 지급할 수 있는 리스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자본비용의 차이, 즉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보다 더 낮은 자본비용을 가지고 있다면 리스의 가능성은 그 차이만큼 커질 것이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L_t + Dep_t \leq R_t$ 가 성립할 경우 리스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위와 같은 현시적인 총리스크 이외에도 리스성립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계측이 어려운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리스가 성립하기 때문에 전혀 무시되는 요인은 아니다. 다만 즉시 수량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첫째, 리스물건의 경제적 감가상각율과 진부화율이 시간의 진행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심리적인 변화에 따라 리스료가 결정될 당시 기대되었던 비율과 다른 데서 오는 부분이다. 대개 가전제품의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한 리스료를 산출하여 적용하지만 리스종료후 감가상각을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도 있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전제품의 가격하락율이 이를 능가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되고 있는 것이다. 신기종 농기계의 경우 일부는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리스용 자본재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따른 미래 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중요한 리스성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조건없는 해약이 수시로 가능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risk)을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격이 된다. 계약기간내 해약이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리스는 어느 한 부문에 대한 투자의 집중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부담의 감소와 함께 동일규모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리스이용자들의 수요를 진작시킨다. 농가의 경우 제한된 경영자금을 고가의 농기계구입에 모두 투자하는 대신 일부만 농기계리스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성 절감과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위 외에도 사용하고자하는 어떤 자산의 수명보다 짧은 기간동안 이용하고자할 경우 리스이용자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농기계조작이 가능한 일부 귀농자들의 선호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예 농작업을 대행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리스회사가 리스의 만료시 그 자산을 소유·처분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리스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 3. 농기계임대차의 개념과 위상

#### 가.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 위탁

농가단위에서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합리적인 농기계의 선택과 효율적인 활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농기계의 성능상 혹은 수지균형상 부담면적보다 개별 농가의 소유농지규모가 작아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과 같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많은 농가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자신의 농사이외에 활용해야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자신의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수탁하든지 혹은 농기계를 임대차사업(리스·렌탈)으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은 농기계소유 농민들이 자기자신의 농작업 뿐만아니라 적든 많은 남의 농사일을 하고(임작업)있다.

농기계임대차는 임대차의 물건이 농기계로 한정된다는 의미이며 농기계리스와 렌탈을 포괄한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계약인 동시에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차한 농기계를 임대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다. 농기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농기계를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전의 대가로 협약한 총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농기계임대차인 것이다.

<표 2-2> 농기계 임대차와 농작업 수위탁과의 차이

구 분	농기계 임대차	농작업 수위탁
농기계소유자	임대자	작업수탁자
Operator	임차인(일반적)	작업수탁자
수수료	사용량 무관, 기간사용료	작업면적단위 사용료
작업시 농기계 고장책임	임차인	작업수탁자
작업결과의 책임	임차인	작업수탁자

농기계리스와 렌탈을 포괄하는 농기계임대차는 농작업의 수위탁과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현격한 차이점



은 농기계임대차의 경우 농기계만을 임대차(물건제공)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조작성은 임차인이 하게 된다. 반면, 농작업의 수위탁은 작업자체(용역제공)를 매개한 계약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작업 요청자의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두 번째로 농기계임대차는 계약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기간내 사용에 제한이 없고, 얼마를 사용해도 임대차료는 일정하다. 그러나 농작업 수위탁은 기간에 관계없이 작업내용(면적 혹은 시간)을 기준하여 성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한 작업면적이나 시간에 의해 수위탁료가 결정된다.

중요한 또 다른 차이점은 농기계임대차의 경우 농기계이용에 따른 책임을 임차인이 지지만, 농작업 수위탁의 경우에는 수탁받아 작업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의 농기계임대차와 농작업 수위탁이 가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의 차이를 농기계 임차인 혹은 농작업 위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표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 농기계 임대차와 농작업 수위탁의 차이

구 분	농기계 임대차	농작업 수위탁
농기계구입부담	구입에 비해 작음(리스료부담)	없음.
이용의 안정성	계약기간내 안정적	비안정적
이용비용	임대농기계 타인과 이용시 비용절감가능	작업료가 고정되어있어 이용자의 비용절감과 무관
농기계 고장책임	대부분 임차인 책임(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갈등이 없음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일정한 리스료를 사전에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일정한 자금의 부담을 갖는다. 그러나 농기계 구입에 비하면 부담의 정도는 매우 작다. 이와 달리 농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따른 어느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 다만 작업 위탁료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자금의 부담면에서 농기계임차는 농작업 위탁에 비해 열위이다.

농기계이용의 안전성 면에서는 농기계임대가 훨씬 우월하다. 특히 농업의 경우 적기 농작업이 농산물 생산에 중요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자기가 원하는 시기

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기계임대는 농작업 위탁보다 수요자에 선호될 수 있다. 물론 농작업 위탁이 위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뤄진다면 농기계임차가 갖는 농기계이용의 안전성 확보라는 장점이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원하는 시기에, 즉 수요자가 원하는 적기에 농작업을 수위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농기계이용이 안정적이라는 장점과 함께 임차한 농기계를 또다시 재임대 혹은 농작업수위탁에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 농기계임대차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임차한 농기계를 활용할 경우 임차료의 상당부분을 보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임차료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농작업을 위탁했을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전무하다.

농기계임대시 대부분의 관리책임을 임차인이 지고 있다. 그러나 농작업수위탁의 경우에는 농작업을 수행하는 수탁자가 농기계를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종합해 볼 때, 농기계 임대차는 농작업의 수위탁에 비해 비교적 장점이 많다. 매년 일정액의 리스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농작업 수위탁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임대차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무리 농기계임대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농기계임대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일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상황이다. 둘째, 농기계의 내용년수 이내(계약기간)에 전직과 같은 경영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농기계임차에 부담을 가질 것이다.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향하는 농민의 경우 미래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기계구입과 임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작은 농작업위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셋째, 농기계를 임대하여 타인의 작업을 수위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여건과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농기계 리스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할 때 농기계임대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넷째, 농기계 고장과 사고시 적절한 처리방법이 명기된 계약이 전제되어야 농기계임차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우리 농촌 지역에는 이러한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소유하는 것보다 농기계를 임차하거나 농작업을 위탁하

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제 하에 농기계임대와 농작업 위탁간의 선택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 혹은 해결될 때 용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농기계임대차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농기계임대의 장점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성숙해 있을 때 농기계임대차가 우리 농업기계이용의 유용한 이용축이 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경영농이 지배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농기계이용비용의 절감이 중요하고 따라서 농기계임대 - 사실 농기계임대라 하더라도 Operator가 동행할 경우 농작업 위탁과 유사 - 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농협 중심의 농기계은행 사업,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농기계임대 사업과 여러 형태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작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sup>7)</sup>.

#### 나. 농기계임대차와 농기계은행

농기계임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있다. “농기계은행”이 바로 그것이다. 이 용어의 유래는 1958년 독일 바이에른주 부크호펜 부락을 중심으로 시행된 기계은행(Maschinenring)으로 부터이다. 국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충청남도이다. 1974년 충청남도에서는 “영농기계은행”이라는 이름의 농업기계화 정책을 도 자체로 실시한 바 있다<sup>8)</sup>. 농기계은행이 보다 일반화된 것은 농협에서 1992년부터 농기계은행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터이다.

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이란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이라고 정의”<sup>9)</sup>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사업유형을 농작업 수위탁 중개, 농작업 대행, 농기계임대로 분류하고 있다. 자기의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수행하는 이외의 모두를 농기계은행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에서는 농기계임대를 농기계리스와 렌탈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농기계임대 기종을 선택할 때 “수요자(농민)가 요구하는 기종 및

7) 우리나라의 관련정책의 내용은 해당되는 장에서 자세히 검토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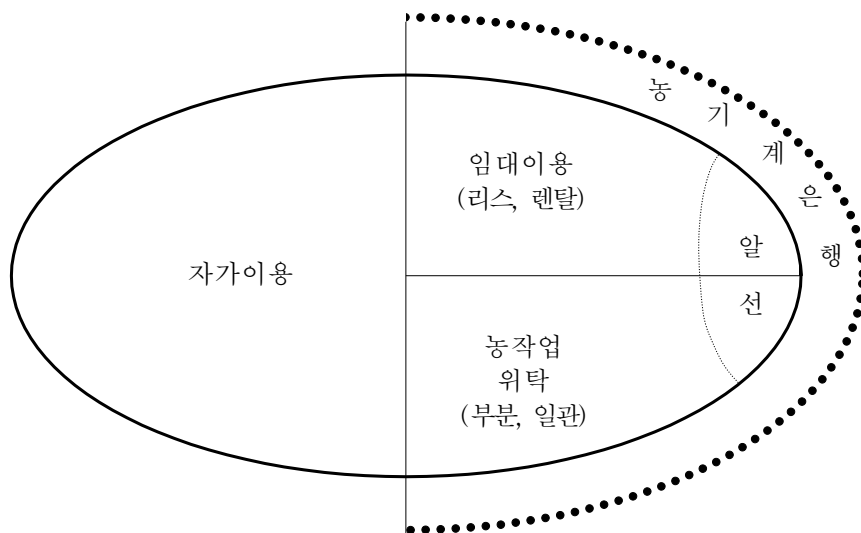
8)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 정리되어 있음.

9)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 p9 내용을 참조

모텔선택”<sup>10)</sup>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농기계임대가 농기계리스에 가깝지만, “가능한 한 많은 농가가 임대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sup>11)</sup>를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농기계 렌탈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농기계 임대라고 할 경우 단순히 농기계만을 임대차하는 것이지 농기계운전·작업자가 같이 동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일부 농업기술센터나 지역농협, 농민조직에서 많이 수행해 온 기존의 농작업 수위탁과는 전혀 다르다.

현실적으로 농기계임대를 농기계리스와 렌탈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농촌내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임대차가 이뤄질 때, 어느 것이 농기계 리스고 어느 것이 농기계 렌탈이냐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기계임대”라고 할 경우 농기계리스와 렌탈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2-1> 농기계이용관련 용어의 분류



농기계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2-1>과 같다. 먼저 농기계은행은 농기계의 자가이용과 대칭되는 개념이 된다. 농기계은행 내에는 농기계의 임대이용과 농작업의 수위탁이 포함된다. 물론 농

10) 농림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p545

11) 농림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p546

기계임대차와 농작업의 수위탁을 제3자가 알선하는 것도 농기계은행에 포함된다. 그러나 알선이라는 것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행위는 아니며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농기계이용의 한 방법은 아니다.

## 다. 농기계이용에서 농기계임대차의 위상

지금까지 우리 농촌에서는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여 자가이용하는 경우와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농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실제 2001년도 트랙터의 대당 이용면적(경운·정지)은 13.2ha인데 이 가운데 자가이용 면적은 6.1ha, 타인작업 면적은 7.1ha이다. 콤팩트의 경우에는 총 9.5ha 가운데 자가이용 면적은 2.5ha에 불과하고 나머지 7.0ha는 다른 사람의 작업<sup>12)</sup>인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비록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농기계를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농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농민들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데 주저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농기계시장의 대폭적인 축소에서도 엿볼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다. 먼저 농기계의 구입가격이 고가<sup>14)</sup>이고, 한번 구입하면 오랜기간 사용해야 하는 장기투자일 뿐만 아니라, 농기계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질적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농기계에 관련된 요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농민들은 미래농업에 대해 낙관적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함께 이어질 국내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자신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정자산인 농기계에 대한 투자를

12)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연감」, 2003.

13) 국내 트랙터 공급대수는 1998년 2.5만대수준에서 2001년에는 1.4만대수준으로, 콤팩트는 같은 기간 9.3천대에서 5.8천대로 대폭 줄어들고 있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연감」, 2003.

14) 트랙터 50마력급 본체의 가격만해도 2,500만원 수준대이고, 콤팩트 역시 4조식이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데 반해 2001년도 농가호당 농업소득은 1,127만원에 불과함.

꺼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농가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것은 직접 농사를 지을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았다는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회수의 대상인 고가의 농기계를 쉽게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후계자가 없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인들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기계의 구입과 농작업의 위탁의 중간적인 성격의 농기계임차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고 나갈 기간농들의 경우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농기계를 임대하는 비용이 낮다면 당연히 농기계를 임차하여 활용할 것이다. 비록 농기계를 임차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용면에서는 자가 농기계와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기계구입보다도 농기계 임차료가 저렴하면 할수록 농기계 임작업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경영규모 확대의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기간농과 조기 은퇴 가능 농민사이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농기계임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농기계조작이 가능하지만 미래 경영 지속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필요할 때 농기계를 빌려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기의 고정 투자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호하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의 미래, 농기계와 농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에 비춰볼 때 농기계임대는 중요한 농기계이용수단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요자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농기계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느냐인데, 최근 우리 농촌에서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일정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 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보조금지급에 따른 저렴한 농기계임대료가 유지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이러한 보조와 달리 간접적인 보조 지원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독일의 농기계임대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sup>15)</sup>.

---

15) 자세한 내용은 부록 “독일 MR과 WBL의 사사점”을 참조할 것.

## 제 3 장

###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과 임대사업의 의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의 단위 사업이다. 2003년부터 실시되는 농기계임대사업이 가지는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에서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정책에서 농기계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시도되어 온 다양한 정책들을 개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져 온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들은 농기계의 성능상 부담면적에 비해 개별농가의 소유 경지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개별농가 하나하나의 농기계 이용보다는 집단적인, 여러 농가가 농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조직의 구성과 지원에 그 초점이 두어져 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1970년대 이래 우리나라 농기계이용 정책 가운데 농기계이용에 관련된 정책들만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서 2003년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내용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변화와 의미를 음미함으로써 향후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 1.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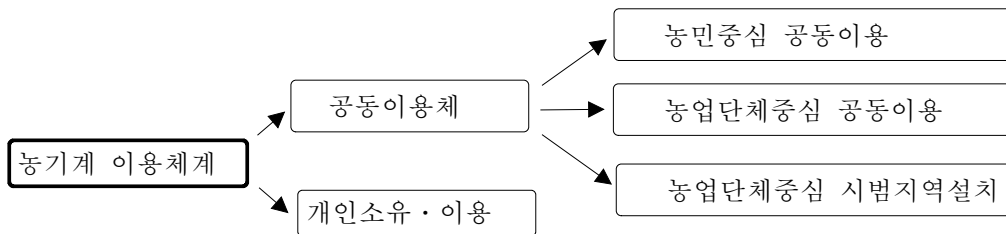
농기계이용에 관련된 정책의 구체적인 형태는 여러 가지<sup>16)</sup>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이용주체를 중심으로 한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은 여러 가지 이용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용 효율화의 골간이 된다.

16) 농기계이용에 관련된 정책들은 농기계의 개발과 선택, 이용 그리고 효율적인 사후봉사 등의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망라하여 농업기계비용절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강창용, 조가옥, 「일본농업의 기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10 p23참조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서는 「농업기계 공동이용계획」(농림부, 1971)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서 내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기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이용조직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즉 효율적인 농기계이용을 위해 어떻게 농가들을 조직화하여 농업기계화를 끌고 갈 것인가와 여기에 관련된 농기계 기술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점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효율적인 농기계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먼저 농기계이용 체계를 공동이용체를 통한 것과 개별소유자의 개별이용으로 양분하였다. 그런 다음 공동이용체로 농민중심의 공동이용체, 농업단체 중심의 공동이용체와 농업단체 중심의 시범단지 조성 등 다양한 모습의 공동 이용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그림3-1>. 이러한 구상은 그 후 우리나라 농업기계 이용의 효율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개인소유와 이용에 관해서는 농기계구입자금의 일정 정도를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그림 3-1> 농기계이용 체계도



자료: 농림부, 「농업기계 공동이용계획」, 1971

정부의 「농업기계 공동이용계획」(농림부, 1971)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골격은 1980년대 초반까지의 효율적 농기계이용을 위한 농기계이용정책을 규제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직형태들이 정책화되어 시행되어 왔다<표3-1>.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농촌에는 잉여노동력이 많았고, 따라서 농업기계화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의향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농기계이용정책은 농촌내에서 시범적으로 농기계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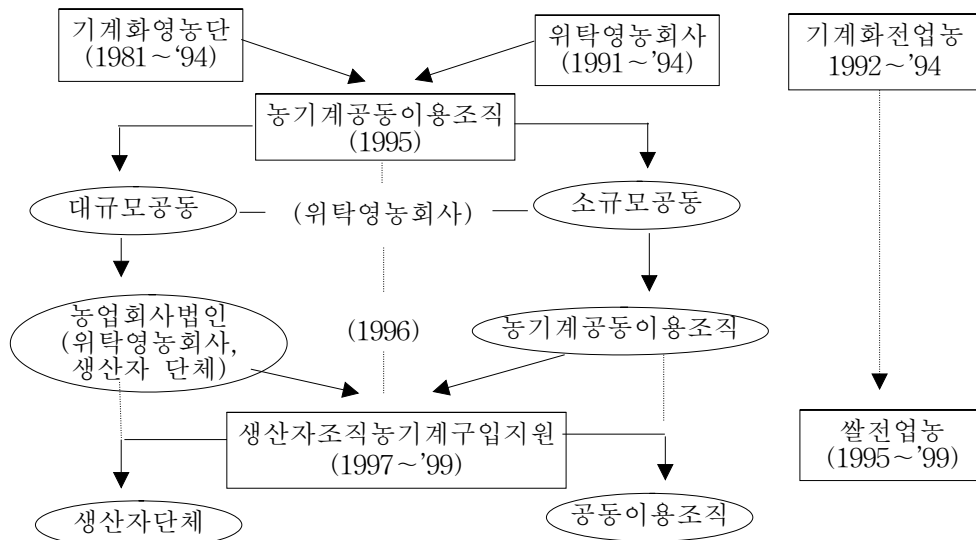
용하도록 하는 방법과 농업단체를 앞세우는 것이었을 것이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와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영농기계화센터” 등이 여기에 속하는 이용정책이다. “영농기계은행”은 한 지방정부에서 시도해 보았던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 정책이다

<표 3-1>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형태별 정책내용(1970~'80년대)

조직형태	조직주체	운영주체	조직지역	조직규모	주요기종	정책사업
농민중심	농민	농민	벼집단단지 자연부락	10~15ha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1972 “기계계” 1981~“기계화영농단”
농업단체	농조 단협	농조 단협	농조구역 면	-	트랙터 경운기	1975~'79“영농기계은행” 1977~'81“영농기계화센터”
시범지역	농진청	농민	수도작지대	10~15ha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1977~'79 “철원지구종합기계화”
	농협 중앙회	농협, 기업체	축산지대	50ha	트랙터 (50HP급)	1977~'81 “종합농업기계화시범단지”
			과수·원예 지대	20ha	트랙터 (25HP급)	
농진공	농진공	수도작지대	200ha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탈곡기, 바인더, 경운기		

자료: 강창용, 이성호,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변천에 관한 소고”, 「농촌경제」, 제 13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6.

<그림 3-2> 1990년대 정부지원 농기계이용조직 변화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농기계이용조직에 대한 지원육성은 가장 다양하게, 대규모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는 법적인 지원제도가 사업추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70~'80년대의 시범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농민중심의 실질적인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전개된다. 아울러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이 공동이용과 개별이용으로 나뉘어 이뤄졌으며, 공동사업도 10ha내외의 소·중규모와 50ha이상의 대규모까지를 망라한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1981년 이후 육성되어왔던 “기계화영농단”에 이어 1992년에는 “위탁영농회사”가 육성, 지원되었거, 동시에 일반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기계화전업농”이 지정, 지원된다. 1995년에는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기계화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가 통합되었으며, “대규모공동”과 “소규모공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조직에 대한 육성이 지속된다. “위탁영농회사”는 하나의 지원자격일 뿐, 정부에서 육성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은 1996년까지 등장하지만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동이용조직의 한 자격체일 뿐이다.

농기계 공동이용지원은 1995~'99년까지 명칭의 변경과 지원의 조건, 자격 등 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와 소규모 공동 이용조직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육성되었다. 아울러 일반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기계화전업농(1992~'94)”에 이어 1997년에는 “쌀전업농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재개되었으며, 앞의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1999년도에 종료되었다.

우리나라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들은 거의 모두 농민들의 조직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농기계이용조직에 대한 육성과 지원정책은 1999년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아직도 농기계 구입용자의 지원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개별농가에 대한 농기계지원사업에 불과하며, 농기계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정책은 아니다.

## 가. 기계계(契)

「농업기계 공동이용계획」(농림부, 1971) 내에서 가장 먼저 정책으로 구체화된 공동이용정책은 1971년에 조직된 “기계계”이다. 농기계를 한 농민이 구입, 사용할 경우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농가를 “계”의 형태로 모아 같이 사용하도록 하려는 정책이었다. 당시 새마을 운동의 한 내용으로 추진한 “홍농계”를 농기계이용에 적용한 것이다.

「농업기계 공동이용계획」(농림부, 1971)의 후속조치인 「농업기계공동이용체(기계계) 설치지도 지침」(농림부, 1971)에 의하면, 기계계 조직의 설치목적은 당연히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기계의 합리적 이용에 있었다. 기계계의 선정기준은 벼 집단재배단지 혹은 자연부락 단위로 하였다. “기계계” 조직원 구성과 조직운동을 위해서는 「기계계운영관리세칙」을 작성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행정기관과 농진청에서 관련 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계계의 운영에 있어서 농기계의 소유와 이용에 “공동”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당시 1개 계의 조직에 필요한 총비용은 1,490만원이며, 이 가운데 64%는 정부에서 용자지원하고 나머지 36%는 기계원들끼리 공동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3-2> 기계계 설치현황(1972년말)

단위: 개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계획	133	57	68	137	117	176	173	139	1,000
실적	133	58	68	150	123	197	173	110	1,012

주) 서울은 경기도에, 부산은 경남에, 제주는 전남에 포함.

자료: 농림부, 「농업기계공동이용체(기계계)설치지도지침」, 1971

농림부, 내부결재서류, 문서번호 기재 1142-4322(1972. 12. 9)호에서 발췌

<표 3-3> 기계계의 농기계보유현황(1972년말)

단위: 대

구분	경운기	동력 분무기	미스트기	탈곡기
총보유대수	1,518	708	2,631	2,530
1계당 보유대수	1.5	0.7	2.6	2.5

자료: 농림수산부, 「한국농업기계화 발달과정」, 1982

1972년말 현재 전국에 조성된 기계계의 수는 1,012개로 당초의 목표치 1,000개소를 능가하고 있다<표3-2>. 지역적으로 보면 많게는 전남의 197개소에서부터 적게는 강원 58개소까지 전국 각도에 걸쳐 조직되었다. 기계계가 보유하고 있었던 농기계 보유대수는 <표3-3>에 제시되어 있다. 1972년 말 현재 1개계당 경운기 보유대수는 1.5대, 동력분무기는 0.7대, 그리고 미스트기와 탈곡기는 약 2.5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행했던, 농기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이용조직인 기계계가 1972년, 한해사업으로 중단되었다. 여기에는 시행초기의 상황판단 오류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계계의 운영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농업기계계 육성강화 방안」(농림부, 1972)를 통해 그 중단의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중단 이유로 관련기관과 관련인들의 인식부족을 들고 있다. 농업의 기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역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 농촌에는 아직도 풍부한 노동력이 있어 기계화의 필요성이 적었고, 아울러 “공동”이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초의 원칙과 효과거양에 기계계의 기대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기계화의 주체인 농가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기계계의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대한 정부의 보조지원이 없었다. 융자지원만 있었으며 이것은 언젠가 기계계의 구성원들이 상환해야 할 부채이다. 여기에 지나친 행정기관의 간섭, 예컨대 영농기 이전에 기계계의 작업계획수립, 영농일지의 기록, 결산 등의 업무요구와 농기계보관창고(격납고)의 설치 종용 등은 오히려 농민들의 참여의지를 꺾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면적단위의 기계계 구성은 그 자체 조직구성도 어렵고, 운영은 더욱 어려웠다. 기계계 사업추진 중간에 기계계를 자연부락내 15호 내외의 농가로 구성토록 조직 기준을 수정한 것은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에 관련된 조직적인 기술교육의 미비도 기계계 실패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용해야 할 농기계의 운전과 조작기술이 낮을 경우 이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단기간에 끝이 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공동이용조직인 기계계는 우리농업에 몇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먼저 규모는 미미하나 시범지역 내 부업의 증가 및 노동력 절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농업기계화의 대농민, 농촌의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계계의 경우 농기계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과 조직의 육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내 농기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정도의 홍보효과를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 기관의 조직적인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의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 나. 영농기계은행

“영농기계은행”은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기획·시행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다. 이 영농기계은행의 모태는 서독과 일본에서 시행해온 “농기계은행”이다. 즉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던 농기계은행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한 것이다.

영농기계은행을 조직하게 된 목적은 이 조직을 통해 토지이용도와 노동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고농율 기계화 협동단지 조성(영농기계은행 설치)」(충청남도, 1974)). 영농을 단지화한다는 「협동단지조성」의 일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농기계은행사업의 대상조직규모는 500ha 이상인 평야지였으며, 설립 주체는 도지사, 설립 장소는 도내 10개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있었다.

영농기계은행의 주요업무는 보유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의 수위탁, 농기계 임대, 개인소유 농기계의 수탁활용 등 주로 농기계를 매개로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조직의 운영관리 책임자는 조성지역의 농지개량조합장이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하고 있다.

영농기계은행의 조성은 5개년계획으로, 매년 트랙터 7대, 콤바인 35대, 건조기 26대 씩을 확보하여 목표년도인 1979년말에는 트랙터 35대, 콤바인 175대, 건조기 130대가 보유되도록 되어있었다<표3-4>. 이와 같은 목표 보유대수는 해당 협동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트랙터의 32%, 콤바인의 69%, 건조기의 90%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량이다.

영농기계은행의 조성에 필요한 총 자금규모는 515,500천원이었다. 이 자금은 도와 군에서 각각 20%씩 분담하여 보조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농지개발조합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표 3-4> 영농기계은행의 농기계보유현황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분무기
계 획	연간보유대수	-	7	35	26	-
	총보유대수(1975~'79)	-	35	175	130	-
실 적	1975. 6. 30. 현재	-	19	-	13	26
	1976. 6. 30. 현재	5	19	-	13	26
	1976. 12. 31. 현재	5	23	-	13	26
	1977. 6. 30. 현재	5	23	-	13	27

자료: 충청남도, 「영농기계은행실태평가」, 1976. 「76영농기계은행실태평가 및 '77사업계획」, 1977, 기타 충남보고자료에서 발췌

충청남도 단독의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영농기계은행의 조성은 조성 3년만에 추가조성이 중단되었다. 조성 3년여 동안 확보한 농기계대수도 당초의 계획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표3-4>. 당초의 원대한 계획과 달리 충청남도에서 영농기계은행의 추가적인 조성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중요한 원인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중단이유는 40%의 행정기관 보조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은행의 운영수입으로는 농기계구입비의 상환조차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성된 영농기계은행들은 적극적인 경영보다는 손실최소의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보조수준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의견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

둘째, 전문적인 농기계조작자(operator)를 확보하기가 당시에는 무척 어려

왔고, 아울러 고장시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의 이용률은 낮은 수준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낮은 이용률은 낮은 수익성과 결부되어 조직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셋째, 많은 농민들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농기계작업에 소극적이어서 작업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기술에 대한 예상 수요자들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며, 이것을 영농기계은행에서 충족시켜 주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농작업량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업대상 경지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그 만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에 장애가 되었다.

결국 『농업기계은행』 역시 1975~'76년에 걸친, 자체평가에서 나타나듯 농민에 대한 농기계의 홍보적 효과 이상의 성과는 거둘 수 없었다.

#### 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

「농업기계화 영농시범단지 조성계획」(농수산부, 1976)에 의해서 추진된 “철원지구 종합기계화” 사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사업 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전체의 조직구성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기계와 사업의 운영 역시 정부의 지원하에 이뤄지도록 계획되었다.

농수산부는 직접 사업집행에 따른 지도, 감독, 행정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강원도지사가 주관하여 행정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최종적인 운영은 농민이 주체가 된 “계”와 연계하여 수행하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기관 중심의 “기획단(Plann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었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은 민간인통계선(민통선) 북방에 위치한 북한가시지역의 농경지를 사업대상으로 구상된 것으로, 사실 사업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대북전시효과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공동 농작업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기술수준의 향상 등도 이 사업의 중요한 추진목적이었다.

<표 3-5>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계획

년 도	1977	1978	1979	계
조성면적(ha)	300	450	250	1,000
농기계 공급(대)				
트랙터	10	13	7	30
경운기	10	13	7	30
이앙기	15	10	15	60
동력분무기	30	30	20	80
콤바인	15	30	15	60
동력탈곡기	10	13	7	30
건조기	10	13	7	30
유관시설(개소)	2	2	2	6
농기계 보관창고	2	2	1	5
농기계 수리센터	1	1	1	3
소요예산(천원)	151,500	216,480	120,220	488,200

자료: 농수산부, 「농업기계화 영농시범단지 조성계획」, 1976

1977~‘79년간의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의 연차별 조성면적은 총 1,000ha이며, 이 면적에 대한 일괄 기계화실현을 목표로 7개 기종 320여대의 농기계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표3-5>. 아울러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필요 부대시설 14개의 설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총 경비는 488,200천원(농기계 공급 : 429,200천원, 유관시설 : 30,000천원, 농기계 보관창고 : 20,000천원, 농기계수리센터 : 9,000천원)으로 추산하고 있었으며, 소요자금 전액을 국고(80%)와 지방비(20%)에 의해 충당토록 되어 있었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은 조성 초창기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중점 관리하였으나 1978년 12월부터는 철원군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철원농업기계화사업소”(폐지 당시 총인원 38명 : 정규 7명, 고용 31명)가 설치되어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1977~‘79년(3년)동안 추진된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의 조성현황을 보면, 사업 추진실적 자체만을 보면 대체로 이전의 “기계계”나 “농업기계은행”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표3-6>. 사실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것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정부보조금에 의해 충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사업추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3-6>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 추진 실적

구 분	1977	1978	1979	계
농기계 공급(대)				
트랙터	10	10	2	22
이앙기	3	8	15	26
콤바인	6	6	9	21
건조기	7	7	-	14
경운기	13	-	-	13
동력분무기	30	-	-	30
동력산분무기	10	-	-	10
탈곡기	13	-	-	13
유관시설(개소)	1	-	-	1(50)
농기계 보관창고	2	-	2	4(400)
농기계 수리센터	-	1	-	1(70)
건조장	-	1	-	1(130)
총투자액(천원)	148,437	150,111	164,000	462,548

주) ( )안은 총면적, 평임.

자료: 농림수산부 내부자료, 「철원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현황 및 폐지」, 1982년에서 발췌

사업조직 자체의 실적과는 달리 내부적인 운영은, 이전의 공동이용조직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반농가의 농기계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던 농기계의 이용률이 하락하고 수리비 및 관리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79년부터는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사업자체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결국 1982년 3월부터 정부는 강원도지사의 책임아래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에 투입된 모든 시설과 장비를 처분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은 1982년 3월 1일자 내무부 지방청사업소 정비지침에 따라 사업총괄 운영조직인 “철원농업기계화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행정공문상 종료일은 1986년 7월이다.

## 라. 영농기계화센터

“영농기계화센터”는 1977년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앙기계화 시범전시단지”가 그 모태를 이루고 있다. 당시에 조성된 “이앙기계화 전시단지”의 경우에도 농기계 공동이용과 수리 등의 종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범단지를 “영농기계화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러 따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용어의 혼합적 사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1978~’79년에는 이앙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앙시범단지에 수확기가 보강되면서 “이앙·수확기계 시범단지”로 개칭되어 불려오다가 1980~’81년에는 “영농기계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당시까지 농조의 시범단지, 지역농협의 시범단지와 센터, 농민조직체의 시범단지를 모두 통합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영농기계화센터”의 전체적인 지도, 감독업무는 해당 도지사가 맡고 있었으며, 도지사는 관련 농협, 농지개량조합, 농촌지도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영농기계화센터”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었다.

관련 조직별 업무분장 상황을 보면, 해당 시장·군수는 관할내에 있는 “영농기계화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농기계의 조작기술과 영농기술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사후적으로는 “영농기계화센터”에 대한 경영·기술적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영농기계화센터”의 육성과 운영관리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농기계화센터”의 운영주체는 농협, 농조와 농민들의 영농조직, 협업마을 등이었다. 초창기에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농촌지도소나 면사무소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농기계화센터”는, 그 명칭의 변화(시범이란 용어의 사용)에서 보듯이, 초창기에는 시범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다. 그러나 1977년 이후 농가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그 목적도 농촌노동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대체, 농기계 공동

이용체계의 구축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영농기계화센터”는 농업단체 중심의 농기계 이용조직이라는 면에서 1990년대의 농기계공동이용조직과 기본적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다르다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아울러 관련 기관의 종합적인 사업개입과 지원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표 3-7> 영농기계화센터 육성 현황

년 도	1977			1978			1979				1980		1981			총 계				
	농협	농조	계	농협	농조	계	농협	농조	마을	계	농협	계	농협	농조	마을	계	농협	농조	마을	계
경기	1	3	4	3	1	4	9	11	-	20	13	13	17	-	4	23	43	15	6	64
강원	1	-	1	2	-	2	5	-	20	25	4	4	7	-	1	8	19	-	21	40
충북	1	2	3	7	2	9	10	-	1	11	2	2	10	-	1	11	30	4	2	36
충남	-	2	2	1	8	9	24	1	7	32	11	11	14	-	1	15	50	11	8	69
전북	1	2	3	2	-	2	7	-	1	8	18	18	12	6	4	22	40	8	5	53
전남	-	3	3	9	-	9	20	-	-	20	19	19	21	-	6	27	69	3	6	78
경북	-	4	4	9	7	16	25	2	-	27	24	24	15	1	-	16	73	14	-	87
경남	-	-	-	-	3	3	4	-	18	22	27	27	23	-	3	26	54	3	21	78
제주	-	-	-	-	-	-	-	-	-	-	-	-	1	-	1	2	1	-	1	2
대구	-	-	-	-	-	-	1	-	2	2	2	2	-	-	-	-	3	-	-	3
계	4	16	20	33	21	54	195	14	47	106	120	120	120	7	23	150	382	58	70	510

주) 1978, 1979년도는 “기계이양·수확 전시단지”임.  
 마을단위의 1979년도는 기계화 협업농 마을, 1981년은 영농단임  
 자료: 농수산부, 「농업기계공동이용단지현황」, 1985.

1977~'81년의 5개년 동안 전국에 조성된 “영농기계화센터”는 총 510개소이며, 이 가운데 농협이 운영주체가 된 것은 382개소로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표3-7>. 다음으로는 마을단위 운영주체의 것이 70개소, 농지랑 조합이 운영주체인 센터가 58개소이다. “영농기계화센터”는 초창기에 이양·수확 전시단지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개 “영농기계화센터”당 보유농기계 대수를 보면 이양기가 2.1대로 가장 많고, 바인더와 콤바인이 각각 약 1대로서 총 6개 기종 평균 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표3-8>.

<표 3-8> 영농기계화센터 보유농기계현황

단위: 대

구분	개소수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바인더	기타	계
단위농업협동조합	382	206	814	368	155	359	-	1,902
농지개량조합	58	38	128	26	22	71	-	285
마을단위	70	36	126	52	25	91	23	353
계(개소당 평균)	510	280 (0.5)	1,068 (2.1)	446 (0.9)	202 (0.4)	521 (1.0)	23 (0.1)	2,540 (5.0)

자료: 농수산부, 「농업기계공동이용단지현황」, 1985.

“영농기계화센터”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조성 초창기에는 국비보조와 용자에 의해, 1979년에는 전액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에 의해, 1980년에는 국비보조, 용자, 자부담에 의해, 1981년에는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으로 조성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되었다<표 3-9>. 1977년~’81년간 “영농기계화센터”를 조성하는 데에 투입된 총 자금은 78.4억원이며, 대부분 용자(44.6%)와 국비보조(39.2%)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 후반부에는 “영농기계화센터”의 조성에 참여하는 자의 부담이 55%를 상회하고 있어 시범단지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농민들의 마을단위 조직에서 센터조직에 필요한 자금부담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이 사업 중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3-9> 영농기계화센터 용자지원실적(정산실적 기준)

단위: 천원

년도	계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977	86,415	28,585	-	57,830	-
1978	337,180	203,864	-	133,316	-
1979	681,000	340,500	340,500	-	-
1980	2,448,144	822,084	-	1,233,126	392,934
1981	4,289,822	1,681,217	19,996	2,075,534	513,075
계 (%)	7,842,561 (100.0)	3,076,250 (39.2)	360,496 (4.6)	3,499,806 (44.6)	906,009 (11.6)

자료: 농수산부, 「농업기계공동이용단지현황」, 1985.

1981년 이후 조성이 중단되었던 “영농기계화센터”의 문제점은 영농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운영되었던 여타의 농기계 이용조직이 당면했던 문제점과 유사

하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영적자로 인해 “영농기계화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웠다는 것이다. 단위조합이 주축이 되어 조성된 “영농기계화센터”의 경우 1977년부터 벌써 센터 1개소당 연간 874천원 정도의 적자<sup>17)</sup>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이러한 주원인은 일정한 규모의 관리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의 과다지출, 농기계 소유의식 결핍에서 오는 고장다발과 이에 따른 수리비의 과다지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유능한 운전, 수리기술을 겸비한 요원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이였다. 비록 유능한 요원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지불되는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조직 운영의 경영수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은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영농기계화센터”의 추가적인 조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결국 1977년 이후 5년여 동안 조성, 운영되어 온 “영농기계화센터”는 사업조직의 운영적자와 이로 인한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기피로 인하여 추가 조성이 중단되었다. 1982년에는 “영농기계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실수요농가나 공동이용조직에 매각 처분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 사업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 마.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는 1977년부터 시행된 “철원지구 종합기계화”사업을 1978~80년에 걸쳐 전국에 확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범단지의 기본적인 운영골격은 이 두 사업이 유사하다.

먼저, 해당 도지사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성, 운영, 지원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을 농수산부에서 담당하고, 농진청에서는 시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술지도사업을 담당한다는 면에서는 성격이

---

17) 농협중앙회 조사부, 「한국농업의 기계화」, 1983.12. , p.131.

비슷하다. 단지 종합 농업기계화 시범단지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조성 단협과 농조만으로 되어 있어 마을단위 농민조직은 배제되었다는 면에서, 그리고 시범단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면에서만 약간 다를 뿐이다.

조성 대상지역 및 선정기준을 보면 수도작 위주의 대단위 평야지로서 관배수시설과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술 및 행정지도가 용이하며, 시범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다. 조성계획규모는 1개소당 300ha로서 대단위이며, 이러한 시범단지를 도 단위에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표 3-10>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조성현황

단위: 대

운영주체	농업기계 보유현황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바인더	기타	
경기 평택 기호농조	1	10	16	11	11	5	14	58
충북 진천 진천농조	-	5	19	16	6	-	1	47
충남 부여 세도단협	-	10	14	10	11	-	1	46
전북 김제 동진농조	-	8	19	16	15	1	1	60
전남 나주 남평단협	-	10	15	13	8	1	-	47
경북 달성 달성농조	2	12	18	10	9	10	11	72
경남 고성 고성단협	1	10	15	16	8	1	-	50
계(단지 1개소당)	3 (0.4)	65 (9.3)	116 (16.6)	92 (13.1)	68 (9.7)	18 (2.6)	18 (3.6)	380 (54.3)

자료: 농수산부, 「농업기계공동이용단지현황」, 1985. 농림부 관련 내부자료(관련공문과 부속서류)

1980년까지 조성된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의 연도별 조성상황을 보면, 1978년에 경기·전북·경북의 3개소, 1979년에는 충남·전남·경남의 3개소가 조성되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에는 충청에 1개소가 조성되어 총 7개소가 4년에 걸쳐 조성되었다.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의 조직운영 주체별 조성현황을 보면 단위조합이 조성한 시범단지가 3개소, 농지개량조합이 운영주체가 된 곳은 4개소였다.

전국 7개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에서 보유한 농기계는 단지 자체가 대단위이기 때문에 자연히 중·대형 기종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경운기, 관리기와 같은 소형기종보다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중·대형 농기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1개소당 총 보유 농기계는 54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이앙기·콤바인이 각각 16.6대, 13.1대, 트랙터와 건조기는 각각 9.3대, 9.7대이다<표3-10>. 부대시설로는 농기계보관창고 230여평, 육묘장과 건조장이 각각 110여평, 130여평 정도이며, 기타 60여평 정도였다.

<표 3-11>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자금지원실적

년도	계	국비	지방비	단위: 천원
				자부담
1977	148,828	100,149	48,679	-
1978	578,855	286,308	137,191	155,356
1979	956,692	682,360	274,332	-
1980	946,418	637,457	308,961	-
1981	184,470	147,576	36,894	-
계 (%)	2,815,263 (100.0)	1,853,850 (71.3)	806,057 (28.6)	155,356 (0.1)

자료: 농수산부, 「농업기계공동이용단지현황」, 1985. 농림부 관련 내부자료(관련 공문과 부속서류)

한편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의 구성에 소요된 총 자금규모는 28.2억원이었다<표3-11>. 이 가운데 국비(71.3%)와 지방비(28.6%)의 보조금이 전체의 99.0%를 차지하고 있고 자부담금은 0.1%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정부 지원에 의한 시범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에 의해 조성, 운영되었던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도 이름 그대로 시범적인 효과를 거둔 것만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대시설비, 운영비 등의 과다지출로 모든 시범단지의 경영이 적자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시범단지관리의 경직성과 운영단체의 소극적인 운영자세로 인하여 농업경영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였으며, 이는 농기계 이용률을 낮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1981년에는 “영농기계화센터”의 해체와 함께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의 실질적인 운영도 끝을 맺게 되었다.

## 바. 기계화영농단

198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기계화영농단<sup>18)</sup>”은 농민중심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체로 14년(1981~‘94)동안 조성되어온 조직이다.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정책, 그 가운데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13조의 근거하여 조성된 “기계화영농단”의 조성 목적은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보완하고,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농기계의 공동이용에 따른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나아가 농업기계화로 인한 수혜 농가의 확산에 있었다. 농업경영의 구조개선 차원이라기 보다는 영농상의 애로를 타개하는 지원수단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지원된 것이다. 즉 정부의 지원에 의해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여러 농민들이 지원된 농기계를 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비를 줄여보자는 것이 주된 이 정책의 추진목적인 것이다.

“기계화영농단”의 조직방법은 농가·새마을청소년회·마을단위로 조성하며, 조직체의 운영은 농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농기계공급, 자금지원 등 사후지원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기계화영농단”은 그 기간만큼이나 명칭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기계화영농단”은 1981~‘86년까지 「농업기계화촉진법」(제13조)에 근거하여 단일 명칭으로 조성되다가, 1987년부터는 “대규모기계화 영농단<sup>19)</sup>”과 “소규모기계화 영농단<sup>20)</sup>”으로 분리되었다.

1992년부터는 관련 근거법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5조)이 추가되면서 그 명칭도 “대규모기계화 영농단”이 “대규모 영농단”으로, “소규모기계화 영농단”이 “소규모영농단”으로 약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성대상 영농단의 조직의 규모는 과거와 같지만 조직의 형태는 두 조직간에 차이를

18) 초창기에는 “새마을농기계공동이용조직”, “새마을기계화영농단” 등으로 호칭됨.

19) 조성면적 논 10ha이상, 농가 10호이상, 평야지 중심, 대형농기계 중심, 마을단위 공동이용 조직, 농림수산부, 「농업기계화」, 1987, p28 참조

20) 조성면적 논 5ha이상, 농가 5호이상, 중산간부 중심, 중소형농기계중심, 조직 또는 수개농가 공동이용, 농림수산부, 「농업기계화」, 1987, p28 참조



두지않고 참여농가중심의 공동이용이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지원기종도 권장기종과 선택기종으로 분류하여 참여 농민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표 3-12>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

단위: 개소

구분	대규모기계화영농단	대규모기계화영농단	계
1981	612	-	612
1982	1,010	-	1,010
1983	1,005	-	1,005
1984	1,058	-	1,058
1985	1,100	-	1,100
1986	1,100	-	1,100
1987	2,022	1,154	3,176
1988	903	2,009	2,912
1989	3,123	3,106	6,229
1990	3,086	3,528	6,614
1991	3,482	3,512	6,994
1992	3,192	3,026	6,219
1993	4,002	-	4,002
1994	1,775	-	1,775
계	28,624	16,336	44,960

주)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2. 3의 p50에 1991년까지의 누계가 32,964개(대규모 19,655개, 소규모 13,309개)이고,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3. 3의 p55에는 '92년까지 누계가 39,183개(대규모 22,847개, 소규모 16,336개)로 되어 있어 이것간의 차이를 '92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함.  
자료: 농림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각 년도

1993년에는 분리된 영농단을 하나로 통합(대규모)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1)</sup>. 그 결과 <표3-12>에서는 대규모만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과거 14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조직, 육성되던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의 골격인 (기계화)영농단의 신규조성은 중단되었다.

그런데 1991년 “위탁영농회사”와 1992년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조직, 지원되면서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은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란 명칭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21)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3. 3 p50에 의하면 기존의 두 가지 영농단 형태는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조직의 규모를 논·밭 10ha이상, 농가 5호 이상, 조직의 형태는 참여농가중심의 공동이용으로 되어 있음.

2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당 절에서 설명할 것임.

한편 “기계화영농단”은 1981년 최초로 612개가 조성된 이래 1986년까지 매년 1,000여개씩 조성되어 왔다. 그러나 1987년부터는 기계화 영농단을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으로 구분, 조성하면서 연간 조성단지수도 대폭 확대되었다. 1990년을 전후해서는 매년 6,000여개 이상 조성되었다. 1981~‘94년 동안 조성된 “기계화영농단”의 수는 당초 마을당 1개소, 총 4만개소 조직이라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44,960개소이다<표3-12>.

<표 3-13> 기계화영농단 자금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981	1,069	1,685	4,676	685	8,068
1982	4,389	2,737	11,192	-	18,318
1983	4,217	4,196	12,640	-	21,053
1984	4,990	5,020	12,585	2,591	25,185
1985	5,331	5,358	13,142	2,934	26,765
1986	5,387	5,394	13,242	3,023	27,046
1987	6,265	6,303	18,407	4,530	35,505
1988	9,582	9,590	20,551	5,207	44,890
1989	17,660	17,663	40,520	12,019	87,862
1990	19,570	19,941	49,003	15,895	104,409
1991	20,503	22,459	54,903	28,400	126,265
1992	19,792	19,794	54,039	31,791	125,416
1993	17,906	17,906	55,241	14,510	105,563
1994	14,054	14,054	26,407	8,131	62,646
계	150,716	152,100	386,507	129,668	818,991

자료: 농림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각 년도

14년간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하기 위해 소요된 총 사업자금규모는 818,991백만원이었다<표3-13>. 이 규모는 과거 어느 농기계지원사업보다도 큰 것이며, 조성기간과 조성 개소 수 등을 종합할 경우, 사업규모 면에서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기계화영농단” 조성 총사업비 가운데 국고와 지방비에 의한 정부 보조금액은 302,716백만원으로 37.0%<sup>23)</sup>를 나타내고 있으며, 융자와 자부담금이 516,175백만원으로 63.0%이다<표3-13>.

“기계화영농단”에 공급된 농기계 대수를 보면, 역시 우리나라 전체 공급

23) 조성초기와 후반부 정부의 보조지원율이 달랐기 때문에 후반부의 정부보조 지원율 5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농기계 대수에서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 상당히 많은 대수였다. 1981~'94년동안 “기계화영농단”에 지원된 주요기종의 전체 공급대수에서의 비중을 보면 <표3-14>와 같이 건조기는 약 35.5%, 콤바인과 트랙터가 각각 36.6%, 21.0%, 이앙기가 15.9%이다.

<표 3-14> 기계화영농단의 주요 농기계공급대수(1981년~'94년말)

단위: 대

구 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전국(A)	영농단(B)	전국(A)	영농단(B)	전국(A)	영농단(B)	전국(A)	영농단(B)
1981	1,223	401	4,114	822	868	372	251	162
1982	1,507	907	4,236	1,388	1,450	851	287	284
1983	1,620	929	6,914	1,423	1,779	844	583	368
1984	2,483	1,000	7,670	1,646	3,316	968	592	410
1985	2,719	1,048	11,924	1,767	3,191	1,046	596	284
1986	4,243	1,078	17,573	1,789	5,074	1,056	712	262
1987	4,769	737	17,813	3,234	5,758	1,966	1,378	995
1988	8,088	1,372	23,651	4,179	6,761	2,051	1,379	670
1989	10,277	2,416	28,563	6,354	10,066	5,732	1,917	983
1990	15,321	2,350	37,940	6,710	16,110	6,203	2,983	1,157
1991	15,993	3,244	35,813	7,016	14,378	6,099	2,493	1,075
1992	17,754	3,473	32,459	5,882	12,887	4,898	3,021	843
1993	13,029	3,014	32,072	3,021	8,920	2,916	3,646	865
1994	14,523	1,846	29,913	852	8,063	1,075	4,880	356
합계	99,026	21,969	260,742	46,083	90,558	36,077	19,838	8,714
B/A, %	21.0		15.9		36.6		35.3	

자료: 농림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각 년도

1980년대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사업, 특히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려고 시도했던 중요한 이용정책의 근간으로서 육성되어 왔던 “기계화영농단”에서도 다른 사업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을 노출<sup>24)</sup>하였다. 그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계화영농단” 조성 시 농기계구입자금의 대한 지원에 치중하여 조성이후 공동이용과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미비하였다는 지적이다. 사실 당초 육성의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기계의 공급보다는

24) 강정일, 강창용, 이성호, 「기계화영농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방향」, 연구보고2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10, 농림수산부, 「기계화영농단 운영개선대책」, 1998 등 참조

이용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아가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둘째, 일정기간 보유농기계의 공동이용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농기계의 관리 소홀과 무리한 사용으로 수리비 등이 과다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농기계 이용에 따른 경영효율(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역시 “공동소유·이용”이란 것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표현하면 조직내 일부 농기계운전·조작자에 의한 소유와 이용의 공동화가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셋째, 초창기 기종선택에 있어서 농민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수도권 위주의 “기계화영농단” 조성으로 전작기계화가 부진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업 후반부에 많이 조정되었다.

넷째, 조직의 경영 성과물으로써 사업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많은 “기계화영농단”은 사업수지의 적자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조직원들은 흩어지게 된다. 결국 모든 농기계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경영수익 적자가 조직파탄의 주범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과 달리 “기계화영농단”의 육성은 우리 농업기계화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수도작의 기계화 촉진과 그로 인한 농업소득 증대, 간접적인 농촌노임 상승 억제 등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기계화영농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육성으로 그 맥락이 이어진다.

## 사. 위탁영농회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위탁영농회사”의 육성 목적<sup>25)</sup>은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농업생산성 증대의 도모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농민생산자 단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영농회사”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 농촌 부족 노동력 문제의 해소, 농기계이용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 노동생산성 증대와 농업구조 개선 기여 등<sup>26)</sup>이다.

“위탁영농회사”는 당시까지 지원이 되었던 다른 조직과 달리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법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농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탁영농회사”의 최초육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991~’92년까지 군당 1개소씩, ’96년까지는 면당 1개소 이상씩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기계화영농단”과 기타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육성한다고 계획하고 있어 기존 조직을 “위탁영농회사”로 전환, 육성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과거의 조직규모보다는 큰 50ha 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태를 전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수도작 중심에서 밭작물과 수확후 기계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실질적으로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조직, 육성한 시기는 1991~’94년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96년까지 “위탁영농회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이 당시에는 육성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자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위탁영농회사의 숫자와 실제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4. 7 법률 제4228호, 제7조) 참조

26) 농림수산부, 「1993 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요령」, 1992. 12. 23, 「1994년도 농업기계화 시행요령」, 1994. 1 참조

<표 3-15> 위탁영농회사 육성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1991	1992	1993	1994	목표
1991. 3 농림부 업무자료	16	60	60	64	200
1992. 3 농림부 업무자료	16	121	1,123('93년 이후)		1,260
1993. 3 농림부 업무자료	16	121	272	1,592('94~'96)	2,000
1994. 농림부 업무자료	409(실적)			'94: 300개 '95: 400개 '96이후 891개	2,000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1.3, 1992.3, 1993.3, 1994.

정부의 위탁영농회사 육성계획은 해마다 바뀌고 있다<표3-15>. 시행 초기에는 1991~'94년에 전국 군당 1개소씩, 총 200개소를 조직, 육성한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한해 뒤인 1992년에는 전국 면당 1개소씩 총 1,260개소를, 1993년에는 면당 1개소 이상씩 총 2,000개소를 확대, 조성한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정부의 확대지원 의욕이 강하게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일관성 면에서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다.

결국 순수하게 육성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1991~'94년 조성된 “위탁영농회사”의 수는 718개소라고 말할 수 있다. 최초의 200개소보다는 많으나 면단위 1개소 목표인 1,260개소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사업전개 기간도 최초의 계획기간인 4년으로 종료가 되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기계의 구입 뿐만 아니라 농기계보관 시설 등에 대한 시설자금과 경영비까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정부의 관심이 지대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991년도 1개 위탁영농회사 농기계구입자금규모는 71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50%인 35.5백만원은 정부의 보조이고, 나머지는 용자(40%)와 자부담(10%)이다. 농기계 구입자금 이외에 시설자금으로 1개소당 26백만원과 농업경영비 10백만원, 총 36백만원을 용자로 지원하였다. 1992년도 “위탁영농회사” 1개사당 조성지원규모(자부담금 포함)는 135.44백만원(농기계구입 82.44, 시설자금 33, 농업경영비 20)으로 처음년도인 1991년에 비해 18백만원 정도가 늘어났다.

<표 3-16> 위탁영농회사 자금지원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구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1991	16	1,526	270	295	708	253
1992	121	11,639	2,494	2,494	4,466	2,185
1993	272	28,063	6,153	6,153	12,199	3,558
1994	309	31,373	7,347	7,347	13,038	3,641
(1995)	(349)	(36,438)	(8,712)	(8,712)	(14,743)	(4,271)
계	718 (1,067)	72,601 (109,039)	16,264 (24,976)	16,289 (25,001)	30,411 (45,154)	9,637 (13,908)

주) 1995년 위탁영농회사에 관련된 자료는 “생산자단체 구입지원사업”의 1995년과 중복되고 있음. ( )내는 1995년 수치를 포함함.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6. 4

위탁영농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기계도 후반기 “기계화영농단”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미 조성 초창기부터 수도작 및 전작겸용 9개 기종 및 부속기, 전작용 9기종 및 부속기 정도만 규정했을 뿐 선택은 위탁영농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sup>27)</sup>.

1994년 까지 조성된 718개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된 사업규모는 총 726.0억원이 이른다<표3-16>. 이 가운데 정부의 보조, 순수 정부 보조지원규모는 325.5억원, 44.8%에 이른다. 나머지 304.1억원은 용자금이며 농민들이 위탁영농회사 조직초기에 투입한 자부담금은 96.4억원, 13.3%에 불과하다.

“위탁영농회사” 역시 조직이 갖는 문제와 관리제도 상의 적지 않은 문제를 표출하였다. 먼저 이 조직에 의한 농지소유는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고, 농작업의 수위탁만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농업의 구조개선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점에서 당시 같이 조직된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성장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위탁영농회사”의 추가적인 조성이 중단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나, 조직 자체의 문제만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당초의 기대와 달리, 즉 공동조직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적인 소유와 운영이 많았다는 것이다<sup>28)</sup>. 여기에 당초의 사업, 즉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

27) 사업진행과정에서 기존의 변경이 있는 데, 대부분 선택기종의 숫자를 늘린 것임.

28) 강정일, 강창용, 위용석,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299, 한국농촌

한 수익실현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sup>29)</sup>. 환언하면 공동이용과 관리, 그리고 수익의 실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결국 사적소유와 운영이 자연스런 변화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직원간의 갈등결과, 혹은 처음부터 사유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결국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상황을 통해서, 농기계 이용조직의 경우 농기계작업 뿐만 아니라 다른 농한기 사업과의 결합 및 사조직적인 운영만이 사업수익 실현의 열쇠라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비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은 필요하지만 운영은 역시 한사람(약간 명)에 의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용하다는 시사점 역시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 아. 생산자조직 농기계 구입지원(1995년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시행되면서 농기계에 관련된 조직적인 지원이 1990년대 초반에 이뤄진다.

1991년부터 “위탁영농회사”가, 1992년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조직, 지원되면서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은 “농기계공동이용조직”<sup>30)</sup>이란 명칭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정부에서 “기계화영농단”의 1993년 이후의 조성방향을 “93년 이후 2001년까지 10ha규모로 3만개소 조성<sup>32)</sup>”으로 제시한 점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이 당시 “기계화영농단”의 자격요건은 <표 3-17>과 같은 데, 이것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농업기계 공동이용조직의 자격요건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과거의 “기계화영농단”보다는 조직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1996년 자료<sup>33)</sup>에 의하면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 중심의

경제연구원, 1994. 10

29) 이러한 문제개선을 위해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시 농기계 이외의 부대사업까지도 사업 영역에 고려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에 제시하고 있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3. 3, p 44

30) 이것은 1997년 이후에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함.

31) 농업기계공동이용조직의 법적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임.

32)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2. 3, p46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적근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과거 “기계화영농단”의 이름과 내용이 변화된 것으로 본질은 같은 것이다. 물론 기존의 “위탁영농회사”는 하나의 참여자격으로 개방하여 놓고 있어서 “대규모공동”으로 참여하던 “소규모공동”으로 참여하던 개이치 않고 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대규모 공동이용조직<sup>34)</sup>”과 “소규모 공동이용조직<sup>35)</sup>”으로 분류되어 조성되었으며, 지원대상은 과거 행정기관에서 하던 것과는 달리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7>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자격요건(기계화영농단과 비교)

구 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1995기준)		기계화영농단(1994기준)	
	대규모 공동이용조직	소규모 공동이용조직	대규모 기계화영농단	소규모 기계화영농단
영농규모	30ha 이상	10ha 이상	30~50ha	10~30ha
인 력	농기계운전능력자 3인 이상	농기계운전능력자 2인 이상	농기계운전능력자 3인 이상	농기계운전능력자 2인 이상
지원대상	회원농협 등록 작목반, 농특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공동작업요건 갖춘 생산자조직	좌동	고도기술벼농사시범사업지역과 미곡종합처리장 연계지역의 생산자조직, 농업생산집단지역, 기타 생산자조직	좌동 <sup>2)</sup>
지원조건	개소당: 6천만원 보조 <sup>1)</sup> , 융자, 자부담 50%, 40%, 10%	개소당: 2천만원 좌동	개소당: 5.6천만원 보조, 융자, 자부담 50%, 40%, 10%	개소당: 1.9천만원 좌동
선 정	시·군농어촌발전위원회 심의선정	좌동	좌동	좌동
운영규약	제정운영	좌동	좌동	좌동

주) 1) 보조 가운데 1/2는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1/2는 지방정부에서 분담.  
 2) 1993년까지 기계화영농단의 지원대상은 “공동이용조직”으로 되어 있음.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4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5. 9

33)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6. 4, p42  
 34) 조성 영농규모 30ha 이상으로 과거 10ha 이상보다 확대되었고, 인력은 농기계운전 능력자 3인 이상이며 농기계공동이용규약을 제정, 운영토록하고 있음. 개소당 사업비는 6천만원(정부보조 3천만원, 융자 및 자부담금이 3천만원)임.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6. 4, p42  
 35) 조성 영농규모 10ha 이상으로 과거 5ha 이상보다 확대되었고, 인력은 농기계운전 능력자 2인 이상이며 농기계공동이용규약을 제정, 운영토록하고 있음. 개소당 사업비는 2천만원(정부보조 1천만원, 융자 및 자부담금이 1천만원)임.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6. 4, p42

1996년까지의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은 ‘97년도에는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지속되었다. 세부 지원사업내용도 하나는 “대규모공동”(1995) ⇒ “농업회사법인”(1996) ⇒ “생산자 단체”(1997~’99)로, 다른 하나는 ”소규모공동“(1995) ⇒ “농기계공동이용조직”(1996) ⇒ “공동이용조직”(1997~’99)로 변화되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은 “기계화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의 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구입자금 이외 관련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기계선택에 많은 자율권이 보장되었다는 특징은 이전과 같다.

<표 3-18>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의 실적

단위: 개소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생산단체	796	218	133	100	70	-
공동이용조직		1,100	1,000	1,000	540	-
계	796	1,318	1,133	1,100	610	4,957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해당년도

1995~’99년, 5년동안 조성, 지원된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생산자 조직의 수는 약 5,000여개에 이른다<표3-18>. 1995년에는 생산단체와 공동이용조직의 구분없이 796개가 지원된 후, ’96년에는 1,318개, ’97년에는 1,133개소가 지원, 육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은 1999년 610개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표 3-19>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자금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융자	계
1995	19,900	19,900	31,840	71,640
1996	21,950	21,950	35,120	79,020
1997	18,325	18,325	29,320	65,970
1998	14,000	14,000	35,000	63,000
1999	3,940	3,940	27,580	35,460
계	78,115	78,115	158,860	315,090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해당년도

생산자 조직의 농기계구입지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비의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사업 5년간 총 지원금액은 315,090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중앙과 지방)의 보조금은 156,230백만원, 49.6%에 이른다<표3-19>.

그러나 이 생산자조직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WTO이행계획의 실천에 따라 1999년을 기점으로 정책 선상에서 사라졌다. 물론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들을 알 수는 없으나 이전에 육성된 공동이용조직과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자. 기계화 전업농과 쌀전업농

조직적으로 개별농가에 대해 농기계 구입을 장려한 것은 「기계화전업농」이 처음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농가의 농기계구입시 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농가의 농기계구입시 용자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계화전업농”을 처음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는 개별농가이지만 선택적으로 정부에서 농기계 구입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을 “기계화 전업농”이라고 구체화한 다음, 그 자격요건으로 제시하여 선택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처음이라는 것이다.

“기계화전업농”을 육성하려는 데는 일정한 영농규모를 확보한 농가가 그들의 가족 노동력만으로 기계화 영농을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농업의 구조개선이라는 중요한 내재원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격 요건도 당시의 평균적인 경영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표3-20>. 아울러 경영주 연령도 50세 이하로 규정했고, 영농경력은 3년 이상으로 하였다. 선택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실천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표 3-20> 기계화 전업농 지원대상 영농규모 자격요건

구 분	수도작	일반전작	과수·특작	축산
경지소유	1.5ha 이상	1.5	1	양돈500두, 비육우50, 낙농30, 양계2만수 이상
영농규모	5	5	3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3. 3

“기계화전업농”에 대한 지원 내역은 1개소당 구입자금 총액 21,310천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지원 20%(4,261천원), 용자 70%, 자부담금 10%이다. 일부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농가당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90%를 용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계화전업농”을 1992~'94년 사이 11,579호, '95년 이후 18,421호, 총 30,000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표3-21>. 그러나 1990년대 농기계이용정책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기계화전업농” 육성, 지원정책 역시 계획된 사업기간과 지원규모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남기고 종료된다<표 3-22>.

<표 3-21> 기계화 전업농 육성 계획과 실적

구분	단위: 호				계
	1992	1993	1994	1995이후	
계획	579	5,000	6,000	18,421	30,000
실적	577	5,068	10,367	0	16,012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3. 3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5. 9

<표 3-22> 기계화전업농 자금지원 실적

구분	단위: 백만원, %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1992	423	423	6,865	2,166	9,877
1993	10,516	10,516	77,013	16,346	114,391
1994	33,367	33,367	141,827	33,439	242,000
계	44,306	44,306	225,705	51,951	366,268
(%)	(12.1)	(12.1)	(61.6)	(14.2)	(100.0)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5. 9

1992~'94년에 지원된 “기계화 전업농”에 이어 개별적 농가에 대한 선택적

인 지원이 1995년 “쌀전업농<sup>36)</sup>”에 대해 재개되었다. 물론 위 두 지원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약간은 다르지만 개별농가에 대한 선택적 지원과 농업구조개선 지향이라는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연계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구입지원 계획 역시 앞의 여러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계획 사업기간과 지원규모가 대단하였다. 전업농 육성사업에 따라 당해 연도 쌀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량 역시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영농규모화사업과 농기계지원사업이 결합된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구입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1995년 이후 10년 동안 6만호의 벼 전업농 육성과 그에 따른 농기계 구입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5년에 걸쳐 약 3.8만호의 지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표3-23>.

<표 3-23> 쌀전업농 육성 계획과 실적

단위: 천호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2004	계
계획	10,000	10,000	7,000	7,000	26,000	60,000
실적	10,249	10,432	7,000	6,000	4,000('99)	37,681

자료: 계획과 '95~'96 실적자료는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3. 3. 나머지 자료는 해당년도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의 당해 연도 계획치임.

1997년부터는 농기계이용에 관련된 자금지원 규모 실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 전체 사업의 규모를 알수 없다. 단지 해당년도별 사업계획 수치만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계획 대비 실적을 알 수는 없지만, 지원실적이 당초의 육성계획의 수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자금지원규모도 계획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36) 쌀전업농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내에서 농지매매, 농지장기 임대차 및 농지 교환·분합 지원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1997년부터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영농규모 적정화사업내 벼 전업농 지원에 농기계구입지원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농기계중심이 아닌, 농기계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짐.

## 2. 농기계임대사업정책

### 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의 골격

정부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하여 매년 5년마다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오고 있다. 2001년에는 2000년대 전반에 운용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이 만들어 고시된 바 있다.

이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향후 5개년 농업기계화의 목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작목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비용 기계화 추진, 둘째, 품질 고급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수확 후 처리작업 고도화, 셋째,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정밀기계화 기반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3가지 주요 추진 목표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농업기계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 대상정책을 구체화하면 <표3-24>와 같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전개와 발맞추어 저비용의 친환경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미진한 밭작물에 대한 기계개발을 중시하면서,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의 최대 어려움이자 해결 대상인 농기계 이용효율의 제고가 제시되고 있다. 사후봉사의 강화 역시 농업기계화 추진의 한 방향이 될 것이다.

<표 3-24>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내 기본방향과 정책

기 본 방 향	추진 대상 정책
저비용 친환경 농업기계화 추진	○ 영농규모별 적정농기계 보급 ○ 저비용의 경제형 농기계보급촉진 ○ 친환경 정밀농업기계 개발보급 촉진
밭작물 농기계개발 및 실용화 촉진	○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 농기계 우선개발 ○ 신개발 농기계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농업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	○ 다양한 공동이용 촉진, 중고농기계 이용확대 등 ○ 중고농기계의 거래 활성화 촉진 ○ 기계화에 적합한 재배양식 표준화 등 기계화 재 배법 보급 ○ 농기계 이용·관리기술교육 강화
농기계수리봉사 등 사후관리체제 강화	○ 농기계사후봉사사업소의 규모화, 공역화 ○ 농기계수리용 부품관리 전산화 보급확대 ○ 농기계수리영부품의 규격표준화 및 공용화 촉진 ○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자가수리능력 향상 ○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책강화

자료: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2002. 9

4가지 기본방향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농업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대상, 특히 다양한 공동이용방식을 통한 농기계 이용을 증대의 내용이 3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벼농사는 RPC 중심의 공동영농기계화, 농업회사법인 등을 통한 농작업 대행 추진
- ② 농업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 자립적 경영형태의 농기계 은행 육성 지원으로 농업기계 리스·렌탈사업의 활성화
- ③ 밭작물은 작목별 주산단지 중심의 농기계 공동이용

#### 나. 농기계임대사업(2003)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 내 농업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정책의 하나인 농기계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후, 그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확대 여부를 정하겠다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2003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농기계임대시범사업 목적을 보면,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을 제고”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37)</sup>. 특히 기존의 임작업 시장과의 조화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과 영세소농을 중점대상으로 보고 있다<sup>38)</sup>.

“농기계임대시범사업”으로 불려지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우선 2003년도에 7개소를 조직하고 이후 41개를 연차별로, 총 48개소를 조직한다는 것이다<표3-25>. 농기계임대사업 개소당 사업규모는 250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30%인 75백만원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7) 농림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pp543~657

38) 그러나 이 부분은 농업기계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배치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자세한 것은 제5장에서 재 검토될 것임.

<표 3-25> 농기계임대시범사업 육성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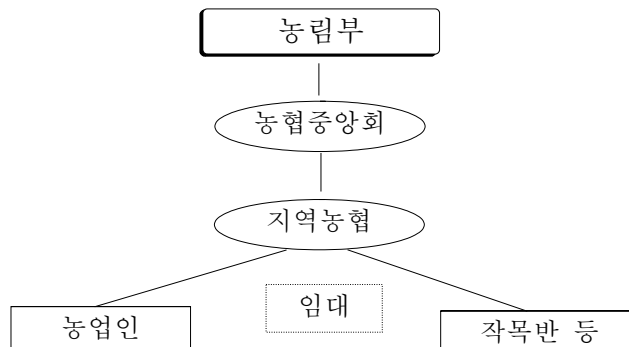
구분	2003년(예산안)	2004년 이후
계획	7	41
사업비	보조금	525(75)
	자부담금	1,225(175)
	계	1,750(250)
		3,075
		7,125
		10,250

주) ( ) 내서는 1개소당 사업비임.

자료: 농림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2003년도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주체, 즉 사업의 실질적인 주관기관은 “지역농협(장)”으로 되어있다. 즉 지역농협에서 사업시행주체가 되고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나 작목반 등에 임대, 관리한다는 시스템이다<그림3-3>. 물론 총괄적인 정책사업의 주체는 농협중앙회장으로 되어 있다.

<그림 3-3> 농기계임대시범사업추진체계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시행 과정을 보면, 먼저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조합은 농협중앙회에 신청하고, 중앙회장은 신청을 취합한 후 최종 사업을 수행하게 된 지역농협을 결정한다. 시범농협이 결정되면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에 사업승인을 얻은 후 해당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주체로 확정된 지역농협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의 관리,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것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의 선택과 관리 등에는 많은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다. 지역농협에서는 농기계 구입시 기종선택과 수량 등을 지역실정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다. 농기계임대, 임대료 징수, 농기계 사후관리 등 역시 지역농협의 실정에 적합하게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임대시 고령(65세이상) 및 영세소농가(경지면적 1.3ha 이하)에 우선하고, 특히 임작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 등이 소재한 지역은 가급적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정도의 권장사항은 있다<sup>39)</sup>.

### 3. 이용 효율화 정책의 시사와 임대사업의 의의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기계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우리나라 농기계이용 효율화정책의 변화와 변화속의 의미를 음미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지표에 의해 그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3-4>와 같다.

먼저 1970~'80년대의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은 수도작 위주의 시범적인 성격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기계의 소유와 이용에 공동개념을 강조했으며, 농민들의 조직과 단체가 이용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수도작의 농기계 이용비용을 절감하는데 주요 정책의 목적이 있었다.

199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이 전개되었다. 수도작 뿐만 아니라 축산부분도 고려되었으며 공동소유·이용 지원과 함께 개별소유·이용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조직의 주요 사업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농기계의 공동이용과 농작업의 수탁이었다. 특이한 점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농기계이용정책의 목적도 단순한 농업 생산비 절감을 떠나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39) 지역농협이 주체가 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실제수행 지역조합별 구체적인 내용과 규범,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5장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할 것.

<그림 3-4>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변화

구 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주체	농민단체	농민조직	농민조직, 농민	농민단체
성격	수도작중심, 시범사업	수도작중심, 농기계비용 절감	전농업, 생산비절감, 경쟁력 강화	노령, 영세농가 경영지원
농기계소유, 이용	단체와 농민 공동소유, 공동이용		농민공동과 개별	사업 주관단체
주사업내용	농기계 공동이용, 농작업 수탁			농기계임대
주요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소유, 이용 애로 ⇒ 개별소유증가</li> <li>○ 경영의 비효율 ⇒ 경영적자 발생</li> <li>○ 농기계관리 소홀 ⇒ 농기계이용율 저하 등</li> </ul>			?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했던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이 사라지고 농업단체가 농기계를 갖고 그것을 임대해 주는 농기계임대사업만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사업성격도 1990년대의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는 사라지고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영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효과까지도 이러한 사업성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소극적인 사업의 성격임에는 분명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여러 형태의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들의 육성, 문제 등의 검토를 통해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향후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되리라 여기는 내용들이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농기계의 공동소유와 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육성, 지원해 온 농기계 공동이용조직들의 농기계들은 조직 후 대부분 사유화되었음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성격으로 농기계이용조직을 육성하려는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농기계 자체를 공동소유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는 점이며, 농기계에 대한 소유의식의 결핍은 농기계의 무리한 사용, 소홀한 관리 등으로 농기계 이용

비용을 높이고 결국 경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에 오히려 배치될 수 있다.

둘째,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과, 조직 내 농기계의 수리와 운전, 조작에 유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은 그래도 사업의 지속성면에서 유리했었다는 점이다.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농가를 집합하고 이들의 농작업은 집단 내 소수 농기계운전, 조작자가 실시하는 것은 유용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되었던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면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목적이 농업기계화 정책의 궁극적인 추진 목적과 달리 제시되고 있어 장기적인 차원의 효과거양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목적은 시범과 영세·노약자 농업에 대한 경영지원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의 목적도 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비 인하, 경쟁력 제고에 두어졌다. 그런데 2003년도에 그나마 도입된 농기계임대사업이라는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이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후퇴된 지향목표로 제고의 대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농민들의 경영으로부터의 우리가 작금 우리 농업의 중요한 과제임을 상기하면 지금의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의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조직이든 농업단체든 많은 조직들의 농기계이용 경영수익은 적자를 시현했었다는 점이다. 원천적으로 농업의 수익성이 낮고, 나아가 농작업 수·위탁이 사업으로서 수익성이 낮은 데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농기계 활용 주체의 경영능력 부족과 농기계의 비효율적 활용에 근거한다. 여기에 농기계 작업만이 이들이 수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언하면 다양한 부대사업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농기계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기계만을 생각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과의 결합된 정책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사후적인 관련사업의 꾸준한 지원이 없는 한 단발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기 쉽고 당초의 목표달성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목적과 관련사업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단순히 농기계 이용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지원 후 사후봉사 강화, 지속적인 경영지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농업기계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농기계가 부담할 수 있는 성능상 부담면적과 농기계를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영수지가 일치하는 수지균형 규모가 모두 개별농가의 경영규모보다 크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별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자가이용만을 할 경우 농기계 구입 시 벌린 융자금을 상환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는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의 보조지원이 없는 한 성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상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발전적으로 조망하면, 농민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 내 농기계 조작과 수리에 있어서 유능한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농기계를 임차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의 집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기계작업이나 농지임대차 시장에서 우월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임대농기계를 이들 후계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으로부터 유리될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을 지원받는 후계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이 될 것이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결합이 우리 농업의 후계자들에 집중될 때,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성의 극대화가 실현될 것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가의 농기계이용 측면에서의 농기계비용 절감정책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 제 4 장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20여년 전부터 전국의 농협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에는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의 수탁과 농기계임대, 농작업의 중개·알선이 포함되어 있다. 1974년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영농기계은행”제도와는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하던 “농기계은행”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는 내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농협의 상황과 문제, 개선방안의 강구를 통해 농기계은행사업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농협과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에 유효한 대책이 될 것이다. 특히 농기계은행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 연구에서 중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위치와 다른 사업과의 관계 등을 짚어봄으로써 농협이 중심이 될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방향을 동시에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 장의 주요 연구내용이자 의미이다.

#### 1. 농기계은행사업의 의의

##### 가. 사업추진 경위

“농기계은행<sup>40)</sup>이란 농기계공동이용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농기계 등 생산수단을 최대로 이용하여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혀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sup>41)</sup>.”

40) 1974년 충남도 자체에서 독일과 일본의 농기계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기계은행을 조직, 운영한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3년만에 종료되었음. 자세한 것은 앞의 장(章)의 내용을 참조할 것.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부록과 제7장을 참조할 것.

41)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 p9, 이하. 농기계은행 실무에 관련된 내용은 위 교재에 수록된 내용이지만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 중요한 관련내용과 현장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은행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기계은행(Maschinen Ring)을 모델로 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게 수정한 제도이다. 지금의 농기계은행은 1992년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농기계은행사업을 원하는 새로운 조합의 참여와 지역 농협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년차별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조합의 수는 변동이 심하다. 1999년까지 농기계은행 업무를 실시하는 지역농협의 수는 연평균 약 50여개소 정도였다. 2000년에 들면서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 2000년에는 70개소, 2001년에는 90개소, 2002년에는 108개소에 이른다.

#### 나. 사업의 내용

농협 자체 내에서 규정한 농기계은행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기계은행을 우리의 농촌에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기계이용률의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이다.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의 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농기계 이용률을 높힌다는 것은 다른 여건이 일정하다면, 주어진 시간내에 가능한 한 농기계 이용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적어도 농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성능 이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가호당 경영면적은 농기계 성능상 부담면적을 훨씬 하회하고 있어서 농기계 이용률을 높힌다는 것은 소유농기계를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농작업 수행에도 농기계를 활용해야하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을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데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기계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① 농작업 수·위탁 중개, ② 농작업 대행, ③ 농기계 임대 등이다.

농작업 수·위탁 중개란 농기계보유자(법인, 영농회, 개인 등)와 농기계작업 위탁 희망자 사이에서 농기계작업을 상호 알선해 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

실태는 다음절에서의 현지조사결과를 참조할 것.

농작업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농작업의 대행이란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활용하여 수탁 농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농협의 자체보유 농기계를 임차희망자(영농회, 작목반, 개인 등)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임대의 조건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하다.

#### 다. 사업지원 내용

현재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일정한 지원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농기계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표4-1>. 이때의 융자금의 금리는 연 4%이며, 1년 거치 4~7년(기종별 융자기간 적용)이라는 지원기간이 적용된다.

<표 4-1> 정부의 지원(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구 분	융 자 금 액
○ 1억원 이하 농기계 구입시	○ 공급가격의 75%
○ 1억~1.5억 농기계 구입시	○ 75백만원+ 1억원 초과액의 60%
○ 1.5억원 초과 농기계 구입시	○ 75백만원+ 30백만원+1.5억원 초과액의 50%

자료: 농협, 「농기계은행(MR)사업추진현황」, 2001

정부의 지원과는 달리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일정요건의 농기계은행운영 지역농협에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우수조합에 대하여 농기계 부품비용의 일부를 지원<sup>42)</sup>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추진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저리의 상호금융(금리 연 6%, 1년상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현지 농기계은행의 운영을 위해 구입한 각종 농기계들의 상당 부분은 행정기관과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구입자금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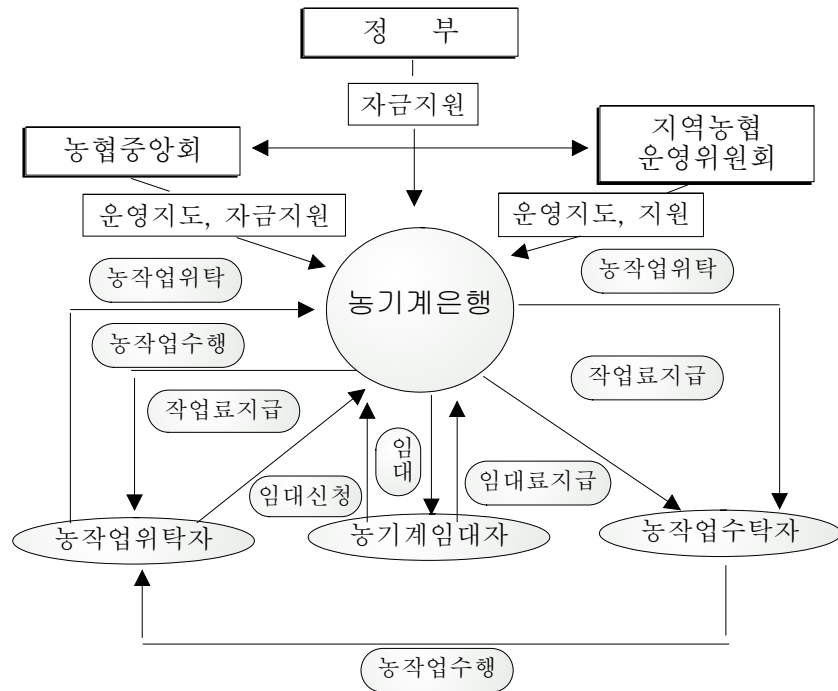
42) 2002년의 경우 총 25백만원내외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조합당 5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실시,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 실무교재」, 2002. 4, p12 참조

## 2.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과 문제

### 가. 사업의 추진체계

전국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의 조직과 지원, 지도 등에 관련된 정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운영위원회)의 관계와 농기계은행사업 관련자와의 관계를 체계화한 것이 <그림4-1>이다.

<그림 4-1>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체계도



농기계은행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필요 농기계 구입시 일부의 자금을 용자지원하는 정도이다.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기본적인 농기계은행 운영의 지침과 관련 자료를 만들어 활용토록 지원하고

43) 이러한 사실은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과 문제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농기계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통해 확인한 사항임.



있다. 물론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혹은 우수 장려금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농기계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지원과 지도는 해당 지역농협 내에 결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sup>44)</sup>에서 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서 해당지역내 농기계은행사업의 계획, 추진, 결산관리까지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때문이다. 농기계은행 운영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당지역내 농기계은행사업 운영요령을 확정하며, 관련된 비용의 기준, 특히 농기계임대 및 작업수수료, 중개알선료 등의 수준을 결정하고, 기타 농기계은행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결산에 관련된 내용들도 지원, 관리하고 있다.

## 나. 사업운영 방법

농기계은행사업은 3단계의 운영방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업준비, 사업전개(농작업 수위탁 중개·농작업 대행), 사업결산과 평가가 그것이다.

사업의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사업내용을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관련내용의 조사가 이뤄진다<표 4-2>. 그리고 사업참여 독려를 위해 산하 농민조직 대표들과 농민들에게 농기계은행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 지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희망자들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의 사전준비는 완료된다.

농기계은행의 운영 2단계는 사업의 전개 단계로, 본연의 사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단계를 말한다<표 4-3>. 이 단계에서는 농기계은행사업의 수요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그것을 종합한 후 작업일정을 확정한다. 사업 신청인 별로 작업일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후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작업료 수준은, 기본이 되는 기준요금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할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관련자들이 협의하여 그때 그때 결정하게 된다.

---

44) 운영위원회는 조합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영농회장, 수탁농가, 정담직원(농협, 간사), 지역유지 등이 위원으로 조직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고 있음.

<표 4-2>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1단계의 내용

단계	주요운영내용	세부운영내용
사업준비 단계	사업내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사업실시 대상지역을 확정된 후 실시(농가경영조사 실시전)</li> <li>· 실시대상: MR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실시</li> <li>· 방법: 전담직원이 주관하여 농기계 공동이용 필요성, MR사업 개요, 추진방향 등 설명</li> </ul>
	농가경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사업실시조합</li> <li>· 대상: 사업대상 영농회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실시</li> <li>· 방법: 조합 자체적으로 면접에 의한 전수 조사</li> <li>· 내용: 경지현황, 작부체계, 식부면적, 임차작업의향, 농지소유형태, 노동력 보유형태, 농기계 소유현황 및 임차작업현황, 지역특수성 등</li> </ul>
	참여농가 및 조직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1/4분기중</li> <li>· 교육대상: 관내 조직장(영농회장, 작목반장 등) 및 수위탁 농가</li> <li>· 교육내용: MR운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계획, 참여방법 등</li> </ul>
	농기계 수탁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경영조사 결과 농기계 수탁자 및 농작업위탁 가능 희망자를 구분하여 농기계 수탁자를 먼저 확보 등록</li> </ul>

<표 4-3>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2단계의 내용

단계	주요운영내용	세부운영내용
사업 전개단계 (농작업 수위탁 중개·농작 업 대행)	농작업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작업 가능면적 신청 접수(수위탁중개사업)</li> <li>· 작업 개시 이전에 위탁농가로부터 작업 신청 접수</li> <li>· 농기계 부족시 인근 수탁자에 알선 위탁</li> </ul>
	농작업별 작업일정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자 작업신청 조건 및 수탁자별 작업 가능 일정 감안 농작업 일정 확정</li> </ul>
	농작업위탁 승낙서 및 지시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업 위탁 승낙서를 위탁자에 통보</li> <li>· 농작업 지시서는 농기계 수탁자에게 통보</li> </ul>
	작업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서상 작업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위탁농가, 수탁농가, 관리자 등이 입회하여 작업조건 조정</li> </ul>
	작업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요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li> <li>·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할증요금 적용시 위탁농가, 수탁농가, 관리자 등이 입회하여 조정</li> </ul>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농기계은행사업이 모두 끝나면 당연히 결산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른다<표4-4>. 사업별 수수료의 정산과 통합, 결산과 회계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1년간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총평가가 이뤄진다. 이 평가회의에는 농기계은행 운영위원, 영농회장, 은행사업 관련농가들이

참여하여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그 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표 4-4>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3단계의 내용

단계	주요운영내용	세부운영내용
사업결산 · 평가단계	작업수수료 의 정산	· 농작업완료, 농작업료 납부서 발부 · 농작업료 수취와 정리, 정산
	결산 및 회계	· 농기계은행의 회계는 조합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 · 취급수수료 및 가산금 등 수입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에 서 별도로 결정 · 각종서류와 증빙 비치 · 회원조합 회계처리기준에 따름 · 회계 및 경리사항에 대한 검사와 감사실시
	평가	· 평가용보고서 작성후 운영위원회에 회부 · 평가회의 개최: 사업성과와 개선방향 도출,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

#### 다. 사업추진 실적

1993년 이래 농기계은행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실적이 <표4-5>에 나타나 있다.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의 수는 매년 변화하고 있지만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참여농가호수 역시 최근에는 1만호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작업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적지만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수요는 우리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5> 농기계은행의 연도별 사업실적

구 분	단위: 호, ha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조합수	4	13	20	30	38	46	53	70	90	108
참여농가	290	710	1,042	2,648	3,372	4,080	11,764	9,606	14,074	16,413
작업면적	421	824	1,307	1,800	4,357	5,355	9,526	7,870	10,210	10,499

자료: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와 농협중앙회 내부자료(2003. 7)

2002년도 전국 108개 농기계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501대로 농기계은행 1개소당 4.6대이다<표4-6>. 전년도에 비해 총 농기계보유대수는

증가하였지만 농기계은행의 수가 그보다 많이 증가하여 개소당 농기계보유대수는 전년도 5.4대에 비해 약 1대 정도 줄어든 4.6대이다. 기종별로 보유대수를 보면 콤바인과 비료살포기가 가장 많으며, 주력 기종인 이앙기, 트랙터가 뒤를 잇고 있다. 보리와 땅콩 등의 수확에 이용되는 고가의 크라스 콤바인도 30대에 이른다.

<표 4-6> 2001~'02년도 농기계은행 농기계보유현황

단위: 대, 대/개소

구 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크라스 콤바인	관리기	비료 살포기	기타	계
총 보유대수	2001	57	62	85	25	21	164	71	485
	2002	84	87	104	30	17	92	87	501
개소당 보유대수	2001	0.6	0.7	0.9	0.3	0.2	1.8	0.8	5.4
	2002	0.8	0.8	1.0	0.3	0.2	0.9	0.8	4.6

자료: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와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농기계은행의 사업실적을 보면 총 10,499ha에 불과하다<표4-7>. 2001년도에 비해 약 290ha가 증가한 것이지만 농기계은행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1개 농기계은행당 작업실적은 2001년 113ha에서 2002년 97ha로 오히려 14.2%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물량면에서는 확대되고 있지만, 1개소당 실적을 통해 볼 때, 농기계은행사업의 전반적인 위축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특히 이용농가당 평균면적도 같은 기간 0.73ha에서 0.63ha로 감소하여 영세농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7> 2001~'02년도 농기계은행 사업실적

단위: ha, %

구 분		수위탁 중개	농작업 대행	농기계임대	계
2001	면 적 (%)	3,563(34.9)	4,612(45.2)	2,035(19.9)	10,210(100.0)
	개소당 평균면적	39	51	23	113
	이용농가당 평균면적	0.9	0.7	0.8	0.73
2002	면 적 (%)	3,938(37.5)	4,768(45.4)	1,793(17.1)	10,499(100.0)
	개소당 평균면적	36	44	16	97
	이용농가당 평균면적	0.2	0.3	0.1	0.63

자료: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와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2002년도 총 사업실적 가운데 농작업 대행의 비중은 45.4%로 가장 크며, 수·위탁 중개는 37.5%, 농기계임대는 17.1%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농작

업 대행의 비중이 크다. 농기계임대의 비중은 작으며 최근 2년 동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사업 내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위상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표 4-8> 농기계은행 경영수지(2002년도)

단위: 백만원/개소당

구분	총수입	총 비용						손익
		감가상각	수리비	유류비	인건비	기타	소계	
전 체	1,941	696	297	168	613	199	1,973	△32
개소당	31.8	11.4	4.9	2.7	10.0	3.3	32.3	△0.5

주) 농기계은행 운영조합 108개소 중 자료를 제출한 61개 조합의 실적임.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농기계은행의 경영수지를 보면 역시 평균적으로는 적자이다<표4-8>.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61개 지역 농협의 농기계은행 경영수지를 보면 1개소당 연간 5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한 적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농기계 구입비용 과다, 작업조건이 열악한 농지의 농기계작업 수행에 따른 농기계 고장 수리비와 관리비 과다지출 등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효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작업 임작업료로 인해 농가에는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혜택을, 간접적으로는 농기계 임작업료 인상의 억제 효과를 들고 있었다<sup>45)</sup>.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한 농작업 수수료는 주변의 수수료보다 20~30%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인근 농작업 수수료 인상의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농기계은행의 경우 위와 같은 경영수지의 적자라는 애로 이외에도 농기계은행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직원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문제는 농기구 수리서비스센터와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보관창고의 부족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45)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 pp11~12의 내용과 농협 「농기계은행(MR) 사업추진 현황」, 2003. 7 내부자료 참조

### 3. 농기계은행사업 운영 현지실태조사 분석

#### 가. 현지조사의 개요

전국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은행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도출하기 위해 2003년도에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108개의 모든 지역농협에 소정의 조사표를 발송<sup>46)</sup>하였다. 그러나 조사에 응해 조사표를 반송해 온 지역농협은 하나도 없었다.

본 연구진은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40여 개의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지역농협에 대해 현지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우선 상당한 수의 지역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결과보고와 달리 실질적으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있는 지역농협 가운데 상당수가 형식적인 운영을 한다던가, 단순한 작업중개 정도, 혹은 작업기의 무상임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들었던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진과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2003년 7월 현재 108개 농기계은행 가운데 81개소만이 농기계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81개 농기계은행 가운데서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2003년부터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시범사업”<sup>47)</sup>과 중복되는 경우, 단순한 농작업 알선과 작업기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경우, 행정기관의 임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 50여개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0여 개소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농협이었다<sup>48)</sup>.

46) 이 연구진은 농협중앙회 실무진의 협조 아래 농협중앙회 공문(농촌32103-00111, 2003.03.19, 제목: 농기계은행 운영 조사에 따른 협조요청)으로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108개소 지역농협에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내용조사를 실시함.

47)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3장과 제6장을 참조할 것

48) 물론 단 한 건의 작업알선, 전화에 의한 알선도 사업실적이고 따라서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역시 일리는 있음.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1차, 2차의 현지조사에 애로를 가진 본 연구진은 농협중앙회에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여기는 지역 농협을 추천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농협중앙회에 명단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실무진으로부터 경기도<sup>49)</sup>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16개 지역농협을 추천받았다<부표4-1 참조>. 이 가운데 충남·북과 전남·북 지역에 소재한 도별 2개 지역농협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2003년도 8월 중이었으며, 조사대상 지역 농협은 전남 영광 황룡, 영광 백수, 전북 고창 고수, 익산 용안, 충남 논산 부적, 부여 세도, 충북 진천 진천, 괴산 증평조합 등 총 8개소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 실태와 어려움 등이다<sup>50)</sup>. 조사결과는 농기계은행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농협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대상별로 정리하였다.

## 나. 지역농협의 농기계운영 실태와 문제

### 1) 전남 장성 황룡농협

전남 장성군 황룡 지역농협은 1994년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지역농협에서는 처음부터 농작업을 농협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형태를 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농협 관내에는 보리재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보리 수확시기가 쌀의 이앙시기와 맞물려 노동력 부족, 나아가 농기계 임작업자들의 고가 임작업료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지역농협장은 관내 농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작업료에 의한 농기계 임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농기계 임작업의 직영을 자체적으로 시작하였다.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은 ① 고령화되고 부녀화되어 가는 농

---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협을 조사하여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49) 경기도의 경우 기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대부분이 행정기관에 지원에 의해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중복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50) 이렇게나마 농기계은행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농협중앙회 담당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으로 여기고 있음. 이 점에 대해 연구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촌의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으로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② 고가의 농기계이용을 증대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 ③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기계화 작업체제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들고 있다.

황룡 지역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 크라스 콤바인 3대, 벃집 결속기 1대, 토양개량제 살포기 2대이다. 농기계은행 운영을 위한 농기계는 대부분 농협중앙회나 행정기관의 지원,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구입하였다고 한다. 위 농기계 이외에 농기계은행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지는 않다. 농기계수리 서비스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방법, 인력 충당과 비용 등의 조정과 관리를 위해 특별한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농기계은행업무 실무진들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후의 보고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 권유하는 각종 서류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중요한 몇 가지 대장만으로도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한 홍보, 경영조사 등과 같은 것은 실제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상당부분 형식적인 권고사항이 될 뿐이며 따라서 불요불급하다는 것이다.

농기계은행의 운영은 보유한 농기계를 농협직원이 직접 조작하여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직영 형태이다. 농기계운전과 관리의 전담요원은 1명이며 공익요원 1명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직원 2명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농번기때만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대행을 같이 하고 있었다. 담당 주무과장을 제외하고 실제 4명이 농번기때 농기계은행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농기계은행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장시간 관외지역 작업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농기계임대나 농작업 알선과 같은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농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일정한 형식과 서류에 구매받음이 없



이 구두나 전화 등에 의해 작업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작업관리대장에 기록되며, 작업일정을 조정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 다음 일정에 따라 농기계은행 직원들은 수탁받은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포장에서 농기계 수탁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포장 주위에서 즉시 농작업을 위탁해 올 경우, 시간과 장비 등이 가능한 경우 대행도 해준다.

농작업을 마친 결과는 농작업일지에 기록되며 이를 기초로 농작업료를 수령하게 된다. 농작업료는 후불제이다. 보리의 경우 대부분을 수매하기 때문에 보리수매시 농작업료를 받는 형태의 후불제가 자연스럽게 정착하였으며, 현재까지 후불제에 따른 미수령의 문제는 없다고 한다.

<표 4-9> 농작업 수수료 수준(황룡농협)

단위: 원/200평

작업내용	농기계은행(A)	일반인(B)	A-B
보리·콩수확	25,000	35,000	△10,000
쌀 수확	30,000	40,000	△10,000
벼집결속	15,000	20,000	△ 5,000

농작업료는 일반 농기계 임작업인들에 비해 200평당 5,000~10,000원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4-9>. 그 만큼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며, 아울러 농작업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대규모 임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익감소라는 불만도 있다. 농기계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 작업료를 작업조건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단 작업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포장이라해서 작업료를 차등화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임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약간의 작업료 차등을 두고 있다.

황룡조합 농기계은행 운영의 또 다른 특징은 관내 작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까지, 타 지역농협과의 협조 하에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년도 황룡조합 농기계은행의 보리 수확작업실적은 총 318농가 382,829평인데 이 가운데 관내 실적은 105명 161,000평(42.1%)이다. 나머지 213명 221,829평(57.9%)은 완도와 장흥, 영광지역에서 수행한 실적이다. 보리

수확의 특성상 남부에서부터 수확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내 장성지역보다 아래에 있는 위 지역에서 농작업을 수행하여 수익증대와 함께 지역농협간 협력사업 수행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고 있었다. 물론 관외의 경우 관내 작업료보다는 약간 높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200평당 5,000원정도 저렴하다.

황룡농협 농기계은행은 농협 내부직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관외작업의 수행 등으로 커다란 적자가 없다. 1999년, 2000년에는 연속으로 전국 농기계은행 평가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 조합의 농기계은행 운영을 통해 몇가지 운영상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해당지역에서 중요시되는 보리라는 작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리수확에 필요한 크라스 콤바인이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구입부담이 크다는 점에 사업중심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고가이고 농민들의 사용시기가 짧은 농기계의 선택이 사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농협내 직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직영을 하고 있어서 농기계은행의 운영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었다. 아울러 지역농협내 농기계수리서비스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 역시 인적, 물적 비용을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셋째 관내작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관외 지역의 작업까지 수행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에 농기계은행사업의 효과를 분산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농기계은행사업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역협동조합간의 협동사업을 농기계은행을 통해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주 특이한 사실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특징 외에도 농가에 대한 수혜증진, 일손부족의 해결 등은 다른 지역 농기계은행사업의 효과와 같다.

## 2) 전남 영광 백수농협

전남 영광군 백수 지역농협은 1991년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역사가 길다. 이 지역농협에서는 처음부터 농기계임작업사업을 중심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수행해 왔다. 처음에는 농협 자체 내부 직원들이 직접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협에서 직접 농작업을 관리는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는 외부에서 고용하여

농기계은행사업을 꾸러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백수조합 관내에서도 보리재배가 활성화되고, 보리 수확시기는 쌀의 이앙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완하고 적기 영농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백수 지역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농기계은행사업의 중심이 되는 크라스 콤파인 1대, 퇴비살포기 2대, 비료살포기 5대, 종자탈망기 1개 등이다. 농기계은행 운영을 위한 위 농기계들은 대부분 농협중앙회의 보조지원과 자체 재원으로 구입하였다고 한다. 위 농기계 이외에 농기계은행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지는 않다. RPC와 농기계수리서비스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수 지역농협 역시 다른 농협과 마찬가지로 농기계은행의 운영방법 등의 확정, 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지는 않았다. 위원회가 있을 경우 오히려 일처리만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요한 사항은 농기계은행업무 실무진들이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후 보고로 처리해도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에서 권유하는 각종 서류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각 마을 영농회장에게 의뢰하게 되는 농작업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농기계작업일지 정도의 서류를 활용하고 있었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한 홍보, 경영조사 등과 같은 것은 실제 불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현재 백수농협에서는 농기계 수탁작업과 작업기의 임대라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농협의 종합실무과장은 일당을 주고 고용한 농기계 운전자를 데리고 작업포장에 가서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고 있다. 보유 작업기를 임대할 경우 무료이기 때문에 임대라 말하기도 어렵다. 담당 주무과장을 제외하면 농기계운전과 관리의 전담직원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한다. 농기계수리 서비스센터의 직원은 단순히 농기계 수리업무만을 전담할 뿐,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탁 농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은 다른 지역농협과 유사하다. 먼저 마을 영농회장에 농작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농민들로부터 작업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은 공문으로 요청한다. 그 외에는 구두나 전화 등에 의해 작업신청을 받는

다. 이때 신청작업량이 농기계은행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에게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가능한 어려운 농가, 예컨대 여성 경영인의 작업이라든가 고령농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한다. 담당 과장은 신청서를 기초로 작업일정을 포함한 작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그리고 일고로 고용한 농기계운전자와 함께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수탁받은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농작업을 마친 결과는 “크라스콤바인 작업일지”에 기록되며, 농작업료는 보리수매시 후불제로 수령하게 된다. 장성 황룡농협과 마찬가지로 보리의 경우 대부분의 수확량을 수매하기 때문에 이때 농작업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애로는 없다고 한다.

<표 4-10> 농작업 수수료 수준(백수농협)

단위: 원/1,200평			
작업내용	농기계은행(A)	일반인(B)	A-B
보리수확	150,000	170,000	△20,000

농작업료는 일반 농기계 임작업인들에 비해 1,200평당 20,000원정도 저렴하다고 한다<표4-10>. 농기계은행의 보리수확 작업료는 일정하지만 일반 농기계 임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약간의 작업료 차이가 있다.

백수조합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곳과의 차이점은 농기계 운전자를 일당 180,000원으로 외부고용(2003년도에 13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1일 작업 면적은 9,600평을 기준하고 있으며 어떤 날에는 하루 12시간 정도의 작업하기도 한다.

2003년도 백수농협의 농작업 수탁면적은 117,900평, 수혜농가수는 49농가였으며, 총 13일에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한 총수입은 14,725천원이며 담당과장의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를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익은 약 10,457천원으로 농기계구입시 보조혜택의 규모에 따라 그리 큰 운영의 적자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의 적자와 함께 농기계에 의한 수탁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작업 신청자가 약속을 파기할 경우 농기계의 운휴상태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백수농협의 농기계은행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수탁이 중심이 되고, 활용 농기계는 전남 장성의 황룡농협과 마찬가지로 보리수확에 필요한 크라스 콤바인(고가, 사용시기 단기) 이라는 점이다. 둘째, 농기계 운전자를 일고로 활용하여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농협내 농기계수리서비스센터와의 인적, 물적 통합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절감은 이뤄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농기계은행 실무 담당자에 의할 경우, 향후 농기계은행사업의 앞날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농민 조합원을 위해 농기계은행사업을 많이 그리고 꾸준히 해야한다는 규범적인 인식에는 동감이지만 사업의 수익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인적, 물적인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담당 과장의 결론이다.

### 3) 전북 고창 고수농협

1995년부터 농업경영에 애로가 많은 노령자, 경영조건 불리지역, 소규모 경영자 등에 대한 임작업 중심의 지원으로 출발한 전북 고창 고수농협의 경우 2대이던 크라스 콤바인 가운데 1대는 2002년도에 매각처분하고 나머지 한대만 수탁작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협내 구조조정으로 농기계은행을 위해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농협직원 4명이 농기계은행사업에 관여를 하였다고 한다. 이제 고수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사업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작업의 수탁은 통상 일상적인 구두, 전화 등에 의해 접수한다. 접수된 작업내용은 포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후 당사자에 통보된다. 그리고 지역농협에서는 농협 직원이 아닌 농기계운전자를 작업 평당 50원씩의 인건비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다. 외부인의 고용이라는 면에서는 전남 영광 백수농협과 같으나 고수농협은 일당 정액급이 아닌 작업면적에 따른 실적급이다. 물론 농작업시 발생하는 수리, 유류 비용 등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크라스 콤바인에 의한 보리수확 작업료를 평당 100원(일반 농

기계 임작업자: 150원)씩 받고 있었다. 작업 현장에는 농협직원이 참가하여 농작업 수행상황을 점검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업실적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작업내용이 거칠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고수농협은 농기계수리서비스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체내 수리기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외부수리에 의한 수리비의 과다지출 문제가 역시 경영수지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수 지역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에 관련한 어느 운영위원회도 없다. 다른 지역농협과 마찬가지로이며, 농협중앙회에서 권유하는 각종 서류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단지 농기계 작업일지 정도의 서류를 활용하고 있었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한 홍보, 경영조사 등과 같은 것은 소식지 정도에 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다고 한다.

2003년도 농기계임작업 실적은 3농가의 62,500평, 총수입은 6,250,000원이다. 이 가운데 1/2인 3,125,000원은 농기계운전자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며 일반경비로 약 200여 만원이 지급되어 농협직원과 농기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이전에는 약 100여 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작업료는 후불제로 수령하고 있는 데 작업면적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농협간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탁 작업내용을 보면 대개가 작업조건이 좋지 않은 포장에 많고 소포장이 많아 농기계이용율을 높이는 데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역시 수지상의 적자는 분명하다고 한다. 농민들의 선호, 비선호를 떠나 사업으로 지속해야 할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농협의 이사회에서 그나마 농기계은행사업의 유지를 권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농기계은행사업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론 소형 작업기의 작목반 임대와 같은 것은 지속될 것이다.

#### 4) 전북 익산 용안농협

익산 용안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이다. 1998년부터 농기계은행 업무를 개시한 용안 지역농협도 출발의 배경은 다른 농협과 대동소이하다. 특히 일반 농기계 임작업자들의 임작업료 인상과 작업조건이

좋지 않은 포장에 대한 작업기피 등에 대응한다는 출발배경을 갖고 있다. 트랙터 2대와 부속작업기, 이앙기 2대를 가지고 출발한 농기계은행사업은 처음에는 농기계 임작업 수행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수도작이 많기 때문에 트랙터와 이앙기를 이용한 농작업수행을 선택한 것이다.

농기계은행 출범 2년 동안 직영에 의한 농기계 임작업수행 결과 경영수지는 적자였다. 당시 작업위탁의 접수규모가 로터리의 경우 75,000평이었지만 실제로 수행한 면적은 34,000평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농기계임작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농기계의 운전자를 외부에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기계수리 서비스센터와의 통합적 운영의 애로, 특히 인적자원을 농기계은행사업으로 통합,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는 농기계임대로 농기계은행사업의 사업방향을 바꾸도록 하였다. 결국 2000년에는 보유 2기종 4대의 농기계를 모두 임대하게 되었다.

농기계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 농기계의 손상, 도난, 멸실, 고장 수리 등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차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공제와 농작업상해공제 2,000만원 이상을 가입하는 것을 “농기계임차계약서”상의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역농협내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임대 농기계에 대한 우선적인 사후봉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고장수리가 요할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1년의 계약기간은 관리상 하자가 없을 경우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농협 자체적으로 농기계임작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 비해 농기계를 임대한 결과 경영수지 적자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사용했던 중고농기계이기 때문에 보유 농기계에 대한 임대수요가 적고 따라서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니 적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앙기의 경우 2000년 이후 임대조차 되지 않아 매년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일부 조합원들의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사업의 유지, 농기계의 관리 등의 면에서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한다. 만약 적절한 지원에 의해 농기계은행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농기계은행용 농기계를 통

일할 것이라고 한다. 어느 한 작업에 중점을 두어야 농기계와 작업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농기계운전자가 문제인데 농기계임대의 형태를 취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물론 외부 운전자를 고용하여 농기계임작업을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지의 사정상 어렵다고 한다.

#### 5) 충남 논산 부적농협

충남 논산 부적 지역농협에서 지금과 같이 농기계은행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이후 보리에 관련된 복토기와 크라스 콤바인을 구입하면서 서부터라고 한다. 그 전에도 농기계은행사업은 있었으나 지금과 같지는 않았다고 한다.

농기계은행사업이 조직적으로 시행된 배경은 관내 경지면적의 약 20% 정도만이 겨울철 시설채소 재배로 이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벼농사 1기작으로만 경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농업소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휴 농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농협 중심으로 찰보리를 입식하였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기계의 부족으로 농가들이 파종을 기피하였다고 한다. 부적농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필요한 모든 농기계를 구비하고 무상임대와 농작업 중개알선, 농작업대행 등 농기계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농기계은행의 운영을 위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근무하는 2명의 정규직원이 참여하고 있고, 농번기 농기계 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무와 기능직 5명이 지원하고 있다. 비록 전담은 아니지만 담당 과장을 제외한 7명이 농번기 농기계은행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셈이다.

농기계은행을 위해 확보된 농기계는 주력인 크라스 콤바인 4대를 비롯하여 복토기 9대, 보리과종기 3대, 비료살포기 9대와 건조 저장시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보리 줄뿌림 직파기는 수요가 많지 않아 올해에는 벼 건담직파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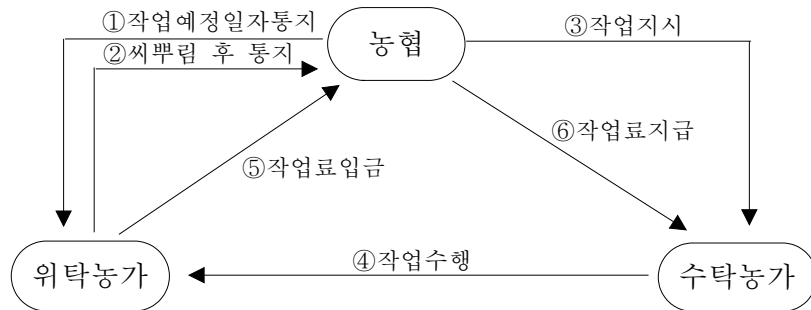


<표 4-11> 농기계은행 농기계 보유현황(2002년3월, 부적농협)

단위: 대						
기종	크라스 콤파인	건조 및 저장시설	정맥공장	복토기	직파기 (보리줄뿌림)	비료 살포기
수량	4	1	1	9	3	9

부적농협 농기계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작업수위탁, 농작업대행, 농기계임대 등이다. 주요 대상 농작물은 역시 보리이다. 농작업 중개사업의 추진 체계를 <그림4-2>에서 살펴보면, 먼저 농가로부터 보리과종후 복토작업을 의뢰해 오면 제3의 트랙터 임작업자를 수배한 후, 작업일정을 수립, 위탁농가에 일정을 통보한다. 통보받은 농작업 위탁농민은 복토작업 이전에 과종을 한 후 다시 농협에 연락하게 되고, 농협은 트랙터 임작업자, 즉 농작업수탁자에게 복토작업을 요청한다. 농작업수탁자에게 의행 해당작업이 종료되면 농협은 위탁농민으로부터 작업료를 수령, 농기계 임작업자에 지불한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없으며 작업료는 후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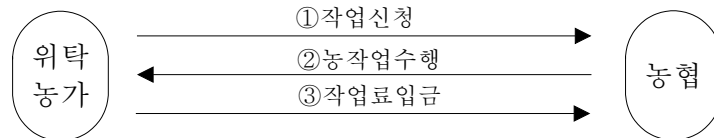
<그림 4-2> 농작업 중개업무 체계(부적농협)



농작업 수탁사업은 일단 작업 위탁농가들의 희망일자를 중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농협에서 농작업 일정을 확정할 때 반드시 선착순에 의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보리의 숙기를 봐가면서 수확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만은 없다고 한다. 보리 수확작업은 농협직원들이 직접 크라스 콤파인을 운전하여 수행하며, 수확된 보리는 농협차량을 이용하여 건조장까지 수송해 주고 있다. 그리고 수송되어 온 보리는 건조장에서 산물로 구매하고, 수

매자금은 즉시 위탁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다. 수확, 수송, 건조, 수매작업을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대행해 주는 형태인 것이다.

<그림 4-3> 농작업 수탁업무 체계(부적농협)



농기계임대사업은 복토기와 비료살포기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복토기는 보리 복토작업의 중개시 임작업 수행자에 무료로 빌려주고, 고장시 농협에서 수리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에 의해 알선된 복토작업료는 일반인에 비해 저렴하다. 비료 살포기는 보리집중재배지역내 영농회장에게 무료로 임대하여 주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적 지역농협의 보리 복토중개사업실적과 농작업 대행실적은 <표4-12>, <표4-13>와 같다.

<표 4-12> 연도별 농작업 수위탁 중개사업 실적(부적농협)

작업내용	복 토 작 업		
	2000	2001	2002
위탁농가수			
위탁농가수(호)	116	112	63
수탁농가수(호)	6	5	3
작업면적(ha)	98	86	49
농기계투입수	트랙터6대	트랙터5대	트랙터3대

<표 4-13> 연도별 보리수확작업 대행실적(부적농협)

작업내용	2000	2001	2002	2003
구 분				
위탁농가수(호)	94	148	92	69
농기계투입(대)	5	5	4	3
실 적(ha)	120	132	116	51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농협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과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다. 아울러 특별한 사업홍보나

경영조사 등을 하지도 않고 있다. 보리 계약재배자 명단과 농작업일지, 작업료 납부 명세표 정도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농기계은행에서 설정한 농기계 임작업료는 주변 일반 작업자들의 작업료와 지역 농협의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은행 실무진, 조합장 등이 결정하고 있다.

<표 4-14> 농기계은행 농작업료(부적농협)

단위: 200평

구 분	농 협	일 반 농 가
복 토 비	7,000	9,000
콤바인(수확) 작업료	25,000	35,000~45,000
건 조 비	10,000	15,000
계	47,000	59,000~69,000

농기계은행에서 수행하는 농작업료의 수준을 해당 지역의 일반 농기계임작업료 수준과 비교해 보면 저렴하다<표4-14>. 복토비는 200평당 약 2,000원 정도, 보리수확의 경우는 1만원에서 2만원정도 저렴하다. 특이한 것은 수확작업시 생산량이 평년작 이하의 경우, 예컨대 200평당 3가마니 이하일 경우는 콤바인에 의한 수확작업료를 10,000원까지 저렴하게 받기도 한다.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농민들은 직접 저렴한 작업료 지급이라는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일반 농기계 임작업료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2모작을 가능하게 하여 농업소득 증대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위와 같은 수혜의 이면에는 농기계은행사업의 적자가 있다. 농기계은행은 처음부터 수익사업이 아니라 환원사업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된 비용과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수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구입자금 무상지원과 저리자금 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4-15> 2002년도 농기계은행 손익내역(부적농협)

단위: 천원

비 용		수 익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감가상각비	54,061	농작업대행수수료	34,552
기계수리비	14,847	순 손 실	42,622
유 류 대	1,966		
기타 제 비	6,300		
합 계	77,174	합 계	77,174

농기계 무상임대 시 농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고장과 파손정도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분명한 것은 조합원 농민을 위한 환원사업의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종 선택 시 가능하면 새로운, 고가의,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농민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실무진들은 제안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농기계은행업무는 지역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야만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창출보다는 타 사업과의 연계, 보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논산 부적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농협과 관련 직원들의 적극적, 협력적 지원만이 바람직한 사업전개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농기계수리센터와 직원, 농기계은행 실무 담당진, 농협 내부직원 등이 서로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도울 때, 농기계은행의 사업범위도 넓어지고, 많은 농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둘째, 보기 드물게 부적농협은 3개의 사업(중개, 작업대행, 임대)을 동시에 실시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 들 3가지 사업이 하나의 작목에 연관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단순 중개가 아닌 작업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제3자를 활용, 저렴한 작업료로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중개사업의 전개이다.

셋째, 혼한 상황은 아니지만 평균 수확량에 못 미칠 경우 수확작업료를 할인해 준다는 점이다.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권장하는 각종 절차와 서류, 조직 등을 다른 모든 농협과 마찬가지로 단순화하고 있다. 물론 농기계은행사업의 경영수지 역시 적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조합원 농민을 위한 환원사업의 개념으로 진척시킨다는 실무진과 경영진의 사고이다. 관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 6) 충남 논산 세도농협

세도농협에서는 1994년 이래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 목적은 ①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②농기계이용의 효율성 증대로 생산비 절감 및 농기계과잉투자 방지, ③저렴한 작업료(실비수수료) 운영으로 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한 농작업료 지지 등이다. 이를 위한 농기계은행사업의 내용은 벼의 육묘와 이앙작업의 직영, 경운·정지작업의 중개이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실질적으로 벼 육묘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이앙작업의 중개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업무를 위해 담당과장 외에 전담요원 1명이 있으며, 농기계은행 업무의 비수기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세도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와 이앙기가 각각 1대씩 있으나, 트랙터는 육묘와 운반하는 데 투입되고 있어 경운·정지작업과는 무관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앙기의 경우에도 임작업의 농협 직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앙작업 중개시 수탁자의 사정으로 작업을 못해주는 경우와 작업 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의뢰하려는 제3의 작업자가 수탁을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서 농협에서 직영하는 정도이다. 농기계 이외에 350평 정도의 육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토조제기와 육묘상자도 준비되어 있다. 위 외 농기계은행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농기계수리센터의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의 운영만을 위한 일정한 위원회나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다른 농협과 마찬가지로이다. 농기계은행사업의 대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세척은 조합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 시행되고 있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 권유하는 각종 서류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중요한 작업신청서와 농작업일지만으로도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 농기계

은행사업을 위해서 관내 마을 단위 영농회장에게 사업내용의 고지와 신청을 요청하는 정도의 알림이 있을 뿐이다. 그 외 경영조사, 수요조사와 같은 것들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육묘대행 농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각 마을 영농회장에게 육묘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 신청자는 “과종이양작업 신청서” 2부를 작성,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농협에 제출하게 된다. “과종이양작업 신청서”에는 신청 품종과 면적, 금액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특이하게도 이 신청서에는 이양의 경우 본인이 할 것인지 농협의 의뢰할 것인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양중개를 위한 정보를 이미 이 육묘신청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다.

수집된 신청서에 의해 작업내용이 확정되면, 이에 근거해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킨다. 전담직원은 육묘의 생산과 공급내역을 업무추진일지에 기록한다.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 농협에서 이양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협에서는 농협 이외 제3자에 작업을 의뢰한다. 이 때 작업료는 농협이 의뢰자로부터 징수, 작업자에 전달하게 된다. 농작업료는 선불제이다. 다른 농기계은행사업추진 지역 농협과는 전혀 다른 작업료 수취방법이다. 즉 육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따라서 작업료 미수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없다.

<표 4-16> 농작업 수수료 수준(세도농협)

작업내용	단위: 원/평		
	농기계은행(A)	일반인(B)	A-B
육 묘	135	145	△10
이 양	80	80	0

육묘작업(종자대 포함)의 경우 농작업료는 일반 농기계 임작업인들에 비해 평당 10원이 저렴한 135원이다. 그러나 이양의 경우는 80원/평으로 동일한데, 이것은 작업의뢰자로부터 받은 80원/평을 전액 제3의 작업자에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즉 벼의 이양작업은 농협에서 중개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작업의 중개과정에서 농협의 수수료는 없다. 품종에 따른 육묘대와 포장조건에 따른 이양작업료의 차이도 없다. 비록 이양 조건이 열악한 포장이라 하더라도

도, 그리고 농협에서 이양작업을 한다면 모두 평당 80원씩이다.

2003년도 세도농협 농기계은행의 육묘 실적은 185농가 387,230평이었다. 이양 중개실적은 23농가 52,720평이었다. 이와 같은 실적을 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조합원 농민들은 농번기때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조합의 경영 측면에서는 결코 유효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더 중요한 대농민 지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농기계은행사업이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도농협의 농기계은행 운영을 통해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부적농협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벼의 육묘작업이 중심이 되며, 후속의 이양작업을 농협에서 중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작업은 연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진도 위탁하는 농민도 편리한 것이다. 특히 자체 보유 이양기는 중개한 이양작업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예약작업 미수행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있었다.

둘째 다른 농기계은행과 달리 육묘 작업료를 선불로 수취하고 있었다. 육묘의 경우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일정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미리 선취하는 것이다. 나중에 비용지불을 꺼릴 경우 수취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운영에 관련된 각종제도, 규정들이 대단히 간소화되었다는 것은 그밖의 농기계은행과 유사하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경영수지의 적자가 누적될 경우 농기계은행사업의 전도가 그리 밝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7) 충북 진천 진천농협

진천농협도 전북 익산 용안농협과 같은 형태의 농기계은행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4년부터 농기계은행 업무를 개시한 진천농협의 사업시작의 배경은 다른 농협과 비슷하다. 조합원 농민들에 대한 편익제고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다. 초창기에 이들은 전

담 기술자까지를 두면서 적극적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였다. 한때는 콤바인이 7대 트랙터 1대 등 10여종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보유하고 농민들의 농작업수요에 대응하였다고 한다. 직접 농작업을 수탁하여 수행하는 직영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한 경영적자,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결국 보유 농기계를 장기임대해주는 선에서, 그리고 임대기간이 2002년에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농기계은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다. 물론 일부 작업기가 농가에 무료로 임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기계은행사업의 명맥은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7대의 콤바인 가운데 3대는 이미 노후하여 사용하지 않아 농기구서비스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며, 나머지 4대는 2002년 12월 31일자로 장기임대가 종료되어 장기임차인에게 양도한 상태라고 한다. 트랙터는 2000년 3월에 내용년수가 지났으나 사용이 가능하여 2년여 연간 50만원씩 받고 벼작목반에 임대하였으나 이것 역시 작년 말에 양도하였다고 한다. 파이프성형기는 시설농업이 많은 2개 부락 작목반장에, 파쇄기는 과수작목반장에 무상임대하여 주변 조합원들이 이용토록하고 있다. 무상임대 작업기의 고장, 수리시에는 해당 작목반에서 공동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농기계임대계약서 내에서 눈에 띄는 특이점은 장기임대라는 점이다. 콤바인(HL5050)의 경우 임대기간이 1998~2000년 말까지 되어 있다. 이것은 전북 익산 용안조합의 1년과 다른 것이다. 임대금액은 시가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의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있었다. 일시 선불인 셈이다.

둘째, 임차인에게 임대한 콤바인을 수탁 농작업을 수행할 경우 평균보다 5%할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관리자인 농협에서는 비록 농기계를 임대했기 때문에 농작업 수행에 대한 관리가 어렵지만, 일부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만을 사전에 고려한 조치로 사료된다.

셋째,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한 일정한 규칙, 위원회, 사업 추진 전의 수요조사, 서류양식 등은 역시 불필요하다고 한다. “농기계임대계약서” 하나면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 관리인력 역시 불필요하다고 한다. 임대 농기계의 모든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 있기 때문이다. 관리차원에서 담당과장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진천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을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은행 업무는 단순히 중개, 알선업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농협의 자체적인 경영부담이 발생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적자를 메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 8) 충북 괴산 증평농협

1998년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괴산 증평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대단히 독특하다. 일정한 작업료 징수를 통한 농협직원 혹은 고용운전자에 의한 농작업 수탁수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의 장·단기임대도 아니다.

무상에 의한 농작업 대행과 하루, 반나절 등 초단기 임대가 있을 뿐이다. 농기계 임대인 경우도 극히 제한적이다. 예컨대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경우는 대부분 농기계의 고장으로 농작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농가에 대해 수리가 끝날 때까지 빌려주는 형태이며, 역시 임대료는 없다고 한다.

농작업 대행도 신청을 한다고 모두 응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제3자가 봐도 그야말로 농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의 조합원에 대해 일부 농작업을 대행해 줄 뿐이다. 물론 농작업 수수료는 없다. 농기계은행 담당자의 예에 의하면 갑자기 경영주가 사고로 인해 도저히 농사가 어려운 경우에 농협직원이 농기계를 가지고 포장에 나가 작업을 해 준다고 한다.

현재 증평농협에는 트랙터와 콤바인이 각각 1대씩 있으며, 농기계수리 서비스센터에 종사하는 2명의 수리기사들이 이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어떤 규정이나 별도의 지원조직, 절차 등이 불필요하다. 아울러 특별히 회계에 의해 관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당초부터 위와 같은 용도와 내용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경영

의 적자가 있다고 해도 그리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 양기에 대한 요구가 있어 승용이양기를 2대 정도 구입하려한다고 한다. 사용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조합원에 대한 하나의 환원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달리 조직도 필요가 없으며 농기구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증평농협에서는 위와 같은 모습의 농기계은행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한다.

## 다. 농기계운영 유형과 특징

### 1) 농작업대행 중심

농기계은행 사업의 경우 단순한 농작업의 알선을 제외한 농작업대행과 농기계임대를 중심으로 사업의 유형을 정리하여 보았다. 특히 농협의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평등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는 농기계임대보다는 농작업 대행에 농기계사업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먼저 농작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4-4>와 같다.

#### (1) 형태

이 형태는 전남 장성 황룡농협, 충남 논산 부적농협의 경우이다. 농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벼 육묘사업을 수행하는 충남 논산 세도농협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농기계은행의 초창기 운영 형태가 바로 (I)의 형태이다. 상대적으로는 저렴하지만 농작업 수행에 따른 작업료를 수취하는 유상이면서, 농기계은행의 관리와 농기계 운전, 작업수행 등의 모든 운영관리업무를 농협 자체 내의 인력과 시설로 수행해 나가는 형태이다. 이러한 농기계은행의 모습은 대개 적극적으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농민들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농기계은행사업의 경영수지적자가 다른 형태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자체 인력과 시설, 특히 농기계수리센터와 관련 내부지원과의 통합적, 협력적 운영을 통해 의외로 경영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수지의 개선은 농기계은행사업이 지속되는 한 영원한 문제가 될 것이다.

#### (11) 형태

이 형태는 전남 영광 백수농협, 전북 고창 고수농협의 경우이다. 전북 익산 용안농협의 경우에도 직전에 이와 같은 형태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였었다. 많은 농기계은행들이 초창기에는 (I)의 형태를 취하다가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택하게 되는 형태 중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작업료를 수취하는 유상이라는 면에서는 (I)과 같지만 농기계의 운전자를 외부에서 구하여 임시로 고용한다는 점에서 농협 자체 내의 인력으로 꾸려나가는 (I)과는 다르다. 물론 농작업의 신청내용 정리, 작업료 징수 등의 관리업무는 농협직원이 직접 한다. 이러한 형태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농협,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도 상호 통합적인 운영이 어려운 조합 등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보인다. 만약 지속적인 경영의 적자와 관리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전북 익산 용안농협과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의 중심이 옮겨진 후 종국에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북 고창 고수농협이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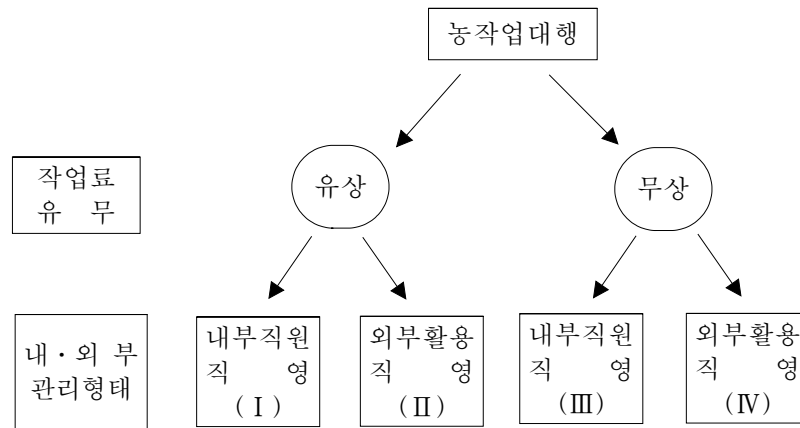
#### (111) 형태

무상에 의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충북 괴산 증평농협의 경우만이 눈에 띈다. 무상이고 농협자체 내부직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운용되는 것이다. (I), (II) 형태에 비해 훨씬 많은 농기계은행사업의 적자를 흔쾌히 감내하지 못하는 한, 농기계은행의 한 사업으로 지속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 (IV) 형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림 4-4> 농작업 대행의 유형



## 2) 농기계임대 중심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분명 농기계은행 사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업이지만 지역 농협에서는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저렴하게 임대 받은 사람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얼마의 임대료를 받는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 사업의 하나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었다.

### (A), (B)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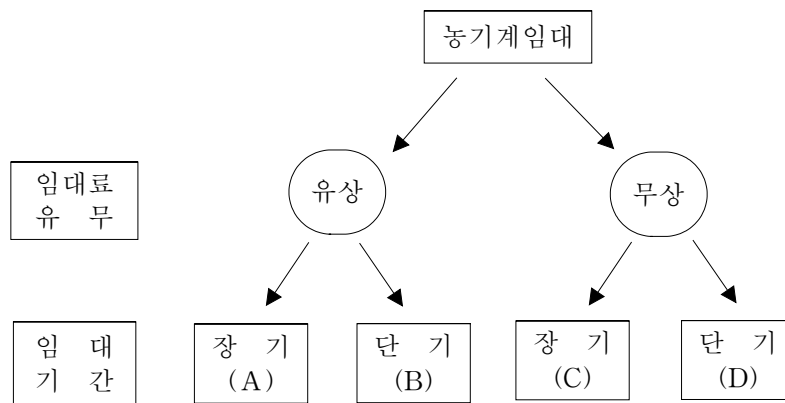
앞의 분석에서 보듯 처음부터 모든 농기계은행사업을 시작했던 지역 농협에서 농기계를 임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대행의 어려움을 과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다.

(A)의 형태는 충북 진천 진천농협이 여기에 해당한다. (B)의 형태는 전북 익산 용안농협의 경우이다. 그러나 단기임대(전북 익산 용안농협)라 하더라도 특별한 임대차인간의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농기계의 내용년수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임대(충북 진천 진천농협)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속성이 같다는 것이다. 그야물론 계약의 조건은 지역농협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농기계은행사업의 주력기종을 장·단기 임대하는 농협의 경우 대부분, 특별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농기계 내용년수 종료후 농기계

은행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운영과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의 경우 일부 임차인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진천농협의 농기계임대계약 조건에 일반인에 의한 농작업료에 비해 농기계은행의 임대료에 의한 농기계로 농작업을 수행할 경우 5% 정도 저렴해야한다는 규정이 이를 말해 준다. 농협의 사업은 농민 조합원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한다는 의식이 운영자들의 의식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림 4-5> 농기계 임대 유형



**(C), (D) 형태**

대부분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는 농협들은 보유한 작업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는 대부분 농작업기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농기계은행사업의 주력내용과 연관된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것이냐는 별도의 문제이다.

전남 영광 백수농협, 충남 논산 부적농협, 충북 진천 진천농협 등에서는 각종 작업기를 마을 단위 혹은 작목반 단위로 무상 임대해 주고 있다. 물론 임대받은 작업기는 주변의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다.

특별한 경우는, 충남 논산 부적농협의 경우 농작업 대행과 관련하여 농작

업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대신 무상임대받은 농작업자는 농협에서 원하는 사람의 작업(복토)을 일반인들에 비해 약간 저렴하게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농작업기를 임대하고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와 달리 주력작업과 연계된 작업기의 무상임대, 작업연계라는 대단히 바람직한 운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력 농기계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아직까지 눈에 뜨지 않고 있다.

### 3) 농기계 운영형태의 변화

전체적으로 볼 때, 농기계운영 형태는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변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람직한 모습으로의 변화와는 다르다.

수많은 경우 수를 역사적으로 정밀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림 4-6>과 같이 시간의 변화와 함께 농기계은행의 사업내용 모습도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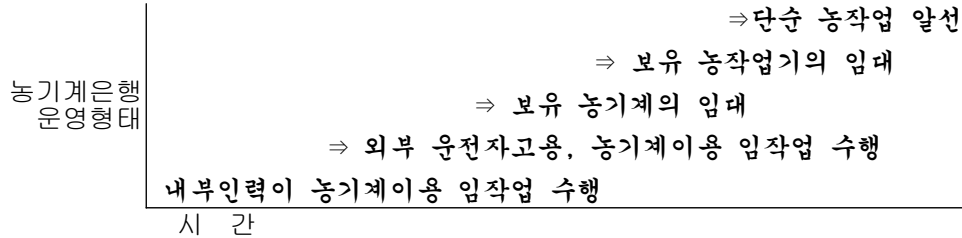
처음에는 대부분의 농협에서 농작업을 농협내부 직원들에 의행 직영하는 형태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은행의 경영상, 관리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일부는 외부 운전자를 고용한 농작업직영의 형태(전남 영광 백수농협)로, 일부는 보유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형태(충북 진천 진천농협)로 변화한다. 일부에서는 외부인 고용의 직영 형태로 갔다가 다시 농기계를 임대하는 형태로 순차로 변하기도 한다(전북 익산 용안농협).

이러한 운영 역시 여러 가지 지역 농협이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줄 경우, 결국 보유 농기계를 처분하고 단순히 농작업기 정도를 빌려주는 모습으로 변하고(충북 진천 진천농협과 전북 익산 용안농협), 중국에는 형식적인 농기계사업, 즉 농작업알선으로 사업의 내용을 꾸리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단계에 이른 농기계은행은 외부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농기계은행사업은 하나마나인 것이다<sup>51)</sup>. 독일과 일본의 모습을 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

51) 이러한 현상은 농기계은행 지역조사의 개요에서도 밝혔듯이 현실적인 것이며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지역농협들은 바로 직전에는 대부분 작업알선정도를 수행했었다고 응답을 하고 있음.

<그림 4-6> 농기계 은행 운영 형태의 변화



## 4.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농민반응 조사

### 가. 조사 개요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108개의 지역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농기계은행 사업이 해당지역의 농민들에게 얼마나 인식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 농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향후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

따라서 농기계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보고된 108개 지역농협과 비교적 접촉인 많은 마을 영농회장을 중심으로 전화와 현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조사대상 627명 가운데 마을 영농회장이 약 500여명이며, 나머지 130여명은 농기계은행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일반 농민들이다. 그런데 이들 두 집단간에 응답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농민들의 지역별 분포와 연령별 분포는 아래의 <표4-17>, <표4-18>에서와 같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지역별 분포가 편기되어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응답기피이다. 여기에 농기계은행 실태 조사 시 해당 지역내 농민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은행에 대한 지역별 농민들의 편향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적 요소가 농기계은행 사업의 내용과 연관되고, 그것이

다시 농민들의 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서 결국 전체적인 경향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17> 조사대상자들의 도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응답자	64 (10.2)	93 (14.8)	20 (3.2)	8 (1.3)	117 (18.7)	99 (15.8)	27 (4.3)	120 (19.1)	79 (12.6)	627 (100.0)

주) 경기도에는 인천 포함.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50대의 비율이 68.1%로 역시 우리 농촌의 중핵적인 농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농회장이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농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적어도 농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대적으로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조사집단이다. 사실 영농회란 농협의 조합원들 조직이며 이들은 농협의 업무를 협조적으로 참여하면서 일정한 수당을 받는 비교적 선도적인 농민들이다. 한마디로 농협에서 이뤄지는 정책차원의 큰 사업을 대부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표 4-18> 조사대상 영농회장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응답자	14 (2.2)	179 (28.5)	248 (39.6)	161 (25.7)	25 (4.0)	627 (100.0)

## 나. 주요 조사결과

가정 먼저 피조사 농민들이 관내 지역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은행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상당한 수의 농민들이 농기계은행의 존재정도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4.1%에 지나지 않았다<표4-19>.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88명, 45.9%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지역농협에서 형식적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농기계은행 사업이 실질



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홍보나 그 결과의 설명 등의 조치들이 부족하였고, 자연 농기계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협관내 농민들이 모를 수 있다는 추론이다<sup>52)</sup>.

<표 4-19> 농기계사업 인지여부

			단위: 명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응답자	339 (54.1)	288 (45.9)	627 (100.0)

소속된 지역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총 339명의 농민들 가운데 실제 농기계은행사업을 이용한 경우는 총 49명, 14.5%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인 85.8%, 290명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표4-20>. 전체 응답자 수에서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7.8%에 불과한 셈이다. 현재 농기계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지역농협이 100여 곳을 넘고 있지만 농촌 현장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농기계은행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지역농협이 위치한 주변 정도의, 농협 농기계수리센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표 4-20> 농기계사업 경험 여부

			단위: 명
구 분	경험해 봤다	경험 못했다	계
응답자	49 (14.5)	290 (85.8)	339 (100.0)

농기계은행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극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290명 가운데 농협 농기계은행에서 활용하는 농기계를 자신이 갖고 있어서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가 174명, 60.0%를 차지하고 있었다<표4-21>. 소형 작업기인 비료살포기, 석회 살포기 등을 굳이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등의 기타 의견이

52)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은 앞의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지역 농협의 조사개요에서도 밝혔듯이 실질적으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수는 대외 발표숫자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에 근거함.

31.7%에 이른다. 결국 농기계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특별히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아니고 주위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한 것들이며, 따라서 굳이 농기계은행의 농기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표 4-21>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자기 농기계 보유해서	실제 이용할 농기계가 없어서	신정절차, 이용자 선정 불공평	기 타	계
응답자	174 (60.0)	15 (5.2)	9 (3.1)	92 (31.7)	290 (100.0)

농기계의 임대 뿐만 아니라 농작업 수위탁 중개나 농작업 대행 역시 주위에서 농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굳이 농기계은행을 이용할 유인이 작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농기계은행은 농업 경영구조개선이랄지, 생산비의 절감과 같은 목적을 현장에서 실현시키기에는 역부족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표 4-22> 경험한 농기계임대사업 형태 및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농작업 중개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계
만 족	3(50.0)	12(80.0)	20(71.4)	35(71.4)
불만족	3(50.0)	3(20.0)	8(28.6)	14(28.6)
계	6(12.3)	15(30.6)	28(57.1)	49(100.0)

농기계은행제도를 알고 있고 농기계은행사업을 이용해 본 사람들의 농기계 은행사업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다<표4-22>.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서 지역농협의 농기계임대나 농작업 수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표4-23>. 직접 농기계조작이 어려운 경우 농작업의 대행, 고가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 대행은 수혜농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밖에는 없다. 더욱이 농작업의 중개는 대부분 무료이고, 소형 농기계나 작업기 역시 무료일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대행시에도 일반 농기계 임작업자에 비해 20~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농기계임대의 경우에

도 일반적인 농기계임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농기계구입시 혜택을 받은 구입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삭감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작업 조건이 열악한 포장에 대한 저렴한 작업료에 의한 작업수행에 해당 농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4-23> 농기계임대사업 유형별 만족 이유

		단위: 명
구 분		계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자신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서		20(57.1)
노령화 등 직접 농기계 작업할 수 없는데 대신 농기계작업을 해주어서		6(17.1)
필요하지만 사용기간 짧아 구입 못하는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서		4(11.5)
기	타	5(14.3)
계		35(100.0)

농기계은행사업을 이용한 49명 가운데 14명이 불만을 표출하였다. 가장 큰 불만은 당연히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이 제공하리라 여겼던, 위의 만족 요인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표4-24>.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즉시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불만의 57.2%인 것이다. 특히 임대 농기계는 사용중에 고장이 잦다는 것이 불만의 가장 큰, 불만족 이용농민 8명 중 5명의 불만이유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고장의 처치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조건에 비취볼 때, 어찌면 이것은 이유가 아닌 자신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결과에 대한 불만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불만들은 사소한 것으로 농기계은행을 이용한 경우 만족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4> 농기계임대사업 유형별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 분		계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등 농기계 적기 이용이 어려워서		8(57.2)
사용 중 고장이 잦아서		5(35.7)
기	타	1(7.1)
계		14(100.0)

농기계은행 사업의 이용에 만족을 표한 사람들의 대부분(83.7)이 가능하다면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유는 앞의 만족

이유와는 조금 다르다. 실질적으로 농작업료와 농기계임대료가 일부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다수이다<표4-25>. 아울러 필요농기계의 가격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가지지 못한 농기계를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농기계은행사업을 이용한 대다수 농민들은 농기계은행사업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저렴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대부분 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용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8명의 이유는 앞의 농기계은행사업 이용시의 불만 요인과 같다.

<표 4-25> 농기계임대사업 경험자중 계속 이용하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계
	이용수수료가 싸서	18(43.9)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자신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서	16(39.0)
	필요하지만 사용기간 짧아 구입 못하는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서	5(12.2)
	기 타	2(4.9)
	계	41(100.0)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을 모르는 288명에 대해 농기계은행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난 후 그러한 농기계은행사업이 응답자의 지역농협에서 전개될 경우 이용할 의사를 물어 보았다.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5.1%이었다. 나머지 64.9%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표4-26>.

<표 4-26> 농기계 은행사업을 모르는 경우 이용할 의사 유무

				단위: 명
구 분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계	
응답자	101(35.1)	187(64.9)	288(100.0)	

농기계은행사업에 불참의견을 제시한 그들은 왜 이러한 사업에 부정적인가. 그 원인은 그들의 응답 속에 있었다.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기계는 대부분 자신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50.8%로 가장 큰 이유였다<표4-27>.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용가능한데 번거롭게 굳이 지역농협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26.2%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것도 있지만 농업경

영의 지속에 대한 고민의 결과도 농기계은행사업의 불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농기계은행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

<표 4-27> 농기계 은행사업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자신의 성격·정서상	자기 농기계 보유해서	휴경,농업포기 생각 등	주변이용가능, 번거스러움	계
응답자	30 (16.0)	92 (50.8)	16 (8.6)	49 (26.2)	187 (100.0)

<표 4-28> 농기계은행 사업중 이용 희망사업

단위: 명

구 분	중개사업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계
응답자	4 (4.0)	51 (50.5)	46 (45.5)	101 (100.0)

농기계은행사업을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이유는 앞에서 분석한 농기계임대사업 경험자들의 계속 참여 의사와 거의 같다<표4-25참조>.

그런데 향후 농기계은행 사업이 중요시해야 할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농기계은행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물어 보았다.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역시 농작업 대행이고 다음으로는 농기계의 임대이다<표4-28>. 농민 자신소유와 같은 효과의 농기계 임차에 관심이 작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농작업 중개는 그리 큰 관심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농기계은행에 대한 인지와 추후이용 등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으로 볼 때 농기계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래 수요자의 수효는 총 244명 정도<sup>53)</sup>로 추정되어 조사대상 농민의 38.9%에 이르고 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농촌에는 지역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에 대한 잠재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인다.

둘째, 이와 같은 잠재적인 수요는 농기계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53) 농기계은행 경험자중 계속이용 희망 41명, 미경험자중 102명(모르는 경우 이용의사 비율 35.1%적용), 모르는 경우 이용희망 농민 101명을 합한 숫자임.

대한 수수료가 주변의 그것에 비해 저렴하고, 아울러 적기이용이라는 장점이 동반될 때 선호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작업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포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특별히 필요한 농기계와 농작업이 제공될 때 보다 선호될 수 있다.

셋째, 농기계 이용 경험자 49명 가운데 8명이 계속적인 참여포기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은행사업을 모르던, 그러나 설명에 의해 인지한 사람들의 187여 명(290명 가운데 64.5%)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대개가 자신들이 보유한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이기 때문이고, 나아가 소형기종과 작업기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당분간 사업의 확대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추후 농기계은행사업을 전개할 경우 농작업의 대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물론 농민들이 농기계임차수요가 많지만 지역 농협의 성격상 다수의 조합원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측면에서 농기계의 임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의 수요패턴과는 달리 지역 농협에서는 중개사업,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의 사업자와 사업을 이용하는 수요농민 사이에 사업선호가 정 반대이다. 성공을 위해 외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 5. 문제와 개선방안

### 가. 문제

1990년대 초반 부터 전국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농기계은행사업은 그 운영실적과 효과의 크기를 떠나 우리나라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내외부에 그 경과를 발표하고, 매년 사업의 결과를 시행 조합별로 평가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농

기계은행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의 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밝혀졌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도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농기계은행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발표에 근거할 경우, 비록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농협의 수는 늘고 있지만 개소당 사업실적과 보유 농기계 대수는 줄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조사한 농기계은행사업 추진 지역농협은 80여 개, 그리고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기 어려운 50여 개 지역농협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0여 개 지역농협에서만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의 내용은 보유농기계와 자체 내 인력을 이용한 농작업 직영에서 외부인력에 의한 직영, 농기계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작업기의 무상 임대와 농작업 알선의 순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많은 지역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인한 경영적자,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사업내용을 가벼운 방향으로, 농민들은 별로 혜택이 없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히 이 연구의 중요 주제와 관련하여 농기계은행사업으로 농기계임대를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합의 경우 많은 농민 조합원에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는 당위성에 기인하며, 자칫 일부 농민에 대한 특혜시비는 조합의 임원진이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흐름상 농기계의 임대는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대행과 농작업 알선 사이의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넷째, 일부 지역 농협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농기계은행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농협의 임원진과 이사회에서 비록 경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농기계은행사업을 지속해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외의 농협에서는 머지않아 농기계은행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영의 어려움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른다면 당연히 농기계은행사업은 지속될 것이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협 관내 농민들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그리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첫째, 실질적인 농기계은행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울러 교육과 홍보 등의 미흡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농민들은 관내 지역 농협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을 모르고 있었다.

둘째, 농기계은행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농민들도 86%정도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농기계에 의한 작업이 농기계은행의 사업내용이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농협과 자기 포장과의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은행사업의 이용자들의 71%는 만족과 함께 지속적인 이용을 희망하고(85%) 있었다.

셋째, 농기계은행사업을 모르는 농민들의 35%만이 추후 기회가 되면 이용하겠다고 하여 결코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수요가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비참여 이유가 자기 스스로 농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 51%에 이르고, 농협이외에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업내용을 이용할 수 있고 아울러 번거롭다는 응답이 26% 이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농기계은행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이러한 문제와 희망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농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농작업 대행(51%)과 농기계 임대(46%)에 있어서, 이 두 주체간의 사업에 대한 선호조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즉 둘간의 선호도를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수요는 우리 농촌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민의 입장에서 제3자에 의한 농작업대행도 좋지만 자신의 농기계처럼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 역시 선호의 대상이었다.

## 나. 개선 방안

농협 농기계은행의 앞날은 어떠할까. 농기계은행사업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관련된 주체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일단 농기계은행사업에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나의 농기계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인식하에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



서는 우리나라 농기계이용효율화라는 측면과 농민의 입장, 나아가 조합원들에게 가능하면 평균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첫번째로 지역 농협관내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수혜 대상 혹은 사업 분야를 한정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농영경영에 애로를 갖고 있는 노령, 여성경영자에 우선하고, 작업구역은 작업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포장을 우선하며, 나아가 작업내용은 지역에서 가장 노동경합이 큰 시기의 지역 내 특별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대부분 농기계은행사업을 꾸려가는 조합의 사업목적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어려운 포장작업에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나아가 전남지역과 충남 논산 부적농협의 보리수확, 부여 세도농협의 벼육묘사업 등은 적절한 사업의 선택 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일부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처럼 농기계은행사업의 주력은 농작업대행에 두고, 운영은 조합 자체 내 직원에 의해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수리센터와의 인적, 물적 통합이 없이는 효율적인 농기계은행사업은 어렵다. 농기계 운전자의 내부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외부 운전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서의 전남 영광 백수농협과 전북 고창 고수농협과 달리 또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유농기계를 거점식으로 관내에 배치하고, 해당 농기계를 운전할 운전자를 그 지역에서 확보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수탁한 농작업을 대행토록하는 것이다. 작업의 결과는 농협직원에 의해 확인되고 일고 혹은 실적급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홍보를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점이다. 물론 농기계의 수리와 관리를 농협에서 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세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은 지역농협에서 꺼리고 있지만 농작업 수탁의 활성화라는 연장선에서 일관작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농기계은행사업의 주는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sup>54)</sup>. 지역농협에서 꺼리고 있기

5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특히 2003년부터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목적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한 경영구조개선의 한 방법으로 볼 경우 동일 사업주체내 이질의 사업 추진이라는 문제가

때문이다. 예컨대 육묘작업을 대행 할 경우, 이앙기를 확보, 임대해 준다면, 보리파종기와 복토기를 확보, 임대해 주고 보리수확작업을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서도 농작업 대행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두 번째의 개선방안에서 제시하였듯이 보유농기계를 거점식으로 관내에 임대 배치하고, 해당 농기계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수탁 농작업을 수행토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작업료와 임대료의 수준이 적정한 선에서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농작업의 대상과 내용을 사전에 작업료 수준과 함께 임차인에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농작업의 중개는 부수적인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일정한 품목의 연속작업의 경우 해당 농기계은행에서 모든 작업을 일괄 지원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본다. 예컨대 충남 부여 세도농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묘사업과 이앙사업의 연계 과정에서 육묘는 조합에서 이앙은 농협에 의한 중개사업으로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리 수확후 건조작업의 중개와 같은 경우도 유용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의 유용성은 농민들의 농기계은행에 대한 실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농촌에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잠재수요가 있고, 특히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임대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나아가 현재 잠재 수요농민들이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보유한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추가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농작업을 위탁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수의 농민들은 농기계은행사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현지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사업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배반된 선호내용을 충족하여 접근될 수 있도록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복잡한 관리요령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제시된 농협중앙회의 관리요령은 대대적으로 축소, 현실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농기계구입시 적절한 보조지원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농협에서는 그

---

있기 때문임.

로 인한 경영적자에 대해 대단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체 내 대농민 지원사업 가운데에서도 자꾸 다른 사업에 비해 밀린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농기계 작업대행이든 농기계 임대든 원천적으로 고정자산비용의 감소만이 지속적인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일부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영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농기계은행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위의 기본적인 개선방안과 달리 농기계은행사업을 농기계수리 센터, RPC와 연계하여 운영해야한다는 주장도 일부 농기계은행 담당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RPC 중심의 벼농사생산의 계열화와 농기계의 공동활용, 즉 농작업대행과 농기계임대를 통해 적어도 벼농사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벼농사와 경합되던 다른 품목은 노동부족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농기계수리센터를 통한 농기계은행 보유 농기계에 대한 집중적인 수리, 관리는 관련비용의 절감과 농기계이용효율의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주의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표(제4장)**

<부표 4-1> 2003년 7월 농기계은행(MR) 사업 현지확인 대상

구 분	사 업 유 형	보유농기계	MR사업 추진		비 고	
			여부	사 유		
충북	진천진천	임대(97중양지원)	콤5, 트1	여	200평/25천원	일반 200평/30천원
	괴산증평	위탁중계, 대행	콤1, 트1	여	기 장 · 수 수 료 없음	
	충주주덕	농작업대행	콤1, 트1, 보행이2	여	일반보다 3천원 싸게 받음	
충남	금산금산	대행	콤8	여	15포당1포 수수료	임대시 기계 고장 등으로 안함
	논산부적	위탁중계, 대행	크콤4,살1,복1	여	부속기무상임대	기사2명, 1일100천원
	부여세도	위탁중계, 대행	트2,이2,육묘장	여	육묘이양 215/평	일반250원, 인건비등 적자
전북	익산용안	임대	트2, 이2	여	1년씩장기임대	관리용이
	고창고수	대행	크콤1	여		100원/평
	장수장수	대행	크콤1	여	200평/36천원	지역특색실익사업(중,지,농)
전남	장성황룡	대행	크콤3,콤1,트2	여		
	영광백수	대행	크콤1	여	200평/25천원	일반30천원
	목포압해	대행	크콤1,콤1,트1	여	신안군50%보조	평당 일반220원/농협200, 225/200, 200/150
	영암영암	대행	크콤1,살2	여	200평/25천원	
경북	영덕창수	위탁중계, 임대	트1,이3,중고농기계	여	이, 장기임대(1일5만원)	트 임대1일/7만원
경남	고성고성	농작업대행	트4,이4,콤4	여	전담1,인부2,기사2	경운50, 정지140, 이양110원
	통영도산	대행	콤2,이1,트2	여	콤 평/200원	이,트 평/100원

## 제 5 장

###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중앙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화시대 나타난 하나의 색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회성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 협력사업이다. 따라서 참여 조직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이며, 이러한 면에서 과거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사업과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 점차 확대일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업기계화에 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태와 문제,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의한 농기계임대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임대사업의 운영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 1. 조사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 농기계 담당자와 10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농기계 담당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남·북의 경우 도단위 농기계에 관련된 담당자와는 전화조사만을 실시하였다. 도와 시·군 사이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연계고리가 없으며, 따라서 현지조사가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충북의 3개소(음성군, 청주시, 영동군), 충남의 1개소(아산시) 농업기술센터내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현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나 e-메일을 통해

획득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내용과 운영현황, 운영성과 및 문제점이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조사 시기는 2003년 3월~7월이었다.

## 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개요

### 가. 임대사업 주체수

현재 전국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총 14개소이다<sup>55)</sup><표5-1>.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경기도 10개소, 충청북도 3개소, 충청남도 1개소이다.

경기도내 10개소 가운데 고양시와 파주시를 제외한 8개소는 모두 시·군의 농림과<sup>56)</sup>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천군과 가평군이 2003년에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2003년도부터 추가적인 사업을 포기하고 과거에 조성한 사업만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파주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표 5-1> 농기계 임대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이

시 작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지방자치단체 수	1	2	4	4	1	2	14

충북·충남 지역의 4개소는 모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를 관장, 추진하고 있다.

55) 경기도의 남양주시, 강화군 등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 판단함.

56)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과의 명칭은 다르지만 농업과 농기계에 관련된 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나. 임대사업 추진 배경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방 조례를 만들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충북 음성군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작업대행이 포함된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농기계 임대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획(안)은 군수에게 보고되었고, 내용에 대해 검토를 완료한 당시의 군수는 사업추진을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표 5-2>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시년도 및 추진배경

구 분	실시 년도	실시 방식	추진 배경
경기도	1999~	하향식	농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50%)가 없어지고, 농기계 구입시 구입자금 융자로 정부의 사업방향이 전환되자 광역지방단체의 장의 발의에 의해 새로운 지원대책으로 실시
충청북도	1998~	상향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업기술센터내의 훈련용 농기계를 이용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군수에게 제안하면서 실시
충청남도	2001~	하향식	시장 지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들 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추진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sup>57)</sup>. 대부분의 실시 지역에서는 농업경영비와 농기계 구입비용을 감소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이는 것을 1차 사업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충청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나의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수단으로, 나아가 농업경영의 구조개선을 이루는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1차적인 목표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업추진 주체들의 바람인 것은 틀림이 없다.

57) 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목표는 뒤 해당 절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발상과 실천이 경기도는 도차원에서 이뤄지고 시·군에 협조를 의뢰하여 실시한 하향식이었다면, 충청도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에게 건의하여 사업으로 채택, 시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상향식이라 말할 수 있다<표5-2>. 경기도의 경우, 사업주체로는 역시 대부분 시·군의 담당부서가, 충청도에서는 4군데 모두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다.

#### 다. 사업의 재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실시지역마다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의 재원이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예산 요청시 투입할 추가경정 예산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표5-3>. 경기도 내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시·군의 경우, 도에서 편성된 본 예산과 시·군 일반회계 예산을 더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한 사업소 당 2억원의 본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게 예산을 할당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신청을 모두 받고 있다. 일단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던 시·군이라 하더라도 시·군내 일부지역에서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관할 타 지역을 위해 매년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 지역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은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 다음 새로이 신청을 받은 다른 지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전 지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기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먼저 충청북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이 없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농기계 임대



사업에 이용되는 농기계가 100%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용 농기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충청남도 역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으며 아산시에서 예산을 출연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 3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의 재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서 조달된 자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충청남도에서 실시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재원은 시·군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지역 특화작물 등에 대한 농림업무평가 시상비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특수시책 사업비 등이다. 이것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화되어 있는 예산작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에는 시의 자체예산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도의 경우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경기도와 달리 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매년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과 도내 전 지역으로의 확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지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기본 특징

구 분	운영주체	임대사업 재원	임대사업자
경 기 도	시·군청 해당 부서	도 지원금 + 시·군 예산	시장, 군수
충청북도	농업기술센터	시·군 예산	
충청남도	농업기술센터	시 예산	

#### 라. 보유 임대 농기계와 시설

3개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보유대수는 총 1,042대이다<표5-4>. 이것을 기종별로 보면 트랙터 114대, 이앙기 152대, 콤바인 123대이다. 임대 농기계는 고가의 대형 기종과 이용이 많은 기종, 그리고 각 기종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작업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임대 농기계가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동일 농기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미미하다<표5-5>.

<표 5-4> 지역별 임대 농기계 보유대수

단위: 대

구 분	보유 기종				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기타	
경 기 도	105	139	112	416	772
충청북도	8	11	10	157	186
충청남도	1	2	1	78	84

<표 5-5> 지역 내 주요 임대 농기계의 비중

단위: 대, %

구 분	보유 기종			전체 농기계 중 임대 농기계 비율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경 기 도	105/35,555	139/47,988	112/13,929	0.4%
충청북도	8/11,393	11/20,018	10/4,974	0.07%
충청남도	1/26,134	2/52,047	1/12,950	0.007%

주) ( / ) = (임대사업용 농기계보유대수 / 해당도 보유대수)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시설들은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임대 농기계를 수리하는 수리장비와 수리용 부품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용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 대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가 끝난 이후에도 해당 농기계를 임차할 예정인 임대대상자(임차희망자: 공동이용조직 및 개인)들의 개별 창고 및 마을공동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관장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면 보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만을 위한 창고와 부대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농기계 수리장비의 경우, 장비보유 여부와 다과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 농기계의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있고, 개인과 공동이용조직의 임차인들은 임차 농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자기 지역의 농기계대리점이나 수리점, 농협 등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마. 임대사업 운영체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14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자치단체 가운데 순수하게 농기계 임대사업만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3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인 충북 음성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대행을 중심사업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는 부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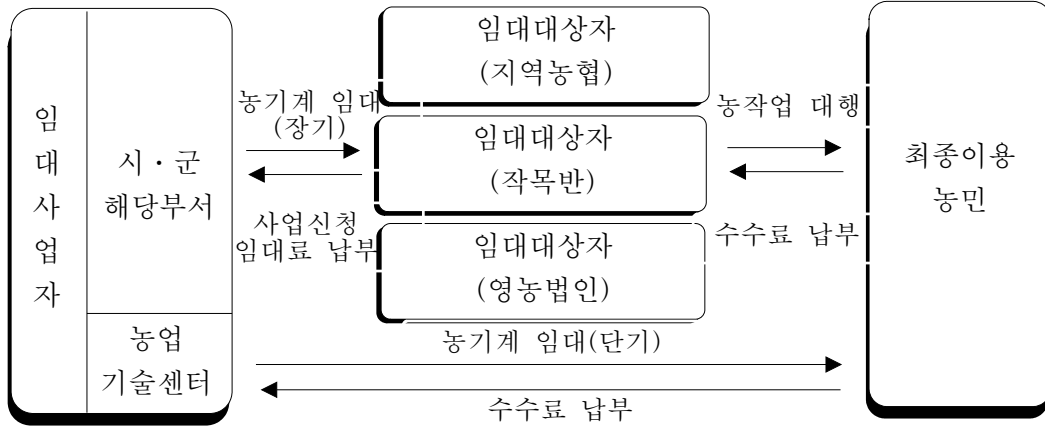
농기계 임대사업의 일반적인 운영체계는 <그림5-1>과 같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된 주체로는 사업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와 사업을 이용하는 주체인 임차인이 있으며 농기계의 최종 이용자인 농민이 있다. 물론 임차인이 바로 농민인 경우가 많다.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시장 및 군수이며, 임대대상자는 보통 개인과 공동이용조직으로 나뉜다. 개인의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용하려면 임대사업자(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임차희망의사를 소정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고, 임대사업자는 신청서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임차인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임대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년도 말기 혹은 해당년도 사업시작 직전에 사업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단기임대나 농작업 대행의 경우에는 봄 농작업(경운, 정지, 이앙 외)에 필요한 경우 3월말까지, 가을 농작업(수확 등)에 필요한 경우는 6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사용 순위가 정해진다. 해당 농기계의 이용시기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농기계의 임대차는 필요시 신청하면 협의, 결정하게 된다.

농기계 임대자와 임차자(사용자)와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농기계 임대차(사용)계약서” 내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사항과 임대차 농기계 및 부속기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물론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포함한 계약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특히 임차 농기계의 고장, 수리, 유지관리 등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명기하고 있다.

<그림 5-1>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체계



### 3. 경기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가. 사업의 목적과 조성규모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농민들의 농기계구입부담의 경감, 농기계이용율의 제고, 나아가 이에 따른 농촌 농기계 임작업료 인상의 억제 등을 통한 농업소득의 증대에 있다 <표5-6>. 그러나 안성시와 여주시의 경우에는 정부의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지원축소에 대응하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에게 농기계를 빌려주자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농가소득의 증대에 있지만 정책추진의 대상이 대농보다는 영세농에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표 5-6>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 비교(경기도)

구 분	사업 추진의 목적
도 시행지침	○농기계 이용을 제고 및 농기계 임작업료 상승억제로 농가소득 증대 ○대형·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대형·고가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 방지 및 농가부채 연결 차단
김포시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와 농가부채의 상 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 ○농가 노동력 절감,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고양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촌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파주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함
양평군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 증 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화성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평택시	○농가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을 제고
안성시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축소 방침으로 영세농 가에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가의 대형 농기계 를 구입, 대여해주기 위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여주군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축소 방침으로 영세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구입, 대여해주기 위해 ○농가 부채 감소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한편 199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2년 말까지 총 8개 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군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장한 곳은 6 개소(평택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이며, 나머지 2개소(고양시와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외청 조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sup>58)</sup>.

1999~2002년 총 8개 시·군에서 시행해온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적은 43개 사업지구<sup>59)</sup>이다<표5-7>. 사업 초창기의 조성실적은 미미하지만 최근에 올수록 조성 개소수의 증가가 뚜렷하다. 전체 사업지구 중 6개 시·군 20개 사업 지구가 2002년에 신설되었고, 2003년 13개소가 추가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58) 관련된 구체적인 아래의 내용은 경기도(농산유통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2002.을 참조해서 작성함.

59) 사업지구란 지역마다 임대 농기계의 운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누어 놓은 개념으로 개별의 공동이용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역마다 사업지구의 명칭은 다름. 지구라 함은 농기계를 임차한 조직을 의미함(작목반, 영농단 외).

있기 때문에 총 사업지구 수는 56개로 늘어나게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차인(지구)의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총사업비는 약 93억원에 이른다. 최근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호응도에 따라 사업비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2002년도의 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당시까지 사업비의 43.0%에 이른다. 2003년도에는 약 44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어 경기도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다.

<표 5-7>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사업량 및 계획(경기도)

단위: 지구, 백만

시군별	추진현황(실적 및 계획)										
	'99~'02		'03계획						총 계		
	사업량	사업비	계		본예산		추경예산		사업량	사업비	
제 1 청	평택시	4	850	2	400	2	400	-	-	6	1,250
	안성시	12	2,650	4	800	2	400	2	400	16	3,450
	여주군	7	1,460	4	800	2	400	2	400	11	2,260
	화성시	6	1,200	4	800	2	400	2	400	10	2,000
	양평군	9	2,000	3	600	1	200	2	400	12	2,600
	김포시	2	400	1	200	1	200	-	-	3	600
	소계	40	8,560	18	3,600	10	2,000	8	1,600	58	12,160
제 2 청	고양시	2	500	-	-	-	-	-	-	2	500
	파주시	1	250	1	200	1	200	-	-	2	450
	연천군	-	-	2	400	2	400	-	-	2	400
	가평군	-	-	1	200	-	-	1	200	1	200
	소계	3	750	4	800	3	600	1	200	7	1,550
계	43	9,310	22	4,400	13	2,600	9	1,800	65	13,710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경기도에서 1999~2002년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결과, 임대 농기계로 활용되고 있는 농기계는 총 772대이다<표5-8>. 이 가운데 소형 기계 및 작업기류가 416대, 이앙기가 139대, 콤바인이 112대, 그리고 트랙터가 105대이다. 최근에 올수록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만 해도 총251대(트랙터 41, 콤바인 45, 이앙기 61, 기타 104)가 지원되었다.

1999년 이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수혜를 입은 농업인의 수는 9,087명으로 한 해 평균 3,030여명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조성지구

와 지원기대수의 확대 등에 의해 수혜농민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의 수혜 농민들은 4,638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5-8> 1999년 ~ 2002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경기도)

단위: 지구, 백만, 대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임대 농기계 기종					임대료 적립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기타	계	
'99~'01	23	5,350	64	67	78	312	521	942
2002	20	3,960	41	45	61	104	251	839
계	43	9,310	105	112	139	416	772	1,781

주) 지구는 시·군의 하위단위로 읍·면을 의미하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음.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 나. 임차주체와 기종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과 달리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한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보면 대부분 일정 조직체에 한정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농협을 위시한 생산자 단체나 조직에게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농기계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기본조건, 즉 개인에 비해 많은 농작업 대상의 경지를 확보해 준다는 의미와 조직내 영세농, 노약자 등의 영농을 우선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농기계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통해 주변 농작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농기계 구입과 운전에 부담이 있는 농가들의 농업경영이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기계화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농업구조개선차원에서 유용한 지원주체의 설정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 병행하여 김포시나 고양시, 양평시, 평택시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혜대상을 개방해 놓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농기계를 1년 이내의 단기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의 대상을 어

느 쪽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희망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두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9>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대상의 비교(경기도, 조사시점기준)

구 분	임차의 주체(사업시행 지원 대상)
도 시행지침	○공동이용이 가능한 조직(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등)을 임대대상자로 하여 임대 ○개별농가는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임대대상자를 통해 사용
김포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그러나, 임대대상자 선정시 공동이용조직인 농업인 단체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음 - 현재 지원된 19개소 가운데 작목반 9개, 영농법인 7개, 개인 3개
고양시	○관내 농, 축협 및 생산자 단체 또는 농가
파주시	○관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기계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
양평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 현재 지원된 87개소 모두 작목반
화성시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농협과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 현재 10개 지구 운영 중
평택시	○평택시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가 - 현재 6개 지구 50개소 운영 중
안성시	○안성시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
여주군	○관내의 지역농협, 영농단 - 영농단: 소규모 농가(1ha미만 농지 소유)가 중심이 된 10인 이상의 농업인 단체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임대 농기계의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관할 구역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한다.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은 자료를 취합한 후, 현지조사 및 관계서류 검토, "농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 시·군에 배정을 통보한다.

배정받은 시·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농기계 임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해당지역 영농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심의를 통해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시·군의 심의 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들을 각자 강구하기 때문이다. 자칫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자가 적을 경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사업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심의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정의 객관성을 높힐 수 있는 객관화된 점수평가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5-10> 임대용 농기계의 선택(경기도)

구 분	임대 시범사업용 농기계의 선택
도 시행지침	○임대사업기종은 내구성이 있어 농가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종중에서 수요자(농가)가 희망하는 기종 및 모델 선택 ○농기계 본체이외에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갖추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구입한 농기계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지 부착
김포시	○기종은 신청인이 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결정(리스에 가까움)
고양시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보관하여 있으면서 신청해 오면 임대해 주는 형식(렌탈에 가까움)
파주시	○지역여건, 내구성, 이용효율성 등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 검토하여 구매 ○본체와 다양한 작업기 - 트랙터, 콩 정선, 선별기, 콩수확기, 이앙기, 부속 작업기
양평군	○기종은 조례에 정해져 있음. - 주 농기계: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 부속 작업기:로타리, 로우더, 쟁기, 보조벼 일으킴 장치 등 ○실질적으로 기종은 신청인(작목반)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그 지역 해당 농기계 보급대수 고려(리스에 가까움)
화성시	○임대기종은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와 부속 작업기로 하되 임대사업자가 희망하는 기종을 추가할 수 있음.
평택시	○기종은 조례에 정해져 있음. - 주 농기계: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 부속 작업기:로타리, 로우더, 쟁기, 보조벼 일으킴 장치 등
안성시	○임대기종은 트랙터, 콤파인, 승용이앙기 등 부속작업기로 함.
여주군	○기종은 조례에 정해져 있음. -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콤파인 및 부속작업기,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목재 파쇄기 및 부속작업기 외 군수가 정하는 기계류 ○기종은 신청인(영농단)이 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결정(리스에 가까움)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경기도의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선택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임차 희망 농기계를 요청받아 가급적이면 신청 농기계를 구입, 임대해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농기계 선택은 리스에 가까우며 김포시, 양평시, 화성시, 여주군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와 달리 조례상에 혹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농기계를 사전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렌탈의 모습에 가까운 이러한 방

법은 고양시, 파주시, 평택시, 안성시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용 농기계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의향이다. 임차 희망자(조직)를 포함한 전체적인 농업기계화에 관련된 상황을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시각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농기계를 선택할 때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구입하려는 기종의 규격과 회사까지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 다. 임대기간

경기도의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 의하면, 임대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경우와 내구년수로 하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1년 단위로 임대기간을 정하는 시·군은 5개 시·군이며, 나머지 3개 시·군은 내구년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기도내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 이상의 중·장기 임대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 1년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임차한 농가나 농민조직이 희망하면 내용년수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농기계의 내용년수만큼을 임대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 바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이다<표5-11>. 이러한 장기임대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행정의 수요를 줄이고 있으며, 임대용 농기계의 사용자에게 해당 농기계의 관리와 수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서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5-12>. 어느 한 조직이나 농민에게 장기적인 수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조직내에서 지도자격이고 후계농인 그들을 통해 농기계구입과 조작 등이 어려운 농가들은 경영이 지원받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장기임대의 경우 계약기간내 계약을 해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표 5-11>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 결정방법(경기도)

구 분	임대기간의 결정기준 방법
도 시행지침	○임대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내구년수까지 연장
김포시	○농기계별 내용년수로 임대(콤바인은 5년, 이앙기, 트랙터 8년)
고양시	○12개월 이내로 되어있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연장 가능. ○단기로 임대하는 경우는 운전은 임차인이 알아서 함(단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전까지 대행해 주고 있음)
파주시	○1년단위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서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기간 연장 가능 - 계약기간 종료후 사용자가 수리기관에서 수리하였다는 증명을 해야만 반납 받음. ○계약기간(1년)이 끝나면 기존 임차인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신청을 받음 (신규자가 있으면 신규자에게 우선권, 공평성의 논리).
양평군	○농기계별 내구년수 이내로 임대(콤바인, 이앙기 5년, 트랙터 8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화성시	○해당 농기계별 내구년수로 임대(콤바인, 이앙기 5년, 트랙터 8년)
평택시	○12개월 이내로 임대.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장 가능 (내구년수:콤바인, 이앙기 5년, 트랙터 8년) ○실제로는 내구년수까지 모두 임대
안성시	○농기계 내용년수로 임대(콤바인, 이앙기 5년, 트랙터 8년)
여주군	○임대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기계의 내구년수 로 임대(트랙터 8년, 경운기 6년, 콤바인, 이앙기 5년) ○내구년수가 지났을때 임대대상자 자체가 매각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임대농기계의 무리한 사용을 막고 있음.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경기도 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와 파주군의 경우 임대기간이 1년 혹은 1년 이내이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몇 일 단위로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어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임대과정에서 관리업무가 증가한다든지, 임대용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이용, 조작하기 때문에 오는 해당 이용면적의 감소, 수리관리 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에도 1년 사용 후, 정확히 말하면 사용시기(이앙기는 이앙시기) 이후 해당 농기계를 회수하여 재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양시와 같은 문제는 남아있다.

농기계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크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표5-12>.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기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기와 장기임대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도 있다. 더욱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대상, 선택 기종에 따라 각기 운영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임대계약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표 5-12> 농기계의 임대기간별 특징

구 분	시·군	특 징
1년 단위	평택,여주,양평,고양,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의 행정수요 증가</li> <li>· 농기계의 무리한 사용과 수리책임문제 가능성 내재</li> <li>· 다수 혜택가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용이</li> <li>· 1년 단위로 실적평가후 대상자 교체 가능</li> <li>· 행정기관 농기계수리·관리의 애로 증가</li> <li>· 농기계임대변경에 따른 농기계 유휴 가능성 내재</li> </ul>
내구년수	안성,김포,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의 행정수요 감소</li> <li>· 임차인 자신의 기계처럼 철저한 유지관리, 수명연장, 수리비 감소가 가능</li> <li>· 자칫 개인소유, 이용이라는 문제 발생소지 내재</li> <li>· 내구년수 경과후 임대 연장 또는 매각 용이</li> <li>· 행정기관 농기계수리·관리의 애로 축소</li> <li>· 농기계임대변경에 따른 농기계 유휴 가능성 없음.</li> </ul>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설문조사 결과

농기계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했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농기계의 집약적, 무리한 이용과 그로 인한 고장빈발, 농기계수명 단축 등과 같은 단점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임차인이 사전적으로 계속해서 임차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이용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내구년수가 경과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농기계를 우선적으로 판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임차인들은 자기 농기계와 같은 생각으로 농기계를 관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내구년수 단위로 임대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인 임대 농기계의 사유화는 임대대상자를 개인이 아닌 지금과 같이 작목반과 같은 공동이용조직으로 한정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라. 임대료

경기도내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지역농협이나 작목반 등에 농기계를 임대할 때 적용하는 임대료의 산정방법은 해당 시·군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그렇다고 계약기간이 1년이나 혹은 내용연수까지냐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다. 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군데에서는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의 몇 %를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 금액을 연차별로 체감식으로 혹은 정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나머지 고양시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작업이 가능한 일수와 작업량 등을 이용하여 농기계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었다.

대개 총 회수 목표금액은 해당 “농기계가격의 몇 %”식으로 결정하는 데 이 비율이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조차 기종에 따라 다를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본 회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양시로 트랙터의 경우 85%, 콤팩트와 이앙기의 경우 45~100%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김포시로 임대농기계 구입가의 80%에 이르며, 양평군이 75%로 뒤를 잇고 있다. 가장 낮은 회수율을 책정한 지역은 안성시와 화성시는 모두 50%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이라는 동일한 사업이 동일한 기종과 규격의 농기계에 적용되었을 경우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마다 농기계임대료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격한 지방자치단체 간 회수율(총 임대료)의 차이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칫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임차조직이나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살 수도 있다. 동일 농기계임대사업 속에서 수혜농민들의 차별적 적용에 따른 불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동일 농기계를 옆의 군에서는 자신의 군에서보다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지금의 수혜수준이 낮다고 말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표 5-13> 농기계 임대료의 결정방법(경기도)

구 분	임대료 결정 방법
도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해당지역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선납을 원칙으로 함</li> <li>○임대대상자의 농작업대행 수수료는 지역 임작업료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ul>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료 목표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li> <li>○임대료는 계약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원칙, 그러나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1월중 수거</li> <li>○현재까지 미납부로 인한 사례는 없으나 조례상 강제회수 조항이 없어서 문제 발생시 처리 곤란(계약시 연대보증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 보완)</li> </ul>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한 목표금액-예를 들어 기대가격의 몇 %-이 없음.</li> <li>○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임대료 결정(체감식)</li> <li>○단기임대의 경우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 적용</li> <li>○임대료는 계약 후 15일 이내 납부가 원칙, 실제로 선납을 받고 있음.</li> <li>- 조례상 강제회수 조항이 없어서 문제 발생시 처리 곤란</li> </ul>
파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조례에 결정되어 있음.</li> <li>○시행규칙에 따르면 납입고지서 발급후 15일 이내에 납부</li> <li>- 납부 영수증 제시후, 즉 임대료 전액 선납후 농기계임대</li> <li>○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사용기간, 수리, 부품비 등을 감안, 임대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li> </ul>
양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의거 구입가격의 75% 회수 목표</li> <li>- 내구년수가 지난후에도 기계의 효율성이 있을 경우 내구년수 마지막 년도의 임대료로 계속 임대</li> <li>○임대료는 선납이 원칙, 아직까지 문제 없음</li> <li>- 강제 징수조항이 없어서 미납부시 처리 곤란</li> </ul>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의거 기대가격의 50% 회수 목표</li> <li>- 내구년수가 지난후에도 기계의 효율성이 있을 경우 내구년수 마지막 년도의 임대료로 계속 임대</li> <li>○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선납이 원칙</li> <li>- 계약시 계약일에 맞춰서 임대료 납부, 현재까지 미납자 없으나 문제발생시 처리 곤란</li> </ul>
평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의거 기대가격의 78%(경운기), 60%(콤바인, 이앙기)를 회수 목표</li> <li>- 내구년수가 지난후에도 기계의 효율성이 있을 경우 내구년수 마지막 년도의 임대료로 계속 임대</li> <li>○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선납이 원칙</li> <li>- 현재까지 미납자 없으나 문제발생시 처리 곤란</li> </ul>
안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의거 기대가격의 50% 회수 목표</li> <li>○농작업 수수료는 조례에 결정되어 있음</li> <li>○적정 임대료(수수료)를 결정 후납 받을 수 있음</li> </ul>
여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의거 구입가격의 60% 회수 목표</li> <li>○농작업 수수료는 조례에 결정되어 있음</li> </ul>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경기도내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보면 <표5-14>와 같다.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지역별

협의회에서 각기 다른 비율<sup>60)</sup>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만 아니라 기종별로는 내 용년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어느 방법이 좋고, 어느 방법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각 지역별로 방법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임대 농기계로부터 회수하는 농기계 임대료의 수준 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내구년수 경과 또는 폐기 시 대체 농기계를 재구입할 수 있는 수준 으로 농기계임대료 수준을 결정했다면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만약 재구입 가능수준 이하로 농기계임대료수준을 결정, 회수했다면 대체 농기계 의 구입자금을 새로 추가해서 지원해야 한다. 아무래도 전자에 비해 사업의 지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임대료를 적립하여 기금화<sup>61)</sup>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현 상이다. 그러나 회수 임대료의 수익 이자율을 10%로 잡고 있는 데 비현실적 이다. 현재 정기예금의 금리도 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장기 임대의 경우 1년차 이후 임대료의 미수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현재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실무 담당자들은 응답하고 있지만 임의 임대용 농기계의 처분,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의 회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과 달리 임차인에게 불가항력적인 계약 해지사유, 예컨대 사망이나 사 고로 인한 부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규정도 대부분 미흡하다. 이 역 시 정비되어야 할 문제이다.

---

60) 회수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회수율을 정한 후 감가상각율 적용을 달리하기 때문 인데, 예컨대 평택의 경우 내구년수까지 매년 10%씩 일정하게 감소시키고 있으나, 여주, 김포, 양평의 경우에는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5 년차 이 후에 그 비율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음. 보통 감가상각률은 관계 전문가 또는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상례임.

61) 모든 시·군(8개)에서는 회수한 농기계 임대료를 적립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안성시 과 양평군에서는 적립된 농기계 임대료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 향후 지속적인 추 진에 대비하고 있음.

<표 5-14> 시·군별, 농기계별 임대료 산정방법(경기도)

시군별	임대료 산출(시·군 조례)		비고 (회수율)
	기계별	산정방법	
평택시	트랙터	기대가격/내구년수 × (1년차 100% ~ 8년차 30%까지 매년 10% 감소)	65%
	콤바인, 이앙기	기대가격/내구년수 × (1년차 80% ~ 5년차 40%까지 매년 10% 감소)	60%
안성시	트랙터	기대가격 × 0.5 × (1년차 16% ~ 9%까지 매년 1% 감소)	50%
	콤바인, 이앙기	기대가격 × 0.5 × (1년차 24% ~ 16%까지 매년 2% 감소)	
김포시	트랙터	기대가격/내구년수 ×(1년차 115% ~ 8년차 30%까지 매년 5~20% 감소)	80%
	콤바인, 이앙기	기대가격/내구년수 ×(1년차 115% ~ 5년차 30%까지 매년 5~35% 감소)	
화성시	트랙터	기대가격×0.5× (1년차 16% ~ 9%까지 매년 1% 감소)	50%
	콤바인, 이앙기	기대가격×0.5× (1년차 24% ~ 16%까지 매년 2% 감소)	
여주군	트랙터	기대가격/내구년수 ×(1년차 85% ~ 8년차 30%까지 매년 5~15% 감소)	60%
	콤바인, 이앙기	기대가격/내구년수 ×(1년차 80% ~ 5년차 40%까지 매년 10% 감소)	
양평군	트랙터	기대가격/내구년수 ×(1년차 115% ~ 8년차 20%까지 매년 10~20% 감소)	75%
	콤바인, 이앙기	기대가격/내구년수 ×(1년차 95% ~ 5년차 55%까지 매년 10% 감소)	
고양시	트랙터	1일 작업량×년간작업일수×임대료(평)에 의거 산출, 1년차 100%부터 8년차 30%까지 매년 10% 감소	85%
	콤바인, 이앙기	1일 작업량×년간작업일수×임대료(평)에 의거 산출, 1년차 100%부터 5년차 60%까지 매년 10% 감소	45~ 100%
파주시	트랙터	《(기대가격-잔존가액40%÷내구년수(8년))》	60%
	콤바인, 이앙기	《(기대가격-잔존가액40%÷내구년수(5년))》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 마. 운영실적과 임작업료 수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임차인은 농협과 작목반, 영농법인으로 분류되는데, 작목반과 같은 생산조직의 비중이 가장 크다<표5-15>. 여러 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의 생산조직인 작목반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 농기계를 활용토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최종 이용자에게 의한 조직이고, 기본적으로 작업량이 확보되는 등의 유리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기계 임차인으로써 농협과 농업법인의 빈도는 각각 12개소로 같다. 그러나 안성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농기계임차인으로의 농협의 경우는 한 군데 밖에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소극적인데, 아무래도 조직체로써 농기계임차 후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임차 농협은 재차 농민이나 농민조직에 재임대를 해야하거나 아니면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 임작업을 수행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자칫 일부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5> 농기계 임대대상자 유형별 현황(2003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임대대상자				계	비고
	농협	작목반 외	농업법인외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	-	4	-	4	
안성시	11	12	-	-	23	
화성시	1	1	4	-	6	
김포시	-	7	-	-	7	
여주군	-	23	-	-	23	
양평군	-	87	-	-	87	
고양시	-	-	-	3	3	사업추가 중지(2003)
파주시	-	1	4	-	5	
계	12	131	12	3	158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법인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경우는, 화성시를 제외하면 많지 않다. 안성시만이 총 23개소 가운데 지역농협 11개소, 작목반 12개

소로 구분되어 있다. 다양한 조직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할 경우 관리의 문제 이전에 지역적인 갈등, 예컨대 어느 지역은 지역농협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왜 어느 지역은 작목반에게 주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차기종별, 임대 농기계 활용 주체별 작업일수 및 작업면적이 <표5-16>에 정리되어 있다. 제시된 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임차농기계의 활용도가 일반농기계 활용도의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즉 기종별 연간 총 이용일수와 이용면적을 보면, 트랙터의 경우 일반 평균은 36일에 13ha인데 비해 임차농기계는 54일, 32ha이다. 작업일당 작업면적도 일반 평균은 0.36ha이지만 임차농기계는 0.58ha로 임차농기계가 일반농기계보다 60% 이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농기계보다 임차농기계의 활용도가 높은 경향은 이앙기와 콤바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6> 임대기종별 작업일수 및 작업면적(경기도)

단위: 연간 작업일/ha

구분	임대 대상자					비고 (관행)
	농협	작목반 외	영농법인 외	농업기술센터	평균	
트랙터	57/35 (0.61)	99/42 (0.42)	40/38 (0.95)	20/11 (0.55)	54/13 (0.58)	36/13 (0.36)
콤바인	23/29 (1.26)	28/25 (0.89)	20/30 (1.50)	15/11 (0.73)	22/24 (1.10)	12/10 (0.83)
이앙기	29/14 (0.48)	25/16 (0.64)	20/17 (0.85)	10/8 (0.80)	21/14 (0.65)	5/3 (0.60)

주) 관행은 농림부 전국평균 통계자료이며 ( )내의 자료는 1일당 작업면적임.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임차 농기계의 활용을 임대 농기계의 활용 주체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기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작목반의 경우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농협과 영농법인이 그 뒤를 따른다. 효율적 이용 측면, 즉 1일 사용면적을 보면 농민이면서도 일반 기업적 성격과 운영을 견지하는 영농법인의 효율적 운용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는 지역농협, 영농법인의 순이다.

임차 농기계의 활용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이용일수와 면적, 1일당 면적 모두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기계를 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

상도 영농조건이 좋지 않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2)</sup>.

농기계를 임차한 주체들이 임대용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행할 경우, 작업의뢰자인 농가가 부담하는 임작업료는 일반 평균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표 5-17>. 트랙터와 이앙기의 경우 임차농기계를 이용하는 작업료의 수준은 일반 평균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콤바인의 경우는 약 72% 수준이다. 임차농기계의 구입시 보조지원의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차 농기계의 농작업료를 임대 농기계의 활용 주체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기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료 수준이 가장 낮다. 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부의 자급에 의해 농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농기계구입부담의 작고, 아울러 운영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관, 유지비 등의 비용을 자체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의 실현을 중시하는 영농법인의 작업수수료는 농협이나, 작목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반 평균의 10~20% 정도는 저렴하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경우 수익성 면에서는 보다 높은 작업료를 징수해야 하나 조합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서인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작업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표 5-17> 임대 농기계의 농가부담 임작업료 현황(경기도)

단위: 원/평, %

구 분	임대 대상자					비고 (관행)
	농협	작목반 외	영농법인 외	농업기술센터	평 균	
트랙터	110(67.5)	125(76.7)	137(84.0)	50(30.7)	106(65.0)	163(100.0)
콤바인	125(82.2)	129(84.9)	135(88.8)	50(32.9)	110(72.4)	152(100.0)
이앙기	85(68.0)	94(75.2)	100(80.0)	40(32.0)	80(64.0)	125(100.0)

주) 관행의 경우 시·군별 임작업료를 조사하여 평균한 것임.

( ) 내는 임대대상자/관행의 백분율임.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한편 농기계 임대료는 임대인의 수입으로 추후 농기계의 갱신과 적정 수익으로 사용된다. 농기계 임대에 있어서 임대료 수입의 크기는, 앞에서 설명하

62) 이러한 경향은 충청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임.

였듯이, 현 임대 농기계의 갱신에 필요한 자금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바. 사전·후 관리

임대용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농기계사고시의 처리문제이다. 이 점에 대응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와 농기계운전자에 대한 공제나 보험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차 시 이 조건을 명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제 이 조건이 미흡할 경우 농기계를 임대한다는 결정의 집행을 중지한다든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지는 않다. 바꾸어 말하면 임대기계로 인한 사고시 법적인 공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표 5-18> 임대농기계 종합공제 가입과 비용부담(경기도)

구 분	사고시 문제 발생 소지	공제가입 규정		공제가입비 부담	
		농기계	농작업자	농기계	농작업자
김포시	○	○	○	임차인	임차인
고양시	○	○	○	임차인	임차인
파주시	○	○	○	임차인	임차인
양평군	×	○	○	임차인	임차인
화성시	×	○	○	임차인	임차인
평택시	×	○	○	임차인	임차인
안성시	○	○	○	임차인	임차인
여주군	○	○	○	임차인	임차인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경기도의 경우 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개소만 공제나 보험가입의 조건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제나 보험의 약정기간이 1년이나 3년이기 때문에 장기 농기계임대시 몇 번의 공제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공제나 보험가입의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용해야할 것이다. 특히 단기임대의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우 임차인이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농기계 자체의 공제는 가능하지만 자주 농기계 운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해공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농기계임대사업 참여 조직들의 임대 농기계에 대한 보험가입 및 가입 지원에 대한 현황, 면세유에 대한 현황은 <표5-19>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2002년 말 현재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조직)은 158개소인데 이 가운데 46%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기계 임차인들이 농기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선 임차인들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농기계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지역농협의 권유에도 잘 가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이유라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가입 권장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앞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지구 조성 시, 임차인으로 지원하는 시점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9> 보험 가입, 면세유 지원 현황(경기도)

구 분	현 황			가입(지원) 비율
	대상(개소)	가입(지원)	미가입(미지원)	
농기계보험	158	72	86	46%
면세유	158	146	12	92%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농업용 면세유는 임차 농기계라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2%의 수혜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혹 사실을 알고 있어도 지원 받는 절차에 대한 무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임대 대상자에 지원하는 초기에 충분히 알리는 관리기관의 지도가 필요하다.

## 사. 기금의 확보와 사업의 지속

농기계임대사업은 분명 보조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사업을 끌고갈 것인지는 우리 농업의 발전목표와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사업의 추진주체와 수혜자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 경기도내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표5-20>.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약 18억원 정도(총사업비의 19.1%)가 농기계 임대수입으로 적립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5-8 참조>.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계속 진행, 확대되면 적립금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임대료의 수준이 현재의 임대 농기계를 교체할 때 현재수준 유지가 가능한 정도인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규모의 70%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경우 나머지 부족분을 예산화하여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 고양시, 파주시, 평택시, 여주군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추가예산 지원과 기금의 활용을 병행하면 상당기간 농기계임대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화성시의 경우에만 기금에 관한 조례규정이 없으며 농기계임대료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이관되어 군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없는 한 현재로는 농기계 내용년수가 끝남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된다.

<표 5-20> 농기계임대사업의 기금조성 방법(경기도)

구 분	기금조성 방법
도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별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및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조례에는 임대기준, 임대대상자, 임대절차, 임대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li> <li>-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li> </ul> </li> <li>○내구년수 경과 후 임대료 적립금 등을 통한 농기계 재구입 방안에 관한 사항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농기계의 사용년한 경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되었을 때 임대료 적립금(특별회계) 및 별도 예산확보(일반회계)를 통해 같은 수량의 대체 농기계 구입</li> </ul> </li> </ul>
김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시 출연금,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li> <li>○용도는 내구년수 경과 농기계 재구입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 관리자에 대한 제비용과 기술교육비로 사용됨</li> <li>○기금운용계획, 운용심의 등은 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해야 함</li> </ul>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시 출연금,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음.</li> <li>○용도는 내구년수 경과 농기계 재구입비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확대 보급이 필요한 경우, 내구년수가 경과되기 전, 후라도 농기계 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음</li> </ul> </li> <li>○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며, 기금운용심의는 시 농정심의회에서, 기금운용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대로 처리</li> </ul>
파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시 출연금,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음.</li> <li>○용도는 내구년수 경과 농기계 재구입, 농기계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 농기계 운전 및 정비 관리자에 대한 제비용 등으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확대 보급이 필요한 경우, 내구년수가 경과되기 전, 후라도 농기계 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음</li> </ul> </li> <li>○기금운용계획, 운용심의 등은 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해야 함</li> <li>○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적립된 기금(3,330만원)을 사용, 농기계 재구입 요청한 상태</li> </ul>
양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시 출연금,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li> <li>○용도는 임대농기계 구입자금,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 농기계사업의 확대 및 기술교육비로 사용됨</li> <li>○기금운용계획, 운용심의 등은 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군수는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함</li> </ul>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금조성에 관한 조항은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상에는 없음</li> <li>○임대료 징수에 관한 내용은 화성시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준용한다고 나와있음</li> <li>○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농기계 재구입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li> </ul>
평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시 출연금,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음.</li> <li>○용도는 농기계 재구입, 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확대 보급이 필요한 경우, 내구년수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농기계 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음</li> </ul> </li> <li>○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 지출절차에 준하여 처리함</li> <li>○따로 모으는 기금은 없고 임대사업 수익금 모은 것만 약 2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음</li> </ul>
안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시 출연금,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음.</li> <li>- 출연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기금액은 50억원임.</li> <li>○용도는 농기계 재구입, 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비용</li> <li>○기금운용계획에 의해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관리</li> <li>○기금운용계획, 운용심의 등은 기금운용관(농림과장)이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해야 함</li> </ul>
여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에 시 출연금,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음.</li> <li>○용도는 내구년수 경과 농기계 재구입, 농기계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 농기계 운전 및 정비 관리자에 대한 제비용 등으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확대 보급이 필요한 경우, 내구년수가 경과되기 전, 후라도 농기계 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음</li> </ul> </li> <li>○기금운용계획, 운용심의 등은 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군수는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해야 함</li> </ul>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 내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모습이 변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 혹은 확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방법에 따라서도 지속의 애로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포시의 경우 서울에 인접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 개발지구에 속해 있어 농업지역에 대한 대단위 비농업적 개발이 왕성함에 따라 농업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상당수의 농민들조차 농업의 유지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추가할 이유가 점차 줄고 있다는 담당자들의 이야기이다. 여기에 높은 농기계 보유율 역시 농기계임대사업의 추가적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04년부터는 현재의 임대사업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운영할 것이며,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고양시의 경우도 김포시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관내 농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대단위 수도권 비농업적 개발에 따른 논 면적의 감소,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 저하 등의 지역적인 특색은 2002년부터 추가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의 확장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신규 농기계임대사업의 신청을 멈추고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의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농기계의 수리기능을 겸비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시된 내구년수보다 훨씬 짧게 되는 농기계 수명, 수리비 과다 발생 등 단기 임대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추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농기계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은 종료될 것이다.

김포시와 고양시와 달리 비교적 평야지에 있는 파주시, 양평군, 평택시, 여주군 등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관내 콩의 재배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콩수확기를 구입, 임대하고 있으나 워낙 고가인 관계로 활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농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의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영농법인을 중심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집약적인 농기계이용이 이



뤄지고 있고, 임차인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한다. 안성시의 경우 지역농협을 농기계임대사업의 중간매개체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직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역시 수혜농민이나 조직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여주군의 경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의 수혜자들의 반응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전반적인 행정인력의 감축 속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화성시의 경우에도 관내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건이 성숙한다면 시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중요한 기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예산확보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 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문제점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sup>63)</sup>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평가 결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기임대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 사이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졌고, 결국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촌 내 안착을 유인할 수 있었다. 시·군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장·군수의 자율성 및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였고,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해 임대료 적립과 농기계 재구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63) 경기도청 농산유통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2002

둘째, 임대 농기계의 현장에서의 이용률을 제고하였다는 점이다. 경기도 자체 조사에 의한 이용주체별 해당 농기계 이용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면적과 이용일수에 있어서 월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용면적으로 평균하여 비교할 경우 임대 농기계는 개인소유 농기계보다 3배 이상을 활용하고 있었다. 기종별로 보면 일반 개인의 경우 콤바인은 연간 총 12일, 9.5ha를 이용하게 되는 반면, 임대 농기계의 경우 각각 25일, 29ha를 이용하고 있다. 트랙터와 이앙기 역시 콤바인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임대 농기계의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 농기계의 경우 임차인이 한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규정되어있어 기본적인 작업량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5-21> 임차농기계 이용주체별 농기계 사용량 비교(경기도)

구 분	개 인		공 동(임 대)		비 고 (면적 대비)
	이용일수	이용면적	이용일수	이용면적	
콤바인	12일	9.5ha	25일	29ha	3.2
트랙터	36일	13.2ha	98일	49ha	3.5
이앙기	5일	2.6ha	20일	9ha	3.2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셋째, 저렴한 농작업료로 인하여 이용 농가들의 영농비를 크게 절감하였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임차 농기계의 낮은 농작업 수수료는 인근지역 농기계 임작업료를 하락하도록 유인하였으며 결국 농업 경영비 가운데 농기계비의 20% 이상을 절감하였다는 것이다. 트랙터와 콤바인의 경우 일반 임작업시 평당 15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평당 110원~120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 농기계의 주력기종인 트랙터, 이앙기와 콤바인의 작업내용인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이용비용이 20% 이상 절감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개별 농민들이 대형·고가 농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야기되는 경영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였다는 평가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 이외에도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점이다. 경기도 자체 조사에 의하면, 수혜 농업인의 90% 이상이 사업

확대를 원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농업기계화 정책 차원에서 볼 때 경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앙정부의 임대사업을 유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농기계 구입지원에서 농기계 이용지원의 의미를 품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2003년부터 농림부의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sup>64)</sup>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효과와 달리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상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이 농업경영으로부터 유리해야 할 대상들의 지원에 두어져 있다. 오히려 이들의 농업경영을 기간농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일부 농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임대사업 추진에 있어서 내부적인 자원부족과 대외적인 농기계 이용효율 저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강요된 임대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표 5-22> 농기계 임대대상자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농 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li> <li>· 회계 수입, 지출 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작업에 필요한 별도의 인원 및 관리 직원 필요</li> </ul>
작 목 반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년중 적기 이용 가능</li> <li>· 농가호응도 및 이용률(작업 일수 및 면적)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수리기술 등이 부족하여 관리 소홀</li> <li>· 구성원 위주 지원</li> </ul>
농업법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li> <li>· 영세, 부녀자, 고령농가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기 및 범위제한</li> <li>· 위탁영농회사를 임대대상자로 선정시 일반농가 불만 제기</li> </ul>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직접관리로 농가 부담이 가장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유지, 관리 인력(전담 공무원) 및 비용 소요</li> <li>· 이동거리가 커 작업효율성 저하</li> </ul>

자료: 경기도(농산유통과)

둘째, 임대용 농기계의 선정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의견이 보다 깊게 반영되는 방법, 즉 리스의 형태가 좋으나 현실은 공급자가 자의대로 임대용 농기계

64) 농림부는 2003년에 시범적으로 전국 7개 지역을 선정, 총 5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전국 60개소를 지원할 계획임.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장에서 세술하겠음.

를 선택하는 렌탈형이 많다. 임대농기계의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농기계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수요자의 바램에 가까운 농기계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농기계 임대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농기계 임대기간의 단기 혹은 중·장기에 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느니 만큼 단기보다는 중·장기 임대기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넷째, 동일사업에서 지역에 따라 농기계임대료가 다르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농기계의 구입가격을 기준한 기간개념의 농기계임대료는 지역간 차별이 없어야하지 않나 여겨진다. 물론 1일 임대료와 면적당 작업료는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달리 나타나는 것이 옳다.

다섯째, 농기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사유와 해지 후 사후 조치요령 등에 대한 규칙이 미흡하다. 자의든 타의든, 임의든, 불가항력적이든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해약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자칫 최종 임대농기계 사용 농민들과의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아직도 농기계와 농작업자, 임차인에 대한 공제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임대 농기계의 사고발생시 보상과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공제가입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농기계임대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기임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힘들다. 농기계 자체의 공제가입은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농기계운전·조작자에 대한 상해공제는 그 대상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일곱째,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반적인 농민들의 높은 호응도와 많은 효과 등으로 인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 추진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상황, 예컨대 농업의 축소, 예산확보의 애로 등으로 인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추진을 꺼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궁극적인 효과, 즉 농업기계화 정책의 최종

목표인 농업경영의 개선은 단순히 농업기계와 정책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칫 농기계임대사업이 일부의 농민들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 이제는 꼭 필요한 사안이다.

## 2) 개선 방안

경기도의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주체를 기초 자치단체 내 행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로 양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간에는 임대기간에 있어서 전자는 중·장기를 후자는 단기를 선호하고 있다. 행정부서의 경우 잦은 임차인의 변경에 대한 행정수요 부담뿐만 아니라, 잦은 회수와 임대과정에서 필요한 임대용 농기계의 수리, 정비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장기 농기계 임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 추진의 목적에서도 나타나 있고, 농기계의 수리, 보관 등의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를 임대사업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5)</sup>.

먼저 운영주체의 차이를 떠나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공통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을 진취적으로 설정, 추진해야 한다. 즉 수혜대상을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기간농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더욱 그렇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단순 시혜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더 이상 농업발전에 의미가 없다. 장기적인 농업경쟁력 확보와 발전의 지속이란 측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과 사업 수혜대상의 정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경영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농기계임대 이외의 사업과의 결합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데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준비해서 적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정심의회가, 농업기술센터에는 산학협동위원회가 있다. 이들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용 농기계를 선발하는

---

65) 이러한 농업기술센터의 특징은 다음 절에서 분석하는 충청도의 경우와 비슷함.

것이 관행인데 이 때 객관화된 평가기준이 미흡하다.

셋째, 임대용 농기계의 선택과정에서 임대용 농기계를 이용하게 될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소형 농기계와 작업기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의 집적에 지원적 성격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대형 농기계가 주력을 이룰 것이다. 이 때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 임대용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리거나 특화하려는 분야에 필요한 농기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종과 작업기는 농기계임대사업자와 임차를 희망하는 농민간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기종, 동일 규격의 임대료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동일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경기도 단위에서 검토, 시행해야 할 사안이다.

다섯째, 농기계 사고공제와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상해공제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처음부터 농기계 임대차의 조건으로 명기하고, 임대차계약의 진행과정에서도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기계와 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임대사업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었든지 항상 내재하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칫 임대 농기계의 사용 농민과의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지금과 같은 기금화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공통적인 개선방안의 강구를 떠나 한 차원 다른 위치에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행정부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사뭇 다르다. 이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여긴다. 즉 농업기술센터는 적절한 농기계의 수리와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행정부서는 기획과 예산관리 등에 상대적 유리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협동적 분업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이상적 사업방법으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66)</sup>.

66) 이러한 하나의 모델은 마지막 제8장에서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모델(I)로 제시되

## 4. 충청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가. 사업추진 경과와 목적

충청도의 농기계임대사업의 사업자의 운영주체는 농업기술센터이다. 가장 먼저 농기계은행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음성군이다. 1996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담당자는 관내에 농기계은행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를 군수가 수용하면서 농기계은행사업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당해년도에는 쌀 생산대책 우수군 시상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짜임새는 부족하지만 농기계은행사업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1997년도에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1998년 12월 31일에는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1557호)<sup>67)</sup>를 만들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농기계은행사업을 제도적인 지원하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에서도 음성군의 뒤를 이어 농업관련 각종 시상금을 가지고 농기계은행을 위한 농기계를 2000년 8월에 구입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2001년 6월에는 농기계은행사업의 법적 근거인 조례(조례 제2192호)를 만들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농기계은행사업의 발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진 것은 음성군과 같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장 늦게 2001년 8월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시작하였다. 영동군에서는 음성군과 청주시와 달리 순수하게 농기계 교육·훈련용으로 국비지원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다. 보유 농기계를 교육이나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희망농가에 대여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제도적인 근거인 조례 역시 가장 늦은 2001년 8월(조례 제 1776호)에 제정되었다.

---

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 절의 내용을 참조할 것.

67) 조례상에 쓰이는 용어가 3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약간 표현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농기계은행”이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대여 농기계”라함은 조례에 의거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료”라함은 농기계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군이나 시금고에 납부하는 대금을, “사용자”라함은 농업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함.

충청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 기초자치단체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비록 조례의 명칭이 유사<sup>68)</sup>하지만 사업의 내용은 약간 다르다. 음성군의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임작업<sup>69)</sup>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와 영동군에서는 농기계은행의 사업으로 오로지 농기계 임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작업 대행이나 알선과 같은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2002년부터(조례제정일: 2002. 4. 17)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당시 아산시장의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 출발하였다고 한다.

아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의 법적인 근거인 조례의 명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되어 있어 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에 사업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산시 농기계은행(농기계은행)”을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관련된 장비 및 부속건물의 운영과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충청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경기도와 약간 다르다 <표5-23>. 첫번째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농기계의 이용율을 높여서, 환언하면 효율적인 농기계이용을 통해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분명 지속적인 농업기계화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 효율화 정책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이다. 경기도의 경우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목표가 많은 데 충청도의 경우 농업기계화의 적극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느 목적이 타당하냐를 따지기에 앞서 충청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이 향후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과 보다 일치하지 않나 여겨진다.

68) 3개 군의 조례이름은 「○○시(군)농기계은행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자치단체의 이름만 다를 뿐임.

69) 음성군의 조례에 의하면, “임작업료”라 함은 농민이 농기계은행으로부터 농기계대여와 함께 작업을 함께 수혜받은 대가로 농기계사용료와 작업료의 합계금액을 균급고에 납부한 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표 5-23>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 비교(충청도)

구 분	사업 추진의 목적
청주시	○일손 부족 농가에 농기계 임대로 영농편의 제공과 부족 노동력 제공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적기 영농 추진과 농업기계화 촉진
음성군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영동군	“상 동”
아산시	“상 동”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나. 사업비와 보유 장비

충청도 4개 농기계은행을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군비로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충당한 현황을 보면 음성군의 경우에는 쌀 생산대책 우수군 시상금(1996) 3억(국비)원을 가지고, 청주시는 1999년 이후 쌀 생산 및 농정평가, 지역특화 실적 가산금 등 5.2억원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영동군은 농업기술센터 보유 훈련용 농기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예산은 없다. 아산시는 2002년도의 사업실시에 대비하여 2001년도에 이미 시비 약 1.3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국비로 구입하는 교육·훈련장비용 농기계 예산은 약 700만원)하여 관련된 농기계를 구입하였다. 2002년도에도 총 2,000만원을, 2003년도에는 약 1.1억원(국비 1억, 시비 700만원)의 예산수립과 집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기종이 다양하다. 작업기보다는 우리나라 주력 기종인 트랙터와 이앙기, 콤팩인이 대부분이다. 단지 청주시의 경우 작업기 위주의 단기 임대가 주류를 이루다보니 무려 140여대의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산시 농기계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기계에는 농기계은행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와 훈련용으로 구입한 농기계가 포함된다. 다른 곳에 비해 축산용 농기계와 작업기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합한 농기계의 보유 규모는 총 43종 62대이다.

<표 5-24> 임대용 농기계의 보유현황(충북)

구 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기타	계
청주시	3	5	4	0	139	151
음성군	3	4	4	0	10	20
영동군	3	2	2	1	1	9

주) 보다 자세한 내역은 <부표5-1>을 참조

<표 5-25> 임대용 농기계의 보유현황(아산시)

구 분	경종작업기	승용경운기	승용관리기	축산기계	기타	계
기종수	16	4	6	14	3	43
보유대수	34	4	6	15	3	62

주) 보다 자세한 내역은 <부표5-2>를 참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시설도 다양하다. 음성군의 경우에는 대지 300평 건평 60평의 조립식 창고와 농기계 운반용 4.5톤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정비작업대(선반) 외 25종의 수리장비는 금액 환산시 70백만원에 해당하며, 금액환산 시 50백만원 상당의 부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주시에서도 임대용 농기계의 보관, 수리를 위해 100평의 보관창고 1동을 건립, 활용하고 있었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평 140평의 철골조립식 창고와 발전기 외 1종의 수리장비(15백만원 상당)와 35백만원 상당의 관련 부품을 보유하고 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도 농기계은행을 위해 판넬 형태의 농기계보관창고(176평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은행 사업은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닌 단기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농기계의 적절한 보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필수시설이다. 농기계의 운반과 서비스제공을 위해 트럭 1대(2.5톤)을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농기계의 고장수리에 대처하기 위해 부품과 관련시설(약 6천만원 상당)도 확보하고 있었다.

## 다. 임차주체와 농기계 선정

충청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의 수혜대상은 경기도의 농민단체나 조직의 우선과 달리 개별 농가에 두어져 있다<표5-26>. 그리고 철저하게 1농가 1기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주시와 음성군, 아산시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농가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진취적인 목적과는 달리 전체적인 농업경영에서 평균이하의 소규모 경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달리 충청도는 주로 개별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보유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해 주기까지 하고 있다. 경기도와 달리 사전적으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제가 부족하며, 따라서 비록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이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기대되는 효과는 상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구조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사료된다.

<표 5-26>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원대상(충청도)

구 분	임차의 주체(사업시행 지원 대상)
청주시	○영농 규모가 작은 농가에 대해서 우대 지원 ○1농가 1대 기준
음성군	○음성군 내 신청 농업인 중 허가 받은 자 ○생활 보호자 등이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 감면(1/2) ○1농가 1대 기준
영동군	○영동군 내 신청 농업인 중 허가 받은 자 ○1농가 1대 기준
아산시	○음성군 내 신청 농업인 중 허가 받은 자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는 불허 ○영농 규모가 작은 농가에 대해서 우대 지원 ○1농가 1대 기준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임대용 농기계의 확보방법에 있어서도 충청도에서는 4개 농업기술센터 모두 경기도와 달리 임대용농기계를 렌탈의 형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즉 농기계임대사업의 주체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임대용 농기계를 선택, 구입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임차하기 원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청주시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업기를 중

심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정한 예산하에서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수의 작업기를 확보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작업기의 이용율이 낮다는 현실을 직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 라. 임대기간

충청도의 경우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은 대부분 초단기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의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인 점을 보면 필가의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농업기술센터라는 특성에 기안하지 않나 여겨진다.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대대상자의 선택에서부터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엄밀히 말하면 영농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농기계의 혜택을 주려는 의지가 이러한 단기임대로 나타난 것이다<sup>70)</sup>.

충청도의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농가당 1회(1대기준), 대여기간 3일을 농기계임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보유 농기계 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은 때는 임대기간을 2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1일이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 24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간대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 요건은 충청도 4개 농업기술센터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밤 늦도록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회수와 재임대에 어려움이 있다. 일정량의 대기용 농기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

70) 이러한 결과는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며, 대농민 농업기술보급이라는 조직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5-27>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 결정방법(충청도)

구 분	임대기간의 결정기준 방법
청주시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임대 (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신청자가 임대 농기계수보다 초과될 경우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1~2일 이내로 분배하여 임대
음성군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임대 (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신청자가 기계수보다 초과될 경우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2일을 기준으로 분배하여 임대
영동군	○3일 이내로 임대(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신청자가 기계수보다 초과될 경우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
아산시	○1농가 1대(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 1대로 봄)기준, 3일 이내로 임대 (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이러한 초단기 임대인 경우 임대 개시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칫 농기계 유희화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개시일 직전에 임대용 농기계이용에 관한 신청을 취소할 경우 해당 농기계를 즉시 임대·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예상된다. 따라서 취소 가능 기간을 최소 2일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정한 취소에 따른 위약금(영동군의 경우 10%)을 물리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마. 임대료 결정

충청도의 경우에는 농기계임대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달리 뚜렷한 총 회수 목표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설령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목표금액의 회수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1일 혹은 면적 단위로 농기계임대료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표5-28>. 그런데 이러한 임대료의 설정방법은 임대기간의 단기성에 기인한 것으로 현실적용에 있어서 유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이러한 방법에 의한 임대료의 수준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당연히 다르다. 다만 현지에서 통용되는 농기계 임대료보다는 약간 낮은 임대료로 농기계를 임대하

고 있었다. 이것의 비율 역시 농업기술센터마다 약간씩 다르다.

<표 5-28> 농기계 임대료의 결정방법(충청도)

구 분	임대료 결정 방법
청주시	○정수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정수(조례) -기종에 따라 작업면적(3.3㎡) 또는 1일 기준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개시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음성군	○정수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임작업료 정수(조례) -기종에 따라 작업면적(3.3㎡) 또는 1일 기준 ○사용료는 개시일전까지, 임작업은 작업 완료일까지 납부해야 함 - 대역 농기계 임대료 소정기간내에 미입고시 기간에 따라 기종별 정수기준의 1.5배를 추징
영동군	○정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정수(조례)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해야 함
아산시	○정수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정수(조례)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정수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개시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는 농기계임대료와 농작업료의 실태를 살펴보자. 먼저 청주시와 음성군의 경우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1일” 단위로 작업료는 “평” 단위로 설정하여 이용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와 농작업 대행 두가지 모두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동군과 아산시는 농기계를 임대만 해 주기 때문에 1일당 임대료만을 책정해 놓고 있다.

먼저 청주시와 음성군에서 책정한 농기계 농작업료를 <표5-29>에서 살펴보면 동일한 작업 내용일지라도 두 지역간에는 평당 20~3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청주시의 경우에는 단순히 농기계만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음성군의 경우에는 농기계조작자가 직접 농작업을 대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주위의 임작업료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타인의 임작업을 많이 수행하는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면적기준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청주시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의 확인이 어렵고, 사용면적과 사용시간과의 적합성에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 그리고 작업면적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면적기준 임대료 수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9> 농기계 작업별 사용료(청주시, 음성군)

단위: 원/평

구 분	사 용 료			
	이앙	수확	경운	정지
청주시	40	70	30	40
음성군	70	100	60	60

충청도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1일당 농기계임대료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농기계의 경우 단위면적(평)당 임작업료를 설정했지만, 작업기의 경우에는 1일당 임대료를 책정 운영하고 있다<sup>71)</sup>. 유사한 기종을 임대하고 있는 음성군과 영동군의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표5-30>과 같다.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기종에 대한 임대료 수준이 다른데, 그 정도가 무려 이앙기의 경우 하루에 5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앙기의 규격이 더 낮은(4조식)데도 불구하고 경우 영동군을 기준할 때 음성군에 비해 62.5%나 저렴하다. 트랙터의 경우에도 20%가 저렴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비록 지역실정을 감안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두 농업기술센터가 인근할 경우 사용농민들의 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면적 개념이 아닌 일정기간의 임대료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실시 주체간 너무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30> 기종별 농기계 임대료(영동군, 음성군)

단위: 원/ 1일

구 분	임 대 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음성군	120,000	130,000	150,000
영동군	100,000	80,000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의 사용료는 30,000원/일, 20,000원/일, 10,000원/일, 5,000원/일 등 4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농기계는 높은 사용료를 저가의 농기계는 낮은 사용료가 적용되는데, 아산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원형결속기의 구입시 지불가격은 대당 24,200천원으로 잔가지 파쇄기의 4,710천원의 5배 이상 바싼데도 1일 사용료는 20,000원으로 같다. 마찬가지로 경운기의 하루 사용료와 쟁기의 사용

71) 보다 자세한 충청북도 3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료 수준은 <부표5-3>을 참조

료는 공히 5,000원/일인데, 가격은 경운기(2,093천원)가 쟁기(110천원)의 약 20배에 이른다.

<표 5-31>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사용료 기준

단위: 원/ 1일

기 종 및 작 업 기	사용료
트랙터(35hp), 콤바인(HL2010), 승용이앙기(6조),	30,000
승용경운기(TR13), 승용관리기(CF1200), 이앙기(4조), 톱밥제 조기(PRS700E), 소형 굴삭기(3,5ps), 잔가지파쇄기(HDT150), 레이저균평기, 사각결속기(SWB2690), 원형결속기(MX11200), 붐스프레이어(BS1000), 랩피복기(SW200), 하베스타(IROLL), 모아콘디셔너(210cm), 반전집초기(320cm), 상토조제기(SB4000), 육묘일괄파종기(JK600), 축조시비기(TFR600)	20,000
관리기(8ps), 땅속 작물수확기(JH1300), 배토기(2골), 액비살포기(4톤), 퇴비살포기(SW30), 심토파쇄기(LM2), 탈망기(HT1),	10,000
경운기(8ps), 제초기(AMR650), 트랙터부착 직파기(6조), 비닐피복기(승, VM2600), 비닐피복기(보, 아시아), 심경로타리(MR1200), 굴취기(RM60), 휴립복토기(FM120), 로타리(경운기, TR600), 로타리(관리기, CR1200s), 원판구동쟁기(YDP602S), 로우더, 구굴기(JY270-500), 파이프정형기(PBF), 파이프성형기(PBF), 예취기(JY115), 쟁기(AP25), 비료살포기(FS300)	5,000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독특한 것 같다. 사실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임대 농기계사용료를 결정하였는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칫 사용자간의 불평등이라는 불만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나아가 해당 농기계의 내용년수 경과 후, 대체구입 시 재원의 부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여기에 현재 아산시에서는 농기계은행사업의 지속을 위한 임대료 수입의 적립과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추후 농기계은행의 자체수입에 의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할 경우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3군데 농업기술센터는 공히 면제사항으로 임대 농기계를 재해복구 등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음성군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코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1/2로 한다.”는 특이한 규정을 활용하고 있다.



납부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공통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장, 군수(농업기술센터 소장)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공통적인 위 내용 이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표5-32>.

<표 5-32> 농기계 임대 사용료 반환 조건의 차이(충청도)

구 분	개 별 조 항
청주시	○사용 2일전에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면적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잔여면적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
음성군	○출고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 사용료 전액을 반환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농기계은행 담당 부서와 협의한 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영동군	○사용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아산시	○사용허가 받은자가 농기계사용취소 신고시 납부 사용료 전액 7일내 반환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여 농기계<sup>72)</sup>의 출고일전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납부된 사용료 전액(음성군)을, 사용 2일 전에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만 사용료 전액(청주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영동군에서는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다. 또한 당초 사용기간중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해당일수의 사용료는 반환하게 되며(음성군), 추후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허가한 사용면적보다 적게 사용했을 경우 해당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72)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면 대여농기계란 앞 조례에 의해 임대한 농기계를 말한다.

## 바. 운영협의회

농기계은행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협의회가 음성군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되어 있다. 영동군은 단순히 교육, 훈령용 농기계를 활용해서 인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작아서인지 조례상 운영협의회가 없다. 아산시 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협의체가 없다.

<표 5-33>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협의회 구성

구 분	구 성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업협동조합장(청주, 서청주), 위탁영농회사대표, 농기계클럽대표와 독농가등을 포함한 8인이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림과장, 기술담당관, 농기계담당자와 독농가를 포함한 7인 이상

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농업기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조직 담당자와 농민들이다<표5-33>. 구성 인원 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성성격과 협의회의 기능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운영협의회에서는 사용료, 작업료 징수방법 등 농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협의회의 시기는 명시하고 있지만 매년 1회 이상은 개최되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개최의 발의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음성군)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청주시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운영협의회는 전반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의 지도와 감독,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특히 농기계 임대과정에서의 수혜자들이 경쟁적일 경우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 검토, 임대용 농기계 및 작업기의 선정시 자문, 농기계임대료의 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단순히 우선 신청자에게 준비된 농기계나 농작업기를 빌려주는 정도의 경우에는 그 기대역할은 미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운영협의회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 사. 사업실적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다 보니 사업의 실적을 집계하는 것도 다르다. 청주시와 영동군은 임차농가수와 그들의 사용일수, 작업면적, 임대료를 실적으로 정리하고 있다<표5-34>. 여기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종별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의 주력 기공인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대당 작업면적이 매우 작다는 것이다. 호당, 1일당 사용면적도 결코 크지 않다. 예컨대 청주의 경우 트랙터 대당 작업면적은 연간 7.7ha, 영동군은 1.7ha에 불과하다. 단기임대의 경우 농기계이용효율의 저하라는 문제를 엿볼 수 있다.

둘째, 지역별로 동일기종이라 하더라도 이용면적의 차이가 있다. 즉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임대용 농기계를 선택할 경우 지역실정과 임차 희망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축산에 관련된 많은 작업기를 보유하여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일부 작업기의 경우 농민들의 선호도와 이용율이 높다. 사실 논두렁 조성기와 같은 경우 1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작업기이다. 사용시기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기는 단기임대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업기중심의 단기임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청주시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작업기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농기계임대와 농작업의 수탁 수행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표5-35>. 임대농기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청주시보다는 적게, 영동군보다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앙기의 경우 보유대수가 4대에 이르고 있어 1대를 임작업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때 임대가 그리 많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기임대의 어려움이다. 작업기의 경우에도 본체와 유사한 결

<표 5-34> 청주시와 영동군, 아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실적(2002)

단위: 호, 일, ha

구분	기종	임차호수(A)	사용일수(B)	이용면적(C)	C/A(ha)	C/B(ha)
청주시	트랙터	30	16	23.0ha	0.77	1.44
	이앙기	16	12	14.1ha	0.88	1.18
	콤바인	27	24	27.3ha	1.01	1.14
	논두렁조성기	54	-	179.1ha	3.32	-
	기타 15여종	124	-	177.1ha	1.43	-
소 계		251	-	420.6ha	1.68	-
영동군	트랙터	7	7	5.2ha	0.74	0.74
	이앙기	3	4	4.3ha	1.43	1.08
	콤바인	8	12	11.9ha	1.49	0.99
	SS기	1	1	2.0ha	2.0	2.0
	굴삭기	2	3	-	-	-
소 계		21	27	-	-	-
아산시	트랙터	1	1	0.6ha	0.60	0.60
	이앙기	15	20	33.0ha	2.20	1.65
	직파기	7	10	19.0ha	2.71	1.90
	하베스터	12	25	17.8ha	1.48	0.71
	베일러	5	7	15.6ha	3.12	2.23
	논두렁조성기	20	26	133.6ha	6.68	5.14
	기타 15여종	57	88	109.7ha	1.92	1.25
소 계		117	177	329.3ha	2.81	1.86

주) 청주시의 사용일수는 자체내 작성한 표준 1일 이용면적자료로 추정함.

<표 5-35> 음성군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실적(2002)

단위: 일, ha

구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로타리	벗집결속기	디바이더	기타	계
임대	14	9	0	7	11	17	6	64
작업	52	29	57	0	0	0	0	138

과를 보이지만 디바이더와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 실정에 맞고, 농민선호가 높은 작업기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이 앞에서와 같이 다시 강조될 수 있다.

### 아. 농기계보험

충청도의 경우 4개 농기계임대사업 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두 농기계와 운전자에 대한 공제나 보험가입이 어렵게 되어 있다<표5-36>.

규정상 공제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농기계만이 두 곳에서 공제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농기계임대기간이 단기이고, 따라서 농기계의 운전·조작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인적사고에 대한 보상공제나 보험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단순히 농기계임대계약서 상에 농기계와 운전자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형태로는 재검토되고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5-36> 충청북도 임대농기계 종합공제 가입과 비용부담

구 분	사고시 문제 발생 소지	공제가입 규정		공제가입비 부담	
		농기계	농작업자	농기계	농작업자
청주시	주1)	○	-	시	임차인
음성군	주2)	-	-	-	-
영동군	주3)	○	○	군	임차인
아산시	주4)	-	-	-	-

주: 충북의 경우, 농기계를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책임에 임차자(임대를 받은 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나타남. 임차자들이 따로 농작업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사고시 문제발생 소지가 많음. 충남 아산시의 경우 농기계 종합공제에 대한 내용 조차 조례에서 빠져 있으며, 물론 임차인의 농작업 상해공제 가입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고 발생시 문제발생 소지가 많음.

주1):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시비를 확보하여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주2): 음성군의 경우 조례에 따로 나와있지 않고 농기계 임차사용 신청서 임차조건에 나타나 있음. “출고전 사전 점검 후 임대하고 출고 후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는 본인이 책임지겠음.”

주3): 농업기계 출고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짐. 다만 기술센터소장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기계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주4):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서 상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여 대여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로만 되어 있음.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사용하고 난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는 경기도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대 농기계를 한 두 사람이 이용한 후 회수하여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기계 전문 교관과 수리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고장에 대한 처치는 지방자치단체내 행정부

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해 빠르고 유효하다. 중요한 장점이 될 것이다.

#### 자. 사업의 지속성

충청도 4개 농기계임대사업 실시지역의 관련 조례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필요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정도의 조례규정 이외에 달리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다. 경기도의 경우 모든 농기계임대사업주체들이 기금조례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매년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비해 지속성 면에서는 취약하다. 특히 일반회계가 아닌 일시적인 시상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속적인 사업의 확대, 유지를 위한 추가 농기계구입과 교체 등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와 농작업기의 내구연한이 끝나면 별도의 예산출연이 없는 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종료된다. 더욱이 현재 농기계임대료를 기금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기 임대에만 따른 농기계 이용효율의 저하,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나 부녀자들에 대한 우선적 임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 농기계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업 구조조정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많은 기종을 단기 임대함에 따른 과도한 행정, 수리, 운반 등은 역시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음성군은 농기계임대를 포함한 농기계은행 성격의 사업을, 즉 농작업 대행을 중심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고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나 부녀자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업 구조조정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소농, 노약자 및 부녀자들의 농업경영을 도와주며,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농민들로부터의 호응은 클 것이다.

영동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교육용 농기계만으로 비교육시기에 농기계를 임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는 한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의 한 축으로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아산시의 경우에는 적어도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다. 2001년 이후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 매년 일반 예산을 확보,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43종 62대 이르는 농기계 및 작업기의 단기임대에 적기 처리가 어려운 행정수요를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리수요, 운반수요 등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적 확대에 애로로 작용할 것이라고 담당자들은 지적하고 있었다. 특이한 응답은 농기계임대사업을 농협의 RPC등과 연계함으로써 그 목적과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기계 단독사업으로는 기대한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매우 현실적인 지적이다.

## 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문제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해온 농기계임대사업은 순수하게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에 애로가 많은 부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수혜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기는 힘들다. 현지 조사를 통해 나타난,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들이 응답하는 효과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영세, 노약자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특히 노약자, 부녀자와 영세민들에게 저렴한 농업기계화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혜 농민들은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농작업 자체를 대행해 주는 음성군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한다.

둘째, 하나의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일부 농작업기의 경우 여러 사람들의 이용에 따른 이용의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작업의 분산이라는 면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일손 부족 농가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적기 영농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저렴한 농기계 이용료(임대료, 농작업료)는 주변 이용료의 인상을 어느 정도 억제하여 다른 농작업 위탁농가들에게도 간접적인 수혜를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면과 달리 국가 조직으로의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음성군과 영동군의 경우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에 따르면 농업경영구조개선의 효과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혜대상자나 사업 추진방법은 그렇지 않다. 선택적이라기 보다는 무차별적이다. 신청만 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기본적으로 농업기술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하며,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간의 모순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농기계와 작업기의 임대기간이 단기성이기 때문에 임대용 농기계의 운영에 대단히 많은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140여대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활용하고 있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대당 1년에 4번씩 수요자가 바뀐다면 총 560번의 임대계약을 변경해야하고, 아울러 운반, 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수리수요가 발생하고, 모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의 보상문제는 공공조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세 번째로 농기계를 여러 사람들에게 단기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희화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차를 희망했던 농민이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적절한 대안 마련이 어렵다. 나아가 단기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무리한 사용, 고장 시 책임소재는 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네 번째로 단기임대의 임대료를 결정할 때, 사용면적 기준과 1일 시간기준이 있는데, 작업면적을 기준한 경우 임차인이 당초의 계약면적만을 작업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 종류의 임대농기계와 작업기가 분산되어 이용되는 데, 이것을 일일이 현장까지 가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상황에 비춰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꾸로 적절한 임대료 산정 기준은 아니다<sup>73)</sup>.

다섯 번째로 농기계사고에 대비한 공제가입이 매우 소홀하다는 점이다. 단 기임대만을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를 중요시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농기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임대농기계신청서에 임차인의 책임이 명기되었다고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급히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면세유의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여섯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농업기술센터에 의한 농기계임대 사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아직까지 일반화된 예산과 지원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훈련용 농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것이 과연 하나의 사업으로 타당하지, 나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자들과 농업기계화의 전문인들이 지적하는 문제로 전 사용자가 적기 반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 임차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처리문제, 사용한 농기계의 임차인에 의한 운반이 불가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반해야하는 데, 수리와 임대수요가 많은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적기 운반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농작업 대행이 과연 국가 공무원으로써 수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칫 공무원들이 농사를 지어 준다는 인식과 당위성이 우리 농촌에 받아들여질 때,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73) 물론 독일 WBL에서와 같이 수명이 공동투자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총 투입비용을 수명의 공동투자인 전체 농기계작업 해당면적으로 나눈 다음 이것을 개인별 농기계작업 해당면적에 곱하여 개인별 총 임차료로 설정한다면 문제는 없음.

## 2) 개선 방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효과가 있다. 적어도 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에서 시행하는 하나의 사업, 정책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문제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기 달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현행대로 운영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혹은 일정한 틀을 가진 정책으로 격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알아서 하라는 수준이라면 앞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에 중요한 골격을 세우고자 한다. 즉 하나의 대안적 운영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개선방안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실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훈련용 농기계와 일반화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지속성의 유지는 사업추진 공무원과 수혜대상 농민들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만을 추진하며 그 임대사업의 목적과 수혜대상자를 명확히 해 뒤야한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 임작업을 국가 공무원이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향후 우리농업의 기간농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경영의 애로를 느끼는 영세농, 노령의 경영인과 부녀자 들을 수혜의 중심으로 삼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방향과 효율적인 수단이 강구될 수 있다.

적어도 위의 첫째와 둘째 사항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개선된 사업방법이 구상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목적과 대상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강

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정부의 조직이고 따라서 선택과 지원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농민 모두에 평등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업운영의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개선방안1: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기간농 중심>

첫째, 기간농 중심의 마을단위 농업조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작목을 경영하고 동일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마을내 작목반과 같은 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농업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포함된 일정 조직을 구성토록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중심적인 기간농에 농업경영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이외의 정책사업도 같이 지원되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둘째, 농기계의 선택과정에서 임대농기계를 활용하게 될 기간농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한다. 리스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중장기가 관리와 이용면에서 바람직하다.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농민들의 선택이 어려운 기종의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임차인은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임대료는 회수목표 금액을 다른 임대사업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지방자치단체내 행정조직에서 동일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를 참조하여 임대료는 체감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최초 임차인의 계약유지 불가 상황 발생시 해당 임대농기계의 처리가 용이해 질 수 있다.

셋째, 임대 농기계의 보관, 수리 등의 책임은 당연히 임차인에 두어야한다. 농기계와 농기계운전 및 조작자의 공제와 상해공제가입은 처음부터 농기계임대의 전제조건으로 운영해야한다. 그래야만 농기계의 관리가 보다 철저히 되고 사고 발생 후 문제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넷째, 임대용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수리기술·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운영리스의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임대 농기계의 비사용시기에 사전 점검, 수리시스템을 확립, 운영하면 그 만큼 농작

업시 고장횟수를 줄이고, 그만큼 해당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된다.

### <개선방안2: 농업경영애로 지원, 영세, 노약자 등 중심>

첫째,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농기계의 운전과 조작이 어렵다는 점이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의 기종은 소형농기계와 단순 작업기 등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다수의 소형 농기계와 작업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하나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임대하여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의 대표자에게 임대용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이를 주변 수혜대상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관리자에게는 일종의 관리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앞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현실에 적합한가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셋째, 임대용 농기계의 선정은 물론 수혜대상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의 판단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임대용 농기계의 종류가 필요하다. 누가 임대 농기계를 관리하느냐의 문제를 떠나 수많은 소형 농기계와 작업기에 대한 매우 넓은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수리수요가 발생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적절한 대응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정 수량의 예비 임대용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자칫 원인 파악이 불가능한 농기계고장으로 인한 지원요청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 대표자에 의한 임대용 농기계의 관리시 이러한 문제는 자칫 마을내 분란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어느 경우에도 임대용 농기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리는 중요하다. 임대용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난, 부식 등의 책임을 마을 대표자에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임대 농기계의 사고로 인한 문제처리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제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농기계운전과

조작자의 사고시 적절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임대 농기계 사용자들은 임대료보다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제도가 만들어져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5.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발전 방향

### 가. 문제점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운영 주체에 따라 사업 추진의 방법에 따라 당면한 문제점들이 다양하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운영 주체 하나하나에 따른 문제가 다르고 따라서 개선해야 할 내용과 방법 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구분하여 보면, 시·군 행정조직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두 운영 주체별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는 대동소이하지만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다른 면도 많다. 개별적인 면보다는 보다 공통적인 면을 중심으로 운영 주체별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내용과 문제점을 통합,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 정리된 내용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과 문제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두 지역간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목적은 보면, 경기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의 출발 자체가 농업기계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의 감축에 대한 대응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평균적인 지원을 통해 농기계이용부담을 줄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명확하게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충청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기도의 추진목적에 농기계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농업경영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내용이 부가되고 있다.

<표 5-37> 지방정부 사업 주체별 농기계임대사업의 특징과 문제

주요항목	행정부서(경기)	농업기술센터(충청)
사업목적	상대적으로 소극적	상대적으로 적극적
임대대상	행정부서: 일정조직중심이 주류 기술센터: 개인별, 무차별	개인별, 무차별이며 생활보호대상과 영세농 등에 우선, 일부 농작업도 대행
선발기준	일부 객관기준 미흡	특별 기준 불필요
사업비	경상예산	임시자금
기종선발	리스형: 김포, 화성, 양평, 여주 렌탈형: 고양, 과주, 평택, 안성	렌탈형(청주: 작업기 중심)
관련시설	행정부서: 장기임대 불필요 기술센터: 기존시설 활용	기존시설 활용
임대기간	행정부서: 장기임대중심(1년이하해도 하자없을 경우 계속임대) 기술센터: 1년이하 단기	기본 3일 기준, 초단기
임대료	행정부서: 장기 연간 임대료 설정 기술센터: 일 사용료 설정	사용면적과 일 기준 사용료 설정
사후관리	사고대비 공제가입의무화 사후관리 -행정부서: 미흡, 센터: 양호	수리능력보유로 사후관리 양호
기금	기금조례에 의거 연차별 확보	없음.
향후수요	일부 도시 및 도시근교외 수요잠재	상대적 경영열악 농민 수요 잠재
기타	농협을 임차인으로 할 경우 갈등 다른 사업과 미연계	농작업대행의 당위성 문제 대두 훈련용농기계의 활용당위성 문제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목표와 달리, 임대사업의 수혜 대상을 비교해 보면, 목표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경기도는 일정조직을 중심으로 경영을 집약시켜 그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었다. 일정 그룹을 대상으로 이 그룹의 농작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리더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농업경영의 집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임차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직이 아닌 개인별로 무차별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희망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농에 우선하는 내부규정을 갖고 있어 농업경영개선이라는 구조개선 차원의 임차인 설정은 아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수혜 대상이 조직인 경우 일정한 선발기준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일부는 기준에 의해 임대인을 선발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와 관련자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후 불만의 소지가 있다. 충청도는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농기계임대를 신청할 수 있고, 농업기

술센터에서는 그들의 임차희망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선착순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수혜 대상 선발을 위한 규정이 불필요하였다.

향후 안정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는 도와 시·군의 안정된 예산이 책정, 지원되고 있어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충청도는 임시자금을 이용한 농기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아산의 경우 시 예산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사업예산이 지원될지 우려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하나는 리스형 방법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렌탈형 방법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 김포, 화성 등에서는 임차 희망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선택하는 반면 고양, 파주 등에서는 임차인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농기계를 선발하고 있다. 충청도의 경우에도 역시 렌탈형 방법에 의해 농기계를 선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임대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정부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관리할 경우 관련시설이 없어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의 농기계관련시설이 있어 농기계 사후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다.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것도 강점 중의 하나이다.

농기계 임대기간은 행정부서에서 관리할 경우 대부분 중·장기이다. 1년이라 하더라도 농기계임대자와 임차인 사이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결국 내용년수 만큼의 장기로 임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 대상자들을 다수의 농업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단기이다. 1인 1기종, 3일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초단기 임대의 경우 여기에 따른 행정, 관리수요가 많기 때문에 적정 대처가 어렵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여유분의 농기계를 확보, 활용해야 한다. 농기계 운휴자원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물론 장기 임대의 경우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화될 가능성도 있다.

농기계 임대료는 임대기간에 따라 다르다. 경기도는 연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당연히 선불이다. 그러나 단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일 혹은 작업면적 기준 임대료를 산정, 적용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농기계고장에 따른 임차 농기계의 유희화와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작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임대료의 조정 등의 갈등이 상존한다. 임대료가 후불제일 경우, 특히 작업면적 기준일 경우에는 수취와 임대료 산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장기농기계임대의 경우 임대농기계의 유지, 관리, 수리 등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료를 선불로 수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기금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충청도 농업기술센터는 기금조례 자체가 없다. 당연히 연속사업을 위한 돈이 비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을 위한 자금의 비안정적 확보 문제와 결부되어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농기계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운전자와 농기계에 대한 상해공제 가입이 미진하다. 경기도의 경우 농기계임차인에게 공제가입을 권하고 있으나 실제 가입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 갱신 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단기임대 위주이다 보니 아예 이 부분의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기계 운전자의 경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 상해공제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농기계보험을 취급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보험 가입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가입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농기계와 운전자에 대한 공제나 보험가입은 필수요소이다. 사고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기타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거양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농협을 통한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데, 실제 농기계 이용농민까지 한 단계가 늘어나는 관리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농협에서의 경영수지 문제로 그리 반기지만



은 앓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일상적인 농작업 대행이 과연 공무원으로써 당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순수 훈련용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다.

## 나. 발전 방향

기초 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사업자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길을 어떠한 방향에서 찾을 것인가. 농업의 발전 방향에 발맞춘 농업기계화, 좁게 보면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기계임대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도, 행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로 구분하여 현실의 문제,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의 개선방안이 개별 임대사업자에 유효하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우리 농업은 분명 질적, 양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경영인과 지역에 대해 각종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어 우선순위 면에서 이 부분까지를 고려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전개는 비효율적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의 목표 설정에 농업경영개선, 나아가 농업구조개선의 한 수단으로 보는 적극적인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선택과 집중”이라는 요원한 정책의 집행방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러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 목표 아래에서 향후 우리 농업경영의 집중과 이를 통한 구조개선을 기대해야 하는 장차 기간농에게 농기계임대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극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운영 주체 통합: 우선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부서관리와 농업기술센터관리는 통합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 효율적 농기계임대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농기계의 운용리스(operating lease)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관련시설과 수

리, 관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하면서 운영규칙과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 운영 주체의 통합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예산의 절감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② 운영 주체별 업무의 분업적 협동: 농기계 임대사업의 관리를 행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동적으로 할 경우, 행정부서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된 사업기획과 예산통제, 사업의 효과 배가를 위한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의 임대, 관리, 수리지원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사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성향에 비춰볼 때 농업기술센터는 단기임대, 다수의 평균지원 같은 곳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어 이러한 위의 목표와 배치되는 행태가 나올 수 있다. 경계되어야 할 운영행태이다. 결국 이러한 면을 행정부서에서는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업적 협업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여긴다.

③ 안정 예산과 기금확보: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경상예산화해야 한다. 광역 자치단체와의 결합지원이든,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예산이든 경상적인 일반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기금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④ 장기임대와 사전·후 관리 강화: 농기계 임대기간은 장기가 좋을 것이다. 선택과 집중에도, 관리 수요의 축소에도, 그리고 농기계 및 운전자 공제 가입, 임차인 책임 관리 등에도 단기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용리스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장기임대가 바람직하다. 사전·후 관리 특히 사고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해야한다. 농기계임대 후 해당 농기계의 사유화를 인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점도 주요 관리의 대상이다.

⑤ 임차인 선발기준 객관화 및 수요자 기종선정: 임차인 선발을 위한 엄밀한 선발기준 설정과 적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대용 농기계는 임차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리스형의 방법 속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예산은 작업기보다는 본체 구입에 투입되어야 한다. 다수의 소형작업기로 앞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지역의 특화작목을 위한 고가의 대형기종도 임대사업용 농기계로 중요할 것이다.

⑥ 중간조직의 배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과 직접관련이 적은 농협이나 농업법인(임대 농기계의 재임대 농업법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임대사업의 단계를 늘려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의 경우 조합원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렵고, 자칫 경영수지의 적자로 인해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역지로 맡길 사업은 아니다.

⑦ 다른 사업과의 연계: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한다. 분명 농기계를 이용한 임대사업도 구조개선의 한 수단이지만 전부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다른 관련 사업과 같은 대상에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위 농작업대행과 연속 농작업 대행, 농지 임차면적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이 가속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⑧ 마지막으로 도시와 대도시 근교농업의 경우 비농업적 활동과 농지의 이용 등으로 인해 기간농에 의한 농업육성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경기도 관내 김포, 고양 등지의 경우 농업구조개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진정 필요한 평야지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야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시나 대도시근교에 비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결합지원을 할 경우 재정지원의 여력이 작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 표(제5장)

<부표 5-1> 임대용 농기계의 기종별 보유현황(충북 3개소)

구 분	기종명	구입년도	회사명	규 격	대 수
영동군	트랙터	1994	LG	39	1
		1997	동양	45	1
		2002	대동	70	1
	이앙기	1999	국제	6조식	1
		2002	대동	6조식	1
	콤바인	1999	LG	3조식	1
		2000	동양	4조식	1
	승용관리기	2001	아세아		1
비료살포기	2001	아세아		1	
소 계					9
음성군	트랙터	1998	대동	55	2
			국제	35	1
	이앙기	1999	대동	6조식	1
			국제		1
			동양		1
			LG		1
	콤바인	1998	국제	4조	1
				3조	1
			동양	4조	1
			LG	4조	1
	왕겨 파쇄기	2000	대동		1
	사각 매입대	2000	아세아		1
	심토 파쇄기	2000			1
구조기	2000			1	
제초기	2000			1	
바인더 외	2001			4	
소 계					20
청주시	트랙터	2000	대동	65	2
		2000	동양	48	1
	콤바인	2000	국제	3조	3
				4조	1
	승용 이앙기	2000	대동	6조	2
			국제	6조	2
	보행 이앙기	2000	동양	4조	1
	그 외 작업기	2000~2002			139
소 계					151
합 계					180

<부표 5-2> 임대용 농기계의 기종별 보유현황(충남)

구분	기종별	규격	단위	수량	구입단가 (천원)	상태	구입 일시	제작 회사	내구 년수	
승용 관리기	승용관리기	CFM-1200	대	1	9,570	양호	00.5.3	아세아	6년	
	로타리	CR-1250S	대	1	1,397	양호	00.5.3	아세아	6년	
	비닐피복기	VM-2600	대	1	605	양호	00.5.3	아세아	6년	
	봄 스프레이어	BS-1000	대	1	4,235	양호	00.5.3	아세아	6년	
	이앙장치	RP-6U	대	1	3,025	양호	00.5.3	아세아	6년	
	비료살포기	FS-300	대	1	539	양호	00.10.	아세아	6년	
	계(6종)			6						
승용 경운기	승용경운기	TR-13	대	1	3,925	양호	01.3.22	동양	6년	
	로타리	RT90	대	1	552	양호	01.3.22	동양	6년	
	2련배토기	TH2	대	1	79	양호	01.3.22	동양	6년	
	분무기	TPS500	대	1	2,415	양호	01.3.22	동양	6년	
	계(4종)			4						
축산 기계	원형결속기	MXI-1200	대	1	24,200	양호	99.11.6	성원	6년	
	사각결속기	SWB-2690	대	1	12,518	양호	99.11.6	성원	6년	
	랩피복기	SW-220	대	1	13,200	양호	99.11.6	성원	6년	
	큰하베스타	1ROLL	대	1	8,910	양호	00.4.20	LG	6년	
	모아콘디셔너	210cm	대	1	7,084	양호	00.4.20	LG	6년	
	반전 집초기	320cm	대	1	3,960	양호	00.4.20	LG	6년	
	배토기	2골	대	1	2,750	양호	00.10.19	LG	6년	
	액비살포기	4골	대	1	6,820	양호	00.7.27	LG	6년	
	하베스타		대	1	9,000	양호	2001.		6년	
	퇴비살포기		대	1	7,500	양호	2001		6년	
	그래플		대	1	1,500	양호	2001		6년	
	계(11종)			11						
톱밥제조기	PRS700E	대	1	49,750	양호				6년	
	계(1종)			1						
축산	랩피복기	CF-6500	대	2	13,722	양호	01.9.11	성원정밀	6년	
	반전집초기	WRT-400	대	1	4,761	양호	01.9.11	아세아중	6년	
	계(2종)			3						
경종	원판구동쟁이	YDP-602S	대	3	3,686	양호	01.9.11	동양물산	6년	
	심토파쇄기	LM-2	대	3	6,768	양호	01.9.11	현대정밀	6년	
	땅속작물수확기	DR 1300A	대	2	3,634	양호	01.9.11	두루기계	6년	
	잔가지파쇄기	HDT150M	대	2	4,710	양호	01.9.11	현대정밀	6년	
	논두렁조성기	SH-404	대	5	2,867	양호	01.9.11	신흥기업	6년	
	구굴기	JY270-500	대	2	3,700	양호	01.9.11	제용공업	6년	
	퇴비살포기	SW-TR A30	대	2	6,092	양호	01.9.11	세원산업	6년	
	상토조제기	SB-4000	대	5	3,379	양호	01.9.11	발산공업	6년	
	탈망기	HT-1	대	2	603	양호	01.9.11	한국마그	6년	
	파이프 정형기	PF2225	대	1	1,843	양호	01.9.11	새마을공	6년	
	파이프 성형기	PB25	대	1	1,024	양호	01.9.11	새마을공	6년	
	육묘일괄파종기	S1-5000	대	5	1,519	양호	01.9.11	세일산업	6년	
	예취기	JY-115	대	2	1,638	양호	01.9.11	제용공업	6년	
	축조시비기	FR-600A	대	2	3,583	양호	01.9.11	국제종합	6년	
		계(16종)			34					
	작 업 기	일륜관리기	ASC610	대	1	1,340	양호	01.9.11	아세아	6년
부분경운 건담직파기		kes800dr	대	1	4,900	양호	01.9.11	주경일	6년	
무농정지기		vtr261hr	대	1	2,739	양호	01.9.11	동양물산	6년	
	계(3종)			3						
총 계	43종			62						

<부표 5-3>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원/ 1일기준, 총북 3개소)

구 분	기 종	사용료	
영동군	트랙터 (50마력 이상)	100,000	
	트랙터 작업기	땅속 작물 수확기	30,000
		구굴기	30,000
		무논정지기	30,000
		마늘 파종기	30,000
	승용경운기(작업기 부착)		40,000
	승용 이앙기		80,000
	일륜 관리기		20,000
	제초, 전정 파쇄기		20,000
	음성군	승용이앙기	
콤바인		150,000	
트랙터		120,000	
디바이더		10,000	
트랙터 작업기		쟁기	30,000
		로타리	50,000
벗짚 결속기		60,000	
씨레		10,000	
로더		30,000	
중경 제초기		40,000	
구굴기		50,000	
심토 파쇄기		90,000	
목재 파쇄기		120,000	
트레일러		20,000	
상토 파쇄기		20,000	
원형 베일러		70,000	
집초반전기		10,000	
디스코모아		50,000	
랩핑기		60,000	
크래플		10,000	

(부표5-3 계속)

청주시	트랙터(3.3㎡)		20
	트랙터+쟁기(3.3㎡)		30
	트랙터+로타리(3.3㎡)		40
	트랙터+로우더(3.3㎡)		25
	콤바인(3.3㎡)		70
	승용이앙기(3.3㎡)		40
	보행이앙기(3.3㎡)		20
	땅속작물수확기	트랙터용(3.3㎡)	10
		경운기용(3.3㎡)	5
	흑조시비기(3.3㎡)		5
	퇴비살포기	트랙터용(3.3㎡)	10
		경운기용(3.3㎡)	5
	논두렁 조성기		20,000
	디바이더		3,000
	석회살포기	트랙터용	10,000
		경운기용	5,000
	병해충방제기	동력살분무기	10,000
		동력연무기	10,000
	휴립 피복기		10,000
	농용 굴삭기		50,000
	탈망기		10,000
	범씨 발아기		5,000
	곡물이송탱크		10,000
	상토조제기		10,000
	파이프정형기		20,000
	동력예취기		10,000
	관리기	본체	15,000
		부속작업기	5,000
	부추기계	파종기	15,000
		수확기	20,000
	파종기	육모용 벼일관	10,000
		벼+채소	5,000
	지게차		50,000
	건담직파기		10,000
반전잡초기		20,000	
곡물운반 트레일러		20,000	
스피드스프레이어		50,000	
트랙터용 방제기		10,000	

## 제 6 장

###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농협중앙회와 협력 아래 지역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는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적절한 관리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기준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현실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현재 (2003. 6) 7개 시범사업 지역농협에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운영요령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와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관련된 운영규정과 방법 등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장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현실과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 1. 농협중앙회의 운영요령

##### 가. 운영 지침<sup>74)</sup>

농협중앙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목적으로 두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

74) 농협에서의 운영지침은 농림부와 협의하에 결정된 것으로 현지 업무추진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임. 농협, 「농기계임대시범사업 현지 업무협의회 자료」, 2003. 6. 29.



악한 경영인들의 농기계이용비용 절감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이다.

이러한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사업의 추진방향을 영농조건 불리 지역 및 영세소농의 공동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 이용을 제고 및 농업 생산비 절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세부추진 내용

### 1) 사업내용

200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업규모<sup>75)</sup>는 아래의 <표6-1>과 같다. 농협수는 7개이며 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사업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에서 전체 사업비의 50%만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국고(30%)와 농협중앙회(20%)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즉 1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역농협의 총 사업비는 2.5억원이고, 이 가운데 자부담액은 1.25억원이며, 7천 5백만원은 정부에서, 5천만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은 정부 및 중앙회의 보조를 받아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한 후 농가 또는 생산조직에 임대하거나 조합 직영으로 임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6-1> 2003년 농기계 임대사업 규모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농협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국고보조	중앙회보조	자부담	계	
총사업비	7	525	350	875	1,750	보조 50%
1 조합당	-	75	50	125	250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인 지역농협에서는 임대용 농기계의 구입 및 임대운용, 임대료 징수와 관리, 임대 농기계의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75) 농림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개요는 본 보고서 제3장의 내용을 참조바람.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게 될 지역농협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임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 등이 소재한 지역농협은 제외하거나 낮은 순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 2) 임대 대상자와 임대농기계

농기계의 임대대상은 사업목적과 추진방향과 일치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달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농협중앙회에서 주문하고 있는 우선 임대대상을 보면, 먼저 “농기계 교육 훈련 수료 또는 농기계 운전경력 증명이 가능한 농가 또는 영농회, 작목반, 농협 청년부 등 생산 조직”과 “농기계 조작 및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나 병약자 등은 임대대상에서 제외”로 정리<sup>76)</sup>되어 있다. 농기계의 임대와는 달리 임대용 농기계를 이용한 임작업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대상 농가 선정 기준으로 ①고령농가, 장애자, 부녀자, 경지면적 1.3ha 이하 영세농가, ②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또는 농경지 피해농가, ③기타 사업운영 지역 농협장이 선정하는 농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임대용 농기계는 중대형 농기계로서 내구성이 있어 여러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역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기종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농기계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본체와 부속 작업기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역농협에서 임대용 농기계를 선정할 때, 농기계의 기종, 모델, 규격, 수량 등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역농협에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활용하라는 것이다.

## 3) 임대기간과 임대료

임대용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지역의 여건과 임대 대상자(조직)에 따라 단기 임대하거나 혹은 중·장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76) 농기계임대시범사업지침 승인(2003.1.7), 농기계임대 시범사업 시행계획 승인(2003.3.17), 농협, 「농기계임대시범사업 현지 업무협의회 자료」, 2003. 6. 29. P35~P40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수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단기 임대 위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농기계의 임대료는 지역농협장,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서 산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때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면, 중·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농기계 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농기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단기임대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부담능력과 관행 임작업료를 감안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

#### 4) 사전·후 관리

임대 농기계를 임대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 농기계의 운전조작 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적으로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농기계 작업중 안전사고 및 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사용 개시전 모든 임대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고, 임대 농기계의 운전자(기사)와 보조원은 농작업 상해공제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다.

임대 농기계의 도난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대용 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지<sup>77)</sup>를 부착토록 하였다.

<b>임 대 농 기 계</b> 이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장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2003년 월 일( ) 농협
---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을 위해 임대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지난 후 해당 농기계의 매각이나 폐기시에는 임대료 수입과 지역농협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대체 농기계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7)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10cm이며, 재질은 아크릴임.

## 5) 경리 및 장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포함한 경영수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보조원장을 마련하여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처리기준은 지역농협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임대차 계약서,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 농작업 신청서, 농작업신청 접수관리 대장,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임작업료 수납대장 등의 필수적인 장부는 반드시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6) 사업평가와 기타사항

농기계임대사업은 매년 4/4분기에 한 해의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sup>78)</sup>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당초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파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을 기초로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을 보다 잘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의 임대만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작업의 수·위탁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가 곤란하거나 농업인의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역농협 직영으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은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수리비, 연료비와 공제료 등 필요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는 2003년도 시범사업 참여조합에 대해 농기계 부품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계통조직 별 주요업무

농협의 주관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의 관련 주체별 주요업무를 정

---

78) 평가회는 운영위원,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여 연간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모색을 하며,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됨.

리한 것이 <표6-2>이다.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하는 시범사업의 조합과 이것을 총괄하는 중앙본부, 그리고 중간단계별 조직들의 역할이 비교적 소상히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업무는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농협에 오히려 부담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표 6-2>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주체별 주요 업무

사무소별	주요추진사항
참여농협 (사업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임대 및 임대료 징수</li> <li>○ 농기계 구입 및 자금교부 신청</li> <li>○ 보조금(예산) 검정 및 정산</li> <li>○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li> <li>○ 사업평가보고</li> </ul>
시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임대사업 참여농협 추천</li> <li>○ 보조금(예산) 교부 결정 신청 및 교부요구</li> <li>○ 추진계획 및 실적 파악 보고, 추진 독려</li> <li>○ 사업시행 계획 통보, 사업평가보고</li> </ul>
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임대사업 참여농협 선정 추천</li> <li>○ 보조금(예산) 교부 결정 신청 및 교부요구</li> <li>○ 보조금(예산) 검정 및 정산, 농기계구입확인</li> <li>○ 추진계획 및 실적 파악 보고, 추진 독려</li> <li>○ 사업시행 계획 통보, 사업평가보고</li> </ul>
중앙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정부)</li> <li>○ 보조금(예산) 교부 결정 신청 및 교부요구(정부)</li> <li>○ 보조금 검정 및 교부, 예산배정</li> <li>○ 사업시행 계획 통보, 사업평가 및 추진 독려</li> <li>○ 농기계임대사업 참여농협 선정</li> </ul>

## 2. 시범사업 지역농협의 운영 실태<sup>79)</sup>

### 가. 사업추진의 목적

어느 정책이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사업주체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를 수 있다. 주어진 자원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책사업이

79) 이하에서 정리되는 내용들은 2003년 6. 19 충북 오창농협에서 있었던 7개 시범사업 시행 조합에서 작성하여 발표한 각자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함께 연구진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임.

현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구목적이 관계자들에게 명확히 인식될 정도로 구체적,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목적은 우리의 현실에 부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농림부에서 작성한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목적<sup>80)</sup>을 보면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을 제고”에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정의 중요한 목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 영농능력에 한계가 있는 노령인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면서 그들을 농업경영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농지와 농업경영이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고 나갈 후계자들에게 집적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와 상당한 거리에 있고, 현장의 농업경영으로부터 머지않아 유리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임대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sup>81)</sup>. 현실에서도 이들 농민들에 의한 농기계 운전과 조작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현재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목적 대상이 되는 전업적인 농업인의 경영지원 하에서 유지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농업경영구조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농기계 운전과 농작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여러 영세농민과 노약자 농민들을 묶고, 그들의 농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농을 농기계임대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농지와 농업경영의 집적, 경영구조개선, 나아가 경쟁력 제고에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기계구입 부담의 경감, 농기계이용을 제고를 통한 이용비용 절감, 농업소득의 증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의 목표가 우리 농업발전의 지향방향과 부적합하다보니 농협중앙회의 운영요령상 사업목적과 현장에서 사업을 담

80) 농림부, 「2003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3권, p647 참조

81) 일본의 농기계리스렌탈사업의 경우 철저히 인정농업자, 법인 등 추구 농업을 이끌고 갈 후계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점은 본받아야 할 것임.

당하는 지역농협들이 만들어 놓은 목적들이 왜곡된 상태, 즉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영세소농의 영농유지지원과 같은 목적으로 정리된 지역농협이 적지 않다. 어느 지역농협에서는 처음부터 영농조건이 열악하거나, 조건불리지역, 영세소농의 공동이용을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업생산성 증가와 생산비 절감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확보될지 의문스럽다.

<표 6-3>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비교

구 분	사업 추진의 목적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을 제고
중앙회령 요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 경감 ○농기계 이용제고 및 농업생산비 절감 도모
강원 문막농협	○수탁 농가 농기계구입비용 절감 ○농기계 이용을 제고
경북 흥해농협	○수탁농가 농기계구입가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기계 이용을 향상
전북 공덕농협	○수탁 농가 농기계구입가격 절감과 소득 안정 ○농기계 이용을 향상
전남 남평농협	○관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농기계 이용을 및 농업생산성 증가 도모
충남 규암농협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농작업의 효율적으로 추진 ○우수작목반 농기계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의욕 고취 ○공동작업으로 농기계 적정 활용 ○농기계 구입은 농협에서 함으로 농가는 농기계 구입 자금 경감
충북 오창농협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 경감 ○농기계 이용제고 및 농업생산비 절감 도모
충청남 농협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 경감 ○농기계 이용제고 및 농업생산비 절감 도모 ○영농조건불리지역(산간오지) 및 영세소농(1ha미만) 공동이용을 위함. ○농업생산비 절감효과로 상대적 소득증대 및 경쟁력 우위확보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7개 시범사업 시행 조합 작성 계획서, 2003. 6.19,

따라서 장기적인 농업발전 도모를 위한 농업경영구조개선의 수단으로의 농업기계화가 이뤄지고, 그 가운데 하나의 정책수단인 농기계임대사업도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농업경영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확보”에 두어져야 한

다. 이것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농기계구입 부담의 경감, 농기계이용 절감, 나아가 농업소득의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임차주체와 기종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을 장기적인 농업경영구조의 개선에 두게 되면 임차농기계를 운용할 주체와 해당 농기계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

먼저 농기계 임차인은 당연히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기간농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업으로부터 점차 유리해야 할 부녀·고령자에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빌려주라는 농림부의 지원대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부녀자의 경우 기간농이라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녀·고령 영세소농이라고 할 때에는 아마도 농기계의 운전과 조작이 힘든 부류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러한 판단이 맞는다면 농기계임대사업은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지원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차주체에 대한 농림부의 시각과 달리 농협중앙회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하게 지원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주문한 내용을 부수적으로 달고는 있지만 임차인의 기준이 되는 자격요건을 보면 농기계 교육 훈련 수료 혹은 농기계 운전경력 증명이 가능한 농가 또는 영농회, 작목반, 농협 청년부 등의 생산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 즉 하나는 기간농이란 점과 다른 하나는 일정규모의 작업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기계 조작 및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나 병약자 등을 농기계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성 면과 농기계임대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기준이라 여겨진다.

농협중앙회의 이와같은 기준에 따라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에서도 비교적 바람직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제시된 여러 기준들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먼저 중요시하고 있는 기준은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젊은 기간농이다.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임차인의 연령까지도 제한하고 있음



을 <표6-4>에서 볼 수 있다. 농기계 조작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 등에 대한 농기계 임대제한도 눈에 띄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를 했고 자가경영규모도 평균 이상인 농가,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농이 중심이 된 농업생산조직을 농기계임대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기계를 임대해 주기 전에 농기계 및 운전자의 공제를 가입한 후계자를 기본적인 선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후 문제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임차 희망자의 개별적인 신용상태나 조합 협조정도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지역농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에서 제시한 기간농중심의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임대용 농기계의 기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간단히 생각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실정에 알맞은 농기계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우선 농업경영구조의 개선이란 측면에서 볼 때, 작업기의 비중은 줄어든다. 물론 어느 특수지역의 대형 작업기가 필요하다면 상황은 다르다<sup>82)</sup>. 일반적인 농업의 모습을 고려할 때 작업기보다는 농기계가 중요할 것이다.

임대용 농기계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임차인으로 예정된 수요자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농협(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수요의 내용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문제, 나아가 불균형 지원에 따른 수혜자간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경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약간 다른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수요자의 의향을 바탕으로 기종을 선발하고, 기종 내 규격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만 수요자의 의향과 예산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82) 가정하건데 인삼 주산지에서 인삼을 수확하는 고가의 작업기가 필요한데 몇 농가가 구입, 이용하기는 부담이 되는 고가일 경우 이 작업기는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종이 될 것임.

<표 6-4> 농기계 임차의 주체(사업시행 지원대상)의 비교

구 분	임차의 주체(사업시행 지원 대상)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농협중앙회장이 관련 운영지침마련, 농림부 후 시행 ○가능한 부녀·고령 영세소농가 우선대여 -고령농가: 65세 이상, 경지면적 1.3ha이하) -임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 등이 소재한 지역은 가급적 대상에서 제외(또는 차순위 적용)
중앙회령	○임대 대상자 -농기계 교육 훈련 수료 또는 농기계 운전경력 증명이 가능한 농가 또는 영농 회, 작목반, 농협 청년부 등 생산 조직 -농기계 조작 및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나 병약자 등은 임대대상에서 제외 * 임작업 우선지원 대상 농가 선정 기준 - 고령농가, 장애자, 부녀자, 경지면적 1.3ha 이하 영세농가 -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또는 농경지 피해농가 - 기타 사업운영 지역 농협장이 선정하는 농가
강문막농협	①농기계 임대시 운전가능 ②안전사고 대비 농기계종합공제, 농작업 안전공제 가입 의무화 준수 ③임대농기계를 장기보관할 수 있는 창고보유 가능자 ④조합원 자격신분 보유 5년 이상 수도작 경영자 ⑤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성실 납부 가능자(연체 및 재산의 정도 파악) ⑥농지원부상 본인 농지가 1ha이상 보유 농가 ⑦농기계임대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 협력 가능자 ⑧임차농가 연령 제한(35세 이상~55세 미만)
강해농협	①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수리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조합원을 우선 하여 임대 ②임대농기계가 대형으로 농기계교육훈련 수료 또는 농기계 운전 작업이 가능한 조합원이나 농업인 ③관내 조합원이나 농업인에 한함.
진덕농협	①임대료 총금액에 해당하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현금 또는 당 조합 예탁금 증서) ②농기계교육훈련 수료 또는 운전경력 3년이상 증명이 가능한 조합원 ③최근 3년간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농기계(트랙터, 콤팩트, 승용이앙기)를 구입 한 사실이 있는 조합원 제외(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④세대주 이해관계자의 신용상태가양호한 조합원 ⑤위 4가지 충족한 조합원중 자가경지면적(답)이 많은 조합원수(신청자 본인소 유기준) ⑥과거 임대사업(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배제
전남평남농협	○농기계임대 신청자(구체적 제시기준 알 수 없음) 중 임대 기종별 구입년도가 오래된 신청자를 우선 선정 * 관내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20여명의 사람들 중에 8명 선정
충규암농협	①고품질 쌀생산 우수 작목반 2개 조직 선정 ②농기계교육훈련 수료 및 경지면적 많은 조직 선정
충양농협	①임대농기계가 대형으로 농기계교육훈련 수료 또는 농기계 운전 작업이 가능한 조합원 ②농기계조작 및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나 병약자 등은 임 대대상에서 제외 ③관내 조합원으로 5년이상 수도작 경영자 ④임대농기계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창고보유 농가 ⑤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성실 납부 가능자(연체 및 재산의 정도 파악) ⑥임차농가 연령 제한(35세 이상~55세 미만)
충청남농협	①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용실적 및 기여도가 높은 조합원을 우선하여 임대 ②임대농기계가 대형으로 농기계교육훈련 수료 또는 농기계 운전 작업이 가능한 조합원이나 농업인 ③농기계조작 및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나 병약자 등은 임 대대상에서 제외 ④관내 조합원이나 농업인에 한함.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7개 시범사업 시행 조합 작성 계획서, 2003. 6.19,

임대용 농기계를 다양하게 할 것인가 혹은 어느 한두 기종으로 집중할 것인가도 검토의 대상이다. <표6-5>에 나타나 바와같이 강원 문막농협의 경우에는 임대농기계를 콤바인에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 지역농협에서는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에 한정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기종을 단순화할 수도 다양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임차 희망농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소할지도 모르지만 어느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느냐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후관리

<표 6-5> 임대시범 사업용 농기계

구 분	임대 시범사업용 농기계의 선택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①내구성이 있어 농가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종 중에서 수요자(농민)가 요구하는 기종 및 모델 선택 ②농기계본체외에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갖추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③농기계의 규격, 수량, 작업기종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중앙회령	①대상기종은 중대형 농기계로서 내구성이 있어 농가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지역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기종 ②농기계작업 수행에 필요한 본체와 부속 작업기 포함 ③농기계의 기종, 모델, 규격, 수량 등은 별도의 제한없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농협에서 결정
강원 문막농협	①수요자 중심의 기종 및 모델 선택, 농기계 본체 및 부속 작업기 구입 ②농기계의 규격, 수량, 작업기종은 지역에 적합기종 선정 ③사후관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회사 ④기종: 크라스 콤바인
경북 홍해농협	①대상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선택 ②농기계 구입은 지역 내 보급률이 가장 높은 회사 농기계로 선정
전북 공덕농협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신청자의 비율에 따라 기종 선정
전남 평농협	①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수요자(농민)가 요구하는 기종 및 모델 선택 ②농기계의 규격, 수량은 임대대상자가 원하는 기종으로 선정 ③지역실정에 맞게 기종 선정
충남 규암농협	①작목반에서 사용농기계 기종 작업기 신청 ②기종 :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충청 오창농협	①대상 수요농가에서 요구하는 농기계 선택 ②농기계의 수량은 트랙터 5대, 이앙기 5대, 콤바인 1대, 총 11대 ③기본적인 트랙터 부속기(쟁기, 로타리, 로우더) 있음
충청 청남농협	①관내 조합원 사용기종 중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기종(회사) 선택 ②농기계의 수량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각 3대씩 총 9대 ③기본적인 트랙터 부속기(쟁기, 로타리, 로우더) 있음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7개 시범사업 시행 조합 작성 계획서, 2003. 6.19

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이 문제 역시 운영위원회와 임차 희망농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배치된 결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농협에서 확보한(일부는 하계 될) 농기계와 기대수를 보면 아래의 <표6-6>과 같다. 대부분 조합에서는 우리 농업기계화의 주력기종인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을 확보하고 있다. 특별히 강원 문막농협에서는 콤바인으로 시범 농기계를 집중하고 있다. 전북 공덕농협에서는 트랙터에 충북 오창농협에서는 트랙터와 이앙기에 집중하고 있다. <표6-6>에는 작업기가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농협에서는 일정규모의 작업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6-6> 임대농기계 확보대수 및 정부보조금의 기종별 배분

단위: 대, 천원

구 분	임대 농기계 확보대수(대)				임대농기계구입비용(천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계
강원 문막농협	0	0	7	7	0	0	75,000	75,000
경북 흥해농협	3	4	3	10	29,050	16,160	29,790	75,000
전북 공덕농협	6	1	1	8	60,900	3,930	10,170	75,000
전남 남평농협	3	2	3	8	35,325	8,001	31,674	75,000
충남 규암농협	3	3	3	9	31,731	13,530	29,739	75,000
충북 오창농협	5	5	1	11	45,236	20,327	9,437	75,000
충북 청남농협	3	3	3	9	27,645	14,058	33,297	75,000
합 계	23	18	21	62	229,887	76,006	219,107	525,000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7개 시범사업 시행 조합 작성 계획서, 2003. 6.19,

## 다. 임대기간

임대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사업의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임대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관리, 임대사업의 목적 달성 등과 대단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장기의 경우에도 임대 가능기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농기계 임대외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단기이고, 어느 정도 이상이 장기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념적인 합의도 없다. 농기계의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도 농림부의 경우와 농협의 경우가 다르다. 예컨대 농림부

에서 규정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의 용자 상환기간 등의 결정에 이용하고 있는 내용년수는 트랙터 8년, 이앙기 5년, 콤바인 5년이다. 반면, 농협에서는 회계 규정상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4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시된 3기종 모두 농림부가 예시한 내용년수보다 짧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간이라도 내용년수의 개념을 통일해야 한다. 내용년수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오해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향후 업무협력을 위해서도 기종별 내용년수는 통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기간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즉 단기는 1년 이내를, 중기는 1~3년을, 장기는 3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농기계에 있어서 1년이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농업의 1년을 주기로 반복하게 되고 아울러 농기계도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일부 농업생산의 주기가 몇 달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농업을 상징할 경우 1년이 한 주기이다. 농기계의 사고에 대비한 공제의 가입기간도 최소 1년으로 되어 있어 임대 농기계를 몇 일 사용할 경우 바뀌는 임차인별 공제가입이 어렵다. 또한 농기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고장이 가장 적은 시기이며, 실질 가치의 하락도 가장 심한 기간이다. 따라서 단기를 1년 이내로 할 경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중기의 개념은 현실에서 많이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농기계의 임대기간을 1년(이내) 혹은 내용년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연수와 1년이란 기간동안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분리하여 설명할 마땅한 기간 구분의 용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들은 이 둘의 구분을 위해 중기를 1~3년으로 하였다. 3년이란 농기계공제 일회 가입시 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장기는 3년 이상, 대개는 내용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현실 적용시 설명과 함께 장단점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중·단기임대 개념의 불일치를 포함하여, 현실에서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주문하는 바람직한 임대기간에 대한 사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농림부에서는 임대농기계의 단기임대를 중시하고 있다. 중·장기의 경

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까지 보유해야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농협중앙회에서는 중·장기 임대를 중시하고,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임대를 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상호간 단·중·장기의 개념차이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화의 장기적인,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된 임대기간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협중앙회에서의 주문내용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농기계를 단기(2~3일)에,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 시 일정조정과 작업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농기계의 이동·운반 문제, 사용자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사후고장의 책임귀속 문제, 행정관리 비용의 과다문제, 농기계공제(1년, 3년) 혹은 보험의 문제, 면세유 수급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sup>83)</sup>. 트랙터와 승용 이앙기, 콤바인이 주력으로 되어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기간의 장기화는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농기계 내용년수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총괄기관인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시각이 다르다. 이로 인해 농기계임대 시범지역농협들은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 동일한 기종이라 하더라도 내용연수를, 총 임대 가능기간을 달리 하고 있다. 일률적인 잣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설정할 때 내용년수가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통일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별히 정부의 보조금 사업의 관리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와 해당기계의 관리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배된 농협규정과 적용은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실을 보자. 강원 문막농협에서는 콤바인의 내용년수를 7년으로, 전북 공덕농협과 전남 나주농협에서는 4년으로 하여 감가상가 및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느 농기계임대 시범조합에서 임대기간을 설정할 때 자신들의 회계규정에 따라 4년을 농기계의 내용년수로, 어느 조합에서는 농림부가 만든 내용년수로 감가상각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

83) 작업기의 경우에는 단기임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실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음. 고장, 수리가 잦지 않고,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반, 이용일정의 조정 등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동일 작업기 한대는 예비로 항상 대기하고 있음은 이를 말해줌.

다행스러운 것은 대다수의 시범농협에서는 그것이 농림부의 기준이든, 자체내부의 회계규정에 의한 것이든 농기계 임대기간을 내용년수에 맞춰 장기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람직한 기간설정이라 여겨진다. 단지 문제되는 시범조합은 충북 청남농협인데,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목적과 거의 무관한 수리중 농가편의 정도로 이 사업을 보고 있었다<표6-7>. 농기계 임대 대상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임대방법에서는 그것과 동떨어진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시간당 임대라는 초단기 임대의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최종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정되어야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표 6-7>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 결정방법

구 분	임대기간의 결정기준 방법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임대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되 가능한 한 많은 농가가 임대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를 하되, 임차인이 중장기 임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여야함.
중앙회 요령	○임대기간은 지역 여건, 임대대상에 따라 단기 임대 또는 중장기 임대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다수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기임대 위주로 운영
강원 문막농협	○7년(콤바인)
경북 홍해농협	○4년 장기 임대
전남 공덕농협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기 노후화 예방을 위해 임대기간은 4년
전남 남평농협	○농기계수명연장을 위해 트랙터 5년, 이앙기와 콤바인 4년으로 장기임대(내구년한까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충남 규암농협	○기본은 1년이지만 실제로는 4년 장기임대
충북 오창농협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연속 임대할 수 있다. 1년씩 4년 이내에서 임대 계약
충북 청남농협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농기계고장으로 인해 당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에 농기계수리를 의뢰시 수리기간 동안 임대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7개 시범사업 시행 조합 작성 계획서, 2003. 6.19

## 라. 임대료의 결정방법과 수준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sup>84)</sup>는 내용연수를 어떻게 잡느냐와 회수대상 금액의 수준을 농기계 가격의 어느 정도로 보느냐, 정액으로 하느냐 정율로 하느냐, 회수과정의 부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농기계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주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범조합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수대상 금액은 보조금 50%를 제외한 해당 농기계의 구입가격이다.

농기계 임대료와 관련하여 시범실시 농협에 따라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종에 동일한 임대료 적용방법을 이용하더라도 매년 징수하고자하는 임차료는 차이가 있다<sup>85)</sup>. 여기에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실비를 임대료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아예 순수 임차료만을 징수하기도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7개 지역농협 가운데 5개소는 연간 임차료를 책정,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 흥해농협은 내용연수 전체의 임차료, 즉 기대 구입가격의 50%인 보조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일시에 징수하고 있다. 충북 청남농협은 임대용 농기계를 고장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식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역시 1일당과 1시간당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의 산정방법도 다양하다. 먼저 일부에서는 임대용 농기계의 연차별 정액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실비를 정액배분하여 매년 임대료를 동일하게 만든 경우가 있다(충북 오창농협). 이와 달리 매년 임대용 농기계의 상각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존가치에 일정 비율의 실비를 적용, 결국 매년 임대료가 체감하도록 만들어 이용하는 지역농협도 있다(전남 남평농협, 전북 공덕농협). 강원 문막농협은 추후 농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체감식으로 적용하여 임차료를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84) 지역농협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고정자산구입사업의 경우 대의원 총회의 이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시 농기계라는 취득고정자산의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임대료와 임대수입의 처리 등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함.

85)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조합의 임대료 수준은 부표를 참조할 것.



<표 6-8> 농기계 임대료의 결정방법

구 분	임대료 결정 방법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임대료 결정은 임대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조합장, 농민대표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결정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해당 지역 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중앙회 요령	○임대료 결정: 임대료는 조합장,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결정 ○임대료 산정기준 -중장기 임대: 농기계 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농기계관리 및 유지 보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단기임대: 농업인의 부담능력과 관행 임작업료를 감안하여 산정
강문막농협	○임대료는 농기계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 ○7년기준(콤바인)연차별 임대료는 차등을 적용
경흥해농협	○5년기준, 보조금 제외 기대구입가의 50% 일시불로 회수
전공덕농협	○4년기준, 감가상각과 신규구입시의 농기계가격 비교에 의함.
전남평농협	○이사회에서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결정 -농기계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농기계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
충규암농협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결정 ○4년 기준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결정
충오창농협	○농기계구입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하고 감가상각비와 실비를 더하여 산출 - 4년 기준 전체 임대료 산출, 적용
충청남농협	○수리기간동안 임대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대료 책정, 1일 8시간 작업 기준, 1일 초과시 시간당 비용 추정

자료: 설문조사결과 및 7개 시범사업 시행 조합 작성 계획서, 2003. 6.19

그런데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의 산출방법과 수준 등을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둘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고정자산인 임대용 농기계의 감가상각 기간, 즉 내용년수 적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동일한 사업에서 동일한 기종에 대한 내용년수를 지역농협에 따라 4년으로 혹은 5년으로 각각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계처리와 경영수지 분석 등의 비교시 잣대가 다를 경우 결과해석의 오류가 반드시 유발된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재투자 등의 의사결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농협 자체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4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종별 내용년수를 이용하든지 분명히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농협간에 통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임대용 농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액에 임대사업 관리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비를 적용하는 것이 본연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지역 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 예컨대 내용연수, 실비포함 여부와 항목, 임차료 회수 규모, 임차료 산정방법(체감식이 유효)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충북 청남농협의 경우는 임대사업의 목적과 방법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임대용 농기계를 중·장기 임대할 경우 책정된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을 것인가 혹은 매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한 하나의 문제이다. 일시에 총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매년 농기계 임대료를 수거하는 것보다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임대 농기계의 총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을 경우 관련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수령한 농기계임차료를 재투자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효과이며, 지역농협 내에서 임차료의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마. 사전·후 관리

### 1) 사전관리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임대농기계가 임차농가에 전달되기 전까지 관리해야 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임대대상농가의 선정기준 마련, 임대기종의 선정기준 정립,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의 결정 이외 농기계의 이용에 적합한 상태의 유지, 사후문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각종 사전 관리업무가 그것들이다.

먼저 중요한 사전 관리업무 가운데 하나는 임대용 농기계를 임차해 가는 운전자(조작자)들에 대한 사전조작과 안전교육이다. 농림부나 농협중앙회에서

주문하고 있는 최소한의 운전과 작업기를 이용하는 조작방법, 안전 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농기계를 현장에서 활용할 경우 대단히 중요한 수리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임대용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과거부터 해당 농기계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농기계 조작을 능숙하게 하는 농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단순한 조작 교육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일상적인 고장 처치를 농민들 스스로 할 정도의 수리능력 제고의 교육,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비록 간단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전관리로 임대농기계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농기계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종합공제와 농기계 운전자, 즉 농기계임차인과 농작업 보조원에 대한 농작업 상해공제 가입을 전제하는 일이다. 이 역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사전 관리요소로 주문<sup>86)</sup>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무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으나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농기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범사업 지역농협에서 농기계 종합공제를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농협(전북 공덕농협과 충북 청담농협)에서는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농협의 예를 볼 때 공제가입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되는 부분은 임대용 농기계의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상해공제이다. 이 공제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명의로 가입을 해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임차인인 운전·조작자가 바뀌는 단기 임대의 경우 가입자체가 어렵다(충북 청남농협). 가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고가의 공제료를 납입해야한다. 많은 시범조합에서 이부분에 대한 명쾌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단지 임차인이 가입해야한다는 정도로만 정리해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

86)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기계의 유지·보수, 기본운영에 필요한 수리비, 연료비와 공제료 등 필요예산을 별도로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음.

<표 6-9> 임대농기계 종합공제 가입과 비용부담

구 분	공제가입 규정		공제가입비 부담	
	농기계	농작업자	농기계	농작업자
강원 문막농협	○	○	임차인	임차인
경북 흥해농협	주2)			
전북 공덕농협	주1)			
전남 함평농협	○	○	임차인	임차인
충남 규암농협	○	-	농협	-
충북 오창농협	○	-	농협	-
충북 청남농협	주1)			

주1) 충북 청남농협, 전북 공덕농협의 경우 농협이 임대농기계의 원소유자이기 때문에 공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가입비 부담 또한 개별적이라고 함. 물론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공제 의무가입과 사고상의 책임이 모두 임차자에게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

주2) 경북 흥해농협의 경우 농기계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음.

자료: 7개 시범사업 시행 조합 작성 계획서, 2003. 6.19

농기계 및 농작업인의 사고대비를 위한 공제가입 유무에 이어 중요한 것은 해당 공제료를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즉, 공제의 가입주체 문제이다. 강원도 문막농협과 전남 함평농협은 농기계와 농작업인 공제료 모두를 농기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반면 충남 규암농협과 충북 오창농협 지역농협은 농기계에 한해서 농협에서 미리 가입해주고 있다. 그러나 원칙상 농기계와 농작업인에 대한 공제의 가입과 공제료의 부담은 실질적인 이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지역농협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원칙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원칙은 단기임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농기계임대사업에 관련된 농기계종합공제와 운전·조작자와 관련한 상해공제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기 전에 사전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농기계의 경우에는 소유자인 지역농협에서 공제를 가입한 후, 공제료를 농기계 임대료에 포함, 징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기계 임차인의 상해공제는 임차인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기계 임대차계약이 중·장기일 경우 계약갱신시마다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상해공제의 가입해 있어야만 농기계와 농기계 임차인에 관련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물론 임차인이 추가적인 가입을 원하고, 스스로 공제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별도의 것이다.

경북 흥해농협의 경우 농기계회사에 공제가입비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바람직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농기계종합공제와 관련하여 비록 공제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공제에서의 보상한도를 넘는 사고의 경우 해당 농기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협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이다. 소유권자로서의 사고로부터의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87)</sup>.

세 번째 사전관리 사항으로 농기계사용 전·후 철저한 관리이다.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 후 농기계를 좋은 조건에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농림부의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sup>88)</sup>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농기계임차인의 자율에 의해 농기계를 보관하고, 그로 인한 문제의 책임, 역시 임차인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용 농기제로 구입한 농기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부분이다. 농기계임대사업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농기계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대농기계의 단기임대시 연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문제 역시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2) 사후관리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는 임대 농기계의 적절한 관리와 고장수리 수요에 대한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시로 임대농기계를 관리·점검하고, 나아가 농기계업체와 연계하여 관리하겠다는 강원 문막농협의 사업계획은 바람직하다. 여기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와 연계한 동절기 농가별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의 확대도 좋은 발상

---

87)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명쾌히 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8)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에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사후봉사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2002. 9, P77~의 내용을 참조할 것.

이다. 리스물품의 유지관리까지를 포함하는 운용리스(operating lease)의 장점을 도입하는 형태인데, 임차 농민들의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충북 청남농협의 경우에는 면별 농기계서비스센터 3개소를 통합하고, 임대농기계보관창고의 신축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 수리업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에 농기계의 구매사업까지를 통합한 “농기계종합지원센터(가칭)”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통합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임대시범사업 조합에서는 임대한 농기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 농업의 장래를 생각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단순히 농기계에 한정하지 말고 임차인의 경영적인 차원에서 자문해 줄 필요가 있다. 농기계를 이용한 경영구조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역 농협 차원의 경영지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농업기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하여 임차인이나 조직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 임차농민이나 조직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내용년수 경과 후 해당 농기계의 처리도 중요한 사안이다. 최종 농기계 처분 시에도 우수 임차인은 일반 임차인에 비해 우호적인 대우를 주는 것도 좋은 발상이다. 임차인들의 임차농기계 활용 실적, 경영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 우수 이용사례에 대한 추가지원 등도 사후관리의 영역에 포함된다. 충북 오창농협과 강원 문막농협에서는 농장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평가표에 의한 수시점검과 관리를 계획하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바. 사업지속과 경영수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수납된 임대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임대농기계 재구입시 필요한 기금으로 조성하기를 시범사업 지역농협에 요구하고 있다. 임대농기계 사업자인 해당 지역농협은 기존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

되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금 또는 지역농협 자체 예산으로 같은 수량의 농기계를 확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한번의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시각과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체 농기계구입시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비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협의 회계규정 상 농기계 임대료 수입을 기금화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한다<sup>89)</sup>. 따라서 임대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할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임대료 수입금과 자체예산으로 또다시 농기계를 구입, 임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적자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1차 사업종료 후 추가 사업시 국고와 중앙회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남 남평농협, 충남 규암농협 등도 동감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적자라는 주장은 충남 규암농협에서도 제기하고 있으며 적자에 대한 운영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사. 기타

농협중앙회에서는 기타 사항으로 농기계임대가 곤란하거나 농업인의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 지역농협 직영으로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농작업 수위탁은 결코 농기계 임대사업과 무관하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과는 다른 검토의 여지가 없는 조항이 아닌가 여겨진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후관리 부분에서 언급이 있었듯이 농기계임대계약과 책임 A/S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차피 임대농기계의 사전·후 관리를 임대사업 시행조합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치의제도와 같은 임대농기계의 관리제도가 안전하게 정착될

---

89) 전북 공덕농협에 의하면, 임대수수료를 손익계정이 아닌 B/S계정으로 관리하면 매년 일정액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인 관리로 임대농기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일부 농협에서는 중고 농기계의 거래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중고농기계의 장점은 여러 가지이며 실제 새 농기계와 비교시 이용의 큰 문제는 없다. 따라서 중고농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기계에 관련된 사업의 하나의 통합된 단위사업으로 정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농협 전체차원에서 추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 3. 시범사업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 가. 문제점

앞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관리 요령 가운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상황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과정에서도 일부 밝혔듯이 현재의 관리요령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중요한 것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인 농업기계화의 목표인 경영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지 않다.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장기적으로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영농능력에 애로가 예상되는 농업인들의 지원에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어 거시적 차원의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차농기계를 운용할 주체에 대해서도 관련조직 간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운전과 조작 자체가 어려운 부녀·고령 영세농가에 우선 임대하라는 지침까지 제시되고 있다.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기간농이라면 모르되 점차 전문 농업경영인과는 멀어지게 되는 주체에게 임대사업의 우선 수혜대상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처음부터 경지면적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영세소농이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 농협은 가능하면 더욱 많은 농민 조합원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규범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 농협이 주체가 된 농기계임대사업을 선택적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구조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활용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대단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이다.

셋째, 농기계에 대한 적용 내용년수와 임대기간이 각양각색이다. 장·단기간의 유리성을 검토하기 전에 농기계 내용년수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은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나아가 임대기간도 농기계임대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농기계임대료가 회수규모, 적용 내용년수와 임대기간의 차이, 나아가 순수 농기계 임대료에 관리실비의 적용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마다 차이가 있다. 동일 기준, 동일 구입가격의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가 동일사업 내에서 다른 것이다. 지역농협마다 다른 임대료 산정과 적용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다섯째, 농기계와 농작업자의 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가입주체와 가입비 부담방법도 미비하다. 본격적인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전에 완비해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사업의 종합적 지원(농기계 보관창고,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중고농기계의 활용 문제 등)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농기계 임대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어도 농기계 임대료 수입은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회계상 수입 농기계임대료를 기금화 혹은 적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곱째, 농기계임대사업은 임대사업 그 자체만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하는 데 농작업의 수위탁까지도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 나. 개선방안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세세한 현장 적용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시적, 진취적 차원에서 농업경영구조의 개선,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의 증진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아래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전업적인 농업인에 사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기계운전과 농작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여러 영세농과 노약자 등의 영농은 이들 기간농들이 지원하면 된다. 기간농이라 하더라도 선발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요한 지표를 이용하여 점수화된 평가표를 만들어 선정에 참고하는 것이 선정 이후의 반발을 사전에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농업기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지와 농업경영의 집적, 경영구조개선, 나아가 경쟁력 제고인 것이다.

둘째, 농기계임대시범사업용 농기계의 선택은 지역실정이 철저히 반영되는 방향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 비전에 비춰 필요한 농기계를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시범조합의 자출에 맡기는 것이 좋으나 어느 한 기종으로 전문화를 할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다. 왜냐하면 운영·관리면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1년 이상의 중·장기가 바람직하다. 물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의 임차인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임대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아울러 기간농의 경영구조개선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도 한 Operator에 의한 조작과 관리가 효과적이다. 단기의 경우 임대용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점, 예컨대 소유의식이 없을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고장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운영상 이용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기계를 몇 시간 혹은 몇 일 단위로 조작자를 달리할 경우 연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사용 중 고장시 원인자 규명문제, 고장으로 인한 작업 불이행과 손해배상, 해당 농기계의 이동·운반 문제, 행정관리 비용의 과다 문제, 농기계공제·보험의 문제, 면세유 수급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넷째,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적어도 동일사업의 주체인 지역농협간 통일된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 농기계임대료를 산출하는 데 이용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 시범조합에서 동일기준, 규격에 대해 동일한 임대료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 일치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지역농협의 내·외부 여건을 고려할 경우 아무래도 일치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기계에 적용하게 될 감가상각기간과 임대기간, 임대료로 회수하고자 하는 회수목표 금액, 임대료에 포함해야 할 관리운영비(이자, 관리비, 공제료 등) 등을 통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사후관리의 측면 뿐만 아니라 내부 회계처리의 일관성 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농협 내부의 고정자산처리 기준에 의할 경우 4년이 감가상각기간이라면 이 기준을 따르든지, 아니면 농림부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따라야한다. 농협 회계규정에 의할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사업의 관리규정과의 상치성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야한다. 회수목표 금액은 대부분 보조금을 제외한 농기계 구입가격의 50% 수준인데, 이것을 조금 높여 75% 내외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떠할지 주문하고 싶다. 임대료가 너무 낮을 경우 기존의 형성가격과의 마찰문제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회수 임대료의 재투자시 너무 적은 자금 규모로 인한 추가투자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임대료는 임대기간내 체감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세심한 관리를 유인할 수 있고, 중간 계약포기로 인한 재임대시 임대료의 용이성 확보(임대료가 저렴)라는 것 때문이다. 농기계임대료를 일시불로 받을 것인가 혹은 매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일시불로 농기계를 임대료

를 징수할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의 관련비용 절감, 재투자 용이성 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임대용 농기계와 농작업인의 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농기계 임대의 필수조건으로 해야 한다. 농기계종합공제는 농기계 소유자인 지역농협에서 가입하고 그 비용은 임대료에 포함하면 된다. 농작업자의 상해공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중·장기임대의 경우 농기계 임차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용이하다. 그러나 단기의 경우에는 농기계 임차인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가입도 어렵고, 설령 가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결국 농기계 임차인이 농기계와 농작업인에 관련된 공제를 가입해야 한다.

한편 농기계 및 조작자에 대한 종합 및 상해공제를 가입했다하더라도 공제의 보상한도를 넘는 사고의 경우 해당 농기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협의 책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중요한 문제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회계상 수입 농기계임대료를 기금화 혹은 적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기금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일시불 농기계임대료 회수라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중간의 농기계 임대차 해약사유 발생시 반환문제는 있지만 당해년도 농기계임대료를 다음해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에 투자,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사업의 지속과 확대라는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내용년수가 끝난 후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는 것이나 매년 회수된 농기계임대료를 재투자하는 것이나 효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농가의 종합적인 경영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업자인 지역농협의 입장에서는 중고농기계의 활용, 경영지도, 평가후 인센티브 지급 등의 보조적 종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기계임대계약과 책임 A/S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은 농기계 이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논란이 되는 농작업의 수위탁은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만큼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

부표(제6장)

<부표 6-1> 전남 남평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

단위: 천원

기종	연차	산출근기	이자(A)	임대료(B)	책정(C=A+B)
트랙터	1차년도	$(39,250 \times 50\%) = 19,625 \div 5\text{년}$	0	3,925	3,925
	2차년도	$15,700 \times 4\%$ (농기계대출금리)	628	3,925	4,553
	3차년도	$11,775 \times 4\%$	471	3,925	4,396
	4차년도	$7,850 \times 4\%$	314	3,925	4,239
	5차년도	$3,925 \times 4\%$	157	3,925	4,082
	계		1,570	19,625	21,195
콤바인	1차년도	$(38,250 \times 50\%) = 17,640 \div 4\text{년}$		4,410	4,410
	2차년도	$13,230 \times 4\% =$	529	4,410	4,939
	3차년도	$11,775 \times 4\%$	353	4,410	4,763
	4차년도	$7,850 \times 4\%$	176	4,410	4,586
	계		1,058	17,640	18,698
승용 이앙기	1차년도	$(13,100 \times 50\%) = 17,640 \div 4\text{년}$		1,638	1,638
	2차년도	$4,912 \times 4\%$	197	1,638	1,835
	3차년도	$3,274 \times 4\%$	131	1,638	1,769
	4차년도	$1,636 \times 4\%$	65	1,638	1,701
	계		393	6,552	6,943

주) 보조(50%)제외 농기계구입가격의 내용년수기간 정액배분, 임대료로 산정  
 금리는 농기계대출금리를 적용함.  
 연차는 기종별 내용년수 적용함.  
 ※ 임대기간후 농기계임대인이 갖오별 평가금액으로 인수하는 조건임.  
 자료: 나주남평농업협동조합,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계획서」, 2003. 6. 19

<부표 6-2> 충북 오창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

단위: 천원/4년

기종	구분	감가상각비(A)	실비(B)	임대료 책정(A+B)
트랙터 (부속작업기포함)	95HP	33,912	1,996	35,908
	125HP	52,101	3,066	55,167
	47HP	17,195	1,012	18,207
	50HP	24,957	1,469	26,426
	80HP	23,111	1,360	24,471
콤바인	4조	19,804	1,165	20,969
이앙기	6조 LG	9,636	567	10,203
	구보다	10,304	606	10,910
	6조대동	6,475	381	6,856
	6조동양	6,439	379	6,818
	6조국제	8,478	499	8,977
계		212,412	12,500	224,912

주) 관리인건비, 내부이자(율은 4%, 정책자금), 공제료를 운영예상 손익산출시 지출로 보고 있어 임대료 산정에는 넣지 않고 있음.  
 자료: 오창농업협동조합,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 2003. 6. 19

<부표 6-3> 전북 공덕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

단위: 천원

구 분		신규 구입시 대상금액	농가부담 임대료	2003	2004	2005	2006
콤바인 (국제)	원금		18,404	4,601	4,601	4,601	4,601
	관리비		4,959	1,240	1,240	1,240	1,239
	이자		2,066	464	798	533	271
	계	38,416	25,429	6,305	6,639	6,374	6,111
승용 이양기 (국제)	원금		7,112	1,778	1,778	1,778	1,778
	관리비		1,916	479	479	479	479
	이자		752	172	293	194	93
	계	14,740	9,780	2,429	2,550	2,451	2,350
트랙터 (국제) 85PS- 5520	원금		23,974	5,993	5,993	5,993	5,995
	관리비		6,459	1,615	1,615	1,615	1,614
	이자		2,648	598	1,025	683	342
	계	49,948	33,081	8,206	8,633	8,291	7,951
트랙터 (국제) 75PS- 5420 (2대)	원금		20,576	5,144	5,144	5,144	5,144
	관리비		5,544	1,386	1,386	1,386	1,386
	이자		2,293	518	888	592	295
	계	42,912	28,413	7,048	7,418	7,122	6,825
트랙터 (동양) 86PS- T860	원금		21,444	5,361	5,361	5,361	5,361
	관리비		5,778	1,444	1,444	1,444	1,446
	이자		2,581	583	999	666	333
	계	45,142	29,803	7,388	7,804	7,471	7,140
트랙터 (대동) 70PS- D700 (2대)	원금		18,187	4,547	4,547	4,547	4,546
	관리비		4,900	1,225	1,225	1,225	1,225
	이자		2,313	522	895	597	299
	계	38,556	25,400	6,294	6,667	6,369	6,070
총계	원금		148,460	37,115	37,115	37,115	37,115
	관리비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이자		17,259	3,897	6,681	4,454	2,227
	계	311,182	205,719	51,012	53,796	51,569	49,342

<부표 6-4> 충북 청남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1)

단위: 원

기	종	1일 임대료	1시간 임대료
트랙터	75hp	150,000	18,750
	55hp	120,000	15,000
이앙기	승용	150,000	18,750
	보행	50,000	6,250
콤바인		미정	미정

주) 기본료 계산은 1일 8시간 작업기준으로 계상함. 현재 임대료는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임, 내년에 재조정할 예정. 운영형태가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여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조합원 중 작업 중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농협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임대료가 나온 것임.  
 자료:청남농업협동조합, 「농기계임대사업 시행계획」, 2003. 6. 19

<부표 6-5> 충북 청남조합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2)

단위: 대, 천원

기종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임대기간	비고
트랙터	T430	1	2,225	2,225	1년	
트랙터	T550	1	3,790	3,790	1년	
트랙터	MX120	1	7,855	7,855	1년	
콤바인	4조식 MX120	3	4,186	12,560	1년	
이앙기	산파6조	1	1,925	1,925	1년	
이앙기	승용6조	2	1,898	3,795	1년	
계		9		32,150		

<부표 6-6> 경북 흥해농협의 임대료 계산방법과 수준

기종	규격	수량	단가	임대료	임대기간	비고
트랙터	EF525(52마력)	3	32,278	16,136 (단가의 50%)	5년	임대료 일시불로 받음
콤바인	2C575G(4조)	3	33,307	16,653 (단가의 50%)	5년	임대료 일시불로 받음
승용이앙기	RR660CD(6조)	4	13,476	6,738 (단가의 50%)	5년	임대료 일시불로 받음
계		10				

## 제 7 장

### 일본의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일찍이 일본은 농기계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만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 임대와 공동이용사업을 실시해 왔다. 1999년부터는 인정사업자가 리스회사와 계약을 맺어 농기계를 빌려 쓸 경우 리스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농기계리스사업(~2004)과, 이것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농기계의 임대와 작업의 수·위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농기계은행제도를 1960년대부터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농기계임대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적정 농기계사업의 모델정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첫째, 일본 농기계 이용정책의 내용과 변화 둘째, 일본의 주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례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실태와 문제점 분석 셋째, 일본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사점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

##### 가. 기본정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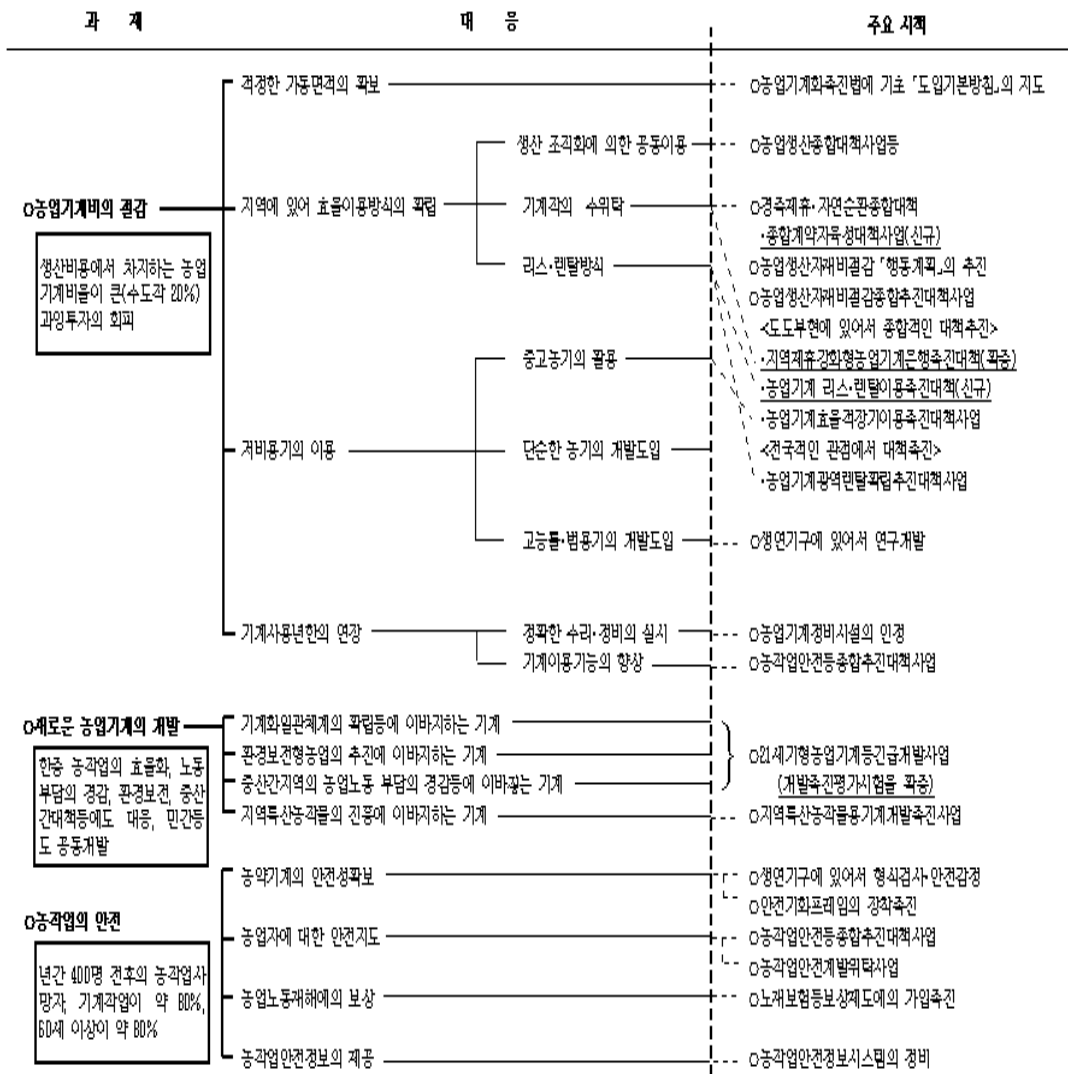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기본골격은 3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째는 농업생산과정에 있어서 농업기계비용의 절감, 둘째 새로운 농기계 개발, 세 번째는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방법의 강구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7-1>과 같은데, 먼저 농업생산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 비용(수도작의 경우 20%)을 줄여 농기계의



과잉보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기계의 구입단계에서부터 경제적인 기종과 규격을 선택하도록 농민들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선택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이용, 농작업수·위탁, 리스·렌탈 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고농기계를 활용하는 방안, 농기계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한 대책 등이 강구되고 있다.

<그림 7-1> 일본 농기계 정책의 기본개요



자료: 農林省, 「農業機械化政策について」, 2002

다음은 농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노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농기계의 지속적인 개발이다. 환경보전형이면서 중·산간 등의 특수 지역, 나아가 소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과수·채소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이 시장규모가 큰 기종은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보급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있거나 시장규모가 적은 농기계의 개발은 생산설비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개발 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 400명 전후의 농작업 사망자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 작업사고의 감소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해 농기계 작업사고의 약 80%가 60세 이상인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의 사전방지와 사후보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1)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

농가 및 농업소득의 증대와 함께 농가 호당 연간 농기구 구입비는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 및 농업소득 감소와 함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농기구 구입비는 487천엔(자동차와 합산)으로 농가소득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에서의 비중은 47.1%이다.

농가 호당 농기구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한 이후 약 470천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비에서의 비중도 약 2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기구비 가운데 60% 이상은 감가상각비가 차지하고 있다<표7-1>.

한편 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농기구비의 비중은 1980년대 후반 30%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 2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이 후 더 이상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2000년 쌀 생산비에서의 농기구비 비중은 20.8%, 2001년은 21.1%에 이르고 있다<표7-2>.

이와 같이 농업 생산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구비용의 절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1> 농기구비용의 추이(전국판매농가 1호당)

단위: 천엔, %

구분	농가 소득 (A)	농업 소득 (B)	농기구 구입비 (C)	농업 경영비 (D)	농기구 비 (E)	감가 상각비 (F)	비율(%)			
							C/A	C/B	E/D	F/E
1980	5,594	952	169	1,469	270	232	3.0	17.7	18.4	85.9
1985	6,916	1,066	198	1,831	382	325	2.9	18.6	20.9	85.1
1990	8,399	1,163	199	1,839	411	346	2.4	17.1	22.4	84.2
1991	8,686	1,422	232	2,317	361	259	2.0	16.3	15.6	71.1
1992	8,819	1,430	210	2,366	362	246	2.3	14.7	15.3	67.7
1993	8,883	1,291	215	2,380	360	241	2.4	16.7	15.1	66.9
1994	9,091	1,593	532	2,432	491	298	5.9	34.6	20.2	60.7
1995	8,917	1,442	588	2,349	456	278	6.6	40.8	19.4	61.0
1996	8,935	1,388	552	2,413	467	291	6.2	39.8	19.3	62.3
1997	8,796	1,203	539	2,439	476	295	6.1	44.2	19.5	62.0
1998	8,680	1,246	471	2,459	474	299	5.4	37.8	19.3	63.1
1999	8,459	1,141	529	2,441	479	304	6.3	46.3	19.6	63.5
2000	8,280	1,084	522	2,423	466	299	6.3	48.2	19.2	64.2
2001	8,022	1,034	487	2,440	471	303	6.1	47.1	19.3	64.3

주 1) 1991년부터 농기구비의 부가감가상각비의 계상이 중단됨.

2) 1994년부터 농기구에 농용자동차를 포함.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경영동향통계」, 각 년도

<표 7-2> 일본 쌀 생산비중 농기구와 노동비(전국판매농가 10a당)

단위:엔, %, 시간

년도	생산비(엔)				농기구 비 비중 D=B/A	10a당 노동시 간 (시간)	노동비(+농기구비) 비중		
	(A)	농기구 비 (B)	농기구비 중 감가상 각비 (C)	C/B (%)			노동비 (E)	노동비 비중 F=E/A(%)	D+F (%)
1965	28,294	3,963	3,647	92.0	14.0	141.0	15,626	55.2	69.2
1975	80,886	18,069	16,584	91.8	22.3	81.5	36,084	44.6	66.9
1980	128,335	36,242	33,486	92.4	28.2	64.4	52,681	41.0	69.3
1985	143,374	42,656	39,289	92.1	29.8	55.1	54,339	37.9	67.7
1990	140,572	42,831	39,174	91.5	30.5	43.8	51,398	36.6	67.0
1995	135,388	26,625	20,104	75.5	19.7	39.1	57,016	42.1	61.8
1996	136,656	27,694	21,080	76.1	20.3	38.2	56,992	41.7	62.0
1997	135,561	27,868	21,227	76.2	20.6	36.8	55,832	41.2	61.8
1998	138,050	28,754	21,907	76.2	20.8	36.1	56,986	41.3	62.1
1999	135,338	28,480	21,943	77.0	21.0	35.1	54,810	40.5	61.5
2000	132,219	27,528	21,168	76.9	20.8	34.2	53,103	40.2	61.0
2001	130,513	27,513	20,946	76.1	21.1	33.8	51,754	39.7	60.8

주) 1985년까지는 현미 60kg 이상을 판매한 농가, 그 후에는 600kg 이상을 판매한 농가대상임.

자료: 農林水産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米及び麥類の生産費」, 각 년도

첫째, 정부에서는 농기계 구입농민들에게 경영면적에 적합한 규격의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에 의해 적정 농기계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트랙터 60ps의 경우 적어도 연간 20ha의 논면적을 작업해야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대부분의 민간 농기계 판매점과 농협에서 농기계 구입농민들에게 권장되고 있다.

둘째, 지역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기계은행·Contractor방식(대규모 농가의 농작업을 직접 수탁하는 형태) 등을 도입하여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농기계의 이용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저렴한 중고농기계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로 활용되고 있는 중고농기계는 트랙터, 이앙기와 콤팩트 등이다.

넷째, 저비용 농기계의 이용을 위해 1996년부터 전농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농기계보다는 기본적인 성능을 중시하는 염가의 농기계, 일명 “HELP 농기계”(농림수산성에서는 simple 농기계라고도 함)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표 7-3> HELP농기계 출하실적(2000. 1~12)

기종	단위:대, %		
	HELP 출하실적(A)	전체 출하대수(B)	A/B
승용 트랙터	32,135	72,534	44
이앙기	35,130	55,386	63
자탈형 콤팩트	17,713	39,625	45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국 생산자재과, 『생산자재과 참고자료』, 2002. 3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등 주요 기종의 HELP농기계 출하 비중은 2000년의 경우 이들 기종의 시장에서 각각 44%, 63%, 45%로 추정되고 있다.

다섯째, 1997년 8월에는 「농업기계정비시설설치기준」의 일부를 개정하여 당시까지 4개(특급종합, 종합, 경정비, 점검정비)로 구분되어 있던 정비시설의 지정기준을 바꿔 3가지 형태, 즉 “소형정비시설”, “중형정비시설”, “대형정비시설”로 바꾸어 기계설비의 추가와 동시에 대형화, 고성능화에 대비하고 있

다. 2000년말 현재 정비시설은 총 5,510개이며, 농업기계정비기능검정 자격자는 47,231명이다.

여섯째, 농기계 운전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일본 정부는 1971년부터 년평균 약 2,400여명 정도의 농기계이용 기능자를 양성해 오고 있다. 1999년 현재 총 농업기계사 수는 87,206명이며, 이 가운데 지도농업기계사는 2,078명, 농업기계사는 85,128명이다.

일곱째, 적절한 수리·정비, 농기계이용기능인 양성과 함께 원활한 부품공급체계를 정비하는 것 역시 농기계 이용연수를 늘리고 결국에는 농기계 이용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① 수리용 부품의 공급연한 확대, ② 부품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부품이 주문 후 최소한 1~2일내에 농가에 공급되도록 정비, ③ 부품의 규격화를 추진하여 공용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로타리 경운날을 포함한 총 38규격이 일본공업규격(JIS)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일본농업기계공업회가 '일농공규격'으로 2000년 6월 현재 4규격을 지정해 놓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매년 농기계의 사용연수는 늘어나고 있다. 트랙터의 경우는 법정 내용연수의 2배 정도 오래 사용하고 있으며, 이앙기와 콤바인은 2배를 넘고 있어 고가의 농기계를 보다 오래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반면 사용기간 동안 적절한 부품의 공급이 이뤄져야하는 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지만, 현지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 하면 사용 농기계에 대한 적절한 수리부품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농기계는 그 지역 내에서 판매하기 힘든 풍토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농기계 제조 및 판매회사도 마찬가지다.

## 2) 신농기계 개발과 실용화

일본 내 농기계 개발에 관련된 기관별 연구내용을 개괄해 보면, 농기계의 연구개발은 생연기구(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구), 지방정부의 시험연구기관과 농기계기업에서 담당하고, 중앙정부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기계의 이

용에 관련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표7-4>.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농업기계화의 방향 설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지방정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표 7-4> 농기계 연구기관의 연구내용

연구기관	연구내용
중앙정부	○기계화재배법, 기계화 작업체계, 농기구의 효율적이용 등에 관한 연구
생연기구	○농업기계의 기초적·기반적 연구 및 연구개발 ○국가 기본방침에 근거한 고성능 농업기계등의 긴급개발
도도부현 (지방정부)	○기계이용체계에 관한 연구 ○지역에 대응한 시판 농기계의 개량 등
농기계기업	○시판 농기계의 개발

자료: 農林省, 「農業機械化政策について」, 2002

수도작 이외에 채소와 과일 등은 노동력의 부담이 커서 상대적으로 생력화의 필요성이 많은 작목이지만 해당 농기계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여 농기계 업체들의 기계개발이 소극적이다. 이와 같이 기계화 속도가 늦은 분야의 농기계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기초하여 “고성능 농업기계 등의 시험연구, 실용화의 촉진 및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1993년 8월 30일 농림수산성고시 제 1012호)”을 마련하여 농업기계 등 긴급개발·실용화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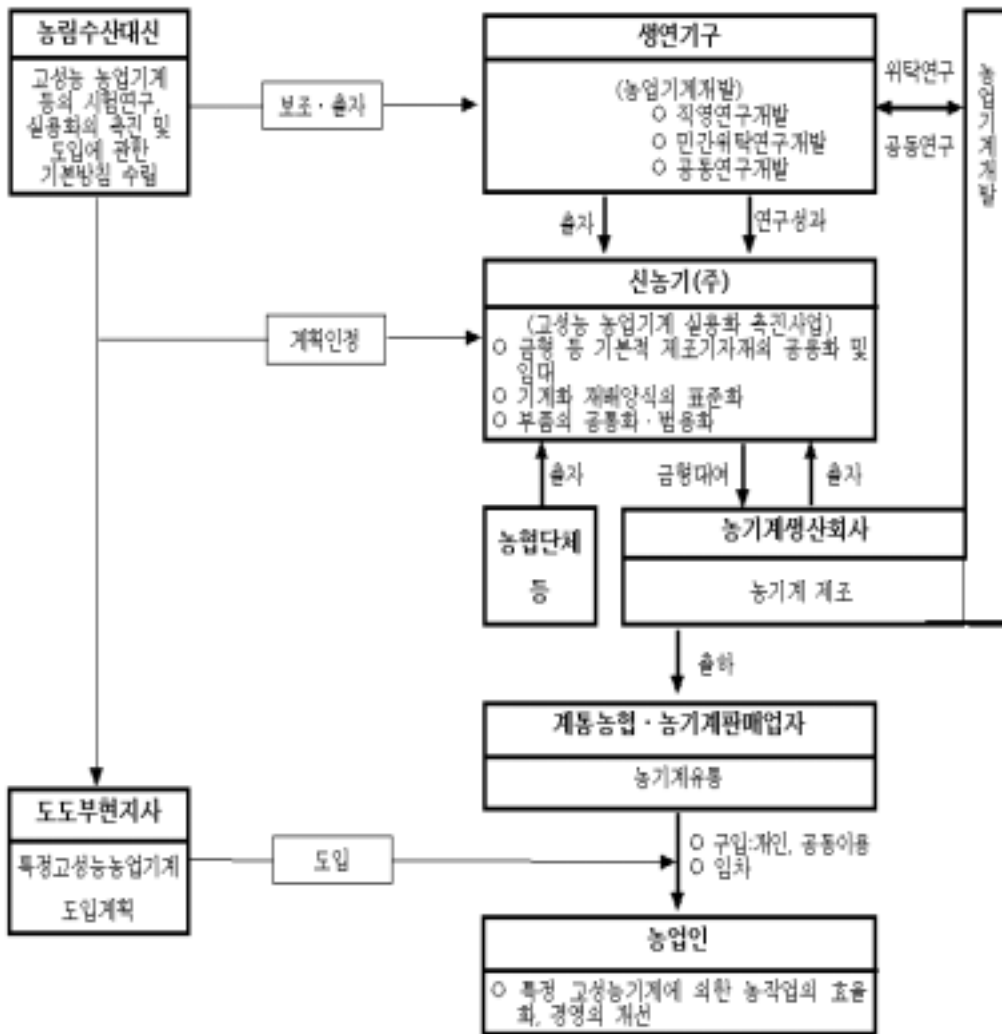
기본 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단위 연구기관인 생연기구와 농기계 업체들이 공동으로 고성능 농기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둘째 생연기구가 개발한 고성능 농기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주)신농기90)는 농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대부,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의 표준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기계 제조회사 등은 실용화된 고성능 농업기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 조건의 설정 등 농기계의 계획적인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그림7-2>.

농업기계 등 긴급개발·실용화 사업의 결과 2002년 2월 현재 실용화된 농

90) 정부의 “고성능 농업기계 등의 시험연구, 실용화의 촉진 및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행을 위해 1993년 10월 1일에는 신농업기계 실용화 촉진주식회사를 발족하였으며 자본금은 12억엔임.

업기계는 총 30종(1차재<sup>91)</sup> 포함)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농작업의 효율화, 노동부담의 경감 등을 위해 혁신적인 농업기계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농기계, 중산간 지역에 대응한 농기계를 꾸준히 개발, 실용화할 계획이다(1998년 이후, 21세기형 농업기계 등 긴급개발사업).

<그림 7-2> 농업기계 긴급개발·실용화 촉진사업 흐름도



자료: 農林省, 「農業機械化政策について」, 2002

91) 1996년에 개발 실용화 된 입상유기비료임.

한편, 지역특산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도 「생연기구」의 지도아래 지방정부와 지역 농기계 생산업자가 제휴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까지 39과제가 수행되었으며 2001년 현재 11개 과제가 수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지역특성 및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에 투입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2001년도 예산은, 21세기형 농기계 등 긴급개발사업 1,215백만엔, 지역 특산물 작물용 기계개발 촉진 사업 84백만엔 이다.

### 3) 농기계의 안전사용

농작업 사망사고 발생 비율을 타 산업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계속 줄어 2000년에는 3.6명인데 반해 농업취업인구 10만명당 농작업사고 사망자수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 3.5명이 많은 10.4명으로 이는 전체산업의 3배 수준이다<표7-5>.

<표 7-5> 농작업 사망사고와 전체 산업재해사망 비교

단위: 인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8	1999	2000
농작업 사고	사망자 수	356	384	374	401	371	409	397	394	402	376	381	406
	농업취업 인구 10만명 당	6.0	6.8	6.9	8.9	8.4	9.5	9.6	9.9	10.2	9.7	9.9	10.4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수	2,419	2,550	2,489	2,354	2,245	2,301	2,414	2,363	2,078	1,844	1,992	1,889
	노동자인 구 10만명 당	5.2	5.3	5.0	4.6	4.3	4.4	4.6	4.7	4.1	3.6	3.9	3.5

자료: 1. 농작업사고는 농림수산성 『농작업사고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함.  
2. 전체 산업재해는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안전위생년감』에 의함.

일본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생연기구로 하여금 농기계의 형식검사와 안전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합격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농기계에 표시<sup>92)</sup>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농민들은 이 표시가 없는 농기계의 구입을 기피할 것이며, 농기계를 팔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에 합치되도록 농기계를 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적인 노력과 함께 농민 자신들의 안전한 농기계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기계사고 zero운동을 펼쳐 농작업 사고율의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 나. 농기계 관련 정부 및 제도금융 지원 실태

농기계 및 시설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는 자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 지원이며, 두 번째는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제도자금 지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기계화를 위한 행정확충을 위한 지원과 마지막으로 농기계와 관련된 신기술 개발·실용화에 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내용과 규모, 지원 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부 및 제도금융의 지원실태

#### 가)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것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은 경영종합대책사업, 경영구조대책사업 등 8개 대분류 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대분류 사업은 다시 1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은 83,622백만엔으로 2001년의 80,370백만엔에 비해 3.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7-6>.

---

92) 농기계 가격집에도 형식검사와 안전점검 합격 유무가 표시되어 있음.

<표 7-6>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1)

사업명	2001년도예산액		2002년도예산액		대상기계·시설 및 (보조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b>(경영종합대책사업)</b>		천엔		천엔	
지역농업구조개혁모델사업		0	신46	1,150,000	『지역농업구조개혁계획』에 지역농업의 중심이 되는 농업법인 등으로서 자리잡은 농업법인 등의 경영발전에 필요한 기계·시설(1/2·1/3, 오키나와 2/3·1/3)
농업경영전개지원임대사업		164,829		243,753	(1)인정농업자의 경영개선계획에 의거한 기계·시설(보조금액은 금리수준에 따라 변동) (2)지역공헌 농업자가 지역공헌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시설(국가 1/4, 시정촌 1/4) (이상 경영국경영정책과)
신산촌진행등농림어업특별대책사업	512	16,024,091	428	12,427,953	·주요 보조대상기계·시설은 고생산성 농업용기계시설, 육묘시설, 농립수산물집 출하저장시설, 건조조제시설, 농업경영 개선안정기계시설, 농립업기반정비용기계, 지역자원순환 활용시설등 ·보조율은 1/2, 4.5/10 및 4/10, 오키나와현은 2/3이내 (이상 농촌진흥국 지역진흥과)
<b>(경영구조대책사업등)</b>					
1.경영구조대책사업	267	21,268,051	신189 계267	21,351,034	계획실시에 필요한 기계·시설 (1/2, 4/10, 1/3, 오키나와 2/3이내)
2.Agri-Challenger지원사업			신35	1,750,000	계획실시에 필요한 기계·시설 (1/2, 4/10, 1/3, 오키나와 2/3이내)
3.판로개척긴급대책사업			신5	1,000,000	계획실시에 필요한 기계·시설 (1/2, 1/3, 오키나와 2/3이내)
4.농업연수교육시설정비사업					계획실시에 필요한 기계·시설 (1/2이내)(1.2.3은 경영국구조개선과, 4는 경영국보급과)
<b>(농용농촌정비사업의 내부)</b>					
대구획포장고도이용촉진사업		100,000		75,000	(이상, 농촌진흥국정비부농지조정과)
<b>(생산진흥종합대책)</b>		36,992,042		32,692,341	계획실시에 필요한 기계·시설 (1/2, 6/10, 4/10, 1/3, 1/4) (이상, 생산국총무과 생산진흥실)
<b>(식물방제종합추진사업의 내부)</b>					
종합적병충해관리추진사업		304,366		286,881	(1/2)
발생예찰종합추진사업		153,930		180,588	(1/2)
					(이상, 생산국 식물방역과)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표 7-6>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2)

사업명	2001년도예산액		2002년도예산액		대상기계·시설 및 (보조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축산진흥대책사업)		천엔		천엔	
산경영활성화사업		819,957		774,387	신규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는 낙농 helper와 후계자부제의 생김을 결부시킬 때 일본의 실패는 새로운 경영계승 시스템(일본형 축산경영계승시스템)의 확립,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보급, 정착, 협업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역 일관생산체제, 낙농 및 공작지역에 있어서 고기전용 종자우 생산 등의 확립을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경영의 다각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신규취농자를 위한 연수시설의 정비 (1/2, 4/10) ·취농적지 및 후계자부재경영의 시설설의 조건정비 ·지역내 일관생산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정비(1/2) ·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1/2)
지역축산종합지원체제정비사업		730,532		1,148,550	낙농 helper, 육용우 helper 등 기존의 지원조직의 통합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대에 필요한 시설기계의 증설보충,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실기연수에 필요한 시설기계의 정비, 교육을 실시하는 농가에 있어서 체험학습시설의 정비 등 ·축사정비 ·가축운반용차량 ·사료생산용기계 ·가축분뇨처리기계 등 (1/2, 1/3, 4/10) (이상, 생산국 축산부 축산기획과)
축산생산기술고도화기계 임대사업		50,000		34,647	기본계획법에 의거 여유있는 생산성 높은 축산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사양과 판매관리, 번식, 위생관리 등 생산기술고도화를 위해 Computer제어기계 등의 임대방식에 의한 도입을 추진한다. 임대료율 2.0%
지역축산종합지원체제정비사업		730,532		1,148,550	낙농 helper, 육용우 helper 등 기존의 지원조직의 통합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대에 필요한 시설기계의 증설보충,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실기연수에 필요한 시설기계의 정비, 교육farm을 실시하는 농가에 있어서 체험학습시설의 정비 등 ·축사정비 ·가축운반용차량 ·사료생산용기계 ·가축분뇨처리기계 등 (1/2, 1/3, 4/10) (이상, 생산국 축산부 축산기획과)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표 7-6>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3)

사업명	2001년도예산액		2002년도예산액		대상기계·시설 및 (보조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경축제휴·자원순환종합 대책사업) 자원순환농업추진종합대책사업		천엔 0		천엔 6,306,444	가축배설물 등의 다비화시설, 메탄발 효시설 등의 공동이용시설, 다비산포 기계 등의 공동이용기계 등의 정비 (1/2, 6/10) (생산국 축산부 축산기획과)
(축산진흥종합대책의 내부) 자급사료증산종합대책사업 (조건정비미이용지활용)		973,955		636,274	자급사료의 증산을 추진하기 위해 자 급사료의 기반강화, 고생산성 사료생 산 시스템의 확립, 경축제휴에 따른 사료 생산확대, 일본형 방목의 확 대, 공공목장의 효율적 이용, 사료생 산이용기술의 확립·보급 및 우량품종 의 선정, 보급, 미이용지를 활용한 방 목 등 축산적 토지이용의 확대에 필요 한 작부조건의 정비, 시설·기계 의 정 비 등의 해당시설·기계의 임대를 한다. (1/2이내, 정액) (생산국 축산부사료과)
(경축제휴·자원순환종합대책 의 내부)					
종작물활용형사료증산대책사업 (조건정비)		0		318,367	경축제휴에 따른 경종작물을 활용한 자급사료의 증산을 추진하기 위해 수 전에 있어서 사료작물생산에 필요한 작부조건의 정비, 시설기계의 정비의 해당시설기계의 임대, 볏짚 등 유기자 원의 활용, 추비과의 교환에 필요한 시설기계의 정비의 해당시설기계의 임대를 한다. (1/2이내) (생산국 축산부사료과)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나)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제도자금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제도자금 지원은 농업개량자금, 농업근대화 자금,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2002년도의 자금지원 규모는 100,156백만엔으로 2001년에 비해 9.4% 정도 감소한 상태이다. 이것은 정부부문의 증가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농업개량자금의 경우 전체 대부금 중 농업기계·시설에 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2001년의 36.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표7-7>.

<표 7-7> 농업기계·시설에 관한 제도자금의 지원내용(1)

사업명	2001년도예산액		2002년도예산액		대상기계·시설 및 (보조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b>(농업개량자금)</b>		천엔		천엔	
농업경영기반강화조치특별회계					
농업개량자금대부금		23,297,314		29,515,656	<b>*농기계·시설부문 대부금</b>
총대부액		63,426,500		63,426,500	
<b>(총 대부내역)</b>		백만엔		백만엔	
<b>생산방식개선자금</b>		<b>50,585</b>		-	제도개정에 따른 통합
(Bio Technology도입자금)		85		-	
(생산환경개선자금)		800		-	
(환경보전형농업도입자금)		2,000		-	
(생산조직육성자금)		1,260		-	
(수진농업생산성향상등자금)		12,000		-	
(전작기술합리화자금)		1,100		-	
(과수재배합리화자금)		3,800		-	
(야채생산고도화자금)		3,240		-	
(화훼생산고도화자금)		400		-	
(축산진흥자금)		22,200		-	
(지역농업기술도입자금)		3,700		-	
<b>특정지역신부문도입자금</b>		<b>2,100</b>		-	
(신부문경영준비자금)		100		-	
(신부문귀의유영개시자금)		2,000		-	
<b>경영규모확대자금</b>		<b>1,277</b>		-	
<b>농가생활개선자금</b>		<b>2,000</b>		-	
(여성·고령자활동자금)		300		-	
(생활환경개선자금)		1,700		-	
<b>청년농업자등 육성확보자금</b>		<b>7,465</b>		-	
(경영기술고도화자금)		423		-	
(경영개시자금)		7,042		-	(이상, 경영국보급과)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표 7-7> 농업기계·시설에 관한 제도자금의 지원내용(2)

사업명	2001년도예산액		2002년도예산액		대상기계·시설 및 (보조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농업근대화자금) 총대부		천엔 4,825,233 400,000,000		천엔 4,359,064 400,000,000	* 총 대부 중 농업기계·시설 지원  <대부이율> (현행) 개인시설 1.6%, 공동이용시설 1.6% 소토지개량자금 1.6% (지역농업확립종합자금) 개인시설 1.6%, 공동이용시설 1.6%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 경영체육성장화자금		82,381,000 30,000,000		66,281,000 40,000,000	* 총 대부 중 농업기계·시설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등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기계 등의 취득등에 필 요한 자금 1.6%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대부액		95,000,000		95,000,000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기초한 경영개선계획 등의 인정을 받은자 의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에 필요한 장기자금 1.2~1.6%(이자조 성후)
진흥산촌·과소지역경영개선자 금대부액		2,500,000		2,500,000	산촌진흥법은 과소지역자립촉진특 별조치법에 기초한 농림어업의 경 영개선 및 진흥에 필요한 시설의 도입자금 1.6%(비보조)
농림어업시설자금대부액		80,900,000		66,574,000	(공동이용시설) 농업자의 공동이용에 제공하는 시 설의 개량, 조성에 필요한 자금 1.2~1.6, 1.95% (주무대신지정시설) 농업자에 의한 농축사등 농업시설 의 도입자금. 1.2~1.6%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대부 액		4,000,000		4,000,000	가축 배설물의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 설·기계 등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보조 : 1.6% 비보조 : 1.6% 공동이용 : 1.6%  (이상, 경영국 금융조정과)

주) 금리는 2002년 1월 21일 기준임.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농업근대화자금의 경우에는 총 대부금 중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련된 자금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은 66,281백만엔으로 전년에 비해 19.5% 감소하였다.

다) 농업기계화 행정의 확충에 관한 지원

농업기계화 행정 확충에 관한 지원은 총 7개 사업으로 2002년 지원액은 3,307백만원이며, 2002년의 3,472백만원에 비해 4.8%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표7-8>.

<표 7-8> 농업기계화 행정의 확충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1)

사업명	2001년도예산액		2002년도예산액		대상기계·시설 및 (보조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b>1.농업생산자재종합대책사업비</b>		천엔 737,294		천엔 414,604	
(1)농업생산자재비제언종합추진 대책사업비의 내부					
- 농업생산자재비절감종합 추진사업비	1민간단체	32,099	1민간단체	22,227	정액·1/2
- 농업생산자재비절감종합 추진대책사업비	47현16지구	61,745	47현16지구	72,030	1/2
(2)농업생산자재폐기물처리적정 화사업비	47현16지구	56,000	47현16지구	44,252	1/2
(3)농업생산자재폐기물처리추진 사업비	1민간단체	439,356	2민간단체	158,613	1/2
(4)지역특산농작물용기계개발촉 진사업비	신규4과제 계속5현,8과 제	83,819	신규1과제 계속8과제	63,446	1/2
(5)농작업안전등종합추진대책사 업비	47현141지구	64,275	47현141지 구	54,036	1/2
<b>2.농작업안전계발사업위탁비</b>		5,947	1민간단체	4,555	
<b>3.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 기구</b>		2,592,679		2,470,036	
(1)운영비보조금		2,411,679		2,296,867	21세기형 농업기계등 긴급개발사업비 1,073,664천엔
(2)시설정비비보조금		0		173,169	
(3)출자금		181,000		0	
<b>4.경축제휴·자원순환종합대책 사업 중 종합콘트라쿠타육성 대책사업</b>		0		286,285	(생산진흥종합대책)
<b>5.기계화농업생산체계 확립해외 협력촉진사업</b>	1민간단체	15,553		11,898	
<b>6.농업생산자재 종합대책사업비 의 내부</b>		12,513		12,501	(이상 생산국생산자재 과)
<b>7.농업기술연수관의 운영비</b>		108,040		107,094	(이상, 대신관방농림 수산연수소)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라) 신기술개발·실용화에 관한 지원

21세기형 농업기계의 개발 등 신기술의 개발·실용화에 관한 지원은 2,263백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24.0% 정도 감소하였다<표7-9>.

<표 7-9> 신기술개발·실용화에 관한 정부지원 내용

사업명	2001년도예산액		2002년도예산액		대상기계·시설 및 (보조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세기형 농업기계 등 긴급개발사업]		천엔		천엔	
		1,214,531		1,073,664	①기계화 일관체계로 하는 농업기계의 개발 ②환경부담절감으로 하는 농업기계의 개발(유기성자원 순환이용시스템을 위한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포함) ③중산간지역대응형 농업기계의 개발 (이상, 생산국생산자재과)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등 첨단산업 기술 개발 중]					(추가과제)
연구성과 실용화형		1,673,197		1,112,919	차세대형야채생산 시스템의 개발 (이상, 첨단산업기술연구과)
(농업생산자재 종합대책사업비의 범위)					
농약안전사용등 종합추진사업비		89,918		76,430	(1/2) (이상, 생산국생산자재과농약 대책실)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2) 농기계관련 정부보조사업 현황

농기계·시설에 관련된 정부 보조사업은 지역농업 구조개혁 모델사업을 비롯한 19개 정도의 사업으로 매우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으로 보조비율 역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표7-10>.

이러한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 중 농기계 효율이용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경영전개리스사업, 축산생산기술 고도화 기계 리스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표 7-10> 일본의 농기계관련 보조사업 현황(1) (2002년 현재)

보조사 업명	사업 년도	실시 지구 조성 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율
지역농업 구조개혁 모델 사업	2002 ~ 2005	1년간	지역의 다양한 농업실정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지역농업구조개혁계획』에 의거 『지역농업의 핵심 농업법인』, 『지역농지이용집적의 핵심 농업법인』, 『지구를 하나의 농장으로 효율적인 일괄관리·운영하는 집락영농조직』을 모델적으로 육성	①고생산성 농업생산시설 등의 정비, 피고용자 등 체제시설, 간이휴게시설 등의 정비, ②집락내 농업자로부터 집락 1농장형경영에 적합한 농업기계의 매상비용, 소규모 토지기반정비 지원, ③직관·가공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지원, ④신기술, 신품종 도입에 필요한 기술 취득활동 지원	1/2, 1/3 (오기나와 1/3, 2/3)
농업경영 전개지원 리스 사업	2002 ~ 2004	리스계 약기간 과 동일(8년 이내)	인정농업자의 경영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영확대와 경영전환 실시 및 지역농업생산의 유지·활성화에 공헌하는 농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시설의 리스방식에 의한 도입 지원	①인정농업자의 경영확대와 경영전환 실시에 필요한 기계·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빌리는 경우 전농이 리스료 일부 조성 ②지역공헌을 행하는 농업자의 활동에 필요한 기계·시설을 리스회사에서 빌리는 경우 전농이 리스료 일부 조성	1/2이내 (전국농업 협동조합 연합회는 정액)
경영구조 대책사업	2000 ~ 2011	3년간	효율적·안정적인 경영체가 지역농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신규취농의 촉진, 인정농업자의 육성, 법인 경영으로의 발전 등 담당자의 확보·육성	경영체 육성에 직결되는 토지기반, 생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정보시설, 도농교류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역농업의 agribusiness의 도입, 신규취농의 후원, 리스에 의한 경영체의 육성, 여성대책·고령자농업 활동의 지원을 도모	1/2, 4/10이내 (오기나와 는 2/3이내)
선도 개척농 지원사업	2002 ~ 2004	1년간	효율적·안정적인 경영체가 지역농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신상품, 신기술의 개발, 시설정비 등의 지원을 통해 농업도전의 육성을 꾀하고, 모델전시지구로서 애그리비즈니스의 추진에 공헌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가공·유통·정보·교류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애그리비즈니스의 도전에 필요한 시설정비를 지원	정액, 1/2이내
판로개척 긴급대책 사업	2002 ~ 2004	1년간	소비·수요측면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농업구조를 전환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수요측면의 요구에 대응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확립하는 것	지역농산물의 안정공급체제의 확립을 위해 포장정비나 시설정비를 지원	정액, 1/2이내 (오기나와 는 2/3이내)
신 산촌진흥 등 농림어업 특별대책 사업	1999 ~ 2011	4간	중산간지역의 진흥을 한층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산업의 진흥, 산촌·도시의 교류 촉진과 이것을 지원하는 풍부한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 담당자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지역진흥시책을 전개	농림어업진흥사업, 취업소득기회창출사업, 산촌·도시교류촉진사업, 자연경관보전추진사업, 정주촉진생활환경정비사업, 고령자·여성 등을 살리는 발취촉진사업, 산촌진흥 등 지역 제휴추진사업 등	1/2, 4.5/10 또는 4/10 (오기나와 는 2/3)이내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표 7-10> 일본의 농기계관련 보조사업 현황(2) (2002년 현재)

보조사업명	사업년도	실시지구 조성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율
대구획 포장 고도이용 촉진사업	1999	3년간	대구획포장에 대응한 영농, 기계화체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포장정비사업의 내부, 대구획화의 추진 및 맥·대두의 생산진흥의 관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가진 지구에 있어서 포장정비와 대형농업기계의 도입을 일체적으로 추진	『대구획포장고도이용촉진계획』에 따라서 생산조직등이 리스에 의한 대형농업기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리스료의 50%를 조성하는 것	1/2
농업생산 종합대책 사업	2000 ~ 2004	1년간	지역농업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일관한 고도산지체제의 구축, 소비자·실수요자와의 제휴강화나 특색있는 상품의 개발·생산, 저비용화나 상품질화등의 농업생산관련 제문제에 해결에 필요한 신기술이나 신품종의 도입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기계 및 소규모토지기반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실시	①산지시스템화추진대책사업 ②소비자·실수요자제휴촉진대책사업 ③신기술·신품종도입대책사업 ④농업생산종합대책조건정비사업 ⑤단체추진사업	1/2, 6/10, 4/10, 1/3
지역생활화 계획 추진사업	2002 ~ 2004	1년간 (hard사업의 경우)	소비자·실수요자요구에 대응한 생산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의 창의와 궁리에 의한 주체적인 산지창출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추진협의회의 개최 및 지역제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진지도사, 시장조사, 도입작물의 재배시험·실증포의 설치 등에 의한 품목의 조합 등의 확정, 생산체제의 확립, 판매전략의 책정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이용기계시설 등을 정비	①지역활성화 플랜추진사업 (soft사업) ②지역활성화 플랜추진정비사업(hard사업)	1/2
종합적 병충해관리 추진사업	2000 ~ 2002	1년간	환경을 배려한 종합적인 병충해관리기술을 확립	환경을 배려한 종합적병충해관리체계의 확립 및 추진	1/2
발생예찰 종합 추진사업	2001 ~ 2005	1년간	발생예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기술대책을 강구	신규 발생병충해 및 시설야채에 있어서 발생예측수법의 확립, 발생예찰조사의 효율화, 농경지주변의 휴경지 등의 발생원을 대상으로 방제기술의 확립	1/2, 정액 (중앙 민간단체)
농약 안전사용 종합 추진사업	1999 ~ 2002	1년간	농약사용자, 농작물 및 생활환경에서의 보다 안전성을 확보	농약사용자의 위해방지대책의 철저 및 농작물·토양·하천의 농약잔류의 조사 등을 하여 농약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종합적으로 추진	1/2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표 7-10> 일본의 농기계관련 보조사업 현황(3) (2002년 현재)

보조사업명	사업 년도	실시 지구 조성 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율
축산경영 활성화사업	2000~	1년간	여유 있는 생산성 높은 축산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낙 농직지나 후계자부재경영의 신규취농자 등으로의 원활한 계승 등에 의한 지역축산의 진흥을 도모	신규취농 희망자의 연수시설 정비,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보급, 정착, 협 업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역일관생산 체제·낙농 및 경종지역에 있어서 비 육전용 종자우생산 등의 확립을 위 해서 공동이용시설의 정비경영의 다 각화 등	정액, 1/2, 4/10
축산 생산기술 고도화기계 리스사업	2001~	2001~	기본계획 등에 의해서 여유 있는 생산성 높은 축산경영 을 실현하기 위해 사양관리, 번식·위생관리 등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해 컴퓨터제어기 계 등의 리스방식에 의한 도 입을 추진	리스료의 일부(기계취득가격의 금리 4.8%)를 조성	리스요 율 2.0%, 정액
지역축산 총합 지원제 정비사업	2000~		낙농 helper, 육용우 helper 등 지원조직에 의한 경영의 외부화 추진, 생산·경영기술 의 개선지도 등을 지역일체 로 되게 추진하고, 지역축산 의 안정적 지속·발전에 공헌	지원조직통합에 의한 효율적인 작업 수탁체계정비,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실기연수에 필요한 시설기계의 정비 등	1/2, 1/3 4/10
자원순환형 농업추진 총합 대책사업	2002~		가축배설물 등의 유기성 자 원의 리사이클, 양질의 비료, 녹비의 도비 등에 의한 효율 적인 토양을 만들어 환경과 의 조화를 통해 농업생산의 확립을 꾀하기 위해 경량분 야와 축산분야의 환경관련대 책을 새롭게 일본화(一本化) 하고, 소비세 등과의 제휴에 의한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 물의 공급 등을 추진	①사업의 추진(soft) : 유기성자원의 적절한 처리·이용의 촉진, 새로운 운 작체계의 확립에 의한 토양 만들기 추진, 자원순환형 농가의 보급·개발, 가축배설물처리의 기술실증 등 ②조건정비(hard) : 가축배설물의 비 료화시설, 메탄발효 등을 이용한 에 너지 이용시설 등의 공동이용시설, 비산포기계 등의 집단영농용기계의 정비 및 토양·토층개량등 소규모토 지기반 정비	6/10, 5.5/10 1/2
자급사료 증산 총합대책 사업	2000~	단년도	자급사료증산을 위해 조건정 비를 지원하여 한층 사료자 급률의 향상에 공헌	자급사료기반의 강화, 고생산성사료 생산 시스템의 확립, 경축제휴에 의 한 사료생산 확대, 일본형 방목의 확 대, 공공목장의 효율적인 이용, 사료 생산이용기술의 확립보급 및 우량품 종의 선정보급, 미이용지를 활용한 방목 등 축산적 토지이용의 확대에 필요한 작부조건 정비, 시설·기계 의 정비를 위한 리스를 함	1/2, 정액
경종작물 활용형 사료증산 총합 대책사업	2002~	단년도	경종작물을 활용한 사료증산 을 위해 조건정비에 지원하 여 한층 사료자급률의 향상 에 공헌	경축제휴에 의한 경종작물을 활용한 자급사료의 증산을 추진하기 위해 수전에 있어서 사료작물생산에 필요 한 작부조건 정비 및 해당 시설기 계의 리스, 유기성자원의 이용, 퇴비 와의 교환에 필요한 시설기계의 정 비 및 해당시설기계의 리를 함	1/2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표 7-10> 일본의 농기계관련 보조사업 현황(4) (2002년 현재)

보조사업명	사업년도	실시지구 조성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율
지역 특산 농작물용 기계개발 촉진사업	1995 ~ 2004	3년간	지역의 특산농작물의 생산진흥에 공헌, 도도부현이 제후를 피하면서 지원 생산자와의 취탁등에 의한 지역 특산농작물용 기계의 개발을 추진	①지역특산농작물생산기계화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기계개발방책의 검토, 지역특산농작물의 생산실체조사 등을 함 ②복수의 도도부현이 제휴하는 경우는 지역특산농작물용기계개발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①의 내용에 있어서 제휴하는 도도부현간의 조정 등을 함 ③지역특산농작물용기계의 설계 및 개발·개량을 함	1/2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 3) 농기계 관련 예산 및 사업량 추이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의 예산과 사업량을 살펴보면 <표7-11>과 같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통해 보조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사한 사업이 명칭을 변경해 가며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사업을 동일한 명칭으로 지속하는 것 보다는 사업명칭 및 내용 등을 부분 수정·개편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예산확보에 있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의 하나가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이다.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은 2002년 이전에는 인정농업자지원 리스사업이었으나 지원대상자 등을 확대해 명칭을 변경,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표 7-11> 일본의 농기계관련 예산 및 사업량(1)

보조사업명		1999	2000	2001	2002
지역농업구조개혁 모델 사업	예산(천엔)	-	-	-	1,150,000
	사업량 전체	-	-	-	46
	(신규)	-	-	-	(46)
집락영농 경영확립 지원사업	예산(천엔)	-	1,530,000	1,530,000	-
	사업량 전체	-	51	51	-
	(신규)	-	(51)	(51)	-
지역농업 기반확립 농업구조개선사업	예산(천엔)	-	3,875,759	193,893	-
	사업량 전체	368	176	15	-
	(신규)	118	(176)	-	-
오끼나와농업기반 확립 농업구조 개선사업	예산(천엔)	1,796,228	1,440,000	-	-
	사업량 전체	21	13	5	-
	(신규)	(8)	-	-	-
농업경영 전개지원 리스사업	예산	-	-	-	243,753
	사업량 전체	-	-	-	266
	(신규)	-	-	-	(266)
인정농업자 지원 긴급 리스사업	예산	-	226,284	164,829	-
	사업량 전체	300	270	243	-
	(신규)	(300)	(270)	(243)	-
인정농업자 연대사업체육성사업	예산	504,379	577,029	-	-
	사업량 전체	283	343	215	60
	(신규)	(155)	(60)	-	-
인정농업자 농작업 위탁 집적사업	예산	-	-	103,457	-
	사업량 전체	-	-	60	-
	(신규)	-	-	(60)	-
경영구조 대책사업	예산(천엔)	-	18,218,305	21,268,051	21,351,034
	사업량 전체	-	140	267	456
	(신규)	-	(140)	(127)	(189)
경영효율화 기계 긴급 정비사업	예산(천엔)	-	283,334	-	-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선도개척농 지원사업	예산(천엔)	-	-	-	1,750,000
	사업량 전체	-	-	-	35
	(신규)	-	-	-	(35)
판로개척 긴급 대책사업	예산(천엔)	-	-	-	1,000,000
	사업량 전체	-	-	-	5
	(신규)	-	-	-	(5)
신 산촌진흥 등 농림어업특별대책 사업	예산(천엔)	20,810,324	20,081,963	16,024,091	12,427,953
	사업량 전체	725	616	512	428
	(신규)	(120)	(108)	(100)	(100)
대구획 포장 고도이용 촉진사업	예산(천엔)	100,000	100,000	100,000	75,000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농업생산 총합 대책사업	예산(천엔)	-	28,075,017	22,533,265	13,525,767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표 7-11> 일본의 농기계 관련 예산 및 사업량(2)

보조사업명		1999	2000	2001	2002
지역생활화계획 추진사업	예산(천엔)	-	-	-	154,100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종합적 병충해 관리 추진사업	예산(천엔)	-	201,653	163,725	133,172
	사업량 전체	-	38	30	30
	(신규)	-	(38)	-	-
발생예찰 종합 추진사업	예산(천엔)	-	97,316	119,646	148,304
	사업량 전체	-	24	38	24
	(신규)	-	(24)	(38)	-
축산경영 활성화 사업	예산(천엔)	-	953,655	819,957	774,387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축산 생산기술 고도화 기계 리스사업	예산(천엔)	-	-	50,000	34,647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지역축산 종합 지원체제 정비사업	예산(천엔)	-	868,098	730,532	1,148,550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자원 순환형 농업추진 종합대책사업	예산(천엔)	-	3,527,870	3,817,006	6,306,444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자급사료 증산 종합 대책사업	예산(천엔)	-	1,113,041	973,955	610,368
	사업량 전체	-	-	13	-
	(신규)	-	-	(13)	-
경종작물 활용형 사료증산 종합 대책사업	예산(천엔)	-	-	-	318,367
	사업량 전체	-	-	-	-
	(신규)	-	-	-	-
지역 특산 농작물용 기계개발 촉진사업	예산(천엔)	109,242	93,132	83,819	63,446
	사업량 전체	14	16	13	9
	(신규)	(5)	(4)	(4)	(1)
농약 안전사용 종합 추진사업	예산(천엔)	-	99,909	89,918	76,430
	사업량 전체	-	47	47	47
	(신규)	-	(47)	(47)	(47)

자료: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 2. 농기계임대 및 이용 효율화 정책의 개요

### 가.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은 「인정농업자 지원 긴급리스사업」에서 출발하였다. 「인정농업자 지원 긴급리스사업」은 인정농업자의 경영개선 가속화를 위해 인정농업자가 기술혁신 등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동적으로 경영규모의 확대 및 경영전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시설의 리스방식에 의한 도입을 목적으로 1999~2003년을 사업년도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농업경영전개지원리스사업」은 이러한 「인정농업자 지원 긴급리스사업」의 일부 개선과 동시에 지역농업에 공헌을 한 농업자에 대한 지원을 함께 행하는 사업으로 확충하고 2002년도부터 3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실시되었다.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에는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과 「지역공헌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이 있으며, 「인정농업자지원형리스사업」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인정농업자 지원 긴급 리스사업」을 잇는 사업이다. 「지역공헌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시정촌(市町村)과 지역공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공헌활동에 노력하는 특정농업법인이나 인정농업자등에 대한 리스조성사업이다.

#### 1) 기본개요

##### 가) 적립금의 조성 및 관리

리스사업 지원을 위한 적립금의 조성은 정부에 의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예산요구가 행해지고 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조성, 전농에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성된 자금은 리스료 조성금의 원 자본으로서 전농에 교부된 보조금은 전농의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적립금」으로 적립되어 관리한다.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 및 지역공헌농업자 지원형 리스에 관해 리스료 조성신청이

행해져 리스료 조성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중 매년 적립금을 통해 리스료 조성금(리스료 조성계약기간 5년의 경우에는 리스료 조성총액의 5분의 1을 5회)이 전농에서 리스회사 등에 교부된다.

전농은 적립금계정과 다른 계정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적립금의 운용에 의해 생긴 손익은 적립금에 이월하며, 이 사업을 행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서 적립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 나) 리스대상 및 리스회사

리스대상은 물건의 범위는 「리스세제」(리스거래로서 취급할 수 있는 리스계약 판정기준을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기준통지)의 리스거래에 적합한 농업기계 등의 동산 외에 리스거래 대상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건물, 구축물 등의 임대차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리스회사는 임차자와 리스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로서 리스 전문회사뿐만 아니라 리스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주식·유한·합명·합자), 농협(연합회를 포함) 및 공익법인(농업공사 등)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회사 조직이라면 기계 등의 판매점도 대상이 된다.

#### 다) 리스 및 지원 기간

기계는 각각 법정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고 리스기간은 이 법정 내용연수의 70%(법정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물건은 내용연수의 60%) 이상(1년 미만의 끝수 제외)에서 120% 이하(1년 미만의 끝수 제외)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법정 내용연수가 5년인 콤바인의 경우 그 리스기간은 3~6년, 8년인 트랙터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이 5~10년이 된다<표7-12>.

<표 7-12> 법정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구 분	법정 내용연수	리스기간
콤 바 인	5년	3~6년
이 양 기	5년	3~6년
트 랙 터	8년	5~10년
비닐하우스	10년	6~12년

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農業經營展開支援リース事業規定集」, 200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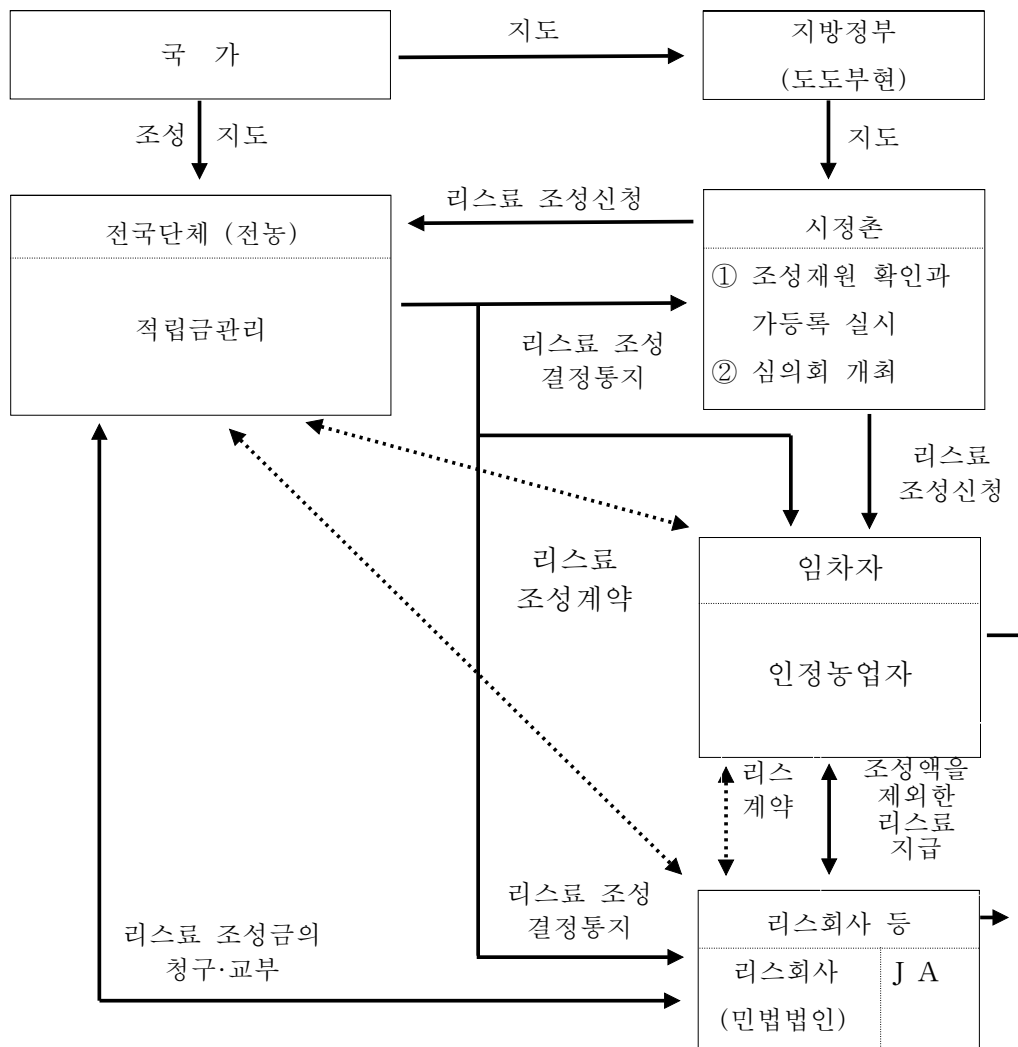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리스기간과는 달리 리스료는 최대 8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

### 가) 기본구조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의 사업구조는 <그림7-3>과 같다.

<그림 7-3>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 구조



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農業經營展開支援リース事業規定集」, 2002. 5

#### 나) 종래의 인정농업자 지원형 긴급 리스사업과의 차이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은 기본적으로 인정농업자 지원형 긴급 리스사업을 잇는 사업이지만 과거 3년간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었다.

##### ① 리스료 조성액 산정식의 개정

「리스료 조성액」 = 「리스물건의 가격」 × 「조성계수」 를

「리스조성액」 = 「리스료」 × 「조성계수」 로 개정

이 경우의 「리스료」란 리스계약에 의해 임차자가 리스기간 중에 지불하는 리스료(소비세 포함)의 총액이다.

##### ② 리스 조성액의 최고 한도액의 설정

종래 ①로 계산되어졌던 조성액에 제한은 없었지만 리스료 조성 신청 1건당 조성금의 최고 한도액이 250만엔으로 설정되었다.

##### ③ 조성 신청수속의 일부 변경

시정촌은 임차자로부터 조성 신청이 있을 때 사전에 전농에 조성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성신청의 가등록을 한 뒤에 신청서를 접수, 가등록 후 3주 이내에 조성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였다.

종래는 조성신청을 순차접수 순차조성 결정통지를 행해왔지만 조성신청 건수가 증대하고 년도도중에 접수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다.

#### 다) 리스료 조성액 및 기준

리스료 조성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리스료 조성액」 = 「리스료」 × 「조성계수」

② 「리스료」란 리스기간 중의 리스요금(세금포함)의 총액이다.

③ 「조성계수」란 「농업경영종합대책추진사업 실시에 대해서」에서 리스료 조성기간마다 계수를 정하고 있다. 리스료 조성 신청 시점의 장기 기축이자율(프라임 레이트), 재정자금금리에 의거해서 계수를 구한다. 예를 들면, 리스료 조성신청서 제출일의 재정금리가 1.7%로 장기 기축(프라)금리

가 1.9%이면 5년 리스의 경우 조성계수는 0.084이다.

④ 「리스료 조성액」은 리스료 조성기간에 교부를 받는 리스료 조성액의 총액이다. 리스회사들에는 1년간 당 리스료 조성액(「리스료 조성액」÷「리스료 조성기간(연수)」)을 교부한다.

⑤ 임차자는 리스회사들 및 전농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리스료 조성계약서에 의거해서 남은 리스료(「리스료」-「리스료 조성액」)를 리스회사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조성되는 조성금은 물건에 대한 제한이나 1임차자당 조성금 한도는 없지만 리스료 조성 신청 1건당 조성금의 최고 한도액은 250만엔으로 되어져 있다.

#### 라) 리스료 조성신청 및 심사

리스료의 조성신청은 언제라도 가능하며, 신청내용이 적정하면 시정촌에 의해 곧바로 심사, 조성여부가 결정된다.

시정촌의 심사 이유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해서 시정촌은 지역의 실정에 바탕을 두고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의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구상을 책정하고, 이 목표를 목적으로 해서 농업자가 작성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 개선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정촌의 경영개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인정농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정촌에 그 심사를 의뢰하고 있다.

#### 마) 조성금 교부

조성금의 교부는 직접 농가에 지불하는 방법은 조성금 교부 사무의 번잡함 등의 이유로 행하지 않으며, 리스회사 등은 전농에 매년 리스료 조성액을 청구하고 그 금액을 받게 된다.

교부시기는 리스료 조성 계약월이 4월~9월의 경우는 9월말까지로, 10월~3월의 경우는 3월말까지로 각각 리스료 조성청구서를 전농에 제출해서 전농으로부터 각각 10월과 4월에 리스료 조성금을 리스회사 등으로 교부된다.

## 2)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

### 가) 지역공헌농업자의 개념 및 요건

지역공헌 농업자란 시정촌과 지역공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의 농업생산의 유지, 활성화에 공헌한 농업자로 농지이용 집적형과 지역적 조직형으로 분류된다.

농지이용집적형의 지역공헌 농업자란 담당자가 부족한 지역의 특정 농업법인이나 농지의 구입, 임차, 또는 경영수탁, 작업수탁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용지이용의 집적을 추구하는 인정농업자로 최소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 ① 특정농업법인
- ② 신규로 4.5ha 이상의 농용지의 면적집적을 목표로 한 지역공헌계획을 책정하고 초년도에 1/2의 집적의 목표가 있는 인정농업자(개별경영)
- ③ 신규로 10ha 이상의 농용지의 면적집적을 목표로 한 지역공헌계획을 책정하고 초년도에 1/2의 집적의 목표가 있는 농업법인인 인정농업자(법인경영)

지역적 조직형의 지역공헌농업자란 지역농업의 생산·가공·판매의 핵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활동을 행하는 농업법인인 인정농업자로 최소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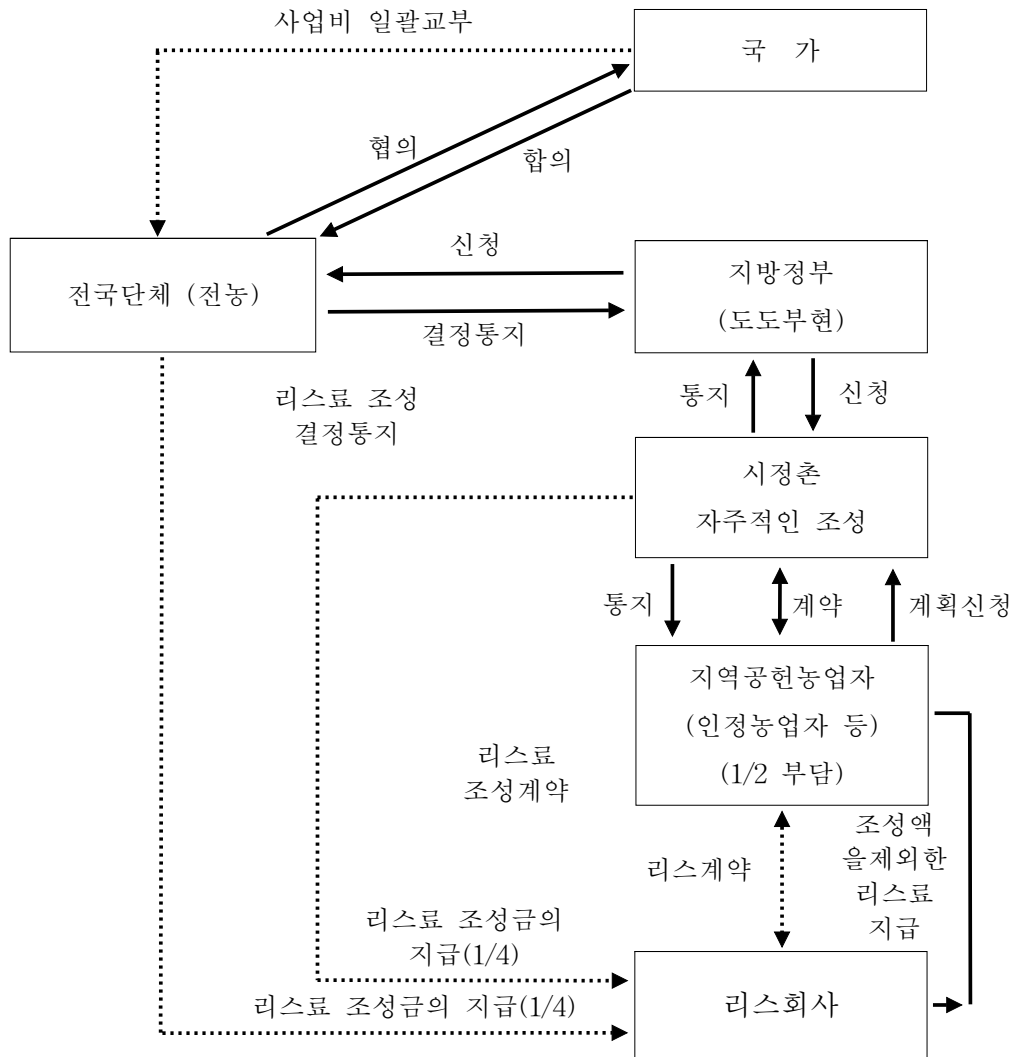
- ① 지역의 여성이나 고령자 등 고용의 장을 확보하기 위한 연간 고용계획 책정(초년도에 상근고용자 2명이상을 고용한다)
- ② 특산농산물 등 개발의 관점에 서서 지역내 농가로부터 농산물거래계획 책정(초년도에 대상 농산물의 지역내 생산액 절반 이상의 거래 실시)

### 나) 사업의 구조

이 사업은 지역공헌농업자가 시정촌과 지역공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처하여 지역공헌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리스에 의한 도입에 대하여 리스료의 조성을 행하는 것으로 시정촌의 동일 규모의 조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취지에 찬성하여 자주

적인 조직을 행하는 시정촌의 시책이 전제되어 있고 그 시정촌과 계약해서 전담하는 지역공헌농업자의 활동지구가 본 사업의 조성대상지구가 된다.

<그림 7-4>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의 구조



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農業經營展開支援リース事業規定集」, 2002. 5

조성대상지구는 아래의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 ① 본 사업에 전담하는 시정촌은 지역공헌농업자로부터 지역공헌 계획을 제출받아, 이것을 첨부해서 지구채택신청서를 지방정부(도도부현)에 제

출한다.

② 지방정부는 시정촌으로부터 제출된 지구채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고 지구별 중요도의 순위를 붙이고 지방정부로서 지구채택신청서를 전농 및 지방 농정국에 제출한다.

③ 전농은 지방정부으로부터 신청된 조성대상지구를 국가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시정촌에 통지한다.

조성지구의 지구채택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각 지방정부의 지구별 중요도를 고려 제1위의 것을 선별, 조성금액을 집계한다.

② ①의 조성금 집계액이 예산의 범위인 경우 해당 지구를 전부 조성대상지구로 한다.

③ ①의 조성금 집계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공익성의 관점 등을 고려 일정의 순위를 부여하고 대상지구를 결정한다.

④ ②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지구별 중요도 제2위를 선별하여 ① ②와 같은 순서에 의해 조성 대상지구를 결정한다.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의 한도까지 조성대상 지구를 결정한다.

## 나. 농업기계은행

농업기계은행은 전업농이 자신이 보유한 고성능농업기계, 시설의 농작업 수탁이용 또는 상호보완이용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기계, 시설을 이용하는 농작업의 수·위탁을 광역화하여 조직적으로 중개알선을 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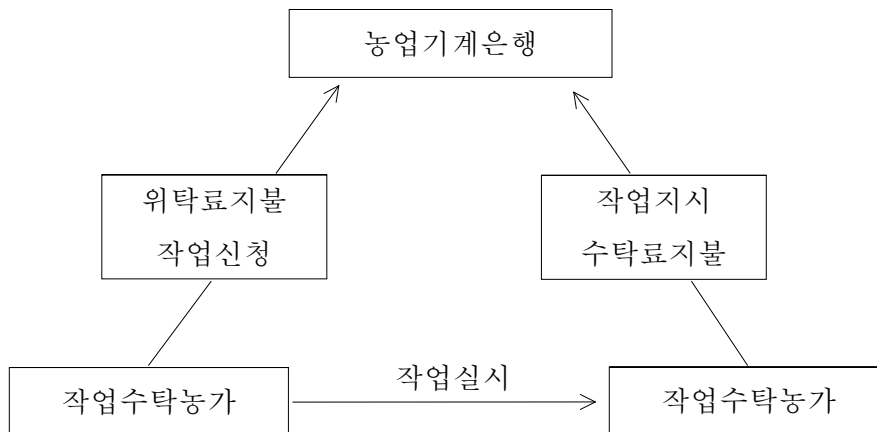
농작업을 중개 알선하는 농협, 농업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농업기계은행을 육성하는 사업을 농업생산총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① 농협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농협의 영농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개 농협단위로 설립, 평균 참가호수 400호, 평균 수·위탁면적 500ha 정도이다.

② 업무는 농업기계작업의 중개알선이지만 농협 소유기계의 임대도 있다.

- ③ 직원의 수당 등 은행 운영비는 농협의 운영비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다.
- ④ 각 작업 수위탁자의 기계의 효율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하부조직으로서 수탁부회 등을 설치 작업집적 등을 행하고 있다.
- ⑤ 농협 자체적으로 기계를 소유, 수탁되지 않은 농지의 작업을 스스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7-5> 농업기계은행의 기본형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參考資料, 2002. 3

### 1) 농업기계 이용조직의 태동과 관련정책 추이

#### 가) 농기계은행의 태동과 설립추이

일본에서의 농기계은행의 태동은 농작업 알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문헌에 나타나는 농작업 알선방식의 가장 오래된 조직은 1964년 농업기계화 실험집락인 아이찌(愛知)현 사꾸라이(櫻井)에 설립된 농협기술신탁부를 들 수 있다<표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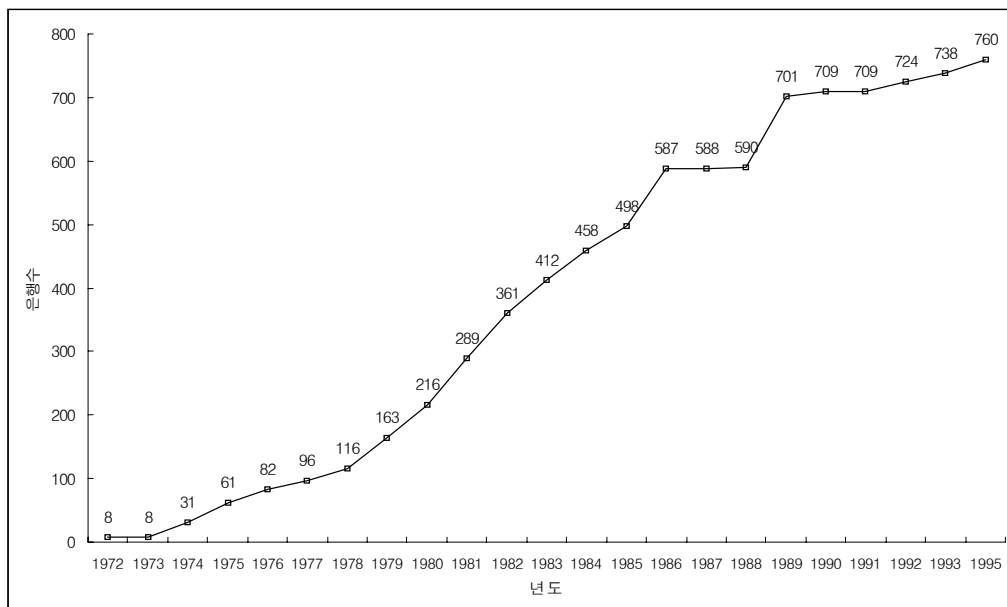
<표 7-13> 농작업 알선방식 개시의 계기와 특징

명칭	설립 년차	계기와 특징
아이찌현 사쿠라이농협기술신탁부	1964년	①농업기계화실험집락(국가) ②운영자(오퍼레이터)의 유실→확보, 육성 ③정(町), 농협에 의한 기계구입 ④농협기술신탁부(실시주체 : 농협)
사이따마(埼玉)현 농업기술은행	1967년	①비용절감 ②미맥작, 원예 등 경영전문분야에 의한 자립 경영농가의 육성 ③현행정(실시주체 : 농협)
후쿠이(福井)현 사카이(坂井)농협 청부경작사업부	1970년	①농협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관여 (청부경작, 사업주체:농협) ②C·E(미생산종합개선 Pilot사업)의 운영 일환(수탁자의 조직화)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參考資料, 2002. 3

이 조직의 설립목적은 운영자(오퍼레이터)의 유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퍼레이터의 확보 및 육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농협이 주체가 되어 정(町)과 농협이 구입한 기계를 이용 농작업 대행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림 7-6> 농업기계은행 설치 수 누계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參考資料, 2002. 3



그리고 1967년에는 사이따마현에 비용절감과 자립경영농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기술은행이 설립되었으며, 1970년에는 수탁자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후꾸이현 사카이농협 청부경작사업부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태동된 농업기계은행은 80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5년 현재 760개가 조직되었다<그림7-6>.

<표 7-14> 국가 농업기계은행 사업의 추이

구분	농업기계은행도입실험사업	농업기계은행도입지도자사업	농업기계은행도입추진대책사업	농업기계작업광역조정추진사업	신농업기계은행육성사업	농업기계리스·작업수위탁추진사업	선진적농업생산종합추진대책의부시스템확립추진사업
년도	1972~1973	1974~1975	1976~1978	1979~1985	1986~1987	1988~1991	1992~1994
신규채택지구수	8	52	51	391	82	120	
사업의개요	농작업의수위탁을광역으로구분하여조직적으로중개하기위한조직의정착가능성을구합과시운영상문제를밝혀서개선도모하기위해실험사업으로서 실시	농업기계은행방식을도입함과 동시에농작업수위탁의조직화 의의의추진도모하기위해지도자사업으로서 실시	영농집단의육성과 일체적으로 농업기계은행을육성하고, 생산조직등의 소유하는 고성능적 농업기계의 이용을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효율이용도모하기위해 고성능집단영농추진대책사업의 일대책으로 실시	작업수탁의중심이 되는농업자집단의육성도모함과 동시에농업기계은행방식을추진함과 동시에유용기계의대차알선하고 농업기계의수리정비의 충실을도모하는 사업	기계이용개선계획에 의거해서 농업기계은행방식을추진하는 가운데유용기계의등록·대부, 기계보조노동력의 알선등의 종합조정을 실시하는 사업	농업기계은행방식에 새로운 형태로서 농업기계의리스방식의 도입, 농업기계은행간의 퍼스컴통신망의 정비등이고, 광역적농작업수위탁의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	기계이용개선계획을책정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농작업의중개역할과 수탁자그를육성을 도모한다. 특히 신규수탁자에 리스방식등에서 도입한 초신형의 고성능인 농업기계에 의한 기술연수(OJT방식)를 통해서 기술의향상을 목적으로 해 수탁자의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
	농업기계은행무실험사업 조정용농업기계대부업	농업기계은행운영사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수탁자그룹육성사업 농업기계대부운영사업 대부용농업기계도입사업 농업기계수리정비시설정비사업	현상자기진단조사사업 농업기계이용개선계획작성사업 농업기계작업등의 중개알선사업 (좌동)	농업기계이용개선 목표달성추진사업 농업기계작업중개알선등추진사업 리스용농업기계도입사업	농업기계은행방식의추진 대부용기계의 정비등 대책사업명 토지이용형 지역농업생산시스템확립사업 지역농업생산시스템 확립조건정비사업 전작지역농업생산시스템특별조건정비사업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參考資料, 2002. 3

나) 정부의 농업기계은행 관련 정책 추이

일본의 농기계은행은 1972년부터 실험사업으로 도입·실시되었으며, 1974년부터는 농작업 수·위탁의 조직화를 위해 지도자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도입 추진사업과 광역화를 위한 사업들이 실시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유휴 기계의 등록·대부와 기계 보조노동력의 알선 등 종합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신 농업기계육성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농기계은행에 리스기계 도입을 위한 방안과 고성능 기계에 대한 기술연수를 실시하였다 <표7-14>.

이상의 농기계은행 관련 정책에 따라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조직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에는 전국농업기계은행 연합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육성·강화 방침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농기계은행은 점차 그 역할면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1997년 3월 전국농업기계은행 연합협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상실하게 된다<표7-15>.

<표 7-15> 농업기계은행 및 농업생산지원체제 관련연표

년도	관 련 내 용
1966년	전국 농업기계은행 현지검토회(농림수산성 전국회의, 관리자 연수회)
1967~8년	서독 MR소개
1970년	전국농업기계은행연합협의회 발족
1972년	농업기계은행연구부회 발족(일본농업기계화협회)
1980년	농업기계은행방식으로 농협사업을 변경
1988년	농업기계은행방식의 육성·강화방침(전중)
1989년	농협의 농지보유합리화촉진사업의 실시에 대해(농정과장·농협과장동담)
1992년 5월	농지법시행령개정 : 시정촌농업공사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 추가, 관리경작의 인가
1993년 8월	농지법개정 : 농업생산법인의 요건완화(사업, 구성원범위-JA직영법인 인가)
1997년 3월	전국농업기계은행연합협의회 해산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 参考資料」, 2002. 3

## 2) 농업기계은행 사업실적

농업기계은행의 사업실적을 농업기계은행 실태조사<sup>93)</sup>를 기초로 살펴보면 <표7-1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실태조사의 대상은 운영중인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림7-6>의 설립 추이와 비교하면 휴면상태인 조직을 파악할 수 있다. 설립 농기계은행 중 1991년 운영 지구수는 537개, 1993년 548개, 1995년 502개로 나타나 1991년에 비해 1993년은 증가하였으나, 1993년에 비해 1995년은 46개 조직이 감소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7-16> 농업기계은행의 사업실적 추이

년		1991	1993	1995
지 구 수		537	548	502
중개알선 실 적	면 적(천 ha)	320.7	248.8	215.0
	작업요금(백만엔)	20,013.6	17,598.8	13,399.1
참여농가수 (천호)	수탁농가(천호)	315.2	217.4	156.5
	위탁농가(천호)	25.0	17.0	13.0
	계(천호)	290.2	200.5	143.5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參考資料, 2002. 3

그러나 중개알선 실적 및 참여 농가수에 있어서는 조직수의 변화와는 달리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개알선 실적의 경우 1991년 대비 1995년의 실적은 2/3 수준이며, 참여농가 수는 1/2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업기계은행의 위치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기계은행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1995년 실태조사 내용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계은행 중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은행이 들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에 의한 수탁자의 감소, 소유기계와 관련된 경비부담의 증가와 수위탁업무의 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설문은 축소 이유를 크게 “은행운영의 곤란”과 “농작업수위탁업무의 이행”

93) 농업기계은행실태조사는 1973년부터 국가 보조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1995년 이후의 조사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여 1995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농림성 등 농업관련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근의 농업생산조직 자료에서도 농업기계은행에 관해서는 1995년 이후의 통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이것은 최근 농업생산조직의 다양화 등으로 농기계은행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됨. 그 근거는 1997년 농업기계은행 연합협의회의 해산 등에서도 찾을 수 있음.

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응답을 정리하였다.

회답이 많은 것은 위탁자의 고령화에 의한 감소, 신규운영자의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 48지구로 나타났으며, 은행보유기계의 노후화와 그 보수·관리비의 증가 40지구 등 은행운영의 곤란을 답한 지구가 많았다. 또 사무국의 인원부족과 작업일정조정의 곤란을 받는 지구도 있어, 운영면의 과제가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수탁농가에서의 작업집적, 고정화가 진행된 지구나 집락영농체제의 확립에 의해 축소가 불가피한 지역이 21지구, 은행활동의 성과로서, 조직, 농가육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작업수위탁업무가 기존의 농기계은행에서 다양한 각 방면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은행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지구도 보였다.

<표 7-17> 운영축소를 검토하고 농업기계은행의 이유

항 목	응답수	비율(%)
<b>&lt;은행운영이 곤란&gt;</b>		
수탁자의 고령화에 의한 감소, 신규운영자의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48	46.2
은행보유기계의 노후화와 그 보수·관리비의 증가 때문에	40	38.5
관리자등 사무국의 인적부족 때문에	26	25.0
품종통일 등으로 작업시기의 집중화로 작업일정의 조정이 곤란 때문	22	21.2
농협합병에 의한 운영방침의 변경 때문에(경영부진)	11	10.6
<b>&lt;농작업수위탁업무의 이행&gt;</b>		
수탁농가로 농지·농작업의 집적·고정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21	20.2
생산집단 등 조직으로 수탁을 하기 때문에(집락영농체제가 확립되었다)	21	20.2
시정촌농업공사·농협출자에 의한 유한회사 등으로 사업이행 때문	13	12.5
농지보유합리화사업 등 토지이용관련대책사업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12	11.5
수탁자의 수탁지역 범위가 결정되어 수탁체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9	8.7
농협의 수탁부회의 형성에 의한 수탁체제의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6	5.8
계약자(농작업의 수탁민간업자)등 대형위탁자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5	4.8
응답수	104	100.0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參考資料, 2002. 3

농업기계은행의 운영이 중지된 경우에도 축소이유와 동일하게 기계 경비의 부담 증가, 수탁자의 부족과 농작업수탁업무의 진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문항목은 운영상의 과제, 축소검토 이유와 동일하며 회답자에서도 동일한 경

향을 보이고 있지만, 은행운영이 곤란한 가운데에서는 은행보유 기계의 노후화와 그 보수·관리비의 증가 때문이라는 지구가 많았다. 이러한 지구들은 농업기계은행 설립 시에 대출용 기계를 도입하여 대출을 주로 한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농작업 수·위탁업무의 이행으로 중지된 경우에는 수탁농가에서의 작업집적 등에 의한 은행규모를 축소하고 중지하게 된 지구가 있는 반면에 은행업무를 확대, 또는 관련조직과 제휴하고, 은행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지구도 있으며, 지역으로서 은행 중지가 농작업 수·위탁업무의 중지로 이어졌다.

<표 7-18> 농업기계은행의 중지이유

항 목	응답수	비율(%)
<b>&lt;은행운영이 곤란&gt;</b>		
수탁자의 고령화로 감소. 신규운영자의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45	32.8
은행보유기계의 노후화와 그 보수·관리비의 증가 때문에	37	27.0
관리자등 사무국의 인적부족 때문에	28	20.4
품종통일 등으로 작업시기의 집중화로 작업일정의 조정곤란 때문	24	17.5
농협합병에 의한 운영방침의 변경 때문에(경영부진)	18	13.1
<b>&lt;농작업수위탁업무의 이행&gt;</b>		
수탁농가로 농지·농작업의 집적·고정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41	29.9
생산집단 등 조직으로 수탁을 하기 때문에(집락영농체제가 확립되었다)	28	20.4
시정촌농업공사·농협출자에 의한 유한회사 등으로 사업이행 때문	28	20.4
농지보유합리화사업 등 토지이용관련정책으로 이행하였기 때문	17	12.4
수탁자의 수탁지역범위가 결정되어 수탁체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9	6.6
농협의 수탁부회의 형성에 의한 수탁체제의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8	5.8
계약자(농작업의 수탁민간업자)등 대형위탁자의 형성 때문에	8	5.8

자료: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參考資料, 200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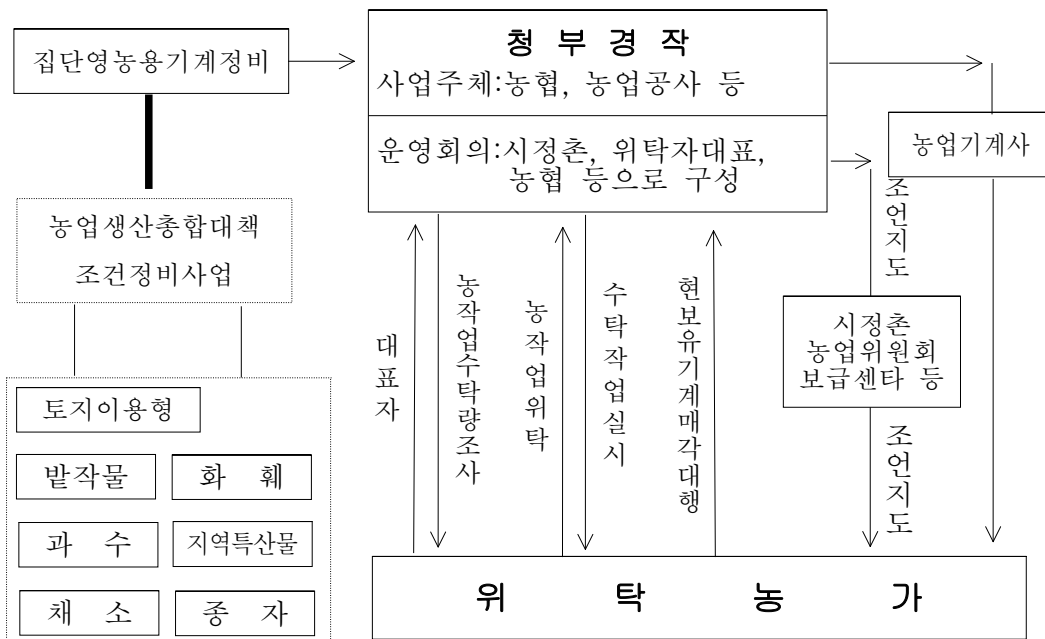
결국 농업기계은행은 농업특정법인, 농업공사, 집락영농 등 다양한 농업생산조직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의 결과, 기존에 농업기계은행에서 담당했던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알선 등의 기능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고 사료 된다<sup>94)</sup>.

94) 농업특정법인은 1994년 4개 법인을 출발로 2000년 77개 법인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지

## 다. 청부경작(contractor)

담당자(후계자)농가의 실질적인 규모 확대와 농기계의 효율이용을 촉진하는 농기계은행방식에 의한 담당자(후계자) 지원의 충실·강화를 지원하였으나, 농작업 수위탁 등의 노동력 유통이 곤란한 지역, 경영체의 규모 확대 과정에 있어서 노동피크 시 노동력의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있어서는 농업생산의 유지·확대 및 후계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노동의 외부화가 필요로 되기 때문에 대규모농가들의 농작업을 수탁하는 농협, 농업공사 등이 자신이 주체로 하는 청부경작을 육성하는 사업을 농업생산종합대책사업 중에 실시하고 있다 <그림7-7, 표7-19>.

<그림 7-7> 청부경작의 조직 및 운영 흐름도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보유합리화 법인은 1996년 19개에서 1999년 667개로 증가함. 그리고 집락영농의 경우 2000년 11월 현재 9,961개의 조직이 구성됨.

<표 7-19> 농업기계은행 방식과 청부경작 방식의 차이

구 분	농업기계은행 방식	청부경작 방식
실시지구	농작업수탁자가 확보된 지역	농작업수탁자 확보가 곤란한 지역
주요 업무내용	위탁희망 농작업을 수탁희망 농가에 알선	위탁희망 농작업을 농가로부터 직접 수탁 작업 실시
농업기계보유자	은행은 원칙적으로 기계를 보유하지 않음. 수탁자가 보유	청부경작자
오퍼레이터	담당자(후계자)농업자	청부경작 직원
농작업수탁자	일반농업자	일반농업자 복합부문 확대 지향 농업자
농작업수탁자의 형태	등록된 담당자(후계자)	시정촌, 농협, 농업공사 등
위탁요금의 지불	기계은행을 경유 수탁농업자에 지불	청부경작자에 직접 지불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 1) 계약자 추이

### 가) 조직 수의 추이

1993~2000년도 7개년간에 조직 수는 4배 약간 못되게 증가. 특히 북해도에 있어서는 5배로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다.

<표 7-20> 청부경작 조직수 추이

구분	단위: 조직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북해도	16	16	27	32	42	55	54	77
도부현	31	35	41	48	80	94	98	103
전국	47	51	68	80	122	149	152	180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 나) 수탁호수 및 수탁면적의 추이

1993년에서 2000년의 7년 사이에 수탁호수가 약 4배, 수탁면적(수확면적)이 약 5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축산 주산지인 북해도는 수탁호수 및 수탁면적이 6배로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다<표7-21>.

<표 7-21> 수탁호수 및 수탁면적의 추이

단위: 호수, ha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북해도	이용호수	536	614	981	894	1,966	2,954	3,034	3,249
	위탁면적	8,718	9,030	18,327	23,343	28,899	39,636	43,790	51,869
도부현	이용호수	2,844	3,049	3,341	3,310	4,054	12,015	11,351	11,724
	위탁면적	3,963	4,461	7,277	7,143	8,874	11,804	10,391	9,712
전국	이용호수	3,380	3,663	4,322	4,204	6,020	14,969	14,385	14,973
	위탁면적	12,682	13,491	25,604	30,486	37,773	51,440	54,181	61,581

주) 수탁면적은 수확(예취)작업을 실시한 합계면적.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 2) 경영형태별 계약조직의 상황(2000년도)

계약자가 가장 많은 형태는 영농집단 등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농협, 유한회사가 그 다음이다. 한편, 이용농가호수, 수탁면적도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농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7-22>.

<표 7-22> 경영형태별 계약자 조직의 개요

단위 : 조직수, 호수, ha

경영형태	전조직수	조사대상조직	이용농가호수	위탁면적
농협	31 (18)	31 (18)	9,197 (1,569)	28,517 (23,612)
유한회사	31 (23)	31 (23)	1,113 (734)	15,317 (14,642)
주식회사	3 (3)	3 (3)	178 (178)	3,867 (3,867)
공사	9 (1)	9 (1)	733 (91)	2,829 (2,412)
영농집단 등	106 (32)	104 (32)	3752 (449)	11,052 (7,337)
합계	180 (77)	178 (77)	14,973 (3,249)	61,581 (51,869)

주) ( )안은 북해도의 수치임.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 3) 지역별 상황

조직 수에서는 축산주산지인 북해도가 77개 조직, 구주 48개가 조직되었으며, 도부현에서는 동북이 23조직으로 되어 있다. 기타지역은 10개 이하의 조직수를 보이고 있다<표7-23>.



<표 7-23> 지역별 계약자 조직의 상황

단위 : 조직수, 호수, ha

지역별	조직수, 호수, ha			
	전조직수	조사대상조직	이용농가호수	위탁면적
북해도	77	77	3,249	51,869
도도부현	103	101	11,724	17,434
동북	23	21	745	23,95
관동	9	9	287	587
북륙	1	1	0	0
동해	1	1	0	0
근기	0	0	0	0
중국·사국	10	10	133	334
구주	48	48	6,665	3,737
충승	11	11	3,894	2,659
전국	180	178	14,973	61,581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 4) 작업 수탁면적의 내용(2000년도)

계약자의 총 수탁면적은 약 13만 ha이며, 이 중 약 50%인 7만 ha가 사료 수확 작업면적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경운·정지, 퇴비살포, 벧짚 등 수확작업, 초지갱신작업, 제초제 살포작업 등을 수탁하고 있다. 또한 경종작업등에 있어서의 수탁도 있으며, 수도의 이식 및 수확작업, 맥·대두의 파종 및 수확작업 등을 수탁하고 있다.

수탁면적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의 비율을 지역별로 볼 때 사료수확면적이 매우 높은 곳은 북해도, 동북, 구주, 충승이며, 특히 매년수확이 가능한 충승에서는 수탁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기 등 작업은 관동, 퇴비살포 등 작업은 북해도, 벧짚 등 수확작업은 북륙, 동해, 또한 사료생산관련 작업에서는 관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7-24>.

<표 7-24> 작업 수탁면적의 내용

단위 : ha, %

구분	위탁면적		사료 수확작업		경기등작업		퇴비살포등 작업		벗짚등 수확작업		사료생산 관련작업		경종작업등	
북海道	93,691	100.0	51,869	55.4	3,823	4.1	12,527	13.4	196	0.2	17,356	18.5	7,919	8.5
도부현	21,386	100.0	9,712	45.4	1,678	7.8	1,077	5.0	1,785	8.3	2,183	10.2	4,950	23.1
동북	4,409	100.0	2,395	54.3	389	8.8	332	7.5	295	6.7	901	20.4	97	2.2
관동	1,703	100.0	587	34.5	176	10.3	144	8.5	0	0.0	562	33.0	234	13.7
북륙	30	100.0	0	0.0	0	0.0	0	0.0	30	100.0	0	0.0	0	0.0
동해	26	100.0	0	0.0	0	0.0	0	0.0	26	100.0	0	0.0	0	0.0
근기	0		0		0		0		0		0		0	
중국·사국	1,262	100.0	334	26.5	50	4.0	76	6.0	51	4.0	49	3.9	701	55.5
구주	10,687	100.0	3,737	35.0	1,063	9.9	525	4.9	1,383	12.9	651	6.1	3,328	31.1
총승	3,269	100.0	2,659	81.3	0	0.0	0	0.0	0	0.0	20	0.6	590	18.0
합계	115,077	100.0	61,581	53.5	5,501	4.8	13,604	11.8	1,981	1.7	19,539	17.0	12,869	11.2

주 1) 구성비는 수탁면적(합계)를 100%로 한 각면적의 비율  
 2) 사료생산관련 작업이란 초지갱신작업(파종 등), 제조제산포작업등임  
 3) 경종작업등이란 수도, 대두, 맥 등의 이식, 파종, 수확작업임.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5) 계약자의 경영상태

2000년의 계약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영수지에 있어서 흑자 혹은 수지가 균형인 조직은 조사응답자 143개 조직 중 114개 조직(79.7%)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약자의 안정적인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을 가진 운영자의 확보, 다양한 작업을 매년 수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업무량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이용자와 합의를 한 후에 적절한 이용요금의 설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5> 계약자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단위: 조직수, %

구분	①조사대상 조직수	②경영수지의 흑자등 경영
북海道	66	55(83.3)
농협	18	14(77.8)
농협이외	48	41(85.4)
도부현	77	59(76.6)
농협	13	9(69.2)
농협이외	64	50(78.1)

주) ( )안은 ①에서 차지하는 ②의 비율.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6) 계약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내용

계약자를 경영체로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농업기계 등의 조건정비, 운영자 등의 확보, 다양한 작업의 연간 수탁을 통해서 안정적 사업량의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표 7-26> 사료작물 계약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

사업명	내 용	사업실시 주체	보조율
생산진흥종합대책사업	자급사료 증합사업	시정촌 농협 영농집단등	1/2
	종합 계약자육 대책사업 (2002년 도 신규)	시정촌 농협 영농집단등	1/2
지정조성	사료증산 수탁시스 템확립대 책사업	농협 영농집단등	정액 ha당 사료수확작업:초년도 27천엔, 2·3년도 17.5천엔 퇴비살포작업:초년도 9천엔, 2·3년도 4천엔 경기등작업:초년도 14천엔, 2· 3년도 9천엔 퇴비이용작업:초년도 23천엔, 2·3년도 17.5천엔 벼짚수확작업:초년도 21천엔, 2·3년도 16천엔 초지갱신작업:초년도 28천엔, 2·3년도 17천엔 액상비비산포작업:초년도 5천 엔. 2·3년도 3천엔 TMR조제공급작업:초년도 37 천엔 2·3년도 29천엔

자료: 農林水産省, 「コントラクターをめぐる現状と課題」, 2002. 3

자급사료증산종합대책사업은 계약자의 작업체계에 대응한 고성능 기계시설

등의 정비, 운영자의 기술습득 등 계약자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종합 계약자 육성대책사업에 있어서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의 다각적인 수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성능 기계시설의 정비, 효율적인 작업수탁을 하기 위해서 계획작성, 유희보유농업기계의 처분알선 등을 하고 있다.

지정조성사업은 계약자의 작업량의 확보를 통한 육성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료수확작업, 퇴비살포작업 등의 청부면적에 대응해서 정책 조성하는 사업(사료증산 수탁시스템확립 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표7-26>.

### 7) 청부경작 활용 사료생산 외부화의 장점(북해도의 예)

계약자를 활용함에 있어서 일정시기(하기)에 집중하는 사료생산노동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만났을 경우에도 안정적인 사료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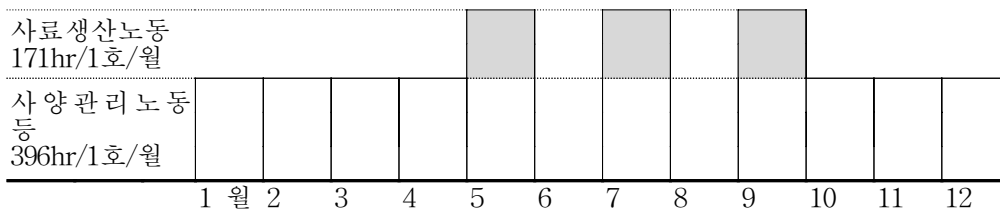
북해도지역의 예로 살펴보면 낙농가 전 노동시간의 9.7%를 차지하는 514시간의 사료생산 노동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7> 사료생산에 관계되는 노동시간

전노동시간	사료생산
5,262	514(9.7%)

주) ( )안은 전 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사료생산시간의 비율  
 자료: 북해도청 생산국 사료조사과, 「1999년 우유생산비(북해도)」, 2000

<그림 7-8> 월별 노동시간



주) 사료생산노동시간은 혼파목초를 3회(5, 7, 9월) 수확하고, 연간 사료생산 노동시간(514시간)을 수확작업월로 균등배분해서 산출  
 자료: 북해도청 생산국 사료조사과, 「1999년 우유생산비(북해도)」, 2000

계약자에 의한 대형기계와 숙련노동자에 의한 대규모 면적에서의 사료생산 작업, 또한 축산농가가 기계를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기계비용의 경감에서 사료생산의 저비용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료생산의 전문가가 작업에 따라 고품질인 조사료의 안정공급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28> 자금사료의 비용가와 계약자 작업요금의 비교

단위 : 엔/10a, %

비용가 1	비용가 2	S농협	N농업기계센터
16,130	23,445	10,306 (63.9) <44.0>	6,400 (39.7) <27.3>

주 1) 비용가 1에는 사료생산과 관계된 기계시설 등 고정재비, 수선비등, 고용노임을 포함하고 있다. 비용가 2에는 비용가 1에 자가노임을 더하였음.  
 2) 콘트라쿠타의 작업요금은 사일리지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작업을 위탁한 경우의 요금(경기, 정지, 파종, 수확, 저장작업을 포함)  
 3) ( )은 비용가 1에 대한 비율. < >은 비용가 2에 대한 비율  
 자료: 북해도청 생산국 사료조사과, 「1999년 우유생산비(북해도)」, 2000

## 라. 기타 농기계임대사업

### 1) 축산생산기술 고도화 기계 리스사업

- 사업내용 : 「낙농 및 육용우 생산의 근대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의해 생산성 높은 낙농 및 육용우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사양관리, 번식·위생관리 등 생산기술고도화를 위해 컴퓨터제어기계 등의 리스방식에 의한 도입을 추진.
- 사업대상 : 인정농업자 등
- 대상기계 : 컴퓨터제어 생산기술 관련기계
- 보조율 : 리스요율의 2.0% 정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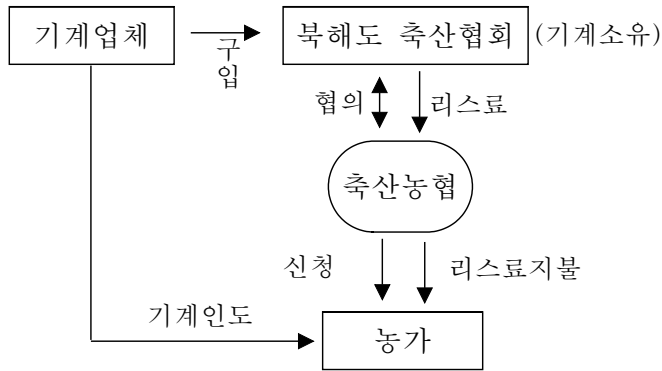
### 2) 축산 생산자단체 리스사업

- 북해도청 및 농협 등이 출자한 축산협회에 의한 리스형태
- 리스료 전액을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할부형태와 유사.

- 그러나 이자율은 매우 낮거나 또는 무이자이며, 이자손실은 정부 등 공공단체에서 보전하는 형태임.

○ 북해도 축산협회 리스업무 체계는 <그림7-9>와 같다.

<그림 7-9> 북해도 축산협의 리스업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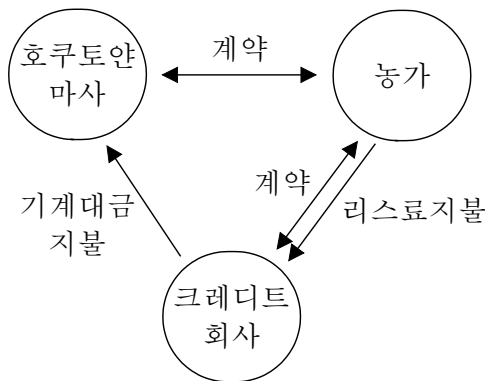


자료: 전농 북해도 경제연구 조사결과

### 3) 농기계회사 자체리스

- 일본 내 대부분의 농기계회사에서는 생산 농기계 판촉의 일환으로 농기계 론(loan)을 조성 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기계회사의 리스사업체계는 <그림7-10>과 같다.

<그림 7-10> 농기계회사의 리스사업체계 (호쿠도 안마사의 예)



자료: 호쿠도 안마(북해도 안마 현지판매법인) 조사결과

#### 4) 농협의 농기계 론(loan)

- 농기계 메이커 및 딜러가 농가와 농기계 구입계약을 맺고 농가에 농기계를 제공. 농협이 농기계 구입자금을 딜러 또는 메이커에 지불하는 형태임.
  - 이 경우 농협이 지불한 농기계대금을 농가가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의 농기계 소유는 농협임.
- 농협이 농기계 론을 도입하기 전에는 메이커가 농기계 론을 조성. 금리 면에서 메이커의 경우가 2배 정도 높음.
  - 농협의 금리는 1.875%이며, 농기계 메이커의 금리는 3.5% 이상임.
- 농협계통의 리스시스템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계통농협이 농기계를 구입 농가에 리스하는 형태로, 대량구매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계대금의 100%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다른 하나는 농기계 론의 형태로 판매자와 농가간의 계약과 계통농협의 자금지원 형태임. 이 경우 개별구입으로 가격이 고가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대형기계의 경우에는 농협 등에서 리스, 소형기계는 농가가 개별 구입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 3. 일본의 농기계 임대사업 사례분석

일본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례분석은 북해도 지역 4개 유형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정리하였다.

#### 가.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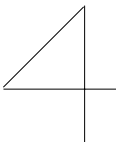
##### 1) 버진하트(Virgin-Heart)농연(農研) 사례

###### 가) 농가 일반현황

버진하트농연은 1995년 인정농업자로 지정되었으며, 노동력은 농장주(부)와 후계농업자(아들), 2인의 고용노동력 등 총 4인이다. 경작규모 및 주요 재배 작물은 14.2ha 농지에 밀, 청예보리, 콩, 과수(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4두의 소와 3두의 말을 사육하는 농가이다<그림7-11>.



<그림 7-11> 버진하트농원의 농장 현황

56 봄보리, 청예보리	51 봄보리, 청예보리	46 봄보리, 청예보리			
57 봄보리, 청예보리	52 봄보리, 청예보리	47 봄보리, 청예보리			
58 봄보리, 청예보리	53 봄보리, 청예보리	48 봄보리, 청예보리			
59 봄보리, 청예보리	54 봄보리, 청예보리	49 봄보리, 청예보리			
60 봄보리, 청예보리	55 봄보리, 청예보리	50 봄보리, 청예보리			
수 로					
45 과수원	44 과수원	43 과수원			
42 과수원					
금전씨 경지					
성호씨 경지					
40 대두	38 대두	36 대두			
41 대두	39 대두	37 대두			
임전씨 경지					
N  대정천씨 경지	31 대두	26 대두			
	32 대두	27 대두			
	33 대두	28 대두			
	34 대두	29 대두			
	35 대두	30 대두			
청수씨 경지					
택 지	22 과수원	과 수 원	16 과수원	9 과수원	1 과수원
	23 과수원			10 과수원	2 과수원
	24 과수원	택 지	17 과수원	11 과수원	3 과수원
	25 과수원			12 과수원	4 과수원
대서씨 경지				13 과수원	5 과수원
				18 과수원	6 과수원
				19 과수원	7 과수원
				20 과수원	8 과수원
				14 과수원	
				15 과수원	

나) 리스 세부내용

버진하트농연의 리스기계는 트랙터 55마력 1대, 채소 이식기 1대 총 2대를 호쿠도 안마(북해도 안마)와 계약, 이용하고 있다. 리스계약은 2002년 3월에 체결하였으며, 리스 기간은 8년(96개월)이다.

<표 7-29> 버진하트 농연의 리스기계 및 시설

리스유형	리스기계 및 시설	리스시기 및 기간
인정농업자 리스	트랙터 55PS 1대 야채이식기 1대	2002. 5. 21~2010. 5. 20

자료: 버진하트(バージンハート)농연 조사결과

이용 리스료는 트랙터의 경우 년 631,050엔이며, 이 중 농가가 지불하는 리스료는 592,428엔, 조성리스료(보조금) 38,622엔으로 전체 리스료의 6% 수준이다.

<표 7-30> 버진하트농연의 리스료 지불명세(트랙터)

회차	지불기일	리스료 총액			리스료 지불		
		리스료	소비세	계	농가지불	조성액(보조)	계
1	2003. 4. 14	60,100	30,050	631,050	592,428	38,622	631,050
2	2004. 4. 14	60,100	30,050	631,050	592,428	38,622	631,050
3	2005. 4. 14	60,100	30,050	631,050	592,428	38,622	631,050
4	2006. 4. 14	60,100	30,050	631,050	592,428	38,622	631,050
5	2007. 4. 14	60,100	30,050	631,050	592,428	38,622	631,050
6	2008. 4. 14	60,100	30,050	631,050	592,428	38,622	631,050
7	2009. 4. 14	60,100	30,050	631,050	592,428	38,622	631,050
8	2010. 4. 14	60,100	30,050	631,050	592,428	38,622	631,050
계		480,800	240,400	5,048,400	4,739,424	308,976	5,048,400

자료: 버진하트(バージンハート)농연 조사결과

버진하트농연의 리스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인정 농업자 리스와 리스업체인 호쿠도 안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잔가리스를 결합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현재 리스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트랙터의 리스가 끝나는 8년후에 설정된 잔가는 100만엔이다.

리스를 하는 이유는 분할지불이 가능하여 구입 시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이

며, 정부의 리스로 조성지원은 현재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기계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보다는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리스 이용 여부는 기회가 있으면 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을 겸하고 있어 목초수거기를 리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리스기계를 둘러싼 수리, A/S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유한회사 마찌무라(町村)농장의 사례

### 가) 마찌무라농장의 개요

마찌무라농장은 1917년에 조성되어 3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매우 유서 깊은 농장이다. 경영경지면적은 차입지 15ha를 포함 160ha의 목초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우 사육두수는 380두이다. 그리고 마찌무라농장은 낙농에 의한 우유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내 가공공장을 이용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되는 유제품으로는 우유를 비롯하여 버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이 있으며 이들 제품은 전국 백화점의 물산전 등에 초대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들이다. 2002년 마찌무라농장의 매출총액은 150억엔에 이른다.

### 나) 리스 세부내용

마찌무라농장의 리스기계 및 시설은 두 가지 유형인데, 인정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을 통해서는 축사 환기통 40개를 리스 하였으며, 축산협회를 통해서 소 번식(발정) 감지기세트와 예냉시설을 리스 하였다<표7-31>.

<표 7-31> 町村농장의 리스기계 및 시설

리스유형	리스기계 및 시설	리스시기 및 기간
인정농업자 리스	축사 환기통 46대 온풍컨트롤러 2대	2001. 6. 30~2006. 6. 29
축산협회 리스	발정감지시스템(컴퓨터 포함) 벌크쿨러(예냉시설)	1999. 12. 28~2004. 12. 27 2000. 1. 31~2005. 1. 30

자료: (유)町村농장 조사결과

인정 농업자 리스의 리스료는 년 1,088,640엔이며, 이 중 농가가 지불하는 리스료는 997,444엔, 조성 리스료(보조금) 91,196엔으로 전체 리스료의 약 8% 수준이다.

<표 7-32> 마찌무라농장의 리스료 지불명세(인정 농업자 리스)

회차	지불기일	리스료 총액			리스료 지불		
		리스료	소비세	계	농가지불	조성액(보조)	계
1	2002. 6. 29	1,036,800	51,840	1,088,640	997,444	91,196	1,088,640
2	2003. 6. 29	1,036,800	51,840	1,088,640	997,444	91,196	1,088,640
3	2004. 6. 29	1,036,800	51,840	1,088,640	997,444	91,196	1,088,640
4	2005. 6. 29	1,036,800	51,840	1,088,640	997,444	91,196	1,088,640
5	2006. 6. 29	1,036,800	51,840	1,088,640	997,444	91,196	1,088,640
계		5,184,000	259,200	5,443,200	4,987,220	455,980	5,443,200

자료: (유)町村農場 조사결과

축산협회 리스의 경우 기계 및 시설 양도 시 취득가액의 10%를 지불하고 양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지불 리스료는 발정감지 시스템의 경우 초기년도는 약 23만엔, 2~5년 기간에는 약 69만엔, 최종년도에는 약 46만엔이며, 예냉시설은 초회 약 30만엔, 2~5년 기간에는 약 123만엔, 최종년도에는 약 92만엔을 지불하고 있으며, 지불시기는 해당년도 4월이다.

<표 7-33> 마찌무라농장의 리스료 지불명세(축산협회 리스)

시설명	취득가액(A)	부가대부료를 제외한 임대료						계	부가 임대료(A)*0.02625	양도료	
		초회 대부료		2~5회 대부료		최종회 대부료				양도 가액	소비세
		대부료	소비세	대부료	소비세	대부료	소비세				
발정감지 시스템	3,659,000	219,540	10,977	658,620	32,931	439,080	21,954	3,457,755	96,049	365,900	18,295
예냉시설	6,500,000	292,500	14,625	1,170,000	58,500	877,500	43,875	6,142,500	170,625	650,000	32,500

자료: (유)町村農場 조사결과

마찌무라농장이 농기계를 리스형태로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리스농기계는 자산계상에서 제외되고, 리스료는 경비지출로 인정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는 농기계 리스료의 분할지급으로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완화를 들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은행융자를 통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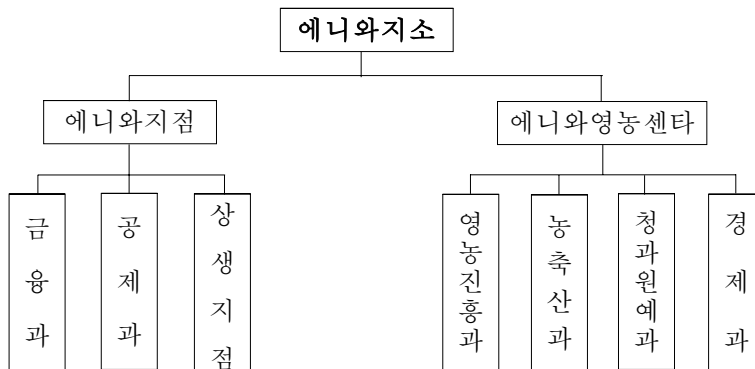
그리고 마찌무라농장 역시 리스기계를 둘러싼 수리, A/S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리스기간 종료 후 현재 이용 중인 리스기계를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 나. 농기계은행 및 청부경작 사례

농기계은행 및 청부경작의 사례는 JA북해도중앙(道央)의 에니와(惠庭)지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JA도중앙은 에니와지소를 비롯한 5개지소가 2001년 통합한 광역 농협이다.

에니와지소는 에니와지점과 에니와영농센타의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니와지점은 금융과, 공제과, 상생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에니와영농센타는 영농진흥과, 농축산과, 청과원예과, 경제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12> 에니와(惠庭)지소의 조직



자료: 道央 農業協同組合, 「제2회 通常總代會議案」, 2003. 4

이러한 조직 중 농업기계 및 관련조직의 관리는 영농센타의 농축산과의 시설물류계조사역이 담당하고 있다.

### 1)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요

에니와농협의 농기계 임대 등 농기계 관련 사업은 1967년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요금 등 관련규정의 체계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관련 규정의 체계화 계기는 1980년에 산하조직으로 농기계이용조합이 결성되면서 JA 농기계의 이용조합으로 이관되었으며, 이때부터 요금체계 정립, 농기계이용조합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에니와농협의 농기계 임대 등 농기계 관련 사업의 유형은 크게 농기계은행 사업, 리스사업, 청부경작 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사업의 구분은 이용 농기계의 구입 재원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표7-34>와 같다.

<표 7-34> 에니와농협 농기계 합리화 이용조합의 사업구분

구분	사업주체	농기계 구입 재원	비고
농기계은행	농협	국가 1/4 도·시·정·촌 1/4 농협 1/2	사업에 따라 보조율은 차이가 있음.
리스	농협	국가 1/2 농협 1/2	
청부경작	농협	농민의 작업료	

자료: 에니와농협 농기계합리화이용조합 규정집

에니와농협의 농기계 임대 등 농기계 관련 사업은 다양한 정부의 농기계 정책과 관련한 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농기계 임대사업 내용

농기계 임대 관련사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나 실질적인 운용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 알선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농작업 수·위탁, 농기계 임대의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유형별 이용요금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기계이용조합의 결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요금체계가 완성됨과 동시에 이용요금 결정방법도 변화가

있었다. 수위탁의 경우 농기계이용조합 이전에는 농기계 이용료에 기계의 감가상각이 포함되었으나 이용조합 결성 이후에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농기계 수리비, 오퍼레이터 임금, 연료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리스의 경우 수위탁의 요금 구성에서 오퍼레이터 임금과 연료비를 제외한 농기계 수리비, 이윤과 감가상각이 포함된다. 감가상각은 국가보조 1/2을 제외한 농협의 구입자금 1/2 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농업기계 및 작업기의 임대 협정 요금표는 <표7-35>와 같이 기계 및 작업기의 특성에 따라 시간 또는 면적 등으로 구분 세부적으로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금체계는 1980년 농기계이용조합이 결성되면서 마련한 기준으로 농가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이후 인상 등의 변화는 없었다.

<표 7-35> 주요 농업기계·작업기 임대 협정요금표(세금제외)

작업기명	단위	금액(엔)	작업기명	단위	금액
농장용컴퓨터	半日	6,000	자주식퇴비살포기	1H	2,500
브로드캐스터	"	3,000	이앙기(4조)	10a	1,000
석회살포기	"	2,500	이앙기(6조)	"	1,500
진공차	"	6,000	이앙기(포트)	"	2,500
쟁기	"	5,000	농구굴기(틸러식)	半日	600
스파이크 해로우	"	2,000	비트이식기	10a	1,500
쓰스 해로우	"	2,000	비트수확기	"	2,500
디스크 해로우	"	2,000	콩수확기	"	1,000
관리기	"	3,000	제설기	1H	5,500
핑거 레이크	"	2,500	분무기	10a	150
테스터모아	"	4,000	시비기	半日	3,500
벨로다	"	3,000	심경로타리-본기부착(1.5m)	1H	3,700
사이드 레이크	"	2,500	심경로타리(1.9m)	10a	10,000
건초제조기	"	2,500	이식기	"	900
건초저장고	"	2,500	파종기	"	400
균평기	"	2,000	K형롤러	"	300
트랜저	1m	70	콩수확기-MHR-2	10a	1,500
우영굴취기	"	20	콩수확기-YCD	"	1,200
트랙터-40PS급	半日	7,000	구굴기	1m	30
트랙터-60PS급	"	8,000	휠로터	1日	10,000
트랙터-70PS급이상	"	9,000	논두렁성형기	1m	10
논구굴기(카트식)	10a	300	필거레이크(카트식)	10a	300
줄기,가지처리기	"	1,500	용설제살포기(카트식)	1袋/20kg	100

자료: 惠庭농협 농기계합리화이용조합 규정집

<표 7-36> 주요작업 시행료 협정요금표 (세금제외)

작업명	기계명	기준단위	요금(엔)	비고
경운	보통경※	1시간당	5,000	16×2 18×2 16×3 18×3 기준 200엔증가 1,000엔증가 1,200엔증가 18×1 2시간 증가 때마다 기준 100엔 가산 1.8m 10cm 증가마다 기준 400엔 가산
	심경※	1시간당	5,000	
	로타리틸러※	1시간당	5,000	
쇄토	로타리해로우	1시간당	5,000	
		1시간당	5,000	
중경제초		1시간당	6,000	4두령(畦)기준. 3두령 500엔 감소
		1시간당	~7,000	
파종	K형롤러※	10a당	500~1,300	
이식	비트이식기	10a당	7,000	보조원 2명 8,000엔
콤바인 (자탈·범용공통)		10a당	5,500 ~8,000	
수확	감자수확기	1시간당	5,000	
	비트수확기	1시간당	6,000	
	비트튜바	10a당	1,800	
	비트테가	1시간당	6,000	
도엽집※		10a당	500	
도엽결속※		결속 1개	1,000	ø120cm
비료살포※		1시간당	7,000	
노살포	살포탱크차	1대(500m이내)	1,300	200m마다 50엔 가산
목초베기		1시간당	6,000	
		1시간당	10,000	
목초반전집초		1시간당	7,000	
		1시간당	7,000	
		1시간당	7,000	
목초결속		결속 1개	1,200	ø150cm
		결속 1개	800	ø120cm
절단	플로아	1시간당	5,000 ~8,000	
기타	무인헬기※	10a당	1,300	
	채설기※	1시간당	7,500	

주 1) 위 단가를 기준으로 시행조건 및 시행장소에 따라 쌍방향의 한 후 변경할 수 있음.

2) ※는 합리적으로 시행가능  
자료: 惠庭농협 농기계합리화이용조합 규정집

농작업 수위탁 관련 시행료 협정요금 역시 <표7-37>와 같이 작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작업시간 및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요금체계 역시 임대요금체계와 마찬가지로 1980년 농기계이용조합이 결성 이후 인상 등의 변화는 없었다.



<표 7-37> 농업기계 합리화이용조합 수지현황

구분		2002 실적	2003 계획	비고
수입	이 용 료	14,560	13,320	에니와영농센타에서 조성 알선 농작업료 알선 농작업 수수료
	기계대부료	3,390	3,300	
	조 성 금	1,000	1,000	
	비차시행료	18,000	27,000	
	비차수수료	80	200	
	잡 수 익	10	10	
	합 계	37,040	44,830	
지출	노 무 비	10,040	8,330	알선 농작업료 기계소유주 지급 보험료, 고정자산세, 전기료
	연 료 비	1,000	1,000	
	수 선 비	5,000	5,000	
	임 차 료	1,500	2,850	
	비 차 비	18,000	27,000	
	관 리 비	500	650	
	합 계	37,040	44,830	

자료: 惠庭농협 농기계합리화이용조합 조사결과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표에 나타난 관리비는 보험료, 고정자산세 등 기계에 관련된 부문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는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문이 적자부문이며 이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다.

#### 다. 리스회사 운영사례

호쿠도 안마사는 안마농기계의 북해도 법인으로 1999년부터 자체 리스업무를 시작하였다. 자체리스를 시작한 이유는 생산 농기계의 판매촉진 목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호쿠도 안마사만의 사업은 아니며, 이것은 일본 농기계 생산자 대부분이 자체 리스업무를 하고 있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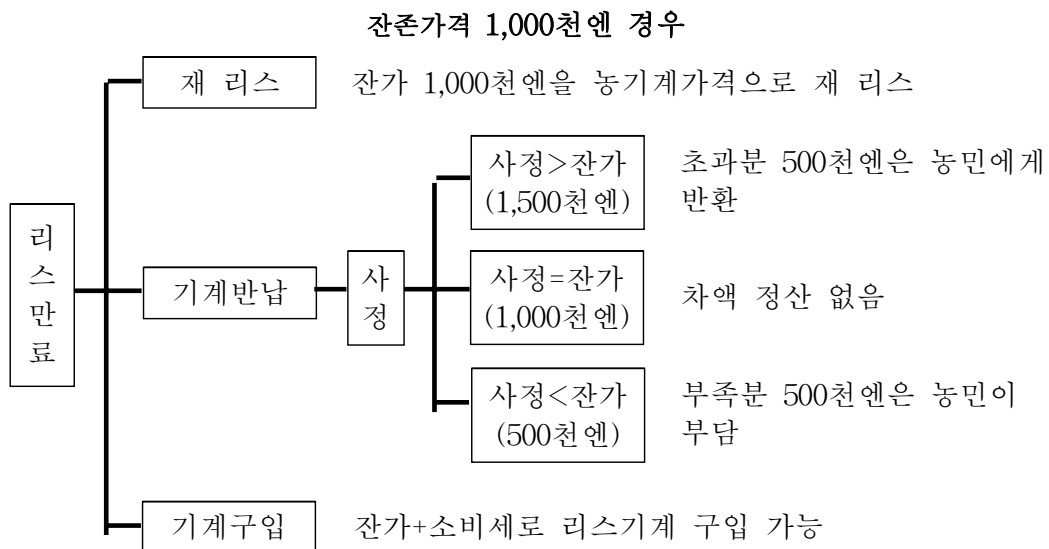
타 생산회사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호쿠도 안마사의 경우 잔가(殘價)리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농기계의 잔가는 2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인정농업자 등에 대한 리스취급시 회사자체의 잔가와 결합하여 리스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리스기간은 농기계의 법정 내구년수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리스기간 만료 후 농기계의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림7-13>.

호쿠도 안마사는 현재 "농기계도 이제 소유에서 임차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민들에게 리스기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홍보시 리스의 유리성에 대해 ① 연지불의 장점, ② 잔가 리스로 저렴, ③ 계약 후 즉시이용(시간절약), ④ 세금혜택, ⑤ 계약종료 후 신기종 구입가능, ⑥ 계약종료 후 잔가로 구입가능, ⑦ 동산종합보험 가입혜택 등을 들고 있다.

<그림 7-13> 리스기간 만료 후 농기계의 처리 방법 및 내용



자료: 호쿠도 안마 조사결과

주요 리스 기종은 트랙터(150대), 목초작업기(30대), 콤바인(30대) 등으로 리스료 산정은 감가상각, 이자, 이운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이들 세 가지 기종의 전체 판매량(리스로 함)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리스에 대한 전망은 농가의 세금혜택과 임차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불안감이 해소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표 7-38> 호쿠도 양마사의 농가판매 및 리스시태(2002년)

단위: 대, %

구 분	판 매	리 스	계
트랙터	850(85.0)	150(15.0)	1,000(100.0)
콤바인	270(90.0)	30(10.0)	300(100.0)
목초작업기	220(88.0)	30(12.0)	250(100.0)
계	1,340(86.5)	210(13.5)	1,550(100.0)

자료: 호쿠도 양마 조사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 가. 요약

이 장은 일본 농기계임대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적정 농기계사업의 모델정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첫째, 일본 농기계 이용정책의 내용과 변화 둘째, 일본의 주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례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기본골격은 농업기계 비용의 절감, 새로운 농기계 개발, 농작업 안정화의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에 따라 농기계 및 시설과 관련 지원되고 있는 자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지원으로 8개 대분류사업(1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다. 두 번째는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제도자금 지원으로, 농업개량자금, 농업근대화자금,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기계화를 위한 행정확충에 관한 지원으로 총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형 농업기계의 개발 등 신기술의 개발·실용화에 관한 지원이다.

농업기계화 정책의 기본골격에서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내용은 농업기계비용의 절감 중 지역에 있어 효율적인 방식의 확립이다. 농업기계의 이용효율화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선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

사업」은 인정 농업자가 기술혁신 등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경영규모의 확대 및 경영전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시설의 리스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 실시는 1999년이었으며, 당시의 사업은 「인정 농업자 지원 긴급 리스사업」이었으나 이후 사업내용의 수정·확대하여 현재의 사업에 이르렀다. 리스사업 지원을 위한 적립금의 조성은 정부에 의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예산요구가 행해지고 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조성, 전농에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리스대상 물건의 범위는 「리스세계」의 리스거래에 적합한 농업기계 등의 동산 외에 리스거래 대상으로서는 인정되어져 있지 않는 건물, 구축물 등의 임대차도 대상으로 한다. 리스기간은 농기계 법정 내용년수의 70%~120% 이하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농업기계은행은 전업농이 자신이 보유한 고성능농업기계, 시설의 농작업 수탁이용 또는 상호 보완이용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기계, 시설을 이용하는 농작업의 수·위탁을 광역화하여 조직적으로 중개알선을 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농기계은행은 1972년부터 실험사업으로 도입·실시되었으며, 1974년부터는 농작업 수위탁의 조직화를 위해 지도자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도입 추진사업과 광역화를 위한 사업들이 실시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유희기계의 등록·대부와 기계 보조노동력의 알선 등 종합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신 농업기계육성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농기계은행에 리스기계 도입을 위한 방안과 고성능 기계에 대한 기술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농기계은행 관련 정책에 따라 농기계은행에 관련한 조직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에는 전국농업기계은행 연합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육성·강화 방침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농기계은행은 점차 그 역할 면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1997년 3월 전국농업기계은행 연합협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농작업 수위탁 등의 노동력 유통이 곤란한 지역, 경영체의 규모확대 과정에 있어서 노동피크 시 노동력의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있어서는 농업생산의 유지·확대 및 후계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노동의 외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의 농작업을 수탁하는 농협, 농업공사 등이 주체로

하는 청부경작을 육성하는 사업을 농업생산종합대책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다. 조직수를 보면 1993년 47개에서 2000년 180개로 4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북해도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동안 수탁호수는 약 4배, 수탁면적은 약 5배로 증가하였다. 조직형태는 영농집단 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용농가 호수, 수탁면적의 경우에는 농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탁작업은 사료수확이 가장 많다.

이상의 사업 이외에도 기타 농기계 임대 및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는 축산생산기술고도화기계 리스사업, 축산생산자단체 리스사업, 농기계회사 자체리스, 농협의 농기계론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농기계 임대사업 사례는 북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4가지 사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인정농업자지원형 리스사업으로 버진하트농업이다. 버진하트농업은 1995년 인정농업자로 지정되었다. 노동력은 농장주(부)와 후계 농업자(아들), 고용노동 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작규모 및 주요 재배작물은 14.2ha 농지에 소맥, 청예보리, 콩, 과수(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육우 4두를 사육하는 농가이다. 리스기계는 트랙터 55마력 1대, 채소이식기 1대 총 2대를 호쿠도 안마사와 계약, 이용하고 있다. 리스계약은 2002년 3월에 체결하였으며, 리스기간은 8년(96개월)이다. 이용 리스료는 트랙터의 경우 년 631,050엔이며 이 중 농가가 지불하는 리스료는 592,428엔, 조성 리스료(보조금) 38,622엔으로 전체 리스료의 6% 수준이다. 리스에 있어서 특이 사항은 인정농업자 리스와 리스업체인 호쿠도 안마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잔가리스(잔가 100만엔)를 결합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스를 하는 이유는 분할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정부의 리스료 조성지원은 현재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리스 이용 여부는 기회가 있으면 할 계획이며, 특히 축산을 겸하고 있어 목초수거기를 리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리스기계를 둘러싼 수리, A/S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유)마찌무라농장의 사례이다. 마찌무라농장은 1917년에 조성된 매우 유서 깊은 농장으로 차입지 15ha를 포함 160ha의 목초지를 보유, 젓소 380두를 사육하고 있다. 낙농에 의해 우유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내 가공공장을 이용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2년 매출총액은 150억엔에 이른다. 마찌무라농장이 이용하고 있는 리스기계 및 시설은 인정 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을 통한 축사 환기통 40개, 축산협회를 통해서는 소 번식(발정) 감지기세트와 예냉시설을 리스하였다. 인정 농업자 리스의 리스료는 년 1,088,640엔이며, 이 중 농가가 지불하는 리스료는 997,444엔, 조성리스료(보조금) 91,196엔으로 전체 리스료의 약 8% 수준이다. 축산협회 리스의 경우 기계 및 시설 양도 시 취득가액의 10%를 지불하고 양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간 지불 리스료는 발정감지 시스템의 경우 초기년도는 약 23만엔, 2~5년 기간에는 약 69만엔, 최종년도 46만엔이며, 예냉시설은 초회 약 30만엔, 2~5년 기간에는 약 123만엔, 최종년도에는 약 92만엔을 지불하고 있다. 리스 이유는 세 가지로 첫째는 리스농기계는 자산 계상에서 제외되고, 리스료는 경비지출로 인정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는 농기계 리스료의 분할지급으로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완화를 들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은행용자를 통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이며, 리스 기계를 둘러싼 수리, A/S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농기계은행 및 청부경작의 사례는 JA북해도중앙의 에니와지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에니와농협의 농기계 임대 등 농기계 관련 사업은 196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관련 규정의 체계화 계기는 1980년에 산하조직으로 농기계이용조합이 결성되면서 JA 농기계의 이용조합으로 이관되면서부터다. 에니와농협의 농기계 임대 등 농기계 관련 사업의 유형은 농기계의 재원에 따라 크게 농기계은행 사업, 리스사업, 청부경작 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 중 농기계 알선은 거의 없어 농작업 수위탁, 농기계 임대의 두 가지이다.

사업 유형별 이용요금 결정방법은 수·위탁의 경우 농기계이용조합 이전에는 농기계 이용료에 기계의 감가상각이 포함되었으나 이용조합 결성 이후에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농기계 수리비, 오퍼레이터 임금, 연료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리스의 경우 수위탁의 요금 구성에서 오퍼레이터 임금과 연료비를 제외한 농기계 수리비, 이윤과 감가상각이 포함된다. 감가상각은 국가보조 1/2을 제외한 농협의 구입자금 1/2 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와 농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제외되어 있어 이것을 포함할 경우 적자상태이다. 결국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문이 적자부문이며 이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다.

호쿠도 안마사는 1999년부터 자체 리스업무를 시작하였다. 자체적으로 리스를 시작한 이유는 생산 농기계의 판매촉진 목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호쿠도 안마사만의 사업은 아니며, 일본 농기계 생산자 대부분이 자체 리스업무를 하고 있다. 호쿠도 안마사가 타 생산회사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호쿠도 안마는 잔가리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농기계의 잔가는 2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인정농업자 등에 대한 리스취급 시 회사자체의 잔가와 결합하여 리스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리스기간은 농기계의 법정내구년수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리스기간 만료 후 농기계의 처분은 재리스, 기계반납, 기계구입의 세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 주요 리스 기종은 트랙터(150대), 목초작업기(30대), 콤바인(30대) 등으로 이들 세 가지 기종의 전체판매량(리스로 함)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리스료 산정은 감가상각, 이자, 이윤을 포함해서 산정하며, 리스는 세금혜택과 임차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불안감이 해소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나. 시사점

일본의 농기계 정책 및 임대사업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기계화 정책 및 정부의 보조이다.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은 농업기계비용의 절감, 새로운 농업기계의 개발, 농작업의 안전의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각 과제별 대응 방안, 각 대응 방안별 다양한 시책이 체계를 이루고 있어 우리의 농업기계화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시책의 체계보다는 훨씬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농기계에 관련된 보조가 용자로 전환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보조율에 있어서도 1/2 수준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 이상을 상회하는 것도

많아 과거 우리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 이용 효율화사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농기계 이용효율화 정책은 생산조직에 의한 공동이용, 수위탁의 활성화, 리스·렌탈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들 유형은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세분된다. 또한 정책에 의한 이용 효율화뿐만 아니라 농기계회사 등에 의해서도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 리스·렌탈의 예를 들면 정부 중심의 인정 농업자 리스사업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리스 형태, 농기계회사 중심의 리스형태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인해 농가 및 생산조직은 조건에 맞는 이용효율화 사업을 선택·활용하여 농기계비용 절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간 농업자 중심의 정책리스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정책에 의한 리스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인정 농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기계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임대와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임대사업도 그 목표를 정확히 설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농기계 비용절감을 위한 리스·렌탈 방식의 높은 활용도이다. 인정농업자 중심의 리스는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인정 농업자에게 매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응이 높은 이유는 지불되는 농기계리스료가 회계 규정 상 비용으로 처리되며, 농기계 구입 시 일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반해 리스료는 연지불이 가능해 부담이 적다. 또한 일반 할부금융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현실을 감안 기간농을 중심으로 한 리스·렌탈방식의 활성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기계은행사업(리스포함)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를 조직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별도의 농업합리화법인 등을 조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농업합리화법인의 농협과의 관계는 업무전담 직원의 파견을 통해 관리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며, 사업의 운영과 회계는 별도 계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이 농협의 경제사업 중 일부인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농기계 구입을 전제로 한 리스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활용도가 높다. 리스 이용농가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 이용 중인 리스기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것은 내구연수 이전에 새로운 농기계로의 교체가 잦은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일본 농민의 리스기계의 구입의사가 많은 이유는 기계이용 시 적절한 관리를 통해 내구연수가 지나도 이용에 문제가 없으며, 자신의 경영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농기계 이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농민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농민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농기계회사의 전략적 리스도 특이하며 주목할 만한 사업이었다. 일본 내 대부분의 농기계회사는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리스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리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기계회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대 농민 농기계지원 축소와 농민의 농기계구입 감소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국내 농기계회사도 농기계판매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리스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제 8 장

### 결론

#### -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이 연구에서는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주체들에 의한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국가 농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들 사업의 발전 모델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하고, 이것을 참조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발전적 모델을 세우고자 하였다. 하나하나 제시된 대안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은 어렵겠지만 현장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 가.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

우리나라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은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주체가 다양하였다. 중요한 변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1970~80년대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은 수도작 위주, 시범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농기계의 소유와 이용에 공동개념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농민들의 조직과 단체였으며, 수도작의 부족 노동력 보완, 농기계이용비용을 절감하는데 주요 정책의 목적이 있었다.

② 199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 이용 효율화 정책이 전개된 시기이다. 수도작에 축산부분도 고려되었으며, 공동소유·이용 지원과 함께 개별소유·이용도 지원하였다. 과거와 달리 특이한 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기계 이용정책의 목적도 결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었던 것이다.

③ 2000년대는 다양했던 중앙정부 차원의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들이 사라진 시기이다. 2003년에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사업목적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으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축소지향 정책과 달리 지방정부에 의한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은 독자적 추진과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전개되어온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❶ 1990년대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의 목적이 농업경영의 구조개선을 통한 생산비 인하, 경쟁력 제고에 두어졌던데 비해 2003년도에 도입된 농기계임대 사업에서는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목표는 향후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개선의 수단으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❷ 농기계의 개별소유, 공동이용은 가능하지만 공동소유와 공동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이상이라는 것이다. 공동소유의 경우 농기계 소유의식의 결핍, 농기계의 무리한 사용과 관리소홀 등에 따른 농기계 이용비용의 증가, 농기계이용에 따른 경영수지를 악화 등은 결국 농기계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에서 다수의 농가를 조직화하고 농작업은 집합내 소수 농기계운전, 조작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1990년대 중반이후 시행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3** 정부의 하위조직,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에 의한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들은 거의 모두 적자이었지만 실제 농민 중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상적인 경영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정부, 기반공사, 농협 등과 같은 조직에 의한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보다는 비용지출이 적고 탄력적 운영이 용이한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4** 필수적인 정부의 자금지원과 함께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은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일의 단기사업지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언하면 관련사업과의 연계사업 추진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초의 사업지원 후 사후봉사 강화, 지속적인 경영지도 등이 필요하다. 2003년부터 시행하는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과거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을 통해 우리는 농민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이용의 효율화 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내 농기계조작과 수리에 있어서 유능한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농기계를 소유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의 집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기계작업이나 농지임대차 시장에서 우월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농기계를 이들 후계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농기계이용 효율화 정책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관련정책이 결합되어 장차 우리 농업을 이끌고 갈 기간농 후계자에게 집중될 때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성의 극대화가 실현될 것이다.

## 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과거 10여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전개해온 농기계은행은 농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매년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 관리요령의 지원, 자체평가 등은 작지 않은 관심의 발로라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은행사업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향과 문제를 안고 있었다.

① 농협중앙회의 발표와 달리 농기계은행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108개 지역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내부조사 결과 80여개 지역농협만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5)</sup>.

② 지역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적자와 운영요원 확보의 곤란이다. 일부 지역농협의 경우 경영적자를 감수한 이사회외 요구에 의해 농기계은행사업을 지속한다고 말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③ 전체적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의 내용은 “보유농기계와 자체 내 인력을 이용한 농작업 직영” ⇒ “외부인력에 의한 직영” ⇒ “농기계임대” ⇒ “단순작업기의 무상 임대와 농작업 알선”의 순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혜택이 없는 사업으로 그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④ 지역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으로 농기계임대를 그리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하나의 과도기적인 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농협의 경우 많은 농민 조합원에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

95) 그러나 행정기관사업 대행 지역농협, 단순 농작업 중개농협 등 농기계은행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기 어려운 50여 개 지역농협을 제외하면 현장에서는 약 30여 개 지역농협만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칫 일부 농민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농기계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위와 같은 변화와 속사정과는 달리 지역 농협 관내 농민들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수요는 결코 작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였다.

**1** 조사대상 농민들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지 농민들의 86% 정도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농기계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는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장 큰 이유와 함께 이용의 번거로움, 원거리라는 이유 등이 사업불참의 이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은행사업의 이용자들의 71%는 만족과 함께 지속적인 이용을 희망하고(85%) 있었다.

**2** 농기계은행사업을 모르는 농민들의 35%정도는 추후 기회가 되면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들이 제시한 비참여 이유가 앞의 인지농민의 사업불참 이유와 거의 같이 해당 농기계를 갖고 있고(51%), 농협이외에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업내용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거롭다는 응답이 26% 이어서 이러한 이유에 대한 해소조건이 제시될 경우 농기계은행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3** 다소 희망적인 농기계은행에 대한 수요확대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농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농작업 대행(51%)과 농기계 임대(46%)에 있어, 이 두 주체간의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선호조정이 결국 농기계은행사업의 확대,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의 앞날은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다. 특히 관련된 두 주체, 지역농협과 수요 농민들 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앞날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임대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현재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중심으

로 할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며, 현재 보유한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추가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농작업을 위탁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수의 농민들은 농기계은행사업에 동참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 속에서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1** 농기계은행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관내 모든 농민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 수혜대상 혹은 사업 분야를 한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상대적으로 농작업 수행이 어려운 노령, 여성경영자에 우선하고, 작업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포장을 우선하며, 나아가 작업내용으로는 지역에서 가장 노동경합이 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 사업목적에 발맞추어 농기계은행사업의 주력은 농작업대행에 두고, 운영은 조합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수리센터와의 인적, 물적 통합이 필수이다. 이러한 방법이 어려워 외부 농기계운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일고, 실적급 이외에 보유농기계를 거점식으로 관내에 배치하고, 해당 농기계를 운전할 운전자를 그 지역에서 확보, 활용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3**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작업 수탁의 활성화라는 연장선에서 일관작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농기계은행사업의 주력으로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협에서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육묘작업을 대행 할 경우, 이앙기를 확보, 임대해준다는가, 보리파종기와 복토기를 확보, 임대해 주고 보리수확작업을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농작업기를 다량 확보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다수의 조합원들에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하나의 임대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 농작업의 중개사업 역시 부수적인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일정한 품목의 연속작업의 경우 해당 농기계은행에서 모든 작업을 일괄 지원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본다. 이 사업이 농기계은행사업의 전

부라면 이미 그 사업은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농민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닌 현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농기계은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지역농협과 농민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배치된 선호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 구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조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관리내용도 조정되어야 한다.

**6** 농기계은행사업을 관련된 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의 가치가 있는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기계수리센터, RPC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제기된 주장의 골격이다. 즉 RPC 중심의 벼생산의 계열화와 농기계의 공동활용으로 벼 생산비를 줄이고, 나아가 벼농사와 경합되는 다른 품목 농작업의 노동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아울러 농기계수리센터를 통한 농기계은행 보유 농기계에 대한 집중적인 수리, 관리는 관련비용의 절감과 농기계 이용효율의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이다.

#### **다. 지방정부 농기계임대사업**

지방정부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과 운영주체에 따라 문제와 그에 대응한 개선방안이 다를 수 있다. 운영 주체 하나 하나에 따라 사업추진의 목적과 문제가 다르고 따라서 개선해야 할 내용과 방법 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농기계은행사업의 주체는 크게 시·군 행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로 양분할 수 있다. 두 운영 주체별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는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다른 면도 있다. 개별적인 면보다는 보다 공통적인 면을 중심으로 운영 주체별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내용과 문제점을 통합,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5-37> 지방정부 사업 주체별 농기계임대사업의 특징과 문제와 동일).



주요항목	행정부서(경기)	농업기술센터(충청)
사업목적	상대적으로 소극적	상대적으로 적극적
임대대상	행정부서: 일정조직중심이 주류 기술센터: 개인별, 무차별	개인별, 무차별이며 생활보호대상과 영세농 등에 우선, 일부 농작업도 대행
선발기준	일부 객관기준 미흡	특별 기준 불필요
사업비	경상예산	임시자금
기종선발	리스형: 김포, 화성, 양평, 여주 렌탈형: 고양, 파주, 평택, 안성	렌탈형(청주: 작업기 중심)
관련시설	행정부서: 장기임대로 불필요 기술센터: 기존시설 활용	기존시설 활용
임대기간	행정부서: 장기임대중심(1년이하해도 하자없을 경우 계속임대) 기술센터: 1년이하 단기	기본 3일 기준, 초단기
임대료	행정부서: 장기 연간 임대료 설정 기술센터: 일 사용료 설정	사용면적과 일 기준 사용료 설정
사전후관리	사고대비 공제가입의무화 사후관리 -행정부서: 미흡, 센터: 양호	수리능력보유로 사후관리 양호
기금	기금조례에 의거 연차별 확보	없음.
향후수요	일부 도시 및 도시근교외 수요잠재	상대적 경영열악 농민 수요 잠재
기타	농협을 임차인으로 할 경우 갈등 다른 사업과 미연계	농작업대행의 당위성 문제 대두 훈련용농기계의 활용당위성 문제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 목적을 보면, 경기도96) 행정부서의 경우 농가들에게 평균적인 지원을 통해 농기계 이용부담을 줄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으나 충청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제고, 농업경영개선이라는 적극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② 충청도의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농기계의 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수혜대상의 선발기준이 불필요하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일부는 경쟁적인 임차인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의해 임대인을 선발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와 관련자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후 불만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다.

96) 경기도, 충청도 구분은 두 지역 내 농기계임대사업의 성격과 운영방법이 유사하여 설명의 편의상 한 것에 불과함.

③ 경기도의 경우는 도와 시·군의 안정된 예산이 책정, 지원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충청도는 임시자금을 이용한 농기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산의 경우 지자체예산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사업예산이 지원될지 예단할 수 없다.

④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의 선발은 경기도 김포, 화성 등에서는 임차 희망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선택하는 리스방법을, 고양, 파주 등에서는 임차인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농기계를 선택하는 렌탈형을 따르고 있다. 충청도의 경우에도 역시 렌탈형 방법에 의해 농기계를 확보, 임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렌탈형의 경우 자칫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임대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⑤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체가 행정부서인 경우(경기도의 고양과 파주를 제외한 경우) 해당 농기계를 사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시설이 없어 적절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할 경우 기존의 농기계 관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농기계 사후관리에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

⑥ 농기계 사후관리의 애로라는 문제는 행정부서 관리 농기계 임대기간을 중장기로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농기계 사후 관리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다수의 농기계 임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극히 단기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초단기 임대의 경우 여기에 따른 행정, 관리수요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여유분의 농기계를 확보, 활용해야하는 유희자원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장기임대의 경우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화의 문제도 있다.

⑦ 농기계임대료의 경우, 경기도 행정부서에서는 연간 임대료를 책정하여, 선불징수하고 있으나 단기임대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일 혹은 작업면적 기준 임대료를 산정,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농기계고장에 따른 임차 농기계

의 유희화와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과 작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임대료의 조정 등의 갈등이 상존한다. 작업면적 기준 후불제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 산정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⑧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화성 제외) 별도의 기금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충청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금조례 자체가 없다. 이것은 사업자금의 불안정적 확보 문제와 결부되어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⑨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운전자와 농기계에 대한 상해공제가입이 미진하다. 경기도의 경우 농기계 임차인에게 공제가입을 권하고 있으나 실제 가입정도는 미미하며 계약갱신 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단기임대 위주이다 보니 아예 이 부분의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임대농기계와 운전자에 대한 공제나 보험가입은 필수요소이다.

⑩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다른 사업과의 연계시행을 통해 사업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데 이부분이 미흡하다. 행정부서의 경우 하위 임대사업 주체로 다시 농협을 집어넣는 경우의 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상적인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는 데 이것의 당위성 문제, 순수 훈련용 농기계의 임대수익화의 문제 등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다.

한편 우리 농업은 분명 질적, 양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 경영개선, 나아가 농업구조개선의 한 수단으로 보는 적극적인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선택과 집중”이라는 농업기계화 정책을 전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목표 아래에서 우리는 농업경영과 구조개선을 이를 장차의 기간농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시각 아래 농기계임대사업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운영 주체의 통합: 농기계 임대사업을 관리하는 분리된 주체인 행정부서 관리와 농업기술센터관리는 통합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 효율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임대농기계의 운용리스(operating lease)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관련시설과 수리, 관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체계적 관리 등에서도 유효하다. 나아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예산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 운영 주체별 업무의 분업적 협동: 두 주체의 통합 후 행정부서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된 사업기획과 예산통제, 사업의 효과 배가를 위한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의 임대, 관리, 수리지원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안정 예산과 기금확보: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경상 예산화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의 결합지원이든,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예산이든 경상적인 일반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장기임대, 사전·후 관리 강화: 농기계의 장기임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도, 관리 수요의 축소와 농기계 및 운전자 공제가입, 임차인 책임 관리 등의 면에서도 단기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용하다. 특히 운용리스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장기임대가 바람직하다. 물론 사전·후 관리 특히 사고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5** 임차인 선발 기준 객관화 및 수요자 기종선정: 장기임대의 경우 엄밀한 임차인 선발기준이 있어야한다. 임대용 농기계는 임차 예정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리스형의 방법 속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이때 소형작업기보다는 작업기간의 단기인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특화작목을 위한 고가의 대형기종도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로 유용할 것이다.

**6** 중간조직의 배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적은 농협이나 농업법인(임대 농기계의 재임대 농업법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사업단계를 늘려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특히 농협의 경우 조합원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한다는 당위성과 경영수지 적자의 기피로 당초와 다른 방향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다른 사업과의 연계: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기계를 이용한 임대사업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관련 사업과 같이 같은 대상에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위 농작업 대행과 연속 농작업 대행, 농지 임차면적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이 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기타: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꺼리는 경우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도시와 대도시 근교농업의 경우 비농업적 활동과 농지의 이용 등으로 인해 기간농에 의한 농업육성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진정 필요한 평야지의 경우 도시나 대도시근교에 비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결합하여 지원할 경우 재정지원의 여력이 작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의 운영

2003년부터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지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유일한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이다. 따라

서 정책의 성패는 향후 우리농업의 기계화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상황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중요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중요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인 농업 기계화의 목표인 경영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지 않고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농민들의 지원에 있어 거시적 차원의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② 소극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임대 대상자를 농기계의 운전과 조작자체가 어려운 부녀·고령 영세농가에 두라는 지침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가능하면 더욱 많은 농민 조합원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규범적인 의식과 함께 적어도 지역 농협이 주체가 될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이 선택적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앙 단위의 이러한 지침과 달리 일부 사업 주관 지역농협에서는 상대적으로 농기계운영에 자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조직에 임대대상을 위치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켜 볼 일이다.

③ 사업주관 지역농협마다 임대 농기계의 내용년수와 임대기간이 모두 다르다. 농림부의 내용년수와 농협자체 내 고정자본의 내용년수가 다르고, 사업주체마다 초단기에서 내용년수까지 임대기간이 모두 다르다.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④ 동일기종, 동일규격의 농기계임대료가 지역농협마다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총 임대료의 회수 목표 규모, 적용 내용년수와 임대기간의 차이, 나아가 순수 농기계임대료에 관리비의 적용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의 같은 규격의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가 동일사업 내에서 다른 것이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수입의 기금화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기계와 농작업자의 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사업의 종합적 지원(농기계 보관창고,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중고농기계의 활용 문제 등)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⑥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과 배치되는 농작업의 수위탁까지도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기존 농기계은행사업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것은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고장수리 시 일시적인 임대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어 심히 염려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 하나하나 세세한 현장 적용의 문제는 차치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시적, 진취적 차원, 즉 농업경영구조의 개선,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의 증진에 뒤야 한다. 이러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아래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전업적인 농업인에 사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농기계 임대시범 사업용 농기계의 선택은 지역실정이 철저히 반영되는 방향에서 것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정작업의 일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관리면에서도 효율성을 높힐 수 있기 때문이다.

**3**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1년 이상의 중·장기가 바람직하다. 물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의 임차인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임대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기간농에 의한 경영구조개선, 한 Operator에 의한 조작과 관리의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행정관리의 용이성, 농기계 공제·보험의 문제, 면세유 수급의 문제 등도 완화된다.

**4**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 산정방법과 회수 목표 등이 적어도 동일사업의 주체인 지역 농협 간에는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기계에 적용하게 될 감가상각기간과 임대기간, 임대료로 회수하고자 하는 회수목표 금액, 임대료에 포함해야할 관리운영비(이자, 관리비, 공제료 등) 등을 통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후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내부 회계처리의 일관성 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5** 임대용 농기계와 농작업인의 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옳으며, 중·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농기계 임차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용이할 것이다. 단기임대의 경우 그렇지 못할 것이다.

**6** 안정적, 지속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료의 기금화가 필요하다. 하나의 방법으로 일시불 농기계임대료 회수라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물론 중간의 농기계 임대차 해약사유 발생시 반환의 문제는 있지만 당해년도 농기계 임대료를 다음해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에 투자,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농협의 회계규정이 바뀌어 기금적립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7**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가의 종합적인 경영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업자인 지역농협의 입장에서는 중고농기계의 활용, 경영지도,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등의 보조적 종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기계 임대계약과 책임 A/S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 운용리스는 농기계 이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방법이다. 기간 임차농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른 사업을 역시 선택적으로 지원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농업경영의 구조개선을 달성해야할 것이다.



## 마. 일본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사점

①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기본골격은 농업기계 비용의 절감, 새로운 농기계개발, 농작업 안정화의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 및 시설에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는 자금은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지원,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에 관한 제도자금 지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행정확충에 관한 지원, 21세기형 농업기계의 개발 등 신기술의 개발·실용화에 관한 지원이다.

② 농업기계화 정책의 기본골격에서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내용은 농업기계비의 절감 중 지역에 있어 효율방식의 확립이다. 사업은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축산생산기술고도화기계 리스사업」, 「농업기계은행 사업」 등이다.

③ 농기계임대 이외에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으로는 농업생산종합대책사업의 하나로 청부 경작자를 육성하고 있다. 기타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사업은 축산 생산자 단체 리스사업, 농기계회사 자체리스, 농협의 농기계론 등이 있다.

일본의 농기계정책 및 임대사업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체계적인 기계화 정책 및 정부보조: 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은 농업기계비용의 절감, 새로운 농업기계의 개발, 농작업의 안전의 세 가지 과제와 각 과제별 대응방안, 각 대응방안별 다양한 시책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 우리의 농업기계화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시책의 체계보다는 훨씬 구체적이다. 농기계에 관련된 보조가 보편적으로 1/2이상으로 용자 중심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2** 다양한 형태의 이용효율화사업 활용 가능성: 일본의 농기계 이용 효율화는 생산조직에 의한 공동이용, 수위탁의 활성화, 리스·렌탈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들 유형은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세분된다. 또한 농기계회사 등에 의해서도 사업이 이루어져 조건에 맞는 이용효율화 사업을 선택·활용하여 농기계비용 절감 가능성이 높다.

**3** 농기계비용 절감을 위한 리스·렌탈 방식의 높은 활용도: 일본에서 농기계 리스 이유는 지불되는 농기계 리스료가 회계규정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농기계 구입 시 일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반해, 리스료는 연지불이 가능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현실을 감안 기간농을 중심으로 한 리스·렌탈 방식의 활성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기간농업자 중심의 정책리스: 정부정책에 의한 리스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인정농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기계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임대와는 대조적이다.

**5** 농기계은행사업(리스포함)을 위한 조직체 조직: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별도의 농업합리화법인 등을 조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이 농협의 경제사업 중 일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6** 농기계 구입을 전제로 한 리스사업 활용: 리스농가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 이용 중인 리스기계를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영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농기계 이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농민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농민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7** 농기계회사의 전략적 리스: 일본 내 대부분의 농기계회사는 판촉 목적의

자체 리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기계회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농기계지원 축소와 농민의 농기계구입 감소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판매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리스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바. 독일 MR과 WBL의 시사점

독일은 1950년대부터 농기계은행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WBL도 조직되어 활용되고 있다. 비록 Hessen주에서만 활성화되고 있지만 WBL에서는 농기계 공동구입, 임대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 두 조직의 운영목적은 당연히 농기계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 아래 우리는 농기계가격에 직접 보조하는 형식인데 비해, 독일은 일정한 공공사업을 민간에 위임하고 그들에게 농기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보조규제의 규정을 파하는 절묘한 제도이다.

**2** 당초 농협의 조직을 민간조직으로 분리해서 MR을 운영하고 있고, WBL 역시 사업영역은 공공적인 것이 많지만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을 피하는 좋은 발상이라 생각한다. 자칫 수익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을 경계하여 사업수익 제로라는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일부 수익이 남아도 자체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도입을 전제한 검토의 가치가 있다.

**3** 독일 MR도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본연의 업무로부터 퇴조하는 대신 다수 농민들의 공동 구·판매사업이랄지 소득사업의 소개 등으로 사업을 확

장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MR을 운영해야할지 아니면 조직의 사양화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시기이다.

4 비록 Hessen주의 독특한 사업이지만 WBL에서의 농기계 공동구입과 임대사업은 성공적이다. MR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고 비록 농기계는 WBL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매년 비용은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소유의식이 있고, 자신의 농기계이다 보니 이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회원 농민들의 반응을 볼 때 MR은 사양, WBL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에서도 WBL조직과 같은 조직을 검토해야한다.

## 2.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모델(대안적 접근)

### 가. 기본적인 시각의 정립

농업기계화 정책 가운데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 정책, 그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지는 위상을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가 활성화 모델의 가장 중요한,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해야만 그 다음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느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농업의 발전목표와 농업기계화의 목적과 배치된 농기계임대사업의 목표설정은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현실에서 볼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크기 두 가지로 양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농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이며, 다른 하나는 기간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구조 개선,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제고, 농업소득 증대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두 목적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본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민들의 경우 어차피 농업경영으로부터 유리해야 하며 각종 직불제, 은퇴연금 등의 정책수단이 준비되어 있고, 이들

의 경영을 기간농이 이양받아 수행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후자의 취지를 견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업경영이 어려운 경영인의 경우 임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작고, 고령이어서 농기계 운전의 위험성도 크다. 농작업이 어려운 포장의 경우 어차피 직불제의 대상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6ha 이상의 전업적 기간농 6만호를 육성하는 등 농업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이뤄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고 갈 기간농을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영 조건이 불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모델 강구 시 후자 부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각은 사업의 추진주체와 재원을 다양화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화할 것인가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역농협을 사업주체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정부에서 행정관리부서를 중심으로 혹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주체별로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느 사업주체가 유리한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로 통합할 경우 어느 주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점검해야 할 것이다. 위 두 부분에 대한 시각이 정립되면 구체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 나. 활성화 모델(대안)

우리나라 농업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농기계임대 모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합을 중요한 기준에 의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표8-1>에는 가상의 임대모델 작성을 위한 주요 기준별 선택 가능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조건을 결합하여 현실적 농기계임대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하나하나 기준에 따른 내용을 혼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엄밀하게 아래의 분류처럼 분류할 수는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선택조건들이 활용되는지의 특징은 알 수 있다.

<표 8-1> 주요 기준별 선택조건

기 준	선택가능 조건		
대 상	1.: 공동 이용조직 (작목반, 생산조직)내 소수 기간농	2.: 개인, 농업법인과 농협 등 조직	3.: 영세, 노령 경영인
대상농기계	A.: 주력 중·대형기종	B.: 지역 특화기종	C.: 소형기종,작업기 등
기종확보	가.: 리스방식	나.: 렌탈방식	다.: 리스와 렌탈방식
리스형태	①: Net Lease	②: Maintenance Lease	③: Operating Lease
리스기간	①: 단기	②: 1년	③:기계 내용년수(장기)

앞에서 분석한 주요 사업의 형태별로 임대모델 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 <표8-2>와 같다. 주요 기준에 따른 임대모델의 분류에서 보면 엄밀하게 구분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형태별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대상을 일정한 조직과 조직 내 지도자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작업기보다는 주력인 중·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임대용 농기계는 일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순수리스의 장기임대가 주류이다.

충청도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사업지원의 대상을 주로 개별농가, 특히 경영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농업인에 두고 있어 경기도와는 상당히 다르다. 임대용 농기계는 중·대형 기종도 있지만 다양한 작업기도 눈에 띈다. 기본적으로 훈련용 농기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임대용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결정한다. 농기계수리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어 비록 수리봉사 등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지는 않지만, 임대농기계의 사후관리를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 다수 농민대상과 자체 수리능력 보유 등의 특징과 연관되어 농기계임대기간은 단기에 그치고 있다.

<표 8-2> 주요 기준에 따른 임대모델 분류

구분	주요기준별 내용	현실운용 지역
경기도	1 - A, B - 가 - ① - ②	경기도 김포
	1 - A, B - 가 - ① - ③	경기도 양평, 여주
	1, 2, - A, B - 가 - ① - ③	경기도 화성
	1, 2 - A, B - 나 - ① - ①, ②	경기도 고양
	1 - A, B, C - 나 - ① - ②	경기도 파주
	2 - A, B - 나 - ① - ②	경기도 평택
	1, 2, - A, B - 나 - ① - ③	경기도 안성
충청도	2 - A - 나 - ③ - ①	충북 영동
	3 - A, C - 나 - ③ - ①	충북 음성
	3 - A, B, C - 나 - ③ - ①	충남 아산
	3 - C - 나 - ③ - ①	충북 청주
지역농기계은행	1, 2 - C - 나 - ① - ①	충남 논산 부적농협
	2 - A - 나 - ① - ②	전북 익산 용안 농협
	2 - A - 나 - ① - ③	충북 진천 진천농협
	2 - C - 나 - ① - ①	전남 영광 백수농협
	3 - A - 나 - ① - ①	충북 괴산 증평농협
농기계임대사업	1 - A - 가 - ① - ③	충남 규암농협
	1 - A - 가 - ① - ②	충북 오창농협, 전남 남평농협
	1 - A - 가 - ① - ③	강원 문막농협, 전북 공덕농협
	1 - A - 나 - ① - ①	충북 청남농협
	1 - A - 나 - ① - ③	경북 흥해농협

농기계은행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기계 임대의 부분은 미미하다. 대부분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중·대형의 주력 농기계는 농기계은행사업 내 사업간 전환과정에서나 혹은 관련 농기계 작업대행의 보완적인 관계에서나 임대되고 있을 뿐이다. 중심 임대농기계는 작업기이다. 작업기의 선택은 역시 공급자가 알아서한다. 작업기의 임대는 단기일 수밖에 없다.

200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의 경우 농림부의 주요 사업 지원 대상 구상과 달리 현지에서는 일정한 농촌 내 생산조직, 특히 작목반을 중심으로 중·대형의 주력 기종을 리스방식에 의해 공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 농협 내 수리센터와의 연계된 농기계임대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곳을 제외하면 1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하고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별로 사업의 성격이 약간씩 다르다. 사업의 기본구성 내용이 다른 이유는 당연히 오랜 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운영 주체의 입장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내용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환언하면 각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주체에 따른 특징적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아예 무시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기계 임대사업의 모델을 강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업 주체별 특징을 참고하여 우리 농업에 알맞은 농기계임대 모델을 강구하기로 한다. 즉 사업 주체별 기본적인 골격은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갖기 위해 문제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적정 모델을 강구한다.

**<모델 I : 행정부서+농업기술센터 주관 농기계임대사업>**

**주요 기준: 1 - A(B) - 가. - ③ - ③(②)**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을 기간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구조 개선,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제고, 농업소득 증대를 달성하는 데 둘 경우

우리 농업을 이끌고 나갈 기간농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은 <표8-1>에서 보면 “1.” 혹은 “2.”가 된다. 그런데 일정한 생산조직이 있을 경우 조직 내 경영의 집적과 확대가 한 개인 농업인보다는 유리하다. 따라서 대상을 “1.”로 하는 것이 좋으며, 경영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역시 주력 중·대형의 기종(A.)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 특화작목의 구조개선을 목표로한다면 당연히 기종은 “B.”가 될 것이다. 임대용 농기계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리스방식(가.)이 바람직하며 적극적인 임대사업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③의 운용리스가 좋다.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스기간은 1년과 함께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내용연수까지 가는 것이 좋다(③). 처음부터 장기임대를 할 경우 행정 수요의 절감, 일시불 임대료 수취 시 확대지원 용이, 임차인의 관리 철저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앞의 분석을 토대로 살



펴보면 경기도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의 조합에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경우 사후관리에 약점이 있으나 일정 조직체에 대한 선별지원과 사업지속을 위한 기금적립의 장점이 있다.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나의 수익사업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업지속을 위한 기금적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행정부서 관리에 농업기술관리센터의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염려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 이 모델의 운영 주체는 행정부서-농업기술센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모델의 경우 임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임대료 산정기준과 방법의 통일이 필요하다. 농기계 및 운전자에 대한 공제가입 등도 사전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문제이다. 농업구조와 경영을 개선하는 데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추진도 이루어져야한다.

### <모델 II: 지역 농협 주관 농기계임대사업(시범사업)>

주요 기준: 1 - B(A) - 가. - ③ - ③(②)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을 기간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구조 개선,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제고, 농업소득 증대를 달성하는 데 둘 경우(모델 I)

모델 I 과 기준별 내용은 같은 데, 운영 주체를 지역 농협으로 하는 모델이다. 먼저 농기계 임대지원 대상을 가능하다면 “1.”에 집중한다. 기종도 주력 중·대형 기종(A.)이 좋지만 농협의 특성상 지역 특화작목의 구조개선 차원의 기종인 “B.”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특수한 작목과 작업대한 것일 경우 수요의 분산을 막기 위해 렌탈방식(나.)으로 농기계를 확보해도 무난할 것이다. 운용리스(③)의 경우에는 중도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유연성이 배가된다. 리스기간은 가능하다면 장기로 하는 것이 좋다(③).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지역농협의 경우 가능하다면 많은 조합원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제 해결방법이 있다. 어느 지역

중심의 조직체에 농기계를 임대했을 경우 조직원 이외에도 임대 농기계의 운영자를 통해 농작업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어차피 임대한 농기계를 다시 임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기계 임차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작업료를 수취하고 조직 이외 주변 일반 수요자의 위탁작업에 응한다면 다수에게 혜택을 준다는 목표가 실현된다.

그리고 대규모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의 경우 중고농기계의 활용과 RPC 계약재배 조직과의 연대 등을 통해 더욱 유효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적절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우려(점)로 인해 자칫 그저 시키는 사업이니까 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기계은행의 운영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발전을 위한 지역 농협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사업대처가 중요하다.

이 모델의 경우에도 지역 농협 내 농기계수리 센터와의 공조는 사업 효율성 제고의 전제이다.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강구와 함께 임대료 산정기준과 방법 등의 문제, 농기계 및 운전자에 대한 공제가입 문제 등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델 I 과 모델 III을 비교할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리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자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모델 III: 제3주체 주관 농기계임대사업>**

**주요 기준: 1 - A, B - 가. - ③ - ③(②)**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을 공동 이용조직내 기간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구조 개선,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제고, 농업소득 증대를 달성하는 데  
 들 경우(모델 I, 모델 II )

모델 I, II의 기준별 내용은 같은 데 운영 주체를 농협이나 정부조직이 아닌 제3의 주체에 의해 운영하는 모델이다. 농기계 임대지원 대상을 가능하다면 집단화된 기간농에 집중하고 주력 중·대형 기종을 리스방식으로 확보

하며, 운용리스를 통해 사업운영의 유연성이 배가하는 것이다. 리스기간은 가능하면 장기로 하는 것이 좋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역시 제3주체의 성격과 운영비용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정부와 지역 농협에서 일정 운영비용을 지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제3주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다fms 공공사업을 위임하는 형태(독일)도 좋을 것이다. 즉 일본의 경우 제3 주체(지역농협 자회사)에 대해 지역 농협에서 일정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WBL에 연간 12,000유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과 우리나라 MR의 사양화는 더욱 이 모델의 중요성을 부추긴다.

이 모델에서는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부담스러워하는 농협이 일부 비용만을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농협도 좋다. 정부의 농기계 임대 보조사업을 제3주체의 운영지원의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사업을 추가하기 때문에 대 내·외적으로도 유용하다<sup>97)</sup>. 제3주체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수익증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조직(행정, 농협)에 비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자칫 지나친 수익추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운영의 수익배제 원칙(독일)을 적용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한편 이와 같은 모델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농기계의 구입과 보관, 수리 등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농협 내 농기계수리센터와 협력하든지 아니면 그 조직을 제3주체에서 인수,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는 형식을 빌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주체는 단순 농기계 임대를 넘어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농업과 농민의 복지사업을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독일 WBL사업).

---

97) 독일 MR과 WBL의 중요한 시사점은 부록의 내용을 참조할 것.

<모델 IV: 지역 농협중심 농기계임대사업>

주요 기준: 3(2) - C(B) - 다. - ① - ㉠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혜를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농업소득을 증대하자는 경우
--

이 경우는 사업지원의 대상에 어느 차별적인 취급도 불필요하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의 수혜 대상은 “2.”, “3.”이 될 것이다<표8-1참조>. 임대용 농기계를 중·대형 농기계로 하는 것보다 소형농기계와 작업기로 하는 것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더욱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임대용 농기계는 자연스럽게 “C.”가 된다. 물론 일부 특수한 농기계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소형농기계와 작업기를 확보하는 데 수요자의 의향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공급자가 지역의 실정을 보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소형 농기계와 작업기를 확보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칫 수요자를 중시할 경우 기종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렌탈방식에 의한 기종선정이 유효하지만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수요 측면의 내용도가 미한 리스+렌탈방식(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 경우 순수리스만으로 충분하지만(㉠), 지역특화에 필요한 농기계의 경우 유지관리 리스정도면 무난하다고 여겨진다. 운용리스를 도입할 경우 너무 많은 사후관리 업무로 인해 적기 지원이 어렵다는 임대사업 주체의 애로가 누증될 수 있다. 적기지원 미비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소형기계와 작업기는 순수리스가 바람직하며 특화기종은 유지관리리스정도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유한 농기계수리센터를 통한 우선적 사후관리를 없앨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소형농기계와 작업기라는 기종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단기리스(㉠)가 유용하다.

이 모델의 경우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중요하다. 지역농협의 기본적인 성격, 즉 더욱 많은 조합원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과 이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익실현의 애로가 줄기 때문에 지역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의 농기계은행사업에서 농기계임대부분을 위와 같은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한다면 하나의 농기계임대사업 모델로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수리 센터와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도 농기계은행사업과 농기계수리센터가 분리된 상태에서 경영되고 있다면 그 자체 대단히 큰 자원낭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모델 역시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임대료 산정기준과 방법의 정리가 필요하다. 소형농기계와 작업기의 공제가입은 해당 농협에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금 혹은 사업비의 확보 문제는 남아있다.

#### <모델 V: 농업기술센터중심 농기계임대사업>

주요 기준: 3(2) - C - 나. - ① - Ⅰ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혜를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농업소득을 증대하자는 경우(모델 IV)
---

모델 IV와 동일한 목적과 기준별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다. 즉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혜 대상은 “2.”, “3.”이 되고, 임대용 농기계는 다양한 소형농기계와 작업기(C)로 한다. 기중선정은 역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관과 관련자들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보고 하는 것이 무난하다(나.). 순수리스(①)가 바람직하며, 단기리스(Ⅰ)가 유용하다. 물론 일부 보유한 사후관리시설과 자원으로 운용리스와 같은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수익 실현의 압박이 지역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사후관리 시설과 인력이 있어 행정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여전히 임대 농기계의 산정기준과 방법의 조정, 소형 농기계와 작업기의 공제가입 문제는 남아 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 문제가 남아있다.

#### 다. 모델별 특징 비교

이상에서 제시한 5가지의 모델을 주요기준별, 성격으로 정리한 것이 아래

의 <표8-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5가지 모델을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 농업기계화의 궁극적인 목적과 함께 생각할 때 우선 모델Ⅰ에서 모델Ⅲ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투자재원이 충분할 경우에는 동시에 혹은 순차로 모델Ⅳ와 모델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델Ⅲ으로 이것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문제는 모델Ⅲ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제도의 뒷받침이 가능하겠느냐인데, 관련 정책 실무진과 연구진 그리고 관련조직 간에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8-3> 효율화 모델별 특징비교

구 분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모델Ⅳ	모델Ⅴ
주 체	지자체	지역농협	제3주체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목 적	적극적: 농기계이용비용 절감과 경영구조개선 유인			소극적: 단순 기계비용 절감	
대 상	공동조직내 기간농 지원			무차별 농민 지원	
대상 농기계	중·대형	지역특화 (중·대형)	지역특화+ 중·대형	소형기종,작업 기(지역특화)	소형기종,작업 기
기종확보	리스형식	렌탈형식	리스형식	리스+렌탈형 식	렌탈형식
리스형태	운영리스	운영리스	초기:순리스 장기:운영리스	순수+유지관 리리스	순수리스
리스기간	장기(1년)			단기	
기 금	적립가능	적립불능	적립가능	적립불능	적립가능

물론 모델Ⅲ의 모습을 독일의 WBL과 같이 정립할 수도 있다. 즉 제3의 주체는 일정한 운영비를 정부와 농협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조직을 운영하며 농기계 임차료에는 순전히 농기계 구입과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지 제3의 주체는 농가로부터 위임받아 농기계를 구입하고 소유하며 농기계를 일차로 구입하는 데 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의 사례에서 음미했듯이 국내·외적인 가격보조라는 지적을 면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모델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상당한 부분과 관련자(조직)들의 이해,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유용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 농업기계화 정책 가운데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정책, 그 가운데

농기계임대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검토하였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농촌 내에서 어떻게 하여 농기계 임대차를 활성화하여서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조직에 의한 농기계 임대차사업의 실태와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위사업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모델을 강구하기 위해 일본과 독일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중요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 절에서는 몇 가지의 도입이 가능하고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델을 만들었다. 나름대로 정책적인 선택에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 여긴다.

그러나 이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농기계에 관련된 사업들이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평가가 이루어지다보니 향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매우 협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기능적인 차원의 보다 큰 범위에서 사업이 검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농기계임대사업보다는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사업 전체를 본다든지, 나아가 수도작의 경영통합과 같은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 중고농기계, RPC와 경영통합 문제가 동시에 조망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한 결론을 맺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 부 록

### 제 1 장

#### 독일 MR과 WBL의 시사점

독일은 1950년대부터 농기계은행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농기계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이 농기계은행(MR)은 1970년대 일본에,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도입,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경영체가 주류인 우리농업에서 농기계이용비용을 줄이는 것은 농기계 이용 효율화정책의 기본 목적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농업에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작성된 것이다. 독일 현지출장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피면담자의 응답에 따라 현실과는 약간씩 다른 내용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 여긴다.

#### 1. 농기계조합(MR)의 의의

##### 가. 조직배경과 목적

1955년 2월에 만들어진 독일 농업법의 제정 배경은 과잉공급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독일 농업법이 지향한 목적은 농업생산성 증대와 환경보호, 농기계의 과잉투자 방지, 부족 농촌 노동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농업 구조조정 등이었다. 결국 농촌 노동력 유출에 대응하면서 과도한 농기계의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 바로 농기계은행이다.

농기계이용조합(Maschinenringe, 이하 MR)은 독일 농업기계화의 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농촌 현장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독



일 내 MR의 효시는 1958년 농업 저널리스트인 Geirsberger 박사에 의해 주창된 Bayern 주에서 시행한 MaschinerGemeinde(GmbH)이다. GmbH는 주내 영양·농업·임업성에서 Buchhofen 부락에 보조지원을 통해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원 농가 수는 14호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독일에서의 최초 기계은행인 것이다.

기계이용조합의 출발 배경이 된 독일 농업법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계은행을 지원, 조성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과도한 농기계의 투입을 방지하고, 나아가 EU 공동체내에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농업생산요소의 활용을 통해 농업 생산력 증진의 극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협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농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MR은 계속 확대 되었다. 1972년에는 13개국에 의해 국제 MR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명성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당시 충청남도에서 독일의 기계은행제도를 원용하여 농기계은행을 운영한 바가 있다. 1992년부터는 농협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물론 지금의 독일 MR과는 성격이 다르다.

## 나. 조직의 성격변화

조성 초기 농기계은행은 Maschinenbank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반은행의 경우 돈의 흐름 중간에서 은행이 여·수신 업무를 하듯이 농기계에 대해서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Bank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와 기계은행의 경우는 사업의 내용, 규제법률 등에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당연히 Bank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Maschinenringe이다.

각 주에서는 정책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기계은행을 조직하게 되었다. 조직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협동조합이었으며 Raiffeisen농협과 Schultze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농기계은행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미 농기계 자체가 과잉된 상태이다 보니 기계은행의 활성화는 기대난이었다.

1969년에는 (바이에른의 경우) 주내 영양·농업·임업성에서 농기계은행사업에 개입, 사업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정

부의 지원금을 받은 인력과 시설에 의해 농기계은행이 조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은 해에 새로운 독일 농업법이 제정되어 주 정부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독일 남부 Hessen 주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 주 정부에서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경영을 감독하고 있다. 일정한 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 2. Bundesverband der Maschinenringe

### (연방 MR 연합회)

#### 가. 조직

독일 내 농기계은행의 전국적인 조직을 살펴보면 먼저 연방연합회 1개가 있고, 산하에는 주(州) 단위의 10개 연합회가 있다. 그리고 주 연합회 산하에는 군(Kreis) 단위(이하)에 294개의 현지 사업조직(법인)이 농기계은행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내 농기계이용조합의 출발단위는 부락이었지만 점차 사업의 영역이 넓혀져서 이제는 주로 시·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MR의 연방연합회 조직을 살펴보면 연방연합회는 사단법인 형태의 연방연합회(BMR e.V.)와 자회사인 연방연합회 서비스회사(BMR-Service GmbH)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사업

연방연합회(BMR e.V.)의 사업으로는 MR에 관련된 각종 ① 책자와 홍보자료 같은 출판사업, ② 타 기관과의 협력하의 교육활동, ③ AGRITECHNICA 같은 전시회 공동주관 등을 들 수 있다.

자회사인 연방연합회 서비스회사(BMR-Service GmbH)의 사업은 주 단위 연합회나 주 단위 이하 MR과 달리 자체적으로 독립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독일농민들의 부업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① 기차역의 제설작업, ② 슈퍼마켓 등 대형매장의 제설 및 청소작업, ③ 폐지 등의 재활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 부분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할인판매사업으로 ① 전신전화국과의 협약 하에 휴대폰 할인 판매, ② 전력회사와의 협약 하에 전력

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공급, ③ 자동차회사와의 협약 하에 자동차 할인 판매 등을 하고 있다. 주 단위의 연합회에서도 단순히 농기계작업의 수·위탁 내지는 임대차의 알선만으로 수익실현이 어려워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공동구입사업으로 제조(퇴비 등)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대상을 비조합원까지 확대할 경우 세금 문제가 있어 별도의 자회사를 조직하고 있다.

#### 다. 실적

1990년도 기계조합은 전국에 280개이다. 회원으로 가입한 농업 경영체의 수는 15만 명에 이르렀다. 기계은행에 의해 이루어진 농작업 면적은 전국 농경지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9년에 이르러서는 기계은행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203,500 농업경영체로 증가하였다. 이는 독일 전체 경영체의 49.4%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이다. 여기에 전체 MR이 담당하고 있는 농업경지면적은 735만ha로 전체 경지의 53.2%에 해당한다. 농기계를 이용한 단위사업으로는 대단히 큰 것으로 판단되며 독일 농업기계화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전체 MR의 1999년도 총 사업액은 19억 1,600만 마르크에 이르고 있다.

### 3. LV Hessen

#### (Hessen 주 MR(WBL)연합회)

##### 가. 조직운영

###### <면담자>

Dr. Günther Lindenau

(Geschäftsführer, 베를린출신, 바에에른에서 박사학위)

독일내 주(land, 州)단위의 MR연합회는 총10개이며 LV Hessen은 10개 주 단위 연합회<sup>98)</sup> 가운데 하나이다. Hessen 주에는 30개 시·군있는데 25개 정

---

98) LV Baden Wurttemberg, LV Bayern, LV Hessen, LV Niedersachsen, LV

도가 농업 관련 주이다.

WBL(Wasser-, Boden- und Landschaftspflegeverband<sup>99)</sup>)과 MR업무를 병행, 상근자(Geschäftsführer)는 Lindenau 박사이며 2명의 비서가 각기 WBL과 MR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 연합회 MR과 WBL의 회장은 명예직이며 보수는 없다. 회장은 대개 하위 지역 MR과 WBL의 상근자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MR의 경우 의사결정 시 1인당 1표로 동등하지만 WBL의 경우는 WBL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큰 WBL의 경우 작은 WBL에 비해 투표권 수가 몇 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의사결정은 보통 거수로 하지만 필요시에는 비밀투표도 한다.

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단위 WBL이나 MR과 같은데 회비가 각출되어 사용된다. 회비의 기준은 농기계에 관련될 경우 연간 25센트/ha당이고 물과 관련될 경우 50센트/ha당이 된다. 농민들이 직접 연합회에 지불하게 된다.

MR과 WBL의 기능이 다르지만 견실한 경영을 위해 연합하는 것이다. 주 연합회에서는 농민과 단체를 위해 대외 로비를 하며 소규모 지역 단위 교육과 지원도 한다.

독일 내에서도 전문적으로 남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농업용역 회사인 Lohnunternehmen으로 Hessen 주에만 약 100~150개 정도라고 한다. 대개 가족 단위로 운영한다. 공공법인체는 아니며 영업허가를 받으면 경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 나. 시·군 단위 MR

MR은 사설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데 이 조직의 목적은 농기계이용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농기계은행에서는 농기계를 자체 보유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순전히 농기계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간의 농작업 중개만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농민들의 공동 구매업무, 농업 및 농외 소득 알선과 노동력제공의 알선 등 다양한 소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

---

Rheinland-Pfalz/Saarland, LV Sachsen, LV Sachsen-Anhalt, LV Schleswig-Holstein, LV Thüringen, LV Westfalen-Lippe

99) 물, 농지, 경관조성·관리 협의회 정도로 해석되는 공공법인으로 정부의 일정한 지원을 받고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오래된 농업 관련 조직이라고 보면 무난할 것임.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함.

다<sup>100</sup>). 이러한 과정에서 농협의 일과 중복되기도 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리 심하지는 않다고 한다.

Hessen 주에는 30개 시·군이 있는데 25개 정도가 농업 관련 주이다. 이 가운데 10개 시·군에 MR이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시·군 단위에 1개의 MR만 지원하고 있다. 전체 농민 가운데 MR과 WBL 회원은 약 45% 수준이며 약 11,000명에 이른다.

MR에는 회원(Mitglieder)들이 있는데 MR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비용(가입비, 연회비, 이용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된다. MR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상근 근무자로서 상무(Geschäftsführer)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사람에 의해 실질적으로 MR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시 연방 위원회에서 선발 혹은 인정하게 되며 MR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대개 처음 임용된 사람에게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도에 상근자가 교체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MR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주 정부에서는 한 MR에 연간 12,000유로를 운영비로 지불한다고 한다. 대신 최소 1명의 상근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단위의 지원도 있으나 MR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MR은 회원으로부터 회비와 사용료를 징수한다. MR 회원은 MR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연회비 16유로에 MR 이용 시 마다 이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용료는 농기계의 경우 대개 1% 정도, 농기계 이외에는 약 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MR이 운영되는 것이다.

MR의 운영실적은 매년 주 정부에 보고되고 있다. 그 결과는 특별한 규제는 없지만 MR에 관련한 심사위원회(농림부, 주연합회, 농민단체 등이 참여)에서 심의한다.

MR에서는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은 없으며,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농기계 소유자가 직접 작업을 대행할 경우는 이미 법에 의해 책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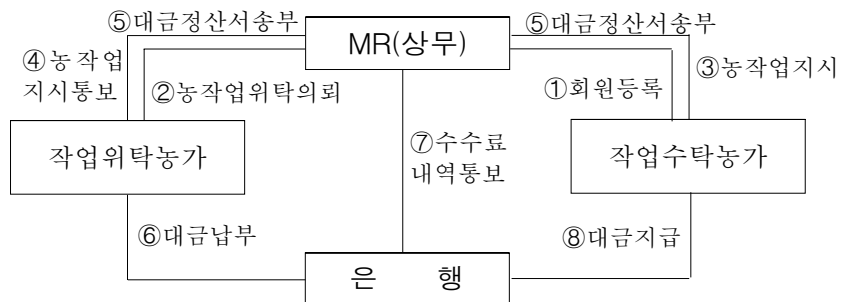
100) 예컨대 프레제나 기계이용조합(MR-Fresena e.V.)의 사업을 보면, 간병, 요양, 사고 때와 농번기 부업농민, 사회봉사인력 알선, 경관보전사업 등이 있으며, 슈발쯔발트-바르 기계이용조합(MA Schwarzwald-Baar)의 경우는 제설작업 및 운동장 정비, 콘테이너를 통한 농기계 운송, 농촌지역사업 및 농촌경관 유지, 유류(디젤) 판매 등의 농기계 이외의 사업이 있음.

과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한편 Hessen주에서는 주 단위 연합회에서 MR과 WBL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물론 시·군 단위의 경우에는 분리된 곳도 있고, 통합·관리하는 곳도 있다. 대체로 업무가 유사하고 통합의 실익이 많아 통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농기계 위탁작업의 중개를 기준한 MR의 운영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 <부록 그림 1-1>이다. 먼저 일정 작업과 내용을 의뢰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전임 상무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협의를 한다. 협의에 의해 작업의 일정이 확정되면 전임 상무는 위탁자와 수탁 작업자에 일정을 알린 후, 농작업 위탁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취된 수수료의 일부는 MR의 수입으로, 일부는 농작업료로 농작업 수행농가에 지불된다. 농기계은행의 사업목적이 공공성이 있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수지 균형의 원칙, 수익 제로의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업결산 시 이익이 발생하면 고유 사업의 확장과 보완에 일차 투입하고 일부는 전임상무와 MR 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불하기도 한다.

<부록 그림 1-1> 독일 농기계은행 운영체계



전반적으로 유휴 시간에 보유 농기계를 수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고가의 농기계를 여러 농민들이 사용할 경우 그만큼 이용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나아가 이러한 한 농기계의 다수이용을 통해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도 MR사업의 나름대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적기이용의 불안, 원거리 작업 시 이용료 차등과 작업자 기피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문

제를 보다 완화하는 것이 어찌면 아래에서 정리할 WBL에 의한 농기계이용이다.

#### 4. WBL(물, 농지, 경관관리 연합회)

##### 가. 일반 개요

WBL은 정부의 업무를 법에 의해 위임받아 수행하며, 주(land)와 시군(kreis)의 지원을 받는다.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법인인데 WBL의 역사는 1938년 법률적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WBL의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은 훨씬 전인 약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물 문제가 독일 농업에 중요하다 보니 물의 개발과 관리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온 것이다. 현재는 공공법인으로 법에 근거한 조직이다. 그리고 현재 Hessen 주 WBL에서 농기계 임대차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30여년 전 부터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중요한 업무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은 Hessen 주에서가 처음이며 역사가 30년 되었다는 것이다. Hessen 주의 법에 의해 독일내 Hessen주 만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WBL에서 농기계임대차를 주선, 관리하는 목적은 MR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이용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WBL에서의 농기계 구입과 이용에 대해 살펴보자. 일정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 몇 명이 농기계 구입의사를 WBL에 제시하면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필요한 구입비용과 임차인들이 매년 지불해야한 임차료를 산정하여 최종 해당 농기계 구입의사를 확인한다. 대상 농기계에 일정한 제한은 없다. 다만 1960년대에는 수리용 농기계가, 1970년대 이후에는 일반 농사용 농기계가 대부분이다. 매년의 임차료는 면적 기준으로 산출하며, 매년의 감가상각비에 유류대, 수리비 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태어서 만든다. 그런 다음 WBL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농기계를 구입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농기계 내용년수 동안에 일부 농민이 당초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농민 역시 농기계 구입 시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운용자금은 지역신용대부라 해서 이자가 싼 자금이다.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채

권이 확실하여 금융기관도 선호하고 있다. 구입한 농기계의 소유권은 WBL이 갖고 해당 농기계구입 시 임차인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 농기계를 이용토록 한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WBL에서 회수, 정비하여 재임대하거나 보관한다. 물론 이용과 보관 과정에서 공동 이용하겠다고 계약한 수명 가운데 대표자를 뽑아 일차적인 관리책임을 지우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한다.

WBL을 통해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들은 WBL에서 지급보증으로 통해 농기계를 사고 매년 일정한 사용료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과 이용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임차 농기계는 직접 임차인이 운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BL의 직원이 운전해 주기도 한다. 이 경우 농민은 작업시간당 인건비를 지불해야한다.

WBL 역시 정부로부터 연간 12,000유로의 지원을 받고 있다. MR과 마찬가지로 최소 1명의 상근 관리자인 상무를 두는 조건이다. 시·단위의 지원도 있으나 WBL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WBL의 회원은 WBL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데, 대개 1ha 당 연간 1~1.5유로를 납부한다. WBL에 따라 전체적인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두기도 한다. WBL의 규모에 따라 예산의 규모도 차이가 난다.

WBL의 운영실적도 MR과 마찬가지로 매년 주 정부에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농림부, 주연합회, 농민단체 등이 참여)에서 대표자도 뽑는다. 상근 상무를 공개 모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처음 임용된 사람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MR과 마찬가지로 중도에 상무가 교체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처음 WBL을 만들 때의 인정 여부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WBL 농기계는 법에 의해 책임보험과 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시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한다.

현재 Hessen 주 30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만 WBL이 조직되어 있다. 이 시·군 단위 WBL조직의 규모는 1만에서 2만 ha까지 다양하다. 총 14개 WBL 가운데 2개 군에는 하위에 소규모 WBL이 30개 정도 있는데 이 소조직의 대표자는 명예직이며 보수도 받지 않는다. 소규모 WBL의 규모는 천차만별인데 적게는 20호, 50ha에서 크게는 1,500ha 까지 있다.



## 나. Wasser- und Bodenverband

(시·군단위 조직으로 WBL업무만을 관장)

### <면담자>

Karl-Heinz Dickhaut(상근자 겸 Hessen 주 연합회 회장 10년 연임중)

Karl Heinzweber(축산농가로 WBL 회원)

이 조직은 현재의 상근자인 Dickhaut씨가 30년 전에(올해 30주년) 만든 것이다. 760명의 회원과 25,000ha의 경영면적을 가진 Hessen 주의 대표적인 대규모 WBL이다. 회원 면적의 범위는 동서로 90km, 남북으로 45km에 걸쳐 있다고 한다. 현재 220대의 대형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소형기계들은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보유 농기계마다 1명씩의 중간관리자를 지정하여 농기계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를 하면서 기존의 농기계소유자와 농기계이용희망자간의 조직화도 꾀하고 있다.

Dickhaut씨가 이 조직을 만든 배경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농가 호당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가의 농기계를 협동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곡물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농기계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 WBL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민들의 살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WBL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창고와 수리, 정비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정비와 보관시설만 해도 200평이 넘고 있었다. 대형 세차시설까지 확보한 정비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상근자 이외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기계의 운전, 보관과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조직에서는 농기계 이용 시 문제를 3시간 이내에 해결한다는 운영모토 아래 농기계 임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농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한다. Hessen주내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고, Hessen주 연합회회장직을 10년간 장기간 맡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 역시 농가의 농기계 사용료, 임차료는 감가상각액, 수리비, 연료비 등의 고려해서 결정한다.

조직의 생존은 역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는 데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한다. 축산농민인 Heinzweber씨(면담 중 만난 회원)는 WBL 없이는 이제 농사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농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과 법인에 의한 농업용역회사인 Lohnunternehmen 의 횡포가 있기 때문에 WBL의 위상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 다. Wasser- und Bodenverband Vogelsberg

(시·군단위 조직으로 MR가 WBL업무를 동시에 관장)

##### <면담자>

Dr. Birgit Richtberg(상근 상무, 괴팅겐 대학 농촌사회학박사)

A. Schumit(MR 회장)

Karl Dörr(Informal Coop 대표자겸 WBL 회원)

이 조직의 회원 수는 MR이 290명 WBL이 2,900명인데, WBL 2,900명(조직) 가운데 농기계임대와 관련된 회원은 1,200명(조직)이다. WBL내에서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에 관련된 Überbetriebliche Maschinenverwendung(ÜMV)의 회원 수가 1,200명(조직)이라는 것이다.

조직의 운영은 Richtberg씨가 상근하면서 2명의 비서를 고용하여 MR과 WBL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 연간 12,000유로의 주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원규모의 축소논란이 있다고 한다. MR회비는 개인별로 연간 16유로이다. WBL의 회비는 ha당 1.5유로이며 최소 50유로에서 최대 150유로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두 조직에 가입하면 역시 두 군데에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이 조직 내에서는 MR의 사업으로 주변 농업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활용하여 화훼용 퇴비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원 이외의 사람들에

게 판매하면서 관할 세무서의 세금부과 문제가 대두하였다. 결국 이 조직에서는 이러한 비회원에 대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었다. 물론 자체제조되비를 회원에 공급할 때에는 면세이다. Bio-Diesel도 취급하고 있었다.

상무 Richtberg씨에 의하면 역시 이 조직이 성패는 결국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농가의 은퇴와 노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농가경제의 상황을 보면 농민 단독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혼자 구입, 활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같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일정한 추세로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Schumit는 짓소를 사육하는 데 자신의 아들이 대학교에서 농업경제를 전공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친구 1명과 같이 약 50만 유로정도 투자하여 최신시설을 갖췄는데 친구가 전체 투자의 1/3을, 자신이 2/3를 부담하였다고 한다. 전체비용의 30%는 EU와 주정부로부터 Rural Development Program에 의해 보조(subsidy)를 받았고, 40%는 은행으로부터 10년 연 5.5%의 장기대출을, 나머지 30%는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한다. 합자를 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의 규모가 혼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이며,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한 점도 있다고 한다. WBL을 통해 농기계와 시설을 구입하려했는데 불합격했다고 한다. 나름대로의 경쟁과 갈등이 WBL과 회원, 회원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Dörr씨는 자신이 스스로 법에 의해 등록된 조직은 아니지만 공동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공동조직을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 힘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활용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회원은 50명이며 경영면적은 3,400ha 정도이다. 1,200ha에는 옥수수, 나머지 2,000ha는 초지이다. 축산을 위한 것인데 농가 호당 사육두수는 50~60마리 정도라고 한다. 1972년부터 조직이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축산 관련시설은 역시 Schumit와 같이 전체비용의 30%는 EU와 주정부로부터 Rural Development Program에 의해 보조를 받았고, 40%는 은행으

로부터 10년 연 5.5%의 장기대출을, 나머지 30%는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BL에 가입한 것은 자신들의 조직으로 하기 힘든 농기계임대랄지 작업알선 등을 이 조직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농가인구가 줄고 있지만, WBL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 라. 시·군단위 하위조직: 마을단위 WBL조직

### <면담자>

Hans Lenhaidt(마을 단위 조직 대표자)

동행: Dr. Günther Lindenau (연합회 Geschäftsführer)

Hans Lenhaidt씨는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농부이며 이 조직을 대표한다. 이 지역은 도시 근교농업으로 채소를 주로 생산한다. 유리온실도 있다. 회원 수는 500명이며 30개 마을 단위 WBL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조직의 관할 면적은 약 1,200ha이다. 그리고 1960년 이래 65Km의 용수로를 개발했고, 1,100여 개의 관정과 23개의 지하용수 저장고를 갖고 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의 30~50%는 정부에서 보조 지원한 것이며 나머지는 사업참여 농가들이 부담하였다. 관련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투자비 배분은 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사용료는 사용한 물에 대해 15센트/m<sup>3</sup>를 부과, WBL에서 징수한다.

이 조직에서는 농업용수에 관한 것만 취급하며, 이 지역 즉 남부 Hessen의 농기계에 관한 것은 남부 연합회(주 연합회 하위조직)인 MBL<sup>101</sup>)에서 취급한다.

독일 남부 Hessen 주에서의 농업용수 문제는 과거 100여년 이상의 역사적인 문제였으며 1960년 이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면서 공동개발과 이용이

---

101) 다음 절에서 설명하게 될 MBLV(Maschinen-, und Landschaftspflegeverband Südhessen, Agrar-und Umweltservice (남부 Hessen주 공공법인)에서 취급함.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하용수의 개발과 분배, 사용 등을 개별농민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 개발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업무를 지금의 마을 단위 WBL에서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조직의 성패는 농민들이 얼마나 단결되어 공동으로 물을 개발, 관리, 이용하느냐인데, 업무와 필요한 시설기자재, 자금규모 등의 면에서 볼 때, 개별 농가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는 희망적이라 한다.

이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연합회 WBL과 달리 1인 1표로 평등하다

#### **마. MBLV(Maschinen-, und Landschaftspflegeverband Su"dhessen, Agrar-und Umweltservice (남부 Hessen주 공공법인)**

##### **<면담자>**

**Reiner Haas(남부 Hessen주 MBLV의 Geschäftsführer)**

**동행: Dr. Günther Lindenau (연합회 Geschäftsführer)**

Reiner Haas씨는 이 조직의 대표자이다. 이 조직은 남부 헤센주 마을 단위 30개 WBL(앞의 Hans Lenhaidt가 대표로 있는 마을 단위 조직)의 연합회로 하위 WBL에서는 농업용수에 관련된 업무를 하며 이 조직은 30개 WBL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만을 취급한다. MR의 형식을 취하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WBL의 형식을 빌어 법인을 조직하다 보니 이름이 남부 Hessen WBL 연합회가 아니고 맨 앞에 물(Wasser)대신 농기계(Maschinen)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부 Hessen 주에서는 채소작목과 사탕무가 많아 여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조직은 대표자 이외에 2명의 비서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개별 농기계는 하위 WBL의 대표자들이 전담한다고 한다. 하위 30개 WBL에 일반인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총 48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한다. 연회비는 1인당 100유로이며 가입비가 200유로라 한다. 보유 농기계는 농민들 가운데 운전조작의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작업 시

순수 인건비는 시간당 13유로(수확기 기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면담 후 사탕무를 수확, 운반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곳 농민들의 MBLV 회원들의 반응은 앞에서 각 단위 조직 상무들의 이야기와 같았다. 갈수록 이러한 조직에 의한 농기계와 시설의 공동 이용만이 그나마 농업을 유지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 5. 시사점

당초 독일의 MR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볼 계획이었으나 우리 실정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여기는 WBL을 통해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느낌을 받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1**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이라는 사업목적 아래 우리는 농기계 가격에 직접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은 일정한 사업(농기계 임대, 알선 이외의 공공사업도 포함)을 민간에 위임하고, 농기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농기계 가격에 직접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제의 대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들은 정부의 다른 여러 공공사업과 함께 일정한 조직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격보조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동일한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것이다.

**2** 당초 농협의 조직을 민간조직으로 분리해서 MR을 운영하고 있고, WBL 역시 사업영역은 공공적인 것이 많지만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을 피하는 좋은 발상이라 생각한다. 전체적인 사업 운영규모와 관계없이 정부는 일정 규모의 예산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심의해서 문제시에는 지

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근 상무를 포함한 직원들은 기본적인 경영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혹 경영의 방향이 지나친 수익의 확보 방향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서 사업수익 제로라는 경영모토를 제시하고 있고, 일부 수익이 남아도 자체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직과 농협에서 임대사업의 전담하고 있는 데, 장기적인 면에서 독일의 경우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3** MR의 경우 순수 농작업의 알선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다른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연 순수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의 사업은 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농협의 MR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단순 농작업의 알선으로는 MR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며 농가의 호응도 작을 것이라는 점이다. MR조직을 위해 그리고 다수 농민들의 공동 구·판매사업이랄지 소득사업의 소개 등과 같은 사업을 도입해야 할지, 아니면 조직의 사양화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시기이다. 분명한 것은 MR의 공동구·판매사업은 기존 농협사업과 경쟁관계에 설 것이다.

**4** 비록 Hessen주의 독특한 사업이지만 WBL에서의 농기계 공동구입, 임대사업은 성공적이다. MR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고, 비록 농기계는 WBL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매년 비용은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소유의식이 있고, 자신의 농기계이다 보니 이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여기에 일부 농기계 조작이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서는 WBL직원들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은 것이다. 회원 농민들의 반응을 볼 때 MR은 사양, WBL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서 생소한 조직과 활용이지만 적어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농업에서도 WBL조직과 같은 조직은 검토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 부 록

### 제 2 장

#### 일본 농기계 리스 관련규정

##### 1. 농업경영 종합대책 실시요령

13경 영 제 6627 호 2002년 3월 29일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통지
--

##### 제1 취 지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민에게 식료의 안정공급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과, 지역사회의 활력유지, 국토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의 다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제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윤택하고 여유 있는 국민생활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근년의 농업을 둘러싼 정세를 보면,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겸업화의 진행과 이에 따른 농업 담당자의 감소, 유희지 증가 등의 문제가 현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 법률 제 106호. 이하 「기본법」이라 함.) 및 동법에 근거해 책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0년 3월 24일 각의결정.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의거, 경영각각이 뛰어난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이들의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경영에 관련하는 시책에 대해 관련제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의 효율화나 고부가가치화 등을 향한 지역농업자의 창의성을 살린 주



체적인 조직체를 육성하고, 인정 농업자(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1980년 법률 제65호. 이하 「기반강화법」이라함) 제12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를 중심으로 한 담당자의 육성, 담당자로의 농지이용집적, 농업생산법인 및 기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함.)의 육성을 비롯해, 신규취농자의 육성 및 확보, 경영구조대책, 여성고령자대책 등을 종합적이며 일체적인 사업실시방침 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제2 목 표

본 대책은 제1의 취지를 근거로 경영대책체제정비촉진사업 실시요령(2000년 4월 1일 기입 12구개B제166호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통지. 이하 「체제정비사업실시요령」이라 함.) 제3의 2규정에 의거해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작성하는 지역농업 마스터플랜(이하 「지역농업 마스터플랜」이라함.) 달성을 위해, 각종사업을 종합적이며 일체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농업의 담당자가 될 농업경영의 육성 및 확보 등을 꾀하고, 「효율적인 동시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지역의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를 확립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 제3 대책실시

### 1. 대책의 실시방침

- (1) 본 대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농업 마스터 플랜 달성을 위해서, 2의 (1) 및 (2)에 규정된 사업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과 함께 각종관련 대책과의 연계를 꾀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2) 본 대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사업종류, 내용 등에 의거해서 농산촌 남녀 공동참여 추진(1999년11월1일 농산 제6825호 농림수산성 경제국장, 통계정보부장, 구조개선국장, 농산원예국장, 축산국장, 식품유통국장,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장, 식량청장관, 임야청장관, 수산청장관통지)을 근거로 남녀공동 참여의 촉진을 위해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실시를 배려하는 것이다.

## 2. 대책의 내용

본 대책은 다음 2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실시주체, 채택기준, 실시기간 및 보조율은 별표(도도부현 단계 사업), 별표2(시정촌 단계 사업), 별표3(농업단체 등 사업) 및 별표4(농업경영 종합대책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 (1) 농업경영 종합대책 추진사업

농업경영 종합대책 추진사업(이하<추진사업>이라 한다)은 지역전체가 협력하여 인정 농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담당자의 육성, 농업법인의 경영발전, 신규 취농자의 육성 및 확보 등을 꾀하기 때문에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a. 담당자 확보·지원체제 정비대책사업
- b. 법인화 지원 대책사업
- c. 경영구조개선 지원 대책사업

이 사업은 농업생산을 핵으로 한 고부가가치 농업의 전개, 농용지 이용집적, 집단화 및 집락영농의 새로운 확립, 효율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d. 여성·고령자 대책사업
- e. 농업경영 종합대책사업

### (2) 농업경영 종합대책사업

## 3. 대책의 대상지역

(1) 본대책의 대상지역은, 마스터 플랜이 작성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을 구역으로 한다.

단, 추진사업에 있어서 농업관련단체 및 기관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별표2의 경영구조대책 추진사업 및 대책사업의 대상지역은, (1)에서 제시한 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58호. 이하<농진법>이라 한다)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된 농업진흥지역(이것과 일체적인 지역을 포함)으로 한다.

#### 4. 사업계획의 작성 등

##### (1) 추진사업

본 사업의 실시주체는, 매년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제시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아래에 제시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a. 도도후현이 사업실시 주체인 경우
- b. 도도부현 농업관련 단체 및 기관이 사업실시 주체인 경우
- c. 시정촌이 사업실시 주체인 경우
- d. 농업협동조합 등이 사업실시 주체인 경우
  - (a) 전국 농업관련 단체 및 기관장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경영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b) 전국 농업관련 단체 및 기관장은 별표3의 경영구조대책 추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a)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 경영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 (2) 대책사업

(생략)

##### (3)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서 경영국장이 별도로 정한 주요 내용을 변경 할 경우, 사전에 지역농업 마스터플랜과의 조정을 해야 하며, (1) 및 (2)에서 제시한 절차에 준해서 행한다.

#### 5. 사업실적 등의 보고

##### (1) 추진사업

본 사업의 사업실시 주체는,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제시된 사업에 대해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a. 도도부현이 사업실시 주체인 경우
- b. 도도부현 농업관련 단체 및 기관이 사업실시 주체인 경우
- c. 시정촌이 사업실시 주체인 인 경우
- d. 농업협동조합 등이 사업실시 주체인 경우
- e. 전국 농업관련단체 및 기관이 사업실시 주체인 경우

전국농업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는 매년 별표 3에 제시된 사업별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2) 대책사업

(생략)

## 제4 다른 시책과의 관련 등

(생략)

## 제5 지도추진체제 등

지역의 실정에 의거 본 대책의 원활·적정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의 체제를 정비하고 조직적인 지도추진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도부현 단계의 지도추진체제

도도부현 지사는 본 대책을 지역의 실정에 의거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면서 원활·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도부현의 관련부처와 연대를 도모함과 함께, 농업관계사무소, 지역 농업개량보급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대에 의해 지도추진체제의 정비를 꾀하고, 체제정비사업실시요령 제3의 1에 의거한 도도부현의 경영·생산대책추진회의(이하<도도부현추진회의>라고 함) 아래에서 본 대책의 실시에 대해서 지도추진을 행해야 한다.

### 2. 시정촌단계의 지도추진체제

시정촌장은 본 대책을 다른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면서 원활·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위원회, 지역 농업개량보급센터, 농업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대를 꾀하고, 지역에 있어서 농업자 등의 자주성 및 창의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체제정비사업 실시요령 제3의 1에 준해서 시정촌의 경영·생산대책 추진회의(이하 <시정촌 추진회의>라 함)아래에서 본 대책의 실시에 대해 지도추진을 행해야 한다.

### 3. 농업단체 등의 지도추진체제

농업단체 등은 중앙 및 지방을 통해서 상호 연락협조를 꾀하면서, 관련 행정기관의 지도 하에 본 대책의 추진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 4. 국가의 지도원조

국가는 지역의 실정에 맞고 농업자 등의 자주성 및 창의성을 살린 본 대책의 원활·적정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및 오키나와종합사무국과 상호연락조정을 긴밀하게 하고, 지도추진체제를 정비하면서 관계당국 등이 일체가 되어 본 대책의 실시에 대해 지도 원조를 행한다.

#### 제6 사업의 평가

(생략)

#### 제7 효율적인 동시에 적절한 집행의 확보

(생략)

#### 제8 종합보조사업에 있어서 유의사항

(생략)

#### 제9 국가의 조성조치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책의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대책사업(제3의 2의(2)의 d의 농업연수교육시설정비사업을 제외한다)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자금 및 공업근대화자금)의 융통이 가능하다.

#### 제10 위임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외에 본 대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에 의한다.

#### 부칙

1. 다음에 제시된 요망 및 요령은 폐지한다.

(1) (생략), (2) (생략)

(3) 인정 농업자 지원긴급리스사업 실시요망의 제정에 대해서 (1999년4월1일자 제215호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통지)

(4) ~ (16) 생략

2. 1의 규정에 의해 폐지된 요망 및 요령에 의거, 2001년까지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의해 취급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3. (생략), 4. (생략), 5. (생략)

## 2. 농업경영 종합대책 추진사업의 실시에 대해서

13경 영 제 7014호 2002년 3월 29일 농림수산성 경영국장 통지
--

### 제1 농업경영 종합대책 추진사업 공통사항 관계

농업경영 종합대책 실시요령(2002년 3월 29일자 13경영 제6627호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 통지. 이하 <요령>이라 함)제3의 4 및 5의 규정에 관계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해서는, 제2에서 제시한 사업별로 별기 1부터 별기 8까지에서 정한 기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제2 각 사업별 사항

1. 생략

2. 생략

3. 경영구조개선 지원 대책사업

(1) 생략

(2)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별기8

(3)~(9) 생략

4. 생략

5. 생략

부칙

1. 다음에 제시한 각 통지는 폐지한다.
  - (1) 생략
  - (2) 생략
  - (3) 인정 농업자 지원 긴급리스사업 실시요령의 제정에 대해서(1999년 4월 1일자 11구조 제216호 구조개선국장 통지)
  - (4)~(10) 생략
2. 1의 규정에 의해 폐지된 각 통지에 의거, 2001년도까지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생략
4. 생략
5. 생략

#### 별기8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관계

##### 제1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

###### 1. 리스조성의 대상자

###### (1) 인정 농업자 지원형

요령 별표 3의 3의 (2)의 1경우(이하 별기 8에 있어서 <인정 농업자 지원형>이라고 한다)의 사업대상이 되는 자는 인정 농업자(농업경영 기반강화 촉진법(1980년 법률 제65호, 이하의 별기 8에 있어서 <기반강화법>이라 함)제12조1항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의 별기 8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한다.

###### (2)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요령 별표 3의 3의 (2)의 2경우(이하의 별기 8에 있어서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이라 함)의 사업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의 a~c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a. 특정농업법인(기반강화법 제23조 제4항의 특정농업법인을 말함)
- b. 시정촌 또는 지역 농업자의 신청에 응해서 지역의 농용지의 이용을 일정 이상으로 집적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인정농업자로, 다음

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촌과 지역공헌계획(지역공헌을 행하기 위해서 시정촌과 공동해서 책정하는 계획을 말함. 이하 이 별기 8과 동일)을 정하고 지역공헌에 관한 계약(별기 8에 있어서 <지역공헌계획>이라 함)을 맺은 자(농지집적유형).

(a) 농용지의 이용집적의 목표면적(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

개별경영 : 신규로 4.5ha이상의 농용지의 면적집적

농업법인 : 신규로 10ha이상인 농용지의 면적집적

(면적집적에는 기간농작업의 위탁면적 포함, 초기 년도에 1/2 이상의 면적집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정)

(b) 농용지의 이용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지역내의 농용지를 소유한 농업자가 해당 농용지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정농업자의 해당 농용지 이용집적 확실성(관계자에 의한 동의 예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이용집적의 추진방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지속적인 이용권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인정농업자의 이용권 설정 등의 신청에 응해서, 지속적·안정적인 이용권의 설정 등이 가능한 것(이용권의 설정기간의 종료 후에도 계속 이용권이 설정될 예정을 포함) 및 해당 이용권의 설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지역 내에 있어서 공동작업 등에 관한 사항

이용권의 설정 등에 상반하지 않으나 필요한 수로, 농로·관리 등 지역의 공동작업에 대해서 지역 내 관계자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c. 자체의 재배 노하우를 지역농가에의 보급 및 가공판매 등 지역농업의 핵이 되어서 활동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농업법인인 인정농업자로 다음의 (a) 및 (b)항에 대해 시정촌과 공동으로 지역공헌계획을 정하고, 지역공헌 계약을 맺은 자(지역적 조직유형)



(a) 지역 내 농산물판로확대 계획

아래 사항에 대해 지역공헌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하고 계획을 작성한다.

- 직매소의 개설, 그 지방 상점가와 제휴한 아침시장 개설 등의 계획
- 소비자에게 직판, 외식산업 등과의 거래계획

(b) 고용계획

아래 사항에 대해 지역에서의 고용확보, 특산농산물 등의 개발관점에서 계획을 작성한다.

- 지역의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고용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연간 고용계획(상근 고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역 내의 인정 농업자를 지향하는 자의 연수계획
- 지역 내의 농가로부터 농산물거래계획(대상 농산물은 지역 내 생산물의 절반이상을 거래하는 것으로 한다)

2. 리스료 조성액

요령 별표3의 3의 (2)의 리스료 조성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인정 농업자 지원형

인정 농업자 지원형의 리스료 조성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단, 리스 조성액은 250만엔을 상한으로 한다.

또한, 해당년도에 있어서 예상되는 리스료 조성액의 합계액이 해당년도에 적립되는 액수를 넘는 경우에는 리스료 조성액을 감액할 수 있다.

$$\langle \text{리스료 조성액} \rangle = \langle \text{리스료} \rangle * \langle \text{조성계수} \rangle$$

- a. <리스료>란 리스기간중의 리스요금(세금포함)의 총액이다
- b. <조성계수>란 별기8 별표와 같다

(2)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의 리스료 조성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출식에 의한다.

$$\langle \text{리스료 조성액} \rangle = \langle \text{리스료} \rangle * 1/4$$

a <리스료>란 리스기간중의 리스요금(세금포함)의 총액이다.

### 3 적립금의 관리

요령 별표3의 3의 (2)의 적립금 관리는 다음과 같다.

- (1)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적립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 (2)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매년 적립금을 통해 리스조성에 충당한다.
- (3)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적립금 계산과 다른 계산을 구분해서 경리한다.
- (4)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적립금 운영에 의해서 발생한 수입은 적립금에 이월한다.
- (5)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본 사업을 행하지 않아 적립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4 기타

#### (1) 지역 공헌농업자 지원형의 조성지구 결정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도도부현에서 신청이 있었던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의 조성 대상지구를 국가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해당 도도부현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촌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2) 지역공헌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제3의 3의 (4)의 지역공헌계약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와 관련 동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령 별표3의 3의 (2)의 채택요건란에 제시된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정하는 업무규정(이하 이 별기 8에 있어서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한다.

#### (3)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기획담당자회의

전국농업협회조합연합회는 도도부현, 시정촌 등의 사업담당자를 참여케 하여, 지역공헌계획 실시지도의 본연의 자세, 선진적 사례의 발표 등, 지역 공헌농업자 지원 특별형의 추진지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기획담당자회의를 개최한다.

(4)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정하는 업무규정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경영국장에게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 도도부현의 추진 지도체제 등

요령 별표1의 3의 (2)의 추진지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꾀하기 위해 국가와의 연락조정 및 시정촌의 사업실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프로젝트팀의 설치

도도부현은 본 사업의 신청지구 심사를 행하기 위해서 도도부현 경영·생산대책 추진회의(경영대책 체제정비 추진사업 실시요령(2000년 4월 1일자 12 구조 B 제167호 경제국장, 구조개선국장, 농산원예국장 및 축산국장통지(이하의 별기 8에 있어서 <체제정비사업실시요령>이라 함))제1의 1의 도도부현 경영·생산대책추진회의를 말함)에서 도도부현, 도부현 농업회의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프로젝트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지역공헌 지원 특별형 심사회의 개최

도도부현은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프로젝트팀의 구성원을 소집하여 사업의 채택을 희망하는 시정촌에서 제출된 지구채택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에 첨부된 지역공헌계획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및 지방농정국장(이하 이 별기 8에 있어 <지방농정국장>이라 함))에게 지구채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농업의 유지·발전에 대해서 지역공헌계획 내용이 부합되며, 지역 공헌농업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실시요령 별표2의 2의(10의 지역농업구조개혁계획(이하 이 별기 8에 있어서 <구조개혁계획>이라 함)에 있어서 지역공헌 농업자가 지역의 농업경영을 맡고 있는 경영체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그 내용

(3) 특히, 복수의 지구채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가 맡는 역할의 공익성 정도에 대해서 이하의 점에 유의해서 심사를 실시한다.

- a. 제1의 1의 (2)의 b의 사람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하 이 별기 8에 있어서 <농지집적유형>이라 함)에 대해서는 집적예정농용지가 집락의 농용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집적 대상이 되는 농용지소유자가 집락의 농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b. 제1의 1의 (2)의 c의 사람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하 이 별기 8에 있어서 <지역적 조직유형>이라 함)에 대해서는 고용계획 또는 지역의 농산물거래 계획의 지역취업상황의 개선 또는 지역 농업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c. 특정농업법인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법인의 집적예정농용지가 지역의 농용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이용집적면적

(4) 지역공헌계획의 실현에 대해서 신청 시정촌이 충분한 지도체제를 취하고 있는가

### 3.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실시지구의 지도

도도부현은 사업실시지구의 상황 파악을 행하고, 필요에 의해 현지도도를 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 시정촌의 추진지도

실시요령 별기 2의 3의 (2)의 추진지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의 연락조정 및 사업실시상황 파악에 힘쓰고 동시에, 인정농업자지원형 및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프로젝트팀의 설치

시정촌은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촌 경영·생산대책추진회의(체제정비사업 실시요령 제1의 2의 시정촌 경영·생산대책 추진회의를 말함)에서 시정촌, 농업위원회, 도도부현 사무소, 지역 농업개량센터 등의

관계직원, 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추진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추진지도체제의 정비를 꾀한다.

## 2. 인정 농업자 지원의 추진 지도체제

### (1)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검토회의 개최

시정촌은 필요에 따라 농업경영전개지원 리스사업 추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본 사업의 활용대책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2) 인정농업자지원형 리스사업 심사회의 개최

시정촌은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추진 프로젝트팀의 구성원을 소집, 리스요금 조성의 적부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심사를 행하고,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작성하는 업무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a. 빌린 기계 및 시설이 인정농업자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다.

b. 리스료 지불이 확실하다고 예상 되는가

(3) 시정촌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연대하여 추진하며, 리스물건의 확인을 행한다.

(4) 시정촌은 본 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인정 농업자를 대상으로 리스사업계몽보급 회의를 개최한다.

## 3.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추진지도체제

### (1)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실시지구의 추진지도 등

a. 시정촌은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도도부현에 지구채택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지역공헌계획을 작성한 시정촌은 이것을 해당 신청서에 첨부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한다.

b. 시정촌은 지역공헌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농업 유지발전에 대해서, 제1의 1의 (2)의 a에서 c까지에서 내세우는 자 (이하 이 별기 8에 있어서 <지역공헌 농업자>라 함)가 충분한 역할을 다하는 계획이 되도록 유의한다.

c. 시정촌은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사업을 도입하는 경우에

는 지역공헌농업자의 지역공헌활동의 지도, 지역공헌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농용지의 이용집적이나 고용계획의 정비 및 지역공헌 계획 실시의 감독 등, 사업의 원활한 실시에 책임을 가지고 대응한다.

d. 시정촌은 지역공헌 농업자가 본 사업에 의해 기계 및 시설을 도입할 경우 본 사업에서 정하는 조성조치와 같은 조성을 행한다.

(2)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심사회의 개최

시정촌은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개최 프로젝트팀의 구성원을 소집하고, 리스요금 조성의 적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를 행한다.

a. 빌린 기계 및 시설이 지역공헌 계획체에 비추어서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이라고 인정되어질 것

(3) 시정촌은 리스료 조성을 받는 것이 확정된 후,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작성하는 업무규정에 따라 지역공헌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청한다.

(4) 시정촌은 리스료 조성기간 종료에 즈음해서 신속하게 (리스료 조성기간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지역공헌계약 이행상황에 대해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보고한다.

(5) 시정촌은 지역공헌계획의 불이행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취지를 보고한다.

(6) 시정촌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제휴를 피하면서, 리스물건의 확인을 행한다.

제4 기타

1. 도도부현은 지역공헌농업자의 지구채택신청을 해당연도의 7월15일까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지방 농정국에 제출한다.
2. 실시요령 제2의 4 및 5에서 정한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양식은 별기8 양식에 의한다.
3. 도도부현이 행한 제2의 2 및 시정촌이 행한 제3의 3의 (1)의 a의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지구채택서는 별기 8별지 양식에 의한다.

4. 사업실적 보고는 해당년도의 익년도 4월말까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국장 앞, 도도부현은 시정촌의 사업실적을 정리한 후 지방농정국장 앞으로 제출한다.

별기8별표 리스조성 계수표 (생략)

### 3.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업무규정

농업경영 종합대책 실시요령(2001년 3월 29일자 13 경영 제6627호 농림수산사무차관의 명 통지)별표3의 3의 (2) 및 <농업경영 종합대책 추진사업의 실시에 대해서> (2001년 3월 29일자 13 경영 제7014호 농림수산성 경영국장 통지) 별기8(이하<사업실시통지>라 함)의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의 실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제1 사업의 내용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전농>이라 함)는 제2에서 정한 차수자(차입자)가 제3에서 정한 리스회사들에게 제4에서 정한 사업대상기계·시설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제5에서 정한 리스료 조성기간 및 제6에서 정한 리스료 조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때에, 해당 리스계약에 관계된 리스료의 일부에 대해서 조성을 행한다.

#### 제2 차수자(차입자)

본 사업이 대상이 되는 리스의 차수자(차입자)는 사업실시통지 제1의 1의 (1)의 인정 농업자 지원형 사업의 인정 농업자 및 사업실시통지 제1의 1의 (2)의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사업의 지역공헌농업자로 한다.

#### 제3 리스회사

##### 1. 리스계약

##### (1)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법정 내용년수의 70%(10년 이상의 경우는 60%) 이상(1

년 미만의 끝수는 제외)에서 120%(1년 미만의 끝수는 버림)의 범위로 한다.

(2) 중도해약의 금지

리스기간 중에 중도해약 등은 할 수 없다. 단, 어쩔 수 없는 리스계약을 해약 또는 해제하는 경우는 장래 경과기간에 대한 리스료 상당액을 해약금으로서 차수자(차입자)가 리스회사들에게 지불한다.

(3) 리스료

(1)의 리스기간 중에 지불되는 리스료의 합계액으로 리스물건 취득가격과 부대비용 등 전체 비용(원칙으로 100분의 90이상)이 회수되도록 한다.

(4) 리스기간 만료 후의 조치

(1)의 리스기간만료후의 리스물건은 재리스, 반환 또는 폐기되어진다. 단, 대상물건이 건물, 구축물 등(파이프하우스 등 간이물건은 제외)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본사업의 리스계약에 포함되어진다.

#### 제4 사업대상 기계·시설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통지 제1의 1의 (1)의 인정 농업자 지원형 사업의 리스(이하 <인정 농업자 지원 리스>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자의 농업경영 개선계획에 의거한다.
2. 사업실시통지 제1의 1의 (2)의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사업의 리스(이하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리스>라 함)에 대해서는 지역공헌농업자의 지역공헌계획에 필요한 기계·시설로 한다.
3. 상기1, 2 모두 리스회사들이 해당기계·시설의 제조 또는 판매업자들에게서 구입하거나 다른 리스회사에게서 빌린 것으로 한다.

#### 제5 리스료 조성기간

리스료의 조성기간은 리스계약 기간과 동일하나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의 리스료 조성기간의 개시일은 차수자(차입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빌린 날(리스물건 차수증의 발행일)이다.

## 제6 리스료 조성에 관한 요건

리스물건은 제7의 리스료 조성신청서의 제출일 이후에 실제로 빌린 것이다. 단, 본 사업의 개시이전에 리스계약을 맺고 있는 것(제4의 사업대상기계·시설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2조 제1항의 실정에 의해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리스계약을 맺은 것에 한해 본 사업의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의 리스료 조성기간은 제7의 3의 (1)의 시정촌의 승인일에서 리스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이며, 8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7 리스료의 조성

### 1. 리스료 조성 신청의 수속

(1) 인정 농업자 리스의 차수자(차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정촌장에게 제출한다.

- a. 리스료 조성 신청서(별기양식 제1호)
- b. 리스물건의 내용(별기양식 제2호)
- c. 리스계약서 사본
- d. 농업경영개선계획 사본

(2)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리스의 차수자(차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정촌장에게 제출한다.

- a. 리스료 조성신청서(별기양식 제3호)
- b. 리스계약서 사본
- c. 그 외 시정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2. 리스료 조성범위의 확인과 등록

(1) 인정 농업자 지원 리스 조성신청을 받은 시정촌은, 전농에게 조성범위의 확인을 행하고, 조성이 가능한 경우는 별기양식 제4호에 의해 조성신청의 가등록을 하고, 조성신청서를 수리한다.

(2) 가등록의 유효기간은 3주간이다.

(3) 전농은 가등록을 관리하고, 유효기간을 경과한 것은 말소한다.

### 3. 리스료 조성승인

#### (1) 시정촌의 승인

a. 인정 농업자 지원 리스의 리스료 조성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이하 동일)를 수리한 시정촌장은 사업실시통지 제3의 2의 (2)의 인정 농업자 지원형 리스사업 심사를 개최하고, 적당하다라고 인정한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전항 2의 가등록일부터 3주 이내에 전농회장에게 제출한다.

(a) 리스료 조성 신청서(별기양식 제5호)

(b) 리스료 조성 신청서 사본

b.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리스의 리스료 조성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이하동일)를 수리한 시정촌장은 사업실시 통지 제3의 3의 (2)의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특별형 리스사업 심사회를 개최하고, 적당하다라고 인정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전농회장에게 제출한다.

(a) 리스료 조성 신청서(별기양식 제6호)

(b) 리스료 조성 신청서 사본

(c) 지역공헌계약서 사본

(d) 시정촌의 리스료 조성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 (2) 전농의 확인

리스료 조성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이하 동일)를 수리한 전농회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취지를 별기양식 제7호에 의해 차수자(차입자), 리스회사 및 시정촌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인정 농업자 리스에 있어서는 전항 2의 가등록의 등록순, 조성신청서의 접수순 및 조성범위들을 고려한 후에 조성의 가부 및 조성액의 감액 등에 대해서 결정한다.

### 4. 리스물건의 확인

(1) 차수자(차입자)는 리스물건을 실제로 빌린 후, 리스물건확인서(별기양식 제8호)에 의해 시정촌에게 리스물건의 확인을 받는다.

(2) 차수자(차입자)는 리스물건확인서의 사본을 전농회장에게 제출한다.

5. 리스료 조성계약

(1) 전농회장은 리스료 조성을 개시할 때에는 차수자(차입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 3자계약(별기양식 제9호)을 체결한다.

- a. 차수자(차입자)는 사업실시통지 제1의 2에 의해 산출된 리스료 조성액을 뺀 액수를 리스회사에게 지불한다.
- b. 전농은 리스료 조성액을 리스회사들에게 교부한다.
- c. 제7의 8의 조성중지 및 반환을 행한 경우 리스회사는 전농에게 리스료 조성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d. 전농은 리스료 조성액의 교부 외에 계약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리스료 조성계약의 변경

차수자(차입자) 또는 리스회사는 제7의 1의 리스료 조성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하게 리스료 조성 변경서(별기양식 제10호)를 시정촌장을 경유, 전농회장에게 제출한다.

6. 리스료 조성액의 산출

(1) 인정 농업자 지원 리스의 리스료 조성액의 산출은 사업실시통지 제1의 2의(1)과 같다. 또 조성계수표의 적용 년월일은 차수자(차입자)가 시정촌에 리스료 조성 신청서를 제출한 년월일(리스료조성 신청서에 기재되어져 있는 연월일)이다.

(2) 지역공헌 농업자 지원 리스의 리스료 조성액 산출은 사업실시통지 제1의 2의 (2)와 같다.

7. 리스료 조성금의 청구 및 교부

(1) 리스회사가 리스료 조성금의 청구를 행한 경우에는 리스료 조성 청구서(별기양식 제11호)를 다음에 의해 전농회장에게 제출한다.

a. 리스료 조성 청구서 제출기한

리스료 조성 계약월	리스료 조성 청구서 제출기한
4월부터9월	9월말일
10월부터3월	3월말일

b. 리스료 조성 청구서

매년 리스료 조성 청구액은 다음과 같다.

매년 리스료 조성 청구액>=<리스료 조성액>÷<리스료 조성기간>

(a) <리스료 조성액>이란 사업실시통지 제1의 2의 <리스료 조성액>이다.

(b) <리스료 조성기간>이란 제5에서 규정하는 <리스료 조성기간>이다.

(2) 전농회장은 내용을 심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농의 리스료 조성 청구서 제출기한에서 1개월 이내에 리스료 조성금을 리스회사에 교부한다.

8. 리스료 조성의 중지 및 반환

(1) 전농회장은 차수자(차입자) 또는 리스회사가 다음에 제시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동시에 개선점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에 근거 리스료 조성금의 교부를 정지하고 이미 교부한 조성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a. 리스계약을 해약·해제한 경우

b. 차수자(차입자)가 경영을 중지한 경우

c. 리스물건이 소멸·소실된 경우

d. 리스료 조성 신청서 또는 리스료 조성 청구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을 때

e. 제7의 5의 (2)의 리스료 조성 계약변경의 신고를 소홀히 할 때

g. 지역공헌농업자 지원 리스에 있어서 시정촌과 지역공헌농업자와의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때

h. 그 외 전농회장에게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을 때

(2) (1)에 의해 반환명령을 받은 리스회사는 즉시 해당 조성금을 반환해야 한다.

## 제8 심사

1. 전농회장은 본 사업 실시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태심사를 행할 수 있다.
2. 차수자(차입자) 및 리스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1의 심사를 거절할 수 없다.

## 제9 장부 등의 정비확보

1. 차수자(차입자) 및 리스회사는 본 사업에 관계된 경리를 다른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해야하며,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한 장부 및 관계서류를 정비해서 보관한다.
2. 1의 보관기간은 사업이 완료한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이다

## 제10 실시기간

이 업무규정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제출된 리스료 조성 신청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11 기타

1. 사업실시통지 별기 8의 제3의 3의(4)의 시정촌이 행하는 지역공헌계약의 이행상황 보고는 별기양식 제12에 의한다.
2. 전농회장은 이 업무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농림수산성경영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1. 이 업무규정은 농림수산성 경영국장의 승인이 있는 날(2002년 5월 7일)로부터 시행하고,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인정농업자 지원 긴급 리스사업 업무규정(1999년 4월 27일자)는 폐지한다.
3. 2의 규정에 의해 폐지되어진 업무규정에 근거해 2001년까지 실시한 사

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해서 처리한다.

4. 2002년도에 실시된 인정농업자지원 리스에 대해서는 제7의 2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리스료 조성금의 교부정지 및 반환 처리

리스료조성금 교부를 정지하는 경우	교부를 정지하는 기간	이미 교부한 리스료 조성금의 처리
계약을 해약·해제한 경우	좌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좌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날 이후의 리스료 조성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한다.
차수자가 경영을 중지한 경우	"	"
리스물건의 소멸·소실의 경우	"	"
리스료 조성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좌란의 사유가 부정한 수단 에 의한 리스료 조성금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질 때는 이미 교부한 리스료 조성금 전액 대해서 반환을 요구한다.
리스계약에 변경이 있었으나 신고서 제출을 소홀히 한 경우	"	"
지역공헌농업자 지원 리스에 있어서 시정촌과의 계약이 불이행 된 경우	좌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져, 시정촌에서 보고가 있을 때	인정농업자 지원 리스와의 차액의 반환을 요구한다.
기타 진농회장에게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좌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질 때	좌란의 사유가 부정한 수단 에 의한 리스료 조성금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질 때는 이미 교부한 리스료 조성금의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한다.

(별기양식 제9호)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리스료 조성 계약서

○년○월○일자 제○호에서 통지한 리스료 조성에 대해서, 농업경영전개 지원 리스사업 업무규정 제7의 5의(1)에 의거, 이하와 같이 리스료 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갑(차수자), 을(리스회사), 병(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 각1통을 보관한다.

제1조 조성의 대상인 리스물건은 별표1과 같다.

제2조 병은 업무규정 제7의 6에 의해 산출한 리스료 조성금액 ○○○엔을 별표2에 의해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갑에게 조성한다.

2. 전항의 리스료 조성액은 업무규정 제7의 7의(2)에 의거 을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을이 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3조 갑은 갑과 을이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거한 리스료에서 전항 1항의 리스료 조성액을 뺀 금액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4조 갑 또는 을은 갑을간 계약을 해약·해제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조 병은 리스료 조성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을은 병이 지불한 조성액에 대해서 업무규정 제7의 8의(1)에 의거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금액을 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반환한다.
3. 을은 전항에 의해 지정기일까지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일의 익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반환해야하는 리스료 조성금에 년10.95%의 연체이자를 병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6조 병은 갑·을 간 계약에 관해 조성액의 교부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부 록

### 제 3 장

####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군 사례

##### 1.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은 1999년에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현재까지 4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 1999년에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및 농기계 구입을 하였고 2000년 1월부터 실질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임대사업자는 군수로, 운영부서는 산업진흥과이며, 임대대상자는 임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인 작목반이다. 1999년 트랙터 11대를 사서 임대사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추가로 트랙터 12대 이외에 콤바인 12대와 이앙기 8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부록 표3-1>. 매년 농기계를 추가 구입한 결과 2002년 현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기종은 총 87대를 보유하게 되고, 이에 부속되는 작업기는 총 156대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표 3-1> 연도별 농기계 임대사업 내역

단위: 백만

년도별	사업비	임대기계명	대수	수혜작목반 수	비고
1999	250	트랙터	11	11	작업기 44대
		콤바인	0	0	
		이앙기	0	0	
		소계	11	11	
2000	750	트랙터	12	12	작업기 48대
		콤바인	12	12	
		이앙기	8	8	
		소계	39	39	
2001	400	트랙터	7	7	작업기 28대
		콤바인	4	4	
		이앙기	8	8	
		소계	19	19	
2002	600	트랙터	9	9	작업기 36대
		콤바인	6	6	
		이앙기	10	10	
		소계	25	25	
계	2,000	트랙터	39	39	작업기 156대
		콤바인	22	22	
		이앙기	26	26	
		소계	87	87	

양평군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 농기계 3기종 보유대수 87대가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87개 수혜 작목반(공동이용조직)의 수와 같고<부록 표3-2>, 한 지역에 같은 기종이 한 대 이상 보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 표 3-2> 1999~'02 임대 농기계 읍·면별 임대 현황

구 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계
양평읍	4	2	4	10
강상면	3	2	1	6
강하면	2	1	2	5
양서면	1	1	-	2
옥천면	3	1	2	6
서종면	2	2	-	4
단월면	3	2	2	7
청운면	4	2	3	9
양동면	6	2	3	11
지제면	5	4	4	13
용문면	4	1	2	7
개군면	2	2	3	7
계	39	22	26	87

※ 양평군 전체 12개 읍, 면

이 사실은 양평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임대 농기계와 공동이용조직의 수가 같다는 사실은 꼭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임대 농기계가 공급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먼저 한 공동이용조직(작목반)에게 한 대 이상의 동일기종이 할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배분, 공급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양평군은 처음 임대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양평군 내 읍, 면의 기종별 농기계 보급 대수를 조사하여 임대사업 신청을 한 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동일 기종의 임대 농기계 배정을 배제하여 같은 종류의 농기계의 중복투입에서 오는 이용률의 저하를 감소시키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양평군 내 읍, 면의 임대대상자의 지역적 분포와 농기계 보급율이 비슷하게 되고 사용 및 유지가 원활하게 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양평군 총 12개 읍, 면에서는 모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 여주군

경기도 여주군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 현재까지 3년 동안 실시하

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군수이며 실질적인 운영부서는 농림과, 임대대상자는 공동이용조직인 영농단이다. 현재 트랙터 10대, 이앙기 30대, 콤바인 26대 등 총 66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부록 표3-3>.

<부록 표 3-3> 연도별 농기계 임대사업 내역

단위: 백만

년도별	사업비	임대기계명	대수	수혜 영농단 수	비고
2000	477	트랙터	3		
		콤바인	10		
		이앙기	12		
		소계	25	10(146)	
2001	195	트랙터	1		
		콤바인	4		
		이앙기	5		
		소계	10	4(46)	
2002	694	트랙터	6		
		콤바인	12		
		이앙기	13		
		소계	31	16(162)	
계	1,366	트랙터	10		
		콤바인	26		
		이앙기	30		
		소계	66	30(354)	

총 수혜 농가는 354호, 수혜면적은 259.7ha로 집계되고 있다. 여주군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영농단이라는 이름의 공동이용조직으로 임대대상자를 한정하고 영농단의 대표를 임대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영농단이란 타 지역의 작목반과 비슷한 개념인데, 굳이 영농단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오직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대상자로 지정하여 다른 영농조직과 명칭을 차별화 하기 위한 것이다. 여주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시 행정리당 1개 영농단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1개 영농단 당 5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 영농단은 1ha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10호 이상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여주군은 임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르다. 보통 다른 군에서 하는 방식처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 면에서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임대대상자 선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및 편파 선정에 대한 민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주군에서는 읍, 면의 추천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자격요건에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만 확인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허가해 주고 있다. 이 사실이 여주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가장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읍, 면)에서 실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 내 농기계 보급대수, 소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현황 등 지역사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반영한 임대대상자의 선정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혜택이 영농단을 구성하는 농가에 모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이용조직인 영농단은 위에서 말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편익 또한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총 10개의 여주군 내 읍, 면 중 점동면을 제외한 9개 읍, 면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능서면과 강천면이 가장 많은 6개씩의 영농단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록 표 3-4> 2000~'02 임대 농기계 읍·면별 임대 현황

구 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계
점동면	-	-	-	-
여주읍	1	3	5	9
능서면	-	4	7	11
금사면	3	2	5	10
산북면	1	2	2	5
북내면	1	5	4	10
강천면	3	4	3	10
흥천면	-	3	3	6
가남면	-	1	3	4
대신면	-	-	1	1
계	9	24	33	66

※ 여주군 전체 10개 읍, 면

## 참고문헌

- 강정일, 강창용, 위용석,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2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10
- 강정일, 강창용, 이성호, 「기계화영농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방향」, 연구보고 2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10
- 강창용, 「농업기계임대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001. 4
- 강창용, 이성호,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변천에 관한 소고", 「농촌경제」, 제13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6.
- 강창용, 조가옥, 「일본농업의 기계화」, D1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10
- 경기도청 농산유통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2002
- 농림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
- 농림부,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2001. 10
- 농림부, 「농업기계 공동이용계획」, 1971
- 농림부, 「농업기계공동이용체(기계계) 설치지도 지침」, 1971
- 농림부, 「농업기계계 육성강화 방안」, 1972
-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9. 9
-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2000. 8
-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2001. 9
-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2002. 9
- 농림부 생산지원과, 「업무자료」, 1998. 7
- 농림수산부 내부자료, 「철원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현황 및 폐지」, 1982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농업기계업무자료」, 1988. 2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88. 9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0. 4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1. 3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2. 3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3. 3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1994.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5. 9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업무자료」, 1996. 4
- 농림수산부, 「1993 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요령」, 1992. 12. 23
- 농림수산부, 「1994년도 농업기계화 시행요령」, 1994. 1
- 농림수산부, 「기계화영농단 운영개선대책」, 1998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화」, 1986. 7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화」, 1987.
- 농림수산부, 「한국농업기계화 발달과정」, 1982
- 농수산부, 「농업기계공동이용단지현황」, 1985.
-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이용효율 제고방안」, 2002.
- 농협, 「독일 MR 사업 연수자료」, 1997
- 농협중앙회 조사부, 「한국농업의 기계화」, 1983.12.
-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 사업 실무교재」, 2001.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MR)사업 추진현황」, 2000.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MR)사업추진현황」, 2001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MR)사업추진현황」, 2003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재」, 2002. 4.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농기계은행사업 현지점검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2002.  
 민중서관, 「새로 나온 국어사전」, 2000  
 신인식, 「독일식 농작업 수위탁 중개사업의 효율화 방안」, 농협대학, 1992.  
 이선 외, 「리스산업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9. 7  
 충청남도, 「영농기계은행실태평가」, 1976.  
 충청남도, 「76영농기계은행실태평가 및 '77사업계획」, 19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독일의 기계이용조합(Maschinenring)」, 2001.

新農林社, 『21世紀の日本農業機械化 - いま我々はをなすべきか』, 1996. 2. 2.  
 日本 農業機械化推進協議會, (社)日本農業機械化協會, 『平成13年度 農業機械化 關係  
 豫算一覽 農業機械施設 造成事業の概要』, 2001. 3.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農業機械對策について』, 2001. 1.  
 (株)日本農業機械工業會, 『農業機械の統計』, 1998. 10.  
 (株)農機産業調査研究所, 『農業機械化 主要 指標』, 1998. 12.  
 竹田直入地方振興局, 「竹田直入地域農業振興策視察資料」, 2001. 2  
 農林水産省, 「農業經營動向統計」, 各 年度  
 農林水産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13년도 米及び麥類の生産費」, 2003. 2  
 農林水産省 生産局 生産資材課, 『生産資材課 參考資料』, 2002. 3  
 農林水産省 『農作業事故調査結果報告書』, 各 年度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安全衛生年年監』, 各 年度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施設助成事業の概要」, 2002. 3.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化關係豫算一覽」, 2002. 3.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化關係豫算一覽」, 2001. 3.  
 日本農業機械化協會, 「農業機械化關係豫算一覽」, 2000. 3.  
 全國農業協同組合聯合會, 「農業經營展開支援リース事業」, 2002.5  
 村松功己, 「農業機械利用組織の發展と今後の役割」,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02. 1  
 農林水産省農産園藝局肥料器械課, 「農業機械銀行をめぐる現状と課題」, 1998. 3

FMIRC, 『Farm Machinery Statistic』, 1999, 2000, 2001.  
 Longman Dictionaries, 「Longman Dictionary of Cotemporary English」, third  
 edition, 1995  
<http://www.maschinenringe.org>  
<http://100.naver.com>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